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지연

공동연구원 이유진 정소연 박선영



연구보고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정소연(서울여자대학교·교수)

박선영(한세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 최수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내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청소년의 비행과 재범예방에 기여하는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선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했고, 주된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이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 1,000명을 표집하여 2018년 6월~7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 전후에 청소년 15명과 관련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있어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확인했고,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혔다. 기존 선도프로그램 가운데 비행억제 효과가 높은 선도프로그램 영역은 여가·문화·취미, 가족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선도대상 청소년들은 청소년기관, 민간기관이 준사법기관이나 사법·치안조직 보다 상대적으로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선도프로그램 참여경로, 비행예방 효과 및 도움정도, 만족도와 개선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1:1 관계기반, 부모참여 프로그램, 여가·문화·취미 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진로·진학·취업·창업 지원 요구도가 높았다.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교육적 선도대상은 경찰단계의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 소년원 출원 이후 사회적응 및 재범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중복적인 처우를 최소화해야한다. 1:1 관계기반, 부모참여, 경험하지 못한 체험 중심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써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한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소년업무규칙」 개정을 통한 교육조건부 훈방 근거 마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한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마련, 「소년법」 개정을 통한 특별교육(보호관찰 부가처분) 연계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별교육과의 연계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피해아동·청소년 재통합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둘째, 추진체계 및 제도 정비를 위한 추진과제로써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를 통한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소년사법절차 단계별 제도 연계를 통해 비행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민·관 협력 및 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정보공유 개선 등을 제안했다.

셋째, 선도 기능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로써 대상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친권자 책무 이행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내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청소년의 비행과 재범예방에 기여하는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교육적 선도의 운영주체가 자치단체의 장이므로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찰·검찰·법원단계의 선도업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포함하였음.
- 2017년 하반기부터 수립·추진하고 있는 범부처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및 보완대책과 법무부의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8~2022)’에 포함된 선도제도의 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선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위기청소년 대상 교육적 선도제도와 관련된 쟁점과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보고서 및 선행연구 등을 고찰했음. 공식통계인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국가승인통계인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했음.

- 설문조사 : 전국의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0명을 표집하였는데, 민간 영역과 사법 및 준사법기관에서 각각 500명을 표집했음. 민간영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적 선도를 받은 청소년을 각각 250명씩 표집하였고, 사법 및 준사법기관에서는 경찰/검찰/법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적 선도를 받은 청소년을 각각 250명씩 표집하였음. 조사시기는 2018년 5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음.
- 면접조사 :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 전후에 청소년 15명과 관련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음. 면접대상자는 설문조사 표집기관에서 교육적 선도를 받는 청소년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 사례조사 : 위기청소년 대상 교육적 선도제도의 국내외 관련 사례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운영현황을 소개했음.

3. 주요결과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제도는 다이버전(diversion)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소년사법절차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제도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 동법 발의법률안에 포함되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제도는 존치하되 내용 상당부분이 변용되어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임.
- 선도제도는 청소년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식적인 형사절차를 중단하거나 경미하게 제재하여 비범죄화하는 다이버전의 대표적인 유형이며 동법 상 선

도제도는 비행청소년 선도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소년사법절차의 중복 및 사각지대와 연계 운영 필요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를 통해 존치 여부를 포함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 경중(輕重) 등 비행행동 측정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영역에 대한 예비문항을 개발함.
- 선도대상의 범위, 효과성, 프로그램 구성요소, 개인정보공유 등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현안 및 쟁점을 분석함.

2)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여건 및 현황분석

(1) 교육적 선도의 근거 법률 및 제도 분석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0조에서는 “선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도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 외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청소년 보호법」 상의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검사 의뢰 교육 및 상담, 판사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선도보호 위탁 보호처분, 「초·중등교육법」 상의 징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특별교육이수, 「소년법」 상의 훈계 및 보호자 교육 고지, 상담조사, 통고제도, 수강명령, 부가처분으로써의 대안교육과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보호시설 대안교육과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이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와 유사한 많은 제도들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상 실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찰의 훈방과 연계된 교육제도들은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향후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훈방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검찰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도조건으로써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단체나 시설로써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가 포함됨. 이 중에서 가급적 ‘청소년꿈키움센터’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여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유사제도 및 사업 분석

- 교육내용 측면에서 강의식 교육보다는 체험이나 놀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교육인력 측면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지도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고, 특히 대학생 멘토와 같이 연령차가 적은 경우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개입시기 측면에서는 조기개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동의를 받는 절차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3) 국외 유사제도 및 사업 분석

- 미국의 경우 다이버전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데, 가족참여, 개별 맞춤형 처우, 장기적 처우, 다기관협력, 민간단체 참여, 동의서 및 계약서 작성 등 선도효과를 제고하고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운영 요소를 확인하였음.
- 독일은 형사절차보다 법원의 교육처분명령의 일환으로 '준수사항'을 통해 선도가 이루어지는데, 보호자위탁 등 「소년법」에 따른 1호 보호처분과 유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선도제도의 개념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었음.
- 일본의 경우 경찰이 소년경찰활동규칙을 근거로 소년서포트센터를 기반으로 민간기관과 연계한 선도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처분 결정 전 선도프로그램 운영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영국은 미국의 다이버전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정신건강, 학습장애, 약물남용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특수 다이버전을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3)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1) 비행의 경중(輕重)에 따른 선도프로그램 배치

-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있어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행위가 일부 확인되었음. 먼저 오프라인 도박과 인터넷 도박,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과 주먹싸움 하거나 때리기, 다른 사람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 방화의 경우 남자청소년, 집단따돌림하기는 여자청소년의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음.

- 연령대별로 보면 흡연, 음주, 청소년출입제한/금지구역출입 등 지위비행의 경우 16세 이상 고연령대 청소년의 경험률이 높았지만, 그 외 비행행위는 중간연령대(14~15세)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음. 특히 비행의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보면,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비행의 경우 고연령대가, 재산비행, 성비행, 그리고 전체 비행 정도는 중간연령대의 비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였음.

(2) 청소년비행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 본 연구를 통해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영향력이 각각 확인되었음.
- 위험요인의 경우 우울 및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부모-자녀 갈등, 부부갈등, 학대 및 소외,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 교제, 교사-학생 간 비우호적 관계, 강압적 학교분위기, 지역사회 내 유해환경 접근성, 지역사회해체 등 11개 요인 모두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호요인의 경우 일부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관념, 가족차원에서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 또래차원에서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 교제,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학교차원에서 우호적 관계의 교사 존재가 비행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3) 가족 및 여가·문화·취미 영역 선도프로그램 확충

- 선도프로그램의 선도효과는 ‘여가·문화·취미’에 해당하는 각종 활동들이 비행행동 감소에 가장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은 가족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 상담 및 치료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된 세부프로그램은 체육/운동활동, 동아리활동, 댄스 및 비보잉, 음악활동,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요리활동, 가족캠프, 미술활동, 멘토링, 각종 체험활동, 취업알선 등이었는데 여가·문화·취미 유형에 속한 프로그램이 다수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사표본에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가운데 처분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경우가 10명 중 3명에 달했는데,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각종 봉사활동의 경우 모든 선도프로그램 유형 가운데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가장 낮았음.

(4) 지역사회 내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유형 사회서비스 확충

- 조사표본에서 10명 중 9명(91.7%)이 재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런 특성을 반영하듯 이들은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학교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즉, 학교에서 교육과정 기반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기준 등 실제적인 법 교육을 실시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도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학습여건이 갖추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 재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취업알선, 창업교육, 진로탐색, 적성검사, 직업체험, 대입준비지원, 검정고시 준비지원 등의 교육 및 진로 지원이 비행행동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음.

(5) 선도프로그램의 교정목표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가하는 선도프로그램의 각 유형별 효과성은 교정목표와 관계없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3~3.4점 정도로 대체로 균질적이었음. 다만 선도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정목표가 관련성이 높을수록 선도효과가 높았음. 즉, 선도프로그램 유형 중 가족관계 향상 차원에서는 가족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았고, 학업증진 차원에서는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았음.
- 선도프로그램이 성별, 연령대에 따라 효과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일부 확인되었음. 다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가·문화·취미활동 영역의 선도프로그램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비행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조사표본에서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 유형에 따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선도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7개 선도프로그램 유형 모두에서 예외 없이 확인되었음. 대체로 청소년기관과 민간기관이 사법·치안조직보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선도프로그램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는데, 사후검증 결과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비행예방센터) 간 차이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4) 면접조사를 통한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과 현장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에서는 교육적 선도제도의 운영방식과 효과적인 내용 요소를 확인하였음. 즉, 1:1 관계기반, 부모 참여, 여가·문화·취미·진로 등 청소년활동과 체험 영역의 프로그램이 비행행위 억제에 도움이 되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진

로·진학·취업·창업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실무자들은 중복처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교육적 선도제도의 핵심 정책대상은 경찰에서 훈방, 즉결심판되는 비행 초기단계의 청소년, 그리고 소년원 출원 이후 사회적응 및 재범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적합하다고 지적하였음.

-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이 사건을 처리하는 관할 경찰서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의 원활한 접근성과 참여도를 감안하여 주소지(거주지) 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기관 간 연계 여건 뿐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4. 정책제언

1)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부터 제21조와 하위법령에서 각각 규정한 교육적 선도의 정책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행령에서는 선도내용에 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교육 및 진로, 여가·문화·취미, 봉사, 가족지원을 명시하여 지원내용의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시행규칙에서는 선도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와 지원내용을 신속하게 결정

하고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가 의뢰한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요구됨.

(2) 「소년업무규칙」 개정: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근거 마련

-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소년업무규칙」을 근거로 하는데,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을 지역사회 내 선도프로그램에 의뢰할 경우 입건을 하지 않도록 하여 '조건부 훈방'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치는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 책무를 경찰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역사회에 함께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3) 「청소년 보호법」 개정: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마련

-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자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를 받은 친권자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에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친권자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교육적 선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친권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소년법」 개정 : 특별교육(보호관찰 부가처분) 및 사회봉사명령 연계 운영

- 교육적 선도제도를 현행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한 형태로 별도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의 일환으로 연계 운영하거나 사회봉사명령 처분 시 교육적 선도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봉사활동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적 선도제도와 연계한 내실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구됨.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및 특별교육조치와의 연계 근거 마련

- 현재 「학교폭력법」 제17조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경우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임.
- 이에 해당조치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선도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한 피해아동·청소년의 치유·회복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 사안을 다룸에 있어 국제협약을 포함한 세계적 동향은 처벌, 통제, 제한과 같은 수단은 어디까지나 성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폐해로 인한 피해자라는 관점을 견지함.
-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 추진체계 및 제도 정비를 위한 추진과제

(1)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 :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 법적 근거가 부재한 현행 경찰단계의 조건부 훈방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교육적 선도제도를 근거로 가칭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제도화할 경우 제도의 운용은 경찰이 담당하지만 위기청소년을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개발·발굴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업무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임.
- 이와 관련하여 교육적 선도제도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1안으로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찰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임. 2안은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비행청소년 선도라는 본연의 기능을 보다 확장하여 추진하는 방안임.

(2) 소년사법절차 단계별 제도 연계: 비행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 경찰, 검찰, 법원단계에서 포착되는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절차의 각 단계와 교육적 선도제도와 연계 강화하도록 해야 함.
- 특히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지원이 결정된 경우, 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교육적 선도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안전망 내에서 추수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민·관 협력 및 기관 연계 강화: 정보공유체계 개선

- 각종 선도제도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정보공유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특별히 의도된 경우가 아님에도 유사한 내용의 선도프로그램

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비행행동에 대한 인식을 둔감하게 하고 프로그램이 의도한 효과를 도출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 선도과정에서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선도후견인이 선도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각적인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agency) 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함.

3) 선도 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1) 대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 선도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따라 참여 청소년의 비행수준에 차이가 있고,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내용과 수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대상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교육적 선도제도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 : 사회 내 치우 프로그램 다양화

-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 내 치우를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종류를 대폭 확충하여야 함. 그 일환으로 '(가칭)청소년 바우처'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가칭)청소년바우처'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3) 친권자(보호자) 책무 이행 강화

-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해당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여 부모에 대한 생필품 지원과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공가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시행을 검토하여야 함.
- 제재 방안으로는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연구보고 18-R08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8
1)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현안과 국제적 동향	8
2) 국내·외 선도제도 및 사례 분석	8
3)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도 분석	8
4)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	9
3. 연구방법	9
1) 문헌연구	9
2) 전문가 자문	9
3) 2차 자료 분석	10
4) 설문조사	10
5) 면접조사	12
6) 기타 연구방법	13
4. 연구추진체계	1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원칙	17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선도대상	17
2) 교육적 선도제도 도입배경	21
3) 교육적 선도제도와 다이버전 연계	25
2. 교육적 선도 관련 소년사법의 국제적 동향	29
1) 교육적 선도 관련 국제준칙과 동향	29
2) 교육적 선도 관련 연구동향	32
3. 교육적 선도대상의 규모	42
1) 비행·일탈·범죄소년	43
2) 부적응청소년	50
4.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현안 및 쟁점	54
1) 교육적 선도의 대상과 선도 범위의 문제	54
2) 교육적 선도의 재범률 감소 등 효과성 문제	55
3)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구성요건	56
4)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간의 연계 : 개인정보공유 문제 등	57

III.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여건 및 현황분석

1. 교육적 선도의 근거 법률 및 제도 분석	61
1)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 법률	61
2) 부처별 교육적 선도 유사제도 현황	68
2. 국내 유사제도 및 사업 사례분석	78
1) 교육부 유사제도 및 사업	78
2) 법무부 유사제도 및 사업	85
3) 경찰 유사제도 및 사업	90
4) 검찰 및 법원 유사제도 및 사업	96
3. 국외 유사제도 및 사업 사례분석	102
1) 독일	102
2) 일본	113
3) 미국	126
4) 영국	155

4. 소결	172
-------------	-----

IV.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1. 설문조사	181
1) 조사개요	181
2) 주요변수 측정	194
3) 분석결과	207
2. 면접조사	267
1) 조사개요	267
2) 분석결과	274
3. 소결	318
1) 비행의 경중(輕重)에 따른 선도프로그램 제공	318
2) 청소년비행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319
3) 가족 및 여가·문화·취미 영역 선도프로그램 확충	320
4) 지역사회 내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유형 사회서비스 확충	321
5) 선도프로그램의 교정목표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322
6) 청소년의 거주지 기반 선도프로그램 운영	323

V.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 제안배경	327
1) 주요결과 요약	327
2)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향	334
2. 정책 추진과제	343

참고문헌	391
-------------------	------------

부 록	417
1. 청소년 보호 및 선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청소년 의견조사 설문지	419
Abstract	433

표 목차

표 Ⅰ-1	본 연구 관련 국가정책의제 및 주요현안	7
표 Ⅰ-2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설문조사 개요	11
표 Ⅰ-3	면접조사 개요	12
표 Ⅱ-1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의안번호 162705) 교육적 선도내용	22
표 Ⅱ-2	교육적 선도 관련 최근 연구	37
표 Ⅱ-3	청소년 비행행동 측정도구 및 문항 선정을 위한 검토대상 선행 연구	41
표 Ⅱ-4	선도심사위원회(경찰) 운영현황	44
표 Ⅱ-5	소년보호사건 우범소년 관련 현황(2012-2016)	46
표 Ⅱ-6	소년범죄자 처분결과(2012-2016)	47
표 Ⅱ-7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2013-2017)	49
표 Ⅱ-8	연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2012-2016)	50
표 Ⅱ-9	학교폭력사범 적발 및 조치현황(2013-2017)	50
표 Ⅱ-1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51
표 Ⅱ-11	교육적 선도 대상 규모와 서비스 진입관문(Gate-way)	53
표 Ⅲ-1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법적 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62
표 Ⅲ-2	교육적 선도 관련 법률 및 조문 비교	67
표 Ⅲ-3	정부기관별 교육적 선도 관련 제도 비교표	75
표 Ⅲ-4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117
표 Ⅲ-5	프로그램의 내용	123
표 Ⅲ-6	소년법원과 다이버전의 차이점	128
표 Ⅳ-1	청소년비행행동 측정을 위한 예비문항	184
표 Ⅳ-2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범주화	188
표 Ⅳ-3	조사문항 구성	190
표 Ⅳ-4	개인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195
표 Ⅳ-5	가족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196
표 Ⅳ-6	친구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197

표 IV-7 학교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198
표 IV-8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199
표 IV-9 개인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200
표 IV-10 가족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201
표 IV-11 친구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203
표 IV-12 학교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203
표 IV-13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204
표 IV-14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8
표 IV-15 비행측정항목 적절성 및 경중 평가: 지위·물질사용·신분 도용 비행	210
표 IV-16 비행측정항목 적절성 및 경중 평가: 재산비행	212
표 IV-17 비행측정항목 적절성 및 경중 평가: 폭력비행	213
표 IV-18 비행측정항목 적절성 및 경중 평가: 성비행	214
표 IV-19 청소년조사 응답자 및 가족의 특성	216
표 IV-20 조치 및 처분 경험(N=1,001)	218
표 IV-21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에 있어서 성별 차이	219
표 IV-22 재산비행의 성별 차이	221
표 IV-23 폭력비행의 성별 차이	223
표 IV-24 성비행에 있어서 성별 차이	224
표 IV-25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에 있어서 연령대별 차이	226
표 IV-26 재산비행의 연령대별 차이	227
표 IV-27 폭력비행의 연령대별 차이	229
표 IV-28 성비행의 연령대별 차이	230
표 IV-29 비행수준의 성별 차이 분석	233
표 IV-30 비행 수준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 분석	234
표 IV-31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별 비행수준 차이 분석	235
표 IV-32 청소년비행 위험요인 검증	239
표 IV-33 비행범주별 위험요인 검증 분석결과 요약	240
표 IV-34 회귀분석을 통한 보호요인 검증	243
표 IV-35 비행범주별 보호요인 검증 분석결과 요약	246
표 IV-36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248
표 IV-37 행동교정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250
표 IV-38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251
표 IV-39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252

표 IV-40 가족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253
표 IV-41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254
표 IV-42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255
표 IV-43 프로그램 유형별 효과성 인식 (5점 척도 사용)	256
표 IV-44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에 있어 성별 차이	260
표 IV-45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에 있어 연령대 차이	262
표 IV-46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별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	265
표 IV-47 참여자 특성	270
표 IV-48 실무자 면접 대상자의 특성	273
표 IV-49 청소년 면접조사 주요 내용 요약	300
표 IV-50 현장 실무자 면접조사 주요 내용 요약	317
표 V-1 법률 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 추진과제(안)	343
표 V-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개정(안)	346
표 V-3 교육적 선도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347
표 V-4 「소년업무규칙」 제31조 개정(안)	350
표 V-5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64조 개정(안)	351
표 V-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352
표 V-7 소년범죄 및 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353
표 V-8 「소년법」 제32조의2 개정(안)	355
표 V-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정(안)	356
표 V-10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360
표 V-11 청소년보호 추진체계 정비 추진과제(안)	362
표 V-12 경찰의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현황	363
표 V-13 사랑의 교실 운영현황	363
표 V-14 선도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안)	376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추진절차	14
그림 II-1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범주(안)	35
그림 II-2 청소년 범죄 사건처리 현황	45
그림 II-3 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46
그림 III-1 특별교육이수 위탁 및 교육 절차	69
그림 III-2 대안교육 위탁 및 교육 절차	70
그림 III-3 선도심사위원회와 전문가참여제 진행절차	71
그림 III-4 사랑의 교실 위탁 및 교육 절차	72
그림 III-5 서울시청소년수련관 특별교육 프로그램 일정표	80
그림 III-6 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일정	83
그림 III-7 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일정	84
그림 III-8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 주간 일정표	89
그림 III-9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일정표	92
그림 III-10 서울관악경찰서 자체선도 프로그램 일정표	95
그림 III-1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대학체험캠프 일정표	98
그림 III-12 회부서 섹션 1	161
그림 III-13 회부서 섹션 2	163
그림 III-14 회부서 섹션 3	164
그림 III-15 동의서	165
그림 III-16 YJLD 절차도	170
그림 IV-1 청소년비행행동 측정문항 개발 절차	186
그림 IV-2 조사지 개발절차	189
그림 IV-3 조사영역 및 주요내용	189
그림 IV-4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 목록화	206
그림 IV-5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에 있어 성별 차이	261
그림 IV-6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	263

그림 V-1 분석자료와 주요결과 요약 (문헌분석)	331
그림 V-2 분석자료와 주요결과 요약 (2차 자료 분석)	332
그림 V-3 분석자료와 주요결과 요약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 분석)	333
그림 V-4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1)	336
그림 V-5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2)	339
그림 V-6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3)	341
그림 V-7 교육적 선도제도의 중장기 운영방향(안)	342
그림 V-8 교육적 선도제도 관리 및 운영체계(1안)	366
그림 V-9 전문가 참여제도 참여경험 여부	368
그림 V-10 전문가 참여제도의 필요정도 및 도움정도	368
그림 V-11 전문가 참여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은 부분	369
그림 V-12 소년사법절차와 교육적 선도 연계방안(경찰단계)	371
그림 V-13 소년사법절차와 교육적 선도 연계방안(검찰·법원단계)	372
그림 V-14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공유 체계도	373
그림 V-15 교육적 선도 관련 정보공유 체계(안)	375
그림 V-16 교육적 선도제도 7단계 운영(안)	380
그림 V-17 교육적 선도대상 및 규모 추정(안)	381
그림 V-18 영유아·아동·청소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체계	384
그림 V-19 교육적 선도제도와 학력인정제도 연계(안)	387
그림 V-20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안)	389

○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연구추진체계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간 폭행사건이 연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잇따른 청소년 강력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청원,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요구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부처 종합대책(안)’이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12.22.).

대검찰청 자료를 통해 소년범죄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최근 10년 간 18세 이하 소년범죄자 발생비, 강도·강간 등 소년 흉악범죄 발생비, 재산범죄 발생비는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 강력범죄 가운데 폭력 발생비도 2007년 188.1건에서 2016년 207.7건으로 증가하여 교통범죄를 제외한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 발생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대검찰청, 2017, pp.20-21).²⁾ 같은 자료에서 2016년도 전체 소년범죄자 7만 6천 여 명 가운데 재범자 비율이 40%에 달하고 동종재범(43.1%)에 비해 이종재범(56.9%) 비율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이 다종다양한 범죄에 노출·연루된 것을 알 수 있다(대검찰청, 2017, pp.668-704). 검찰단계에 진입한 이들 소년

1) 이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2) 소년범죄자는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10~18세)의 범죄자를 의미하며, 발생비는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로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대검찰청, 2017).

범죄자의 처분결과를 보면, 소년범 60,669명 가운데 기소유예(34.7%)를 포함한 불기소가 과반을 넘고(53.1%), 소년보호 송치 33.9%, 구약식(3.9%)을 포함한 기소는 10.1% 수준에 불과하다(대검찰청, 2017, pp.712-713).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체계의 각 단계에서 비행사건화 된 경우에도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선도하여 범죄 유발요인은 해소하고 보호요인은 강화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재범 억제를 위한 접근은 청소년이 행하는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의 기저에 있는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제도 등 환경체계의 다면적인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Carr & Vandiver, 2001; Abrams, 2006; Moore, McArthur & Saunders, 2013; 이유진, 이창훈, 강지명, 2014, pp.238-239; 김지연, 정소연, 2017, pp.207-210).

위와 같은 맥락에서 소년사법체계의 각 단계에서도 다이버전(diversion)의 일환으로 선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단기인성교육 중심의 '사랑의 교실'과 자체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포함하여 우범소년 결연사업, 학교담당검사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단계에서는 보호처분을 명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합할 수 있고, 2008년 6월부터 개정 「소년법」이 시행되어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보호자특별교육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검찰단계에서 소년범죄의 기소율은 10%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성인에 비하여 관대하게 대응한 결과라기보다, 경찰단계에서 즉시적으로 선도조치가 이루어져도 될 만한 경미한 사건조차 엄벌로 처분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긴 시일 동안 정작 해당 청소년에게는 적절한 선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교정(矯正)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이수정,

윤옥경, 황태정, 2007, p.1).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2011)에서 “청소년의 재범률이 높고 범죄소년이 사회로 효과적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하는 대신 징계조치를 늘리는 식으로 청소년범죄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에 대한민국정부가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에는 “(소년범의)구금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의)특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 등 다양한 대안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의 최근 추이를 보면 대안처분의 형태는 다양화되었으나, 각 단계에서의 처분 및 선도내용이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재범방지에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정과 선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소년사법체계 진입 전·후의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선도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교육적 선도(educational guidance, 教育的善導)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선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9조 ~ 제21조). 이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으나 이후 예산(국비)을 확보하지 못해 법률 상 불비(不備)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선도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에 앞서 강도 높은 처벌이 우선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엄벌주의 접근은 잠깐의 사회적 공분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적기에 교정하는 교육적 접근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범죄 억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적 선도는 처벌 대신 처우(treatment)를 통해 낙인(stigma)을 최소화하고, 비행행동의 촉발요인을 제거하여 교화(教化)와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취한다. 따라서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할 뿐 아니라 국제준칙에도 부합하는 인권친화적인 방법론이다.

다만 교육적 선도제도는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의 연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김정환, 2012, pp.157-158) 기존의 경찰·검찰·법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선도조치’를 고려한 촘촘한 제도의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교육적 선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선도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청소년의 비행과 재범예방에 기여하는 선도내용 및 각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합의와 원칙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맥락에서 선도제도와 관련된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의 모색을 시도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내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청소년의 비행과 재범예방에 기여하는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찰단계에서 훈방, 선도보호조치 등으로 처리되는 경미소년사건을 포함하여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 사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교육적 선도와 경찰·검찰·법원단계에서 개별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선도제도를 상보적(相補的)으로 연계하여 선도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중장기 전략을 포함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2017년 하반기에 수립된 범부처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후속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2018년 8월의 범부처합동 보완대책 및 법무부의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8~2022)’에 각각 포함된 ‘선도제도의 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와 관련된 추진과제의 실행방안을 포함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선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국가정책의제의 주요내용과 교육적 선도제도의 관련 영역을 요약한 것이 표 I-1이다.

표 I-1 본 연구 관련 국가정책의제 및 주요현안

	국정과제(주관부처)	주요내용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영역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 및 치안지표 개선] •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청소년 보호 • 치안지표(청소년보호지원률) 개선	• [수단] 경찰단계 선도심사위원회에 청소년지도자 참여 확대 • [수단]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절차제도화 • [수단] 피·가해자 간 관계회복 강화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 확대·임양·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지방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 공공중심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 [방향] 위법행위 청소년, 위기청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진입관문(gate-way) 기능 강화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생애주기별 위기에서 예방·보호·치료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전환, 통합사례관리 시범운영	• [목표] 선도제도 기능, 실효성 제고를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 [방향] 국제준칙에 입각한 다이버전 및 아동보호조치로 운용 • [방향] 구금을 대신하는 지역사회 내 서비스 • [수단] 소년사법 절차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적법절차 강화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시스템 연계	• [수단] 민·관 협력, 가족지원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 p.40, p.81, p.86, p.87.

2. 연구내용

1)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현안과 국제적 동향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제도를 포함하여 소년사법 운영과 관련한 국제기준과 교육적 선도 관련 현안 및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원칙, 선도대상의 범위와 규모를 추정하고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구성요건을 제안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국내·외 선도제도 및 사례 분석

현행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도제도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선도제도 각각의 근거 법률과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특성과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선도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교육적 선도제도에 해당하는 다양한 비행 및 위기청소년 다이버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도 분석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의 개인과 환경체계에 있어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특성을 검토하고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비행예방을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각종 법률을 근거로 (준)사법기관 및 민간영역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집단면담(FGI)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도대상 청소년의 제반

특성을 고려한 예방적, 회복적 선도프로그램(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운명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각종 법률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 유사사업들 간의 독자성은 유지하면서 차별성과 선도효과를 극대화하여 위기청소년 안전망 개선에 기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교육적 선도제도의 근거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포함하여 기존의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복지 지원체계 간의 연계 방안을 포함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위기청소년 대상 교육적 선도제도와 관련된 쟁점과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보고서 및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찰·검찰·법원단계의 소년사법처리 현황과 특성을 검토하고 교육적 선도의 원칙과 근거, 국내외 유사 제도 및 사업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의 각 단계별 쟁점과 주요사안에 대하여 학계, 현장, 정책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수시로 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3) 2차 자료 분석

우리나라 범죄 관련 국가 공식통계인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소년 범죄의 발생 현황과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선도대상의 범위와 규모 추정을 위해 국가승인통계인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외 청소년 인구 및 선도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가 보완적으로 활용되었다.

4) 설문조사

(1) 선도대상 청소년 설문조사 :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도 분석

선도대상 청소년의 특성과 비행예방을 위한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의 경우 표집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표집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집단에 포함되는 연구대상의 규모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사목적에 따라 조사대상 기관을 민간(청소년기관, 민간기관)과 사법/준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비율을 할당하였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목표 표본수를 확보하고자 기관유형별 할당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못하였다(표 I-2).

(2) 전문가 설문조사 : 청소년의 비행행동 경중(輕重)평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청소년의 온라인·오프라인 비행행동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개별 비행행동의 경중을 파악하고자 현장, 학계, 정책 영역 청소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비행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 문항이 적절한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3.5점 이상인 문항만 최종척도문항에 포함하였다. 특히 비행행동 가운데 대표적인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음주에 ‘1’을 부여하고 나머지 행동이 음주보다 몇 배나 더 혹은 덜 나쁜지를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평가의 평균값을 비행행동의 경중을 나타내는 가중치(weight)로 활용하였다.

표 1-2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설문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모집단	• 전국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잠재적 대상 포함)				
표집틀	• 없음				
표본수	• 목표표본 수: 1,000명 (단위 : 명)				
	계	민간(500)		사법 및 준사법기관(500)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종합사회 복지관, 대안학교, NGO 등	경찰/검찰/법원	비행예방 센터
1,000	250	250	300	200	
표집방법 및 조사방법	• 비확률표집(snowball sampling) • 자기기입식 응답				
조사 시기	• 2018년 5월~7월 (2개월 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특성 : 성별, 연령, 학교 재학 여부, 가정의 경제적 여건, 가족구성,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보호력 정도 등 • 환경적 특성 : 또래특성, 교사(성인)와의 관계, 지역특성(유해환경 등) • 비행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온-오프라인 비행행동 등 개인적 특성, 또래-가족-지역사회 특성 등 • 선도프로그램 참여 경험 : 선도프로그램의 내용, 비행예방 효과에 대한 주관적 의견 등 • 재범예방을 위한 지원 요구 : 재범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서비스 내용 등 				

5) 면접조사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조사대상 청소년의 특성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선도제도 운영과 관련한 쟁점과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와 현장 전문가(실무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를 위한 문항 개발 및 의견수렴과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목적으로 선도대상 청소년 설문조사 전·후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용되었다(표 I-3).

표 I-3 면접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 검찰, 법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섭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대안학교 등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섭외
면담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위기수준 등을 고려하여 2~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 담당자 및 실무자 :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담당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간/사법준사법 영역을 포함하여 실시
면담참여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도조건부 훈방, 즉결심판 등으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소년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선도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인 청소년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 포함
면담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한 집단면접 및 집단토론 병행 사안에 따라 개별면접 형태로도 진행
면담 시간 및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 담당자 및 실무자 : 4~5월, 7~8월 중 개인 및 소집단 형태로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 각 90분 ~ 120분 정도 소요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녹음 후 전사
면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참여 중인 선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참여 계기, 도움 정도 등) • 개인적 상황(보호처분 등 경험, 또래·친구 관계, 선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등) • 선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비행예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내용 및 형태, 본인 동의 절차, 부모참여프로그램 등 참여 의사)
-------	---

6) 기타 연구방법

○ 전문가 회의(콜로키움)

횟수	주제	발표자·토론자	개최시기	비고
1회	교육적 선도대상의 범위와 추진 근거로서의 국제준칙과 다이버전 사례	강소영, 김학수, 김혁	3월 16일	
2회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운영 방향	강정은, 김현아 조진경, 조주은 안수경, 이현숙 김모란	10월 18일	

○ 정책실무협의회

차수	주요내용	관계부처	개최 시기	비고
1차	연구 설계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2월 9일	완료
2차	경찰단계의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 방안	경찰청	10월 17일	유선
3차	연구결과와 정책과제 논의	여성가족부	11월 2일	완료

4. 연구추진체계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방법과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도식화 한 것이 [그림 I-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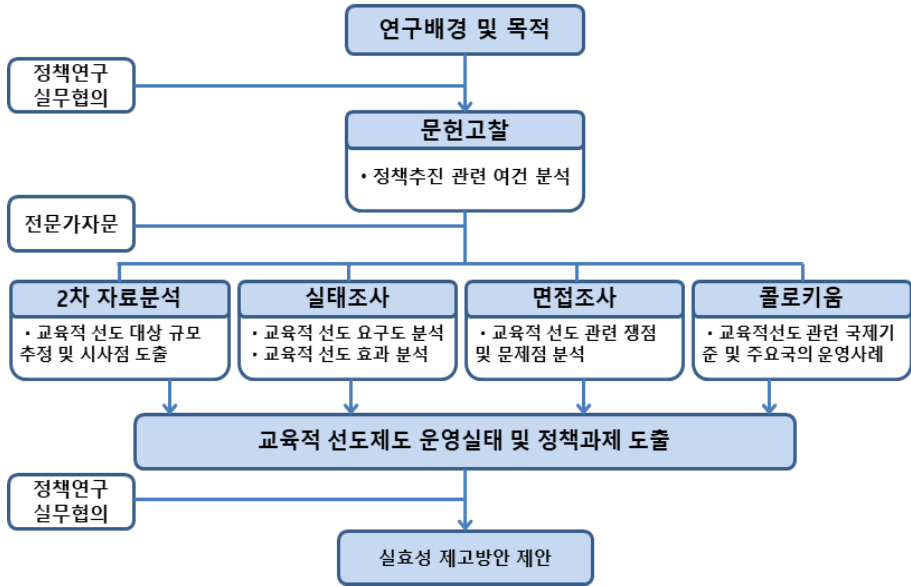


그림 I-1 연구 추진절차

○ ————— 제II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원칙
- 2. 교육적 선도 관련 소년사법의
국제적 동향
- 3. 교육적 선도대상의 규모
- 4.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현안
및 쟁점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원칙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선도대상

(1) 교육적 선도의 개념과 의미

선도(善導)는 말 그대로 ‘올바르고 바른 길로 이끈다’는 뜻이다. 교육적 선도는 그 방법과 취지가 교육을 기반으로 하며, 비행 및 범죄소년의 반사회적인 행동의 교정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는 청소년 대상 지도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소년비행 및 범죄소년에 대한 교육주의접근은 유럽 대륙법계국가의 근대적 형사정책 이론의 영향을 받은 교육형이론에서 유래하였고, 형벌보다 교육을 통해 문제행동을 개선·교화시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교육적 선도는 국친사상과 교육형사상을 토대로 하며 소년보호의 실천원칙 가운데 교육주의, 보호주의, 예방주의 다이버전(diversion) 등을 기반으로 한다.⁴⁾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적 선도는 소년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를 최소화(최소처분의 원칙)하고

3) 이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4) 소년보호·육성의 여덟 가지 실천원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기원(2013), pp.156-161을 참고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한 변화(교육처분원칙)와 인권보장 및 복지증진과 같은 최근 소년사법에서의 소년보호 원칙과 동향을 반영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접근도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소년에게 강제처분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형벌의 확장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이기원, 2013, pp.154-155).⁵⁾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행 및 범죄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는 다이버전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여기에는 ‘공식적 절차의 이탈’과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라는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공식적 절차의 이탈’은 차별적인 법 집행의 문제와 형사절차의 남용 위험성을 지적한 낙인이론(stigma theory)을 기반으로 하며 공식적인 형사절차를 중단하거나 경미하게 제재하여 비범죄화(非犯罪化)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는 해석 상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규범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승현, 2010, pp.7-9). 즉, 교육적 선도는 범죄 행위에 대한 단순 선처와 구별되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며, 대상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화, 특성화가 요구된다.

한편 교육적 선도의 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선도대상과 선도의 방법이다. 교육적 선도대상에 대하여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동법 제19조 제1항). 따라서 형사제재의 대상이 되는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비행소년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서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9조에서 교육적 선도대상의 개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적 선도대상이 위기청소년과 동일한 복지서비스 수급권자와 차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5) 이러한 비판은 극단적인 낙인이론가들의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교육적 선도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부담이나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형사절차를 중단하는 ‘단순 다이버전(diversion with nothing)’과 달리 일정한 부담과 사회 내 제재(처우)를 부과하는 ‘개입형 다이버전(diversion with intervention)’의 한 유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이다. 즉 비행·일탈범죄 관련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통해 비행성 제거를 염두에 둔 제도로서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다소 이질적인 제도가 포함된 것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안 발의 당시 교육적 선도제도의 취지와 구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흡연, 음주, 가출행동과 같은 지위비행(status offence)과 부적응을 이유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제재와 부담을 가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교육적 선도를 포함한 다이버전은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위험성이 낮고 예측이 가능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일차적으로 선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선도대상은 “각종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 가운데 선도를 조건으로 불처분,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본인이 교육적 선도의 참여에 동의한 경우”, 또는 “비행성, 반사회성을 동반한 부적응 행동을 하는 청소년 가운데 본인이 각종 교육보호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참여 등 교육적 선도의 참여에 동의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2) 교육적 선도대상과 소년법상 비행소년

위와 관련하여 교육적 선도대상 연령의 경우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의 연령을 적용하면 24세 이하의 자가 해당된다. 그러나 성인과 달리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에 있어 특별조치를 행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교육적 선도대상은 「민법」 상 미성년자, 「소년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선도의 목적이 비행·일탈·부적응이 이유이고 본인이 동의한다면 24세가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절의 2항 교육적 선도제도의 도입배경을 참고할 수 있다.

지 사회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소년원 출원생 등 성인기에 접어든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 선도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의 인권과 사회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년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소년,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각각 상이하나, 교육적 선도대상에는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범죄축범우범소년(이하 비행소년)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의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제1호),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제2호)의 범위는 「소년법」 상 우범소년의 그것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다만 「소년법」에서는 우범사유를 세 가지로 특정하고 있고, 우범사유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더라도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즉, 우범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우범소년에 비해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으로 실시된다. 이 가운데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경우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통고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소년법」 상 비행소년은 교육적 선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해석 상 비행소년을 선도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는 것보다 선도신청을 하는 것이 해당 청소년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통고절차를 통해 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교육적 선도를 신청하게 되면 보호처분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가 비판의 소지를 가지는 부분은 소년보호절차의 형해화(形骸化) 또는 우회의 문제보다 사회통제망의 확장(net-widening)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즉, 교육적 선도제도로 인하여 그간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청소년들까지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각종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비행과 범죄 위협에 직면한 청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교육적 개입을 사회통제망의 확장으로 비판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장권, 발달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교육적 선도에의 참여를 위해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인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적 선도제도는 여타 복지지원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할지라도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고, 해당 청소년이 선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면 동의절차가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 대한민국정부, 2017)에서도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제12조 제1항), 교육적 선도의 내용과 이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자세하게 고지하여 해당 청소년이 내용을 숙지한 상황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informed consent)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교육적 선도제도 도입배경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교육적 선도제도의 기원은 2003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청소년복지지원법안⁷⁾의 제6장 제38조(교육적 선도 조치)부터 제47조(보고)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법안에서 교육적 선도제도는 “20세 미만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교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청소년복지전문가

7)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705, 제안일자 2003.10.04.)

를 배치”하고(법안 제38조), “법원 소년부가 청소년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선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및 부모를 지원하도록 선도지원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 제39조). 즉, 교육적 선도제도는 「소년법」 상 보호처분과 별도로 20세 미만 비행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개입수단의 일환으로, 법원 소년부의 선도지원명령을 통해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존의 소년보호절차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춘 제도로 기능하도록 당초 설계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표 II-1).

표 II-1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의안번호 162705) 교육적 선도내용

조문 및 주요 내용

제38조(교육적 선도 조치) 국가는 20세 미만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교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청소년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함.

제39조(선도지원명령) ① 법원소년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서 그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선도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청소년 및 부모를 지원하도록 선도지원을 명할 수 있음.

1.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미만 청소년
 2. 「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3조의2·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
 4. 「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3조의2·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
 6.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회가 선도지원을 법원소년부에 신청하는 청소년
- ② 제1항 각호(제6호 제외)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소년부에 통보하여야 함.
- ③ 제1항 각호(제6호 제외)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발견한 사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청소년단체시설의 장, 관계공무원 등은 이를 청소년복지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함.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지원회가 관할 법원소년부에 선도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보호자 등에 위탁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선도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소년부는 청소년복지위원회에 대하여 선도지원을 명할 수 있음.

제40조(선도지원명령의 결정) ① 선도지원명령의 결정 시 신청권자와 당해 청소년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② 결정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하며, 선도지원 신청자, 보호자 및 청소년복지위원회에 송당되어

조문 및 주요 내용

야 하고, 당해 청소년이 14세에 달한 때에는 청소년에게도 결정내용이 송달되어야 함.

- ③ 선도지원명령을 받은 청소년복지위원회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견인을 선도지원자로 지정하여 명령을 집행함.

제41조(선도지원의 종류) 법원소년부는 선도지원을 명할 경우 전문가를 통한 상담·조사·교육·치료 및 생활보호 등 지원의 종류를 정할 수 있음.

제42조(청소년의 의무) ① 선도지원 대상이 된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위원회의 선도지원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②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의무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선도지원명령의 변경이 포함되어야 함.

제43조(선도지원명령의 감독) ① 선도지원명령의 집행에 관해 그 명령을 내린 법원소년부에서 감독함.

- ② 선도지원명령의 시행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 관련 규정을 준용

제44조(선도지원명령의 변경) 법원소년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도지원명령을 취소하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음.

1. 선도지원명령중에 있는 청소년이 비행으로 인해 법원소년부에 통고되는 경우
2. 선도지원명령을 집행하는 청소년복지위원회의 결정으로 선도지원명령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45조(선도지원명령의 종료 등) ① 선도지원명령은 청소년이 성년이 달한 때 종료함. 단, 성년이 전이라도 선도의 경과에 따라 제3항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도폐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② 선도지원중인 청소년의 신청이 있을 경우 청소년이 24세가 될 때까지 선도지원기간을 연장함.
③ 선도지원명령은 법원소년부의 직권 또는 청소년복지위원회, 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폐지
④ 선도지원 폐지가 제기된 경우 청소년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폐지여부를 결정함.

제46조(시설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원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강구해야 함.

- ② 제1항의 규정에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47조(보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지원이 명해진 경우 청소년복지위원회는 청소년의 선도상황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관할 법원소년부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구상은 입법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먼저, 청소년복지전문가 배치와 관련하여 동 법안의 검토보고서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청소년복지전문가를 확일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소년사건 처리기관 각각의 성격에 맞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다(문화관광위원회, 2003, p.88). 또한 동 법안은 ① 12세 미만의 촉법소년, ②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청소년 및 그 대상이 된 청소년(연19세 미만),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청소년 성 매매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 및 그 대상이 된 청소년(연19세 미만)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행청소년을 선도지원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 즉, 동 법안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청소년을 국가의 개입대상으로 포섭함과 동시에 법원 소년부의 명령을 통해 선도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형사제재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안 검토보고서는 “선도지원청소년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 방치되어 왔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입법취지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선도지원명령제도가 국가적 통제와 간섭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과 전혀 다른 형태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명령을 결정하는 법원과 이를 집행하는 청소년복지지원회의 업무 분담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선도지원명령 업무를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되었다(문화관광위원회, 2003, pp.89-90).

위와 같이 단계별 논의 과정을 거쳐 결국 교육적 선도제도 자체는 존치되었으나 당초 입법안에 비하여 실질적인 내용과 성격은 상당부분 변용되었다. 특히 법원소년부의 선도지원명령을 통한 강제적 개입 등의 내용이 삭제되는 등 소년형사 내지 보호절차와의 직접적 관련성 자체가 상당부분 희석되었다. 다만 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 제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전문가의 상담 등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도대상으로 규정하여,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사건 대상이 되는 소년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는 소년사법절차와의 연계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었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선도대상자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개정(법률 제11290호)을 거쳐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되었다(제19조 제1항). 이에 교육적 선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5년 전 법률 제정 당시의 상황과 비교할 때 제도의 존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년사법절차의 사각지대, 연계를 기반으로 선도대상의 범위와 선도내용, 방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3) 교육적 선도제도와 다이버전 연계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적 선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는 다이버전(diversion)제도이다. 미국 법무부 산하 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은 다이버전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동시에, 비행 청소년을 정식 형사사법 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개입전략”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다이버전 운영 목적은 “다이버전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며, 형사사법체계의 업무량을 줄이고, 더 중요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하였다.⁹⁾ 결국 다이버전은 미성년 청소년이 공식적 형사사법 절차에서 벗어나 비공식적 절차에 참여하게 하면서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의 지원과 개입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을 교정하는데 목표를 둔 제도이다(Bishop & Decker, 2006; McAra & McVie, 2007; Loeb, Marie & Megan, 2015).

8) 다이버전에 대한 내용은 박선영 교수(한세대학교)의 원고를 포함하였고 3장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9) 미국 법무부 산하 사법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rimesolutions.gov/PracriceDetails.aspx?ID=37> (인출일: 2018.5.14)

다이버전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각 주마다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1) 비행행동 유형(type)의 속성, (2) 대상자 나이, (3) 대상자의 특성과 행동, (4) 대상자가 가족, 학교 등에서 보인 행동, (5) 다이버전에 참여했던 경험과 그 당시 보였던 태도 등이다(Warner, 2014). 특히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의 자료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 대상과 목표, 각 주별 소년사법 기관에서 표방하는 다이버전의 구성내용이 교육적 선도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현재 미국의 미성년자 대상 다이버전은 (1) 경찰단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이버전, (2)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법원단계의 다이버전, (3)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원단계에서의 다이버전 등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¹¹⁾

다이버전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족 상담과 치료(Multi Systemic Therapy)를 포함한 가족지원(family intervention) 프로그램, 개인·집단의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 개인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정신건강치료 프로그램, 1:1 관계 기반의 멘토링, 사회기술훈련(life skill training), 학업·교육 진로지원, 일자리 알선 등 취업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과 튜터링(tutoring), 방과후 돌봄과 부모지원 등이 제공된다(Models for Change, 2011). 미시건 주의 Marquette 지방법원의 경우 대상 청소년이 봉사활동(community service work), 글쓰기(written assignment/essay), 사과편지 쓰기(letter of apology), 다이버전 전문가 면담(meeting with the diversion specialist), 배상(restitution), 약물오남용예방교육(drug and alcohol education class), 약물검사(drug and alcohol assessment), 무작위적 음주마약검사(random drug and alcohol screening), 피해자 공감프로그램(victim impact/empathy program),

10) https://www.ojjdp.gov/mpg/litreviews/Diversion_Programs.pdf (인출일: 2018.5.14)

11) 미국의 다이버전 제도는 3장 국외 사례에서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분노조절훈련(anger management), 사회기술 훈련(life skills training), 통행금지 (curfews), 또래관계 제한(restriction of association), 교육적 조치(educational requirements) 등 다양한 활동(체험)프로그램 가운데 반드시 하나 이상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¹²⁾ 이와 같이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이버전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이유는 구금을 포함한 조치에 비하여 비용편익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다이버전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결과, 다이버전이 청소년의 재범률 감소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11; Patrick & Marsh, 2005; Lipsey, 2009).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단계의 훈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전환처분(이하 다이버전)은 해당 청소년을 소년사법절차로부터 조기에 분리시켜 비행성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이버전에 부가되는 개입조치의 일환으로 피처분자인 청소년의 동의하에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입이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다이버전 운영 필요성을 강조한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4항,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소표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제6조 및 제11조,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제5조 및 제6조 등 국제준칙의 내용과도 합치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¹³⁾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교육적 선도의 신청권자는 청소년 본인,

12) 미국 미시건주의 Marquette 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www.co.marquette.mi.us/departments/courts/juvenile_court/docs/Brochures2016/Diversion%20Brochure.pdf (인출일: 2018.5.14)

13)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적 선도와 다이버전의 연계 및 기관 간 협력 여하에 따라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입 프로그램의 난립과 고질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교육적 선도대상 선정 등에 있어 다 부처 간 협력 업무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 전달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인 반면, 훈방 및 조건부 기소유예의 결정 권한은 각각 경찰서장과 검사에게 있다. 또한 다이버전과 연계되는 선도 조치 역시 이들의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제도 간의 실질적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다이버전과 결합한 형태로 교육적 선도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제도가 아니라 훈방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훈방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시 청소년 또는 보호자를 신청자로 하는 방법을 통해 다이버전과 교육적 선도를 연계할 수는 있겠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교육적 선도의 신청권자에 경찰서장, 검사, 법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교육적 선도의 방법과 관련하여, 용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적 선도는 그 방법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본인이 ‘동의’하고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985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소년사범운영에 관한 유엔표준최소규칙(베이징규칙)’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조치라 판단된다. 다만 교육적 선도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복귀(rehabilitation)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소년의 위기수준과 선도의 목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스크리닝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Bechtel, Lowenkamp & Coates, 2007; Campbell, et al., 2014). 이 과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서비스 지원(support with social services), 훈계주의(reprimand), 경고(warning), 최후경고(final warning) 등 단계별로 선도의 수준과 내용이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적 선도의 내용과 방법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2. 교육적 선도 관련 소년사법의 국제적 동향

1) 교육적 선도 관련 국제준칙과 동향

유엔총회는 아동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소 표준규칙(베이징규칙), '89년 아동권리협약, '90년 소년비행예방지침(리야드지침)을 각각 채택한 바 있다. 교육적 선도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는데, 베이징규칙에서도 소년사법체계 내에 있는 비행소년에 대한 개입 시 '당사자의 동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99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협약당사국으로서 국제준칙을 이행하는 조치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리야드지침 제56조에서도 “아동에 대한 낙인화, 피해자화, 범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인이 행하면 범죄로 간주되지도 처벌도 받지 않는 행위(지위비행)를 소년이 범했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Children's Right in Juvenile Justice, para.9). 또한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부모(보호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이러한 행동의 근본 원인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아동보호 조치'의 시행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여 협약당사국이 우범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제도를 마련·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최근 소년사법의 세계적 흐름도 처벌·사후교정보다 선도·예방과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전환처우(diversion), 적법절차(due process)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당사국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범위반 아동을 다루는 수단을 증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도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 노력을 권고하였다(제40조 제3항). 또한 소년사법과 관련된 제37조, 제39조, 제40조에서 언급한 소년사법 대상에 '당사국의 형사피의자나 형사피

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을 포함하고, '교육적 선도의 대표적인 유형인 다이버전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제40조 제3항). 이와 함께 '범죄방지를 위한 UN 가이드라인 설정(장준오, 2010.12)'에서 소년비행의 경우 회복적 사법 조치가 구금보다 더욱 효과적이며, 경우에 따라 재범률을 10%p 이상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적 조치를 포함하는 범죄예방체제와 프로그램에 주목하는 추세이다. 다만 다이버전의 대상에 범죄 혐의가 확인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조항들을 우범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중처벌금지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분명히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이는 판결이 한 번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08.23. 선고 2016도 5423 판결). 따라서 검찰법원단계에서의 '처분'을 받거나 종료한 경우 이러한 처분이 국가형벌권의 실행으로서 과벌로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면 '처분'을 받거나 종료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적 선도를 행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울러 검찰법원단계의 '처분'은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소년의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비행성이 있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위기청소년의 적응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처분'과는 법적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과 교육적 선도를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¹⁴⁾ 다만 「소년법」, 「학교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

‘선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각종 조치 즉, 부가처분이나 조건부 기소유예,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상 선도프로그램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의 내용과 대상이 중복될 소지는 있다.¹⁵⁾

한편 교육적 선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대상 중복을 피하는 방안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19세 미만 청소년,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8세 미만 청소년을 교육적 선도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주요국의 경우 주류·담배를 구입하는 등 자의로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 등 교육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자 뿐 아니라 해당 청소년을 형사처벌하거나 수강명령 등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독일은 위반행위를 유발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을 근거로 ‘교육적 보호지원’의 일환으로 선도·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중국도 ‘미성년자보호법’과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서 불량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부모·교사·사회의 교육·감화구제 의무를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적극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김정환, 2012).

14) 이와 관련하여 ‘보호처분’과 ‘징계’의 병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고,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의 장이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처분과 징계는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과 징계를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학생에 대한 보호처분과 징계가 이중처벌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 3871, 2009.12.28.)”.

15) 기소와 불기소 여부가 검찰의 선택에 달려 있어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고, 선도방법이 검찰과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사랑위원회나 꿈키움센터, 보호관찰소 등을 활용한 ‘접촉·원호선도’를 활용한다. 반면 교육적 선도는 자치단체장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내용 중복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을 참고할 수 있다.

2) 교육적 선도 관련 연구동향¹⁶⁾

경찰·검찰·법원 및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프로그램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선도대상, 선도내용 및 방법,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¹⁷⁾ 이와 함께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도구 개발 및 문항 선정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비행행동 측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1) 선도대상

선도프로그램의 대상은 우범소년부터 소년원생까지 매우 광범위한데, 이는 비행소년에 대하여 처분과 처우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소년법」상 비행소년에 우범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들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기 전에 국가와 사회가 조기에 개입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범사유의 범위가 모호하여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등 선도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다(김두상, 2017).¹⁸⁾ 특히 신근화(2017)는 우범행위 청소년은 사회단절형, 빈곤형, 서비스부재형 등 우범사유가 다양하고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을 포함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과 지역사회와 협력 하에 다이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이 대표적이다(김기현, 정현주, 윤주리,

16) 이 부분에는 정소연 교수(서울여자대학교)의 집필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17) 이를 위해 2015년 이후 발표된 관련 국내 학술논문 43편과 국외 자료는 다이버전 및 선도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국외 자료는 제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예정이다.

18) 이에 우범소년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규정은 유지하되 촉법·범죄소년과 분리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우범사유를 구체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징계 대상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이수와 관련하여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두상, 2017).

2015; 김문귀, 2015; 양수택, 차은주, 김정현, 김영재, 2016). 이외 비행예방센터(이유나, 2017; 송영지, 김수영, 김진현, 2016)와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선도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오승주, 최세민, 2015; 장미연, 김원중, 2016).

보호관찰을 포함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도 선도대상에 포함되는데, 제1호 처분의 일환으로 소년위탁보호위원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안윤숙, 2015), 제6호 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도 사회복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안윤숙, 박길태, 2016; 남민영, 이예경, 2016). 특히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김봉수, 2016)

한편 청소년기를 교도소에서 보내고 청년기에 출소하는 소년수형자의 교정처우와 전환관리(transition from prison to community)에도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의 활용·확대가 강조되고 있다(현문정, 한영선, 2015; 김영식, 2017). 이와 같은 접근은 청소년의 관계 회복과 스스로에 대한 낙인을 최소화하여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 재범예방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선도프로그램의 대상은 비행·범죄의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비행·범죄에 연루된 모든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2) 선도내용 및 방법

선도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보호요인을 강화하여 재범에 대한 위험요인을 상쇄시키는 접근을 취한다. 특히 청소년 당사자의 행동 및 인지변화 뿐 아니라 부모관계, 또래관계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체계에 개입하는 접근도 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김남규, 조윤오, 2017; 안윤숙, 박길태, 2016). 먼저 선도내용에 있어 청소년 당사자의 변화를 도모하는 접근은 문제행동에 따른 단순한 처벌 내용을 안내하기보다 인지행동 전략과 대처기술 향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조윤오, 2015).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 입소자를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CBT), 웃음치료(LT) 등을 통한 인지변화와 공감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류창현, 2015; 오승주, 최세민, 2015; Lipsey, 2009; Seroczynski, et al., 2016). 이외 음악심리치료(김기현 외, 2015; 한윤정, 김경숙, 2016)와 미술치료(이명은, 2016), 도예(나은정, 류정미, 2016)와 같은 프로그램도 소년원생의 분노조절, 공격성·충동성 감소, 진로성숙도 향상, 자존감 향상, 주의집중·규칙위반·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대상 청소년의 가족이 참여하거나 피해자 및 지역사회 피해를 복구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선도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손진희, 최윤진, 2015).

한편 선도방법을 보면 멘토링과 같은 일 대 일 관계기반의 프로그램과 소집단활동이 가장 일반적이다. 전자의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이 범사랑위원회 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경찰의 '사랑의 교실'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전문가와 1:1 상담을 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선도위원의 개인적 역량이 선도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집단활동의 경우 상담과 체험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선도프로그램은 비행 촉발원인을 상쇄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자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와 자료를 참고할 때 (준)사법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은 크게 7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단위프로그램의 예시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II-1]이다.



* 주: 저자 작성

그림 II-1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범주(안)

(3) 선도효과 제고방안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의 메타분석 연구들은 다이버전이 공식적 처벌 및 처분과 비교할 때 청소년의 재범률 감소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와 사회기술훈련 및 교육을 기반으로 한 접근은 관계회복과 재범억제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Lipsey, 2009; Petrosino, Turpin-Petrosino & Guckenbunrg, 2010; Wilson & Hoge, 2013; Seroczynski, Evans, Jobst, Horvath & Carozza, 2016). 그러나 선도프로그램의 장기적·중단적인 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는 제한적이며 개별프로그램의 사전·사후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이들 연구는 선도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 충동성·공격성 감소, 공감능력 향상 등 인지·태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비행행동 개선 즉, 재범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먼저 경찰의 표준선

도프로그램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의 자존감·협동심이 향상되거나(조영미, 정지현, 2015), 사랑의 교실에 참여한 청소년의 우울·불안·공격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류권옥, 박재원, 2016). 다만 경찰단계에서 전문가참여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최병각, 2016), 경찰단계의 다이버전이 지역사회와의 협력보다 자체운영과 학교폭력 사안에 집중되어 있고 실무자 개인의 역량이 운영성과를 좌우하는 구조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이재영, 2016).

비행 초기단계의 청소년 뿐 아니라 소년교도소 원생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류창현(2015)은 소년교도소 원생들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는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1년 후 재범률이 일반 소년범과 비교할 때 15.4%p 감소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음악 등 예술을 매개로 한 선도프로그램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데 목표를 둔다(김기현 외, 2015).

정유희와 손외철(2016)은 선도프로그램 운영 시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데 누범정도 즉, 동종범죄 횟수가 많을 경우 프로그램 접촉빈도를 높이고 이행태도를 상시 점검할 때 개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천원기(2017)는 개인별 개입이 아닌 단기집중 집단교육프로그램도 충동성·자기통제 등 인지·행동 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집단프로그램의 경우 부모가 참여하거나 보호자교육이 병행될 때 청소년의 재범의지 감소 등 선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안윤숙, 김명희, 이정미, 2016; 안윤숙, 박길태, 2016; 천원기, 2017).

선도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의 성별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인지 결손 여부,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장환경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자청소년은 가족애착과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자청소년은 위의 두 변인 이외에 또래애착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이수정, 강승민, 2017; 정혜원, 2017). 이러한 결과는 선도프로

그램이 비행의 촉발원인을 상쇄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경우 비행행동의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인지·행동변화를 도모하여 재범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과 부모, 또는 가해청소년과 피해자의 관계회복을 통해 청소년의 구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접근이 재범 예방과 사회복귀 의지에 영향을 미쳐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적 선도 관련 최근 연구의 일부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표 II-2이다.

표 II-2 교육적 선도 관련 최근 연구

연구자 (년도)	대상청소년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김금정· 최윤경 (2018)	수강명령대상 남녀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	개인· 집단 프로 그램 (44명)	비행청소년, 분노조절 인지 행동프로그램, 치료형태, 심리도식, 자아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형태(개인,집단), 개인특성에 따른 분노조절 훈련 효과 차이 확인 • 특권익식/과대성이 높은 경우 집단치료보다 개인치료가 효과적 •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치료에 적합한 대상 청소년 선별·적용 필요
이정민· 조윤오 (2017)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설문 조사 (318명)	보호관찰, 재범위험평가, 정적요인, 동적요인, JDRAI-S, SAV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낮을수록, 보호관찰 경험이 있고, 문신 있을 경우 재범 가능성 높음 • 저연령 초기비행청소년에 대한 집중 보호관찰 효과적 • 선도프로그램 운영 시 과거 보호관찰경력, 문신 여부를 고려한 개별화된 지도 및 처우방안 마련 필요 • 동적 위험요인 포함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필요
천원기 (2017)	비행초기단계 절도경험 청소년	집단 프로 그램 (30명)	절도, 범죄, 비행청소년, 역기능적 충동 성, 자기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집중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기능적 충동성, 자기통제 변화에 미치는 효과 검증 • 범죄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할 경우 단기 선도프로그램도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 • 아동기 초기 적극적 선도, 절도나 폭력 등 범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 적용, 비행 초기중가심화단계 등 상습화 단계별 전문프로그램 구성, 보호자교육 병행 필요
정혜원 (2017)	6호 처분 위탁 시설 보호 남녀청소년	설문 조사 (258명)	시설보호 비행청소년, 6호처분시설, 재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6호 처분 프로그램의 경우 표준화, 전문화 프로그램과 개별청소년의 위험과 욕구에 근거한 처우 미흡 • 성별에 따른 재범태도의 영향요인 검증

연구자 (년도)	대상청소년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성인지적 관점, 도래애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자청소년의 재범태도에 가족애착, 프로그램 만족도 이외 또래애착이 주요 변인으로 확인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남자청소년은 교우관계 형성, 여자청소년은 원가족회복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이수정· 강승민 (2017)	보호관찰 대상 소년원생 남녀청소년 (만13-만21세)	면담 및 검사 (125명)	주의력, 집행 기능, 비행력 진전, TMT, WC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학교 등 일반적 비행 원인 이외 비행력 진전에 대한 인지기능의 영향력 검증 성별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남자청소년은 인지결손에 따른 인지치료, 여자청소년은 성장환경의 영향력 고려한 지원 필요
김남규· 조윤오 (2017)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종료 청소년 (서울보호 관찰소)	자료 조사 (442명)	보호관찰, 재범 보호관찰카드 J-DRAIS 및 처우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기능적 가정환경보다 연령, 불량교우접촉 변수가 재범 발생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연령, 불량교우와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가능성이 높음
신근화 (2017)	우범행위 중·고교생	설문 조사 (15명)	사회적 배제, 비행청소년, 인식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범소년의 4가지 유형 도출(사회단절형, 포괄형, 빈곤형, 서비스부재형) 우범소년은 서로 다른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있고 개별적인 사회통합 방안 모색이 필요 특히 지역사회환경에서의 배제는 공통적 특성이며 최우선 정책 대안 마련 필요
김봉수 (2016)	촉법소년	설문 조사 (142명)	촉법소년, 강력범죄, 보호처분, 회복적 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촉법소년 대상 처우 검토 및 문제점 도출 촉법소년 명칭(책임무능력소년/무책소년) 변경 검토 경찰, 검찰, 소년분류심사원별 촉법소년사건 처리 시 비사법화 확대, 회복적 사법 강화 필요 촉법소년 전문 선도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필요
이재영 (2016)	선도프로그램 운영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설문 조사	경찰, 다이버전, 소년법, 경찰 선도 프로그램, 과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 선도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성과 분석 경찰 자체선도프로그램, 학교폭력(폭력)에 집중된 경향, 재범예방 교육이 높은 비율로 제공 시설 및 공간, 실무자 전문성, 체계성 고려 필요 비행 경중에 따른 선도프로그램 목표 세분화, 유형화 관리 필요 재범위험성, 연령, 욕구, 정신과적 문제 여부 등 다각적 진단 후 개별화된 선도프로그램 제공 필요 재범률 이외 프로그램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필요
정유하· 손외철 (2016)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청소년	형사사 법정보 시스템 (KCS) (3,935명)	재범위험요인, 재범예측, 소년 보호관찰대상 자, 소년법, 재 범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자청소년, 동종범죄횟수가 많고, 첫 입건 연령이 낮을수록 재범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으므로 접촉빈도, 이행태도 점검 필요 보호관찰관 등의 직접면담 횟수가 많을수록 재범 가능성이 낮음.

연구자 (년도)	대상청소년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최병각 (2016)	소년범	문헌 연구	소년사법, 다이 버전, 경찰, 훈방,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참여제, 사랑의 교실,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경찰학교 등 선도프로그램 효과 확인 • 경찰단계 훈방을 위한 소년범 내 명문 규정 필요 • 가해자-피해자 가족협의, 개입형 다이버전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와 긴밀한 연계 필요
송영자· 김수영· 김진현 (2016)	비행예방센터 입소 위기청소년	설문 조사 (572명)	비행예방센터, 프로그램 효과, 대안교육, 위기 청소년, 비행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 분석 • 프로그램 실시 후 공격성, 우울/불안 감소, 자존감, 회복탄력성, 자기통제력 등 보호요인 증가 •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보호요인 강화에 기여
조영미· 정지현 (2015)	표준선도 프로그램 참여 다문화가정 자녀	심층 면접 (5명)	표준선도 프로그램, 비행 이론, 비행결정 요인, 자아존중 감, 정신심리적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선도프로그램 이수 후 비행 태도 변화 양상 분석 • 다문화청소년 대상 다문화 이해 중심 활동 • 표준선도프로그램은 자존감 향상, 재범률 감소에 기여 • 표준선도프로그램 이수 후 재범률 감소
류창현 (2015)	소년교도소 입소 청소년	개별 프로 그램 (82명)	인지행동치료 (CBT), 웃음치 료(LT), 생존분 석, 재범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프로그램 간 재범률 감소 관련 장기 효과 검증 • 인지행동치료집단, 웃음치료집단 간 단순생존율은 차이가 없고 치료집단 참여 청소년의 재범률은 24.6% 수준으로 일반 소년범 재범률(40%)보다 감소
Lipsey (2009)	548개 선도프 로그램	메타 분석	선도프로그램 메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육, 감시 등 처벌중심 프로그램은 재범효과가 없고 재범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 • 다이버전 단계에서 인지행동치료(CBT), 교육(academic training), 기술함양(skill building) 접근이 이루어질 때 재범억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보고
Petros- ino et al., (2010)	29개 다이버전 연구	메타 분석	다이버전 메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버전을 받은 청소년이 공식적 처벌을 받은 청소년에 비해 재범률 감소
Wilson & Hoge (2013)	73개 다이버전 프로그램	메타 분석	다이버전 메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버전을 받은 청소년 14,573명과 다이버전이 제공되지 않은 보호관찰, 구금 청소년 18,840명의 재범 여부 분석 결과 다이버전 참여 실험군 소년범위 재범률은 31.5%, 비교군은 41.3%로 유의한 차이 검증

연구자 (년도)	대상청소년	연구 방법 (조사 규모)	주제어	주요내용 및 제언
Serocz- ynski et al., (2016)	초법청소년	실험	다이버전 reading for life(RF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 멘토와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 글쓰기 중심의 16주 독서치료(RFL)는 도덕성, 관계회복 효과 실험군의 재범률은 39%, 비교군은 66%로 유의한 차이 확인

(4) 청소년의 비행행동 측정 관련 연구

본 연구의 일환으로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에 포함할 문항 개발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비행행동 측정과 관련한 최근 연구를 검토하였다. 선도프로그램은 비행행동의 촉발원인을 상쇄시키거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때 재범 가능성을 억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도대상 청소년의 비행행동이 어떤 특성과 경향을 보이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의 자료 가운데 2017년 이후의 ‘청소년 비행’을 주제어(key word)로 사용한 학술논문을 파악한 결과 직접 측정 논문이 4편¹⁹⁾, 2차 자료 분석을 활용한 논문이 21편임을 확인하였다. 후자의 경우 원자료는 모두 3개이며²⁰⁾ 피인용된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와 설문조사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모두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김준호와 이동원(1995)이 개발한 척도를 포함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척도가 비록 20여 년 전에 개발되어 현재의 청소년 비행하위문화와 거리가

19) 이 4편의 연구는 박성훈·전영실(2017), 유서구(2017), 조춘범(2017), 김태량과 김경화(2017)의 논문이다. 이 중 김태량과 김경화의 연구의 경우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해당 연구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김태량과 김경화의 연구(2017)는 자동적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201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한국복지패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있는 문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예, 교사와의 갈등, 디스코장 출입, 본드 및 가스 흡입 등) 이 외 대부분의 문항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연구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어 비행행위의 범주 및 측정방법 측면에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행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영역에 특화된 척도가 사용된 3개의 연구논문²¹⁾을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행동 측정도구 및 문항 선정을 위해 검토한 선행연구를 요약한 것이 표 II-3 이다.

표 II-3 청소년 비행행동 측정도구 및 문항 선정을 위한 검토대상 선행연구

연구자 및 연구 발표 연도	비고
유서구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 폭행 등 오프라인 비행행동 측정을 위한 21개 문항(김준호와 이동원(1995)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및 보완) • 아이디 도용 등 사이버 비행행동 측정을 위한 4개 문항(이성식(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 및 보완) • 5점 리커트 척도 사용
박성훈·전영실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가 직접 청소년비행행위 측정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 • 지위비행 7개 문항 • 심각한 비행 10개 문항 • 경험여부를 측정
조준범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비행행동 측정을 위해 김선혜의 연구(2012)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 사이버 비행행동 측정을 위해 심진숙(2008)이 사용한 척도²²⁾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 5점 리커트 척도 사용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피우기, 패싸움 등 총 14개 문항 • 경험여부를 측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 절도 등 총 10개 문항 • 4점 리커트 척도 사용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결석, 절도 등 총 11개 문항 • 3점 리커트 척도 사용

21) 라민오(2001), 심진숙(2008), 이성식(2008)을 참고하였다.

연구자 및 연구 발표 연도	비고
김준호와 이동원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위비행 11문항 • 약물비행 4문항 • 성비행 4문항 • 재산비행 10문항 • 폭력비행 12문항 • 기타 6문항
라민오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대화방 이용 등 온라인 비행행위 측정을 위한 총 32개 문항 • 경험여부를 측정
심진숙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킹 등 온라인 비행행위 측정을 위한 총 33개 문항 • 라민오 (2001)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
이성식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도박 등 온라인 비행행위 측정을 위한 총 19개 문항(기타 포함)

3. 교육적 선도대상의 규모

교육적 선도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도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에서 규정한 대상은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이중처벌의 논란이 있고 후자는 선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적응 사유의 범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정책대상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산할 목적으로 그간의 논의를 참고하여 비행·일탈 청소년에 검찰단계의 훈방·즉결심판 대상과 선도·지원결정 대상, 검찰단계의 기소 유예청소년, 소년보호사건 중 우범소년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검찰로부터 중구 처분을 받은 소년범 가운데 잠재적 교육적 선도대상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별법 위반 소년범과 재범예방 및 가정·학교·사회적응을 위해 회복적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년원 출원생,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등을 포함하였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무단결석, 흡연 등 학칙위반을 이유로 해당 학생을 외부 선도

22) 심진숙(2008)은 라민오(2001)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지만 공식통계가 미흡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규모추정 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부적응청소년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동반한 위법행위를 한 청소년으로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2차 자료 분석을 활용하여 규모를 추정하였다. 다만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환각성물질 이용과 같은 위법행위와 업소(유흥/단란주점 등) 이용과 같은 지위비행 문항 등 제한된 항목만 포함되었다.

1) 비행·일탈·범죄소년

2017년 기준으로 경찰단계에서 가피해자 조사를 거쳐 내사종결²³⁾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도심사위원회²⁴⁾를 통해 처분결정 된 인원은 3,726명, 지원결정 된 인원은 2,613명이다(표 II-4). 이 가운데 처분결정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선도조건부 훈방(1,712명)이나 즉결심판(1,904명)의 대상은 원칙상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고, 검찰·법원 소년부 송치 대상자 가운데 선도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도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²⁵⁾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처분 대신

23)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하면 입건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건을 자체 종결한다. 또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입건·송치하지 않고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서장이 선도를 조건으로 한 훈계(훈방), 즉결심판청구, 검찰송치 등의 처분결정을 한다. 이때 비행 내용, 동기, 원인, 방법 및 비행 후 정황, 상습성, 재비행 위험성, 소년의 인성, 보호자 및 주거 환경,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처분 결정의 기준이 된다(소년업무규칙 제27조 제2항).

24) 소년사건처리과정에서 처분결정의 적절성과 사건선별과정에서의 경찰서장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며, 경찰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여성청소년·생활안전·형사과장·청문감사관 중 경찰서장이 지정한 2인 내외의 경찰 내부위원과 의사변호사·교사·NGO 등 청소년 선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3인 내외로 구성된다.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미사건이 심사대상이며 선도심사위원회의 의견이 경찰서장의 최종 결정권을 가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결정 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25) 선도프로그램 참여는 해당 소년과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만 훈방 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 선도프로그램 이수 내용이 사건 송치 시 수사서류에 편철되어 보관·송치되고 검찰·법원

선도·지원결정 대상 청소년은 2,613명이다. 따라서 경찰단계의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은 연간 6,229명 정도로 파악된다.

표 II-4 선도심사위원회(경찰) 운영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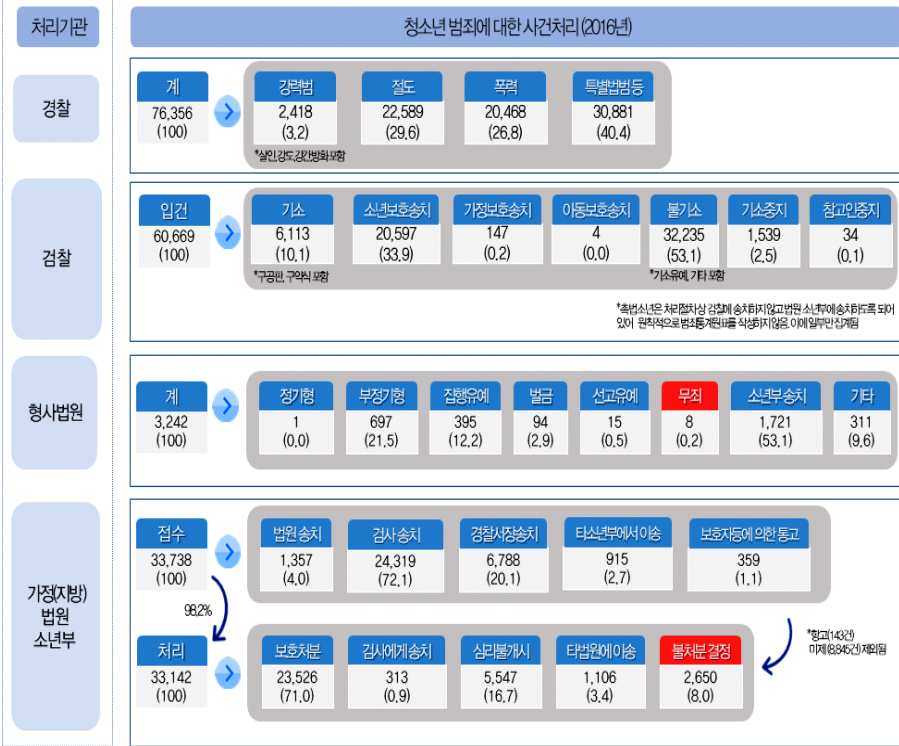
연도	개최(회)	처분결정(명)				지원결정							
		계	입건	훈방	즉심	지원인원(명)			지원건수(건)				
						계	가해	피해	계	생활	상담	의료	법률
15	1,602	2,970	273	1,524	1,173	2,736	1,434	942	2,649	572	1,879	126	72
16	1,560	2,835	205	1,395	1,235	2,310	1,297	1,013	2,581	881	1,562	47	91
17	1,577	3,726	110	1,712	1,904	2,613	1,657	956	2,779	908	1,712	33	126
대비 (%)	1.7	31.4	-46.3	22.7	54.2	13.1	27.8	-5.6	7.7	3.1	9.6	-29.8	38.5

* 출처: 경찰청(2018). 내부자료.

청소년범죄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범죄소년은 약 7.6만명이며 이 가운데 절도·폭력이 전체의 56.4%로 과반을 넘는다. 이들 소년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이 53%(32,235명)에 달하며 이들 청소년이 핵심 선도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법원단계의 통고 대상 청소년(359명)과 보호처분이 종료된 청소년(23,526명)도 잠재적 선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때 검찰·법원단계에서 선도대상 청소년이 연간 56,12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소년법 사건처리 현황 및 보호처분 유형별 현황을 요약한 것이 각각 [그림 II-2], [그림 II-3]이다.

소년부 처분결정 시 자료로 활용된다.

(단위: 명, %)



*출처: 경찰청(2017). 경찰백서. p.140.; 대검찰청(2017). 2017 범죄분석. pp.712-713.; 법원행정처(2017). 2017 사법연감. p.719, p.1033-1037.

그림 II-2 청소년 범죄 사건처리 현황



그림 II-3 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다음으로 우범소년의 규모는 우범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변적이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우범소년의 현황을 보면 2012년 이후 연간 1백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 2백 명을 넘었고 2016년에는 36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II-5).

표 II-5 소년보호사건 우범소년 관련 현황(2012-2016)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28	107	131	266	367

* 출처: 법원행정처(2017), 2017 사법연감. p.721.

* 주: 소년보호사건을 대상으로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 가운데 우범소년 수치를 활용함

한편 「청소년 보호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 위반 청소년 가운데 구약식, 기소유예 등 처벌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재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한 선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²⁶⁾ 다만 교육적 선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모든 특별법 위반자를

26) 성인의 경우「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를 한 경우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18세 미만의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등 7개 법률로 범위를 제한하여 규모를 파악하였다.²⁷⁾ 그 결과 아래 표 II-6에서 보는 바와 선도대상의 규모는 2012년과 비교할 때 2016년에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경범죄처벌법」, 「저작권법」 위반자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가운데 구약식,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은 연 평균 4천 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6 소년범죄자 처분결과(2012-2016)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7,922	4,881	5,349	4,012	4,324
개인정보보호법	계	-	-	7	3	2
경범죄처벌법	계	-	-	54	47	4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계	1,421	1,182	1,097	882	861
	구약식	280	262	244	198	189
	기소유예	1,141	920	853	684	672
도로교통법	계	810	459	2,654	2,344	2,776
	구약식	94	94	383	414	451
	기소유예	706	365	2,271	1,930	2,325
도로교통법 (무면허음주)	계	3,348	2,470	-	-	-
	구약식	211	213	-	-	-
	기소유예	3,137	2,257	-	-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계	350	377	-	-	-
	구약식	177	218	-	-	-
	기소유예	173	159	-	-	-

자는 범칙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아 즉결심판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경찰관이 범칙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즉결심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범칙행위와 같이 경미한 위반을 저지른 비행청소년을 선도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7)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특별법체계 가운데 죄질 자체가 중하지 않거나, 행위가 경미하여 구약식, 기소유예된 경우 가운데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적 선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선별하였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저작권법	계	587	385	196	146	105
	계	704	-	679	274	221
주민등록법	구약식	15	-	17	17	13
	기소유예	689	-	662	257	208
청소년 보호법	계	702	8	662	316	310
	구약식	17	-	27	10	14
	기소유예	685	8	639	306	296

* 출처: 대검찰청, 각년도, 범죄분석

- * 주: 1) 경합범의 경우 중복 될 수 있으며, 상기 인원(명)은 검찰의 종국 처분 대상 소년범죄자임.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경범죄처벌법,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전체 인원을 합산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경우, 구약식 및 기소유예 인원을 합산함
 2)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임

다음으로 소년보호교육기관에서의 보호·위탁이 종결되거나 시설을 출원한 청소년의 경우 가정·학교·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한 회복적 보호지원이 요구된다. 2017년 현재 소년원생은 2,450명,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보호 청소년은 5,909명으로 연간 약 8천명에 달한다(표 II-7).

표 II-7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2013-2017)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수용인원 ³⁾	계	9,748	8,272	8,466	7,504	8,359
	보호소년 ¹⁾	3,037	2,363	2,288	2,096	2,450
	위탁소년 ²⁾	6,711	5,909	6,178	5,408	5,909
1일평균 수용인원 ⁴⁾	계	1,852	1,660	1,549	1,530	1,612
	보호소년 ¹⁾	1,380	1,236	1,112	1,132	1,168
	위탁소년 ²⁾	472	422	437	398	444

* 출처: e-나라지표, 법무부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 (인출일 : 2018.04.24.)

- * 주: 1) 보호소년 : 소년부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2) 위탁소년 :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한 소년
 3) 신수용인원 :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 또는 위탁된 인원과 임시퇴원 취소, 유치 등으로 새로 입원한 인원
 4) 일일평균수용인원 :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선도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과 학교폭력사범 적발 및 조치결과를 참고하였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심의건수는 23,673건으로 피해학생은 32,947명, 가해학생은 29,041명으로 파악된다(표 II-8). 경찰에서 집계한 학교폭력 적발인원은 2017년 7월 기준 7,476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33명)과 소년부 송치(667명)를 제외한 불구속(4,014명) 및 기타(2,762명)에 해당하는 약 6천 명의 청소년이 집중 선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표 II-9). 그러나 사실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계에서 파악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29,041명) 모두 선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표 II-8 연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2012-2016)

(단위 : 명)

구분	심의건수	피해학생수	가해학생수	학생 10,000명당 ¹⁾		
				심의건수	피해학생수	가해학생수
2012	24,709	41,368	42,232	36.5	61.1	62.4
2013	17,749	25,704	29,325	27.2	39.4	44.9
2014	19,521	26,073	28,949	30.8	41.2	45.7
2015	19,968	25,811	28,393	32.6	42.2	46.4
2016	23,673	32,947	29,041	40.0	55.7	49.1

* 출처: 교육부(2018), 내부자료

* 주: 1) 각년도별 전체 학생 수 대비 각 항목별 비율임/ 2012년(6,769,732명), 2013년(6,527,990명), 2014년(6,332,427명), 2015년(6,118,843명), 2016년(5,913,981명)

표 II-9 학교폭력사범 적발 및 조치현황(2013-2017)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7	합계	
총계	17,385	13,268	12,495	12,805	7,476	63,429	
처분별	구속	294	167	93	62	33	649
	불구속	11,016	8,586	9,157	9,852	4,014	42,625
	소년부 송치	1,824	1,191	1,059	1,097	667	5,838
	기타	4,251	3,324	2,279	1,794	2,762	14,410

* 출처: 경찰청(2013), 내부자료; 이재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3 재인용

*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부적응청소년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가운데 도덕적 해이를 동반한 위법행위를 한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

하였다. 다만 2차 자료라는 한계로 인해 전체 문항 가운데 연령에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문항은 두 개에 불과하였고,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부적응 행동 관련 문항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업소 이용 등 한 개 문항만 포함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률에 따른 초·중·고교생 수를 기준으로 선도대상의 규모를 추산한 결과,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이 있는 재학생은 196,247명, 환각성물질이용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1,226,492명, 유흥/단란주점 업소이용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35,502명으로 각각 파악되었다(표 II-10). 즉, 초·중·고교 재학생 가운데 부적응을 사유로 한 선도대상이 약 140만 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추정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II-1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단위 : 명, %)

구분	전체규모 ¹⁾ (A)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규모 추정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환각성물질 이용		업소이용 (유흥/단란주점)		
		비율 ²⁾ (B)	규모 (=A*B)	비율 ²⁾ (B)	규모 (=A*B)	비율 ²⁾ (B)	규모 (=A*B)	
계	5,740,456	-	196,247	-	1,226,492	-	35,502	1,458,241
초	2,674,227	0.7	18,720	-	-	-	-	18,720
중	1,385,357	4.2	58,185	0.4	554,143	0.5	6,927	619,255
고	1,680,872	7.1	119,342	0.4	672,349	1.7	28,575	820,266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p.3;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 주: 1) 초, 중, 고 전체규모는 2017년 기준 교육통계 수치를 기재함. 재적 학생수(휴학생 미포함) 기준으로 산업체 특별학급,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는 포함되지 않음

2)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표본 수 대비 %임
초(4,466명), 중(5,255명), 고(5,925명), 총계(15,646명)

3) 대상자간 중복 가능성 있음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적 선도대상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산하면 비행·범죄소년은 약 11만 명으로, 부적응(일탈) 청소년은 약 140만 명에 달하여 선도대상은 약 15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규모는 8~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의 25.2%에 달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위 연령대 아동·청소년 가운데 비행 및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이 네 명 중 한 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11).

표 II-11 교육적 선도 대상 규모와 서비스 진입관문(Gate-way)

(단위 : 명)

	위기유형	규모(추정) ¹⁰⁾	Gate-way
비행· 범죄 소년	선도조건부 훈방 등 ¹⁾	6,229	경찰
	불기소 처분 ²⁾	56,120	검찰·법원
	보호·위탁소년 ³⁾	8,359	소년부 판사
	학교폭력사범 ⁴⁾	7,476	경찰청
	학교폭력가해학생 ⁵⁾	29,041	학교
	우범소년 ⁶⁾	367	소년부 판사
	특별법 위반 소년범 ⁷⁾	4,324	검찰
	계	111,916	8~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⁹⁾ 의 1.8%
부적응 (일탈) 소년 ⁸⁾	초	18,720	학교
	중	619,255	
	고	820,266	
	계	1,458,241	8~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⁹⁾ 의 23.4%
	총계	1,570,157	8~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⁹⁾ 의 25.2%

* 출처: 경찰청, 2018, 내부자료; e-나라지표, 법무부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경찰청,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이재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3. 재인용; 교육부 보도자료, 2017.7.11.; 법원행정처(2017), 2017 사법연감. p.721; 대검찰청(2017), 2017 범죄분석. pp.714-715;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인출일 : 2018.5.8.)

- * 주: 1) 2017년 기준 경찰청 선도심사위원회 결과 선도조건부 훈방, 즉결심판, 선도지원결정 청소년 수 (경찰청 내부자료)
 2) 2016년 기준 소년사건 중 불기소처분, 가정법원 통고 대상 청소년, 보호처분 종료 청소년 수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3) 2017년 기준 소년원 송치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된 소년 (e-나라지표)
 4) 2017년 7월 기준 경찰청으로부터 적발된 학교폭력사범 소년 (경찰청)
 5) 2016년 기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중 가해학생 수 (교육부)
 6) 2016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중 우범소년으로 적발된 소년 (법원행정처)
 7) 2016년 기준 특별법범계 내 다음의 법률을 위반하여 중국 처분을 받은 소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경범죄처벌법,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전체 인원을 합산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경우, 구약식 및 기소유예 인원을 합산함 (대검찰청)
 8) 2017년 교육통계 초·중·고 전체 규모 x 2016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표본 수 대비 비율(타인주민등록번호 도용, 환각성물질 이용, 업소이용(유흥/단란주점) 경험)
 9) 8~19세 미만 인구 6,221,446명 기준 (통계청, <http://kosis.kr>, 2017년 주민등록인구현황, 인출일 : 2018.5.8.)
 10) 각 항목 간 대상자 중복 가능성 있음.

4.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현안 및 쟁점

1) 교육적 선도의 대상과 선도 범위의 문제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교육적 선도의 대상에는 음주, 흡연, 가출과 같은 지위비행을 행한 청소년까지 포함된다. 다만 동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범법행위를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재와 통제를 정당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라는 부분 역시 청소년의 의지와 선택권이 충분하게 보장된 상황에서의 동의를 의미하는지 여부도 다소 모호하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선도를 조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인데, 이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 선도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선도프로그램의 내용을 선택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동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즉, 선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불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과 방식에 있어 강제성을 일부 내포한 것이며 처벌을 대신하는 선도, 처우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법률에 명시한 바와 같이 비행·일탈·부적응청소년이 교육적 선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선도의 내용에 일체의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선호하는 방식, 참여 자체가 부차적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교육적 선도와 기존의 위기청소년 대상 복지지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결국 교육적 선도의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교육적 선도의 재범률 감소 등 효과성 문제

그간 범죄학 분야에서 교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회의적 입장은 구금과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교화가 전제되지 않는 처벌이 재범률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일부 선도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검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 및 범치는 아동기부터 지속된 양육 및 생활환경 상의 결핍문제와도 분리하기 어려운데, 빈곤으로 인한 다양한 기회의 상실과 보호자의 부재 및 방임·학대와 같은 구조적·기능적 문제는 청소년의 자아통제, 사회적 유대,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성장과정에서 낙인과 차별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일상의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행청소년 및 소년범의 환경을 개선하고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는 이들의 인권과 사회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비행청소년 및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선도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해당 청소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관계회복, 자존감 및 진로성숙도 향상, 분노조절 등의 효과를 보고하였다(김기현, 정현주, 윤주리, 2015; 송혜정, 2013). 이와 함께 위험요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대처역량 등 생활역량을 개발하고 충동성을 억제할 경우 위험행동이 잦아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학열, 2011). 특히 재범률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는 보호관찰 및 원호조치를 포함한 전환처우 대상 소년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범에 이르는 기간이 길고 재범률이 낮으며, 재범을 하더라도 범죄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輕)하다고 보고하였다(Umbreit, Bradshaw & Coates, 1999; 황원우, 2013, p.9 재인용; 남상철, 박상석, 2011; 정의롭, 2017). 또한 이와 같은 선도프로그램이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와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포괄성이 중요한 요인으

로 지적된다(Miller, 2014).

다만 최근 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소년사법체계의 각 단계에서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다수 노출된 청소년의 강력 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고,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재범 억제 효과를 종단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구성요건

현재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구조와 인력 및 구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데,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 이면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 구성 자체의 결함 문제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도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한 이수정 외(2007, pp.64-66)는 선도프로그램은 결국 재범률 감소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 다음의 일곱 가지 요소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비행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즉,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등 주변 여건에 대한 평가와 평가 결과를 활용한 부모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위험성과 비행의 특성 및 진전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비행행동의 종류와 내용, 초점 및 누범 여부, 계획성 여부 등에 대한 위험성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 해당 청소년의 심리정서·행동 상 문제 전반에 대한 측정을 기반으로 임상적·의료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구조와 관련하여, 집단(group)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10명 안팎, 10회기 안팎으로 구성하고 1회성, 이벤트성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운영인력과 관련하여 심리치료전문가 또는 정신의학전문가 등 임상적·의료적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에 따른 사전·사후평가가 필요하며, 변화 정도를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재범률을 추적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적 선도가 단순한 선처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프로그램의 구조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위기수준과 재범 가능성 등이 다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존의 다종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이 비행 및 재범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4)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간의 연계 : 개인정보공유 문제 등

최근 소년범죄가 질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소년사법단계에서 교정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며, 보호처분 단계에서도 다양한 처우를 보장하여 비행의 요소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이승현, 2017, pp.9-33). 즉, 재범을 예방하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범죄소년에 대한 처벌과 처우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간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 특히 초기비행단계에서 즉각적인 예방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소년원 출원생 등에 대한 회복적 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적 선도제도는 법률적 근거와 관계없이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행 및 운영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교육 및 선도라는 접근방법 자체가 청소년의 행동변화와 교정을 위한 지도방법의 일환이며, 비행 및 범죄소년과 같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한된 정책대상(수혜자)을 두고 운영주체(공급자) 간의 경쟁과 갈등 상황이 벌어지거나, 대상 및 사업내용의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전문화 및 특화가 되지 않아 전반적인 효율과 효과가 부진한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특히 이와 같은 다부처 사업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컨트롤타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지자체 및 현장(field) 단위에서 다양한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제 III 장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여건 및 현황분석

- 1. 교육적 선도의 근거 법률
및 제도 분석
- 2. 국내 유사제도 및 사업
사례분석
- 3. 해외 유사제도 및 사업
사례분석
- 4. 소결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여건 및 현황분석²⁸⁾

1. 교육적 선도의 근거 법률 및 제도 분석

1)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 법률

(1) 교육적 선도제도 근거 법률

교육적 선도제도의 운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법 제19조부터 제21조에 걸쳐 3개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19조에서는 교육적 선도의 운영을 위한 시행주체와 신청자, 대상자 및 선도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도방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는 여성가족부령(「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각각 위임하고 있다.

제2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지도자 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도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21조에서는 선도후견인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주체와 선도후견인

28) 이 장의 1절, 2절, 4절은 이우진 선임연구위원이, 3절은 김혁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일본 사례), 박선영 교수(한세대학교, 미국·영국 사례), 박상원(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 독일 사례)이 집필하였다.

이 될 수 있는 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선도후견인의 임무와 지정기준 등은 여성가족부령(「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표 III-1이다.

표 III-1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법적 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적 선도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 ①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주체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자 : 청소년, 보호자, 학교장 (보호자, 학교장 신청 시 청소년 동의 필수) - 대상자 :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제19조 ②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방법 :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학교·사회생활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 위임 • 제19조 ③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기간 : 6개월 이내(청소년 동의 받아 6개월 범위 한번 연장 가능) • 제19조 ④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여성가족부령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선정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제11조 : 선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선도 실시 전 선도 대상 청소년과 상담 - 선도후견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들어 선도의 내용·방법 및 기간을 정함. -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함. •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 교육적 선도 대상자의 선정 및 선도 실시 등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신청 : 지자체장에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 제13조 ①항 : 선도대상자 선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은 신청을 받은 후 기본적 조사·상담 실시 - 선도 필요성 전문적 조사·상담 실시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선정 심의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선도 실시 여부 등 결정 - 특별사정시 14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제13조 ②항 : 기본적 조사·상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일탈 유무 및 내용 -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 환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 ③항 : 전문적 조사·상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도 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 : 선도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의 선도결정 서면 통보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장 통보는 청소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자체는 선도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선도 후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조 ①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단체는 청소년 개인별로 전담 지도하는 선도후견인 지정가능 제21조 ②항 : 선도후견인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시설단체기관 종사자,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 제21조 ③항 : 선도후견인의 임무지정기준 등은 여성가족부령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 ①항 : 선도후견인의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선도대상 청소년의 선도내용 변경, 선도 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 그 밖에 선도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연 제15조 ②항 : 지자체장은 선도후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가능

(2) 교육적 선도 유사제도 근거 법률

비행·일탈청소년이나 부적응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선도제도’의 법률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다. 그러나 ‘교육적 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내용과 방법, 취지와 목적이 유사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한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에서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다음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금지 등(제16조 제1항)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금지 등(제28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제29조제1항·제2항)
-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제30조) 중에서 영리목적 성적 접대행위(제1호), 영리목적 유흥 접객행위(제2호), 영리목적 음란행위(제3호), 영리목적 호객행위(제7호), 남녀 혼숙 영업행위(제8호), 차 배달 영업행위(제9호)

제2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보 대상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는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 또는 상담시간은 40시간 내외로 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

터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비용과 질병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등을 마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 등 이수 여부, 2.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 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검사는 교육과정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1.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 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 등의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0조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법원 소년부 판사는 기간만료 전에도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학생의 징계’와 관련하여 유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제18조). 특히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서는 학생 포상, 징계, 그리고 징계 이외의 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학교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와 교육적 목적에 입각한 기타 지도방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규칙에 구체적인 사항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명시하고 있다(제17조).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할 때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그리고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9조). 이 조문은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이수 조치의 근거일 뿐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 시 선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소년법」에서도 사법절차의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교육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범죄를 저지른 20세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후견적인 관점에서 성인범과 달리 형사처분 시의 특별조치와 성행의 교정을 도모하는 각종 보호조치의 근거법이다. 교육적 선도와 관련하여 동법 제19조와 제29조에서 법원의 심리불개시 및 불처분에 따른 조치로써 ‘훈방’, 제32조에서 보호처분의 한 가지로써 ‘수강명령’, 제32조의2에서 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으로써 ‘대안교육’과 ‘상담교육’, 제49조의3에서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른 조건의 하나로 ‘상담교육활동’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년보호시설의 대안교육과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제42조의2), 이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가해학생 특별교육, 「소년법」상의 판사명령에 의한 대안교육과 검사 의뢰 상담교육활동의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제15조), 이 조항은 「소년법」상의 수강명령과 조건부 기소유예의 시

행 근거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적 선도 관련 내용을 규정으로 포함하는 각종 법률과 해당 조문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표 III-2이다.

표 III-2 교육적 선도 관련 법률 및 조문 비교

구분	명칭	조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교육적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 제19조, 제20조, 제21조 • 령 :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8조 • 규칙 :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청소년 보호법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검사 의뢰 교육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 제39조 • 령 : 제9조, 제10조
	판사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선도 보호 위탁 보호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 제40조
초·중등교육법	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 제18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 제17조 • 령 : 제19조
	소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계 및 보호자 교육 고지 : 법 : 제19조, 제29조 • 상담조사 : 법 : 제12조 • 통고제도 : 법 : 제4조 • 수강명령 : 법 : 제32조 • 부가처분(대안교육, 상담교육) : 법 : 제32조의2 • 조건부 기소유예 : 법 : 제49조의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년보호시설 대안교육과정 (판사명령 대안교육, 검사의뢰 상담교육활동, 징계대상 학생교육,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 제42조의2 • 규칙 : 제73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수강명령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 제15조

2) 부처별 교육적 선도 유사제도 현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제도(여성가족부)는 법률 상 운영 근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부재하고 사업수행기관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선도보호조치는 선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반면에 앞에서 언급한 다른 유사제도에 관해서는 개별 법률을 근거로 학교와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교육적 선도를 내용으로 하는 유사사업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1) 교육부

먼저 교육부 소관 제도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는 학칙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특별교육 이수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교육을 소년보호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특별교육이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 소년보호시설에서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경우 위탁 및 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III-1).

기관	절차	업무내용
Wee센터· 단위학교 →이수기관	학생 의뢰	- Wee센터 및 단위학교에서 이수기관과 사전협의 후 공문 시행 - 징계사유와 학생 인적사항이 기록된 위탁신청서 송부
	↓	
이수기관	접수 및 학생 수탁	- 의뢰 공문 접수 후 교육과정 참여 안내 공문 발송 -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준비사항 안내
	↓	
이수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계획된 일정과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 지도
	↓	
이수기관→ Wee센터· 단위학교	Wee센터· 단위학교 경과결과 보고	- 학생의 출결상황 및 교육이수 결과 통보 ※ 수탁해지, 교육기간 연기 등 변동 상황 발생 시 즉시 학교 및 Wee센터에 통보 - 기타 학생상담 내용이 기록된 관련 서류는 별도 보관(학생·학부모 동의 시 학교·Wee센터 제공 가능)
	↓	
이수기관	추수지도	- 프로그램 종결 15일 후, 1개월 후, 2개월 후(3회 이상)에 전화, 이메일, 직접면접 등의 방법으로 추수 지도 실시

* 출처: 서울시청소년수련관(2018). 내부자료 참고.

그림 III-1 특별교육이수 위탁 및 교육 절차

(2) 법무부

다음으로 법무부 소관 제도와 관련하여, 보호관찰소는 비행을 행한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수강명령을 집행하며, 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으로써 소년보호시설(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대안교육을 제공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위탁한 선도 단체 및 시설에서 상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교육적 선도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III-2).

기관	절차	업무내용
법원·검찰·학교 →청소년비행예 방센터	대안교육 의뢰· 접수	- 법원 : 위탁결정서로 접수 - 검찰 : 교육위탁카드로 접수 - 학교 : 교육의뢰 공문으로 접수
↓		
청소년비행예방 센터	교육계획 수립	- 의뢰 공문 접수 후 교육과정 참여 안내 공문 발송 -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준비사항 안내
↓		
청소년비행예방 센터	교육실시	- 계획된 일정과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 지도
↓		
청소년비행예방 센터→법원·검찰· 학교	교육과정 수료상황 통보	- 법원 : 소년부에 수료현황 통보 - 검찰 : 사건과에 수료상황 통보 - 학교 : 의뢰학교에 대안(특별)교육 출석확인서 발급

* 출처: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Ⅲ-2 대안교육 위탁 및 교육 절차

(3) 경찰

경찰단계의 선도는 ‘선도조건부 불입건’, ‘입건유예’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조건부 훈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검찰(검사)은 직권으로 「소년법」을 근거로 (조건부)기소유예를 할 수 있으나(제49조의3)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고 훈방을 포함한 다이버전의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이다.²⁹⁾ 훈방을 위한 조건부 선도프로그램으로는 자체선도, 전문가참여제 선도, 표준선도, 사랑의 교실 등이 제공되고 있다.

먼저 자체선도 프로그램은 경찰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으로 일선 경찰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회 5시간씩 2차로 나누어 총 10시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은 학교전담경찰관과 범죄심리사가 담당한다. 다음으로 전문가참여제 선도프로그램은 일선 경찰서에 범죄심리사

29) 수사종결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의 훈방을 공식적인 다이버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경찰단계에서 훈방과 선도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판례와 학계에서도 경찰의 ‘훈방권’을 인정하고 있다.

를 배정하여 훈방 대상 청소년을 1:1로 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가참여제의 실시는 경찰서에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심의기구인 ‘선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선도분과와 생활지원분과, 의료분과, 법률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훈방 대상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연계하는 결정을 한다. 선도심사위원회와 전문가참여제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Ⅲ-3).

진행절차	수사부서	학교전담경찰관(SPO)
발굴	- SPO 부수사관 지정통보	- 담당수사관과 사건 처리 방향 논의 - 소년사건처리절차 안내 등 수사협력
↓		
선별	- 범죄소년과 피해학생 중,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자 선별	- 담당조사관의 의견수렴, 선도심사위원회 회부요건 충족여부 검토 - 전문가 참여제 실시 안내
↓		
조사	- 조사일정 통보	- 조사일정에 따라 전문가 참여제 실시 - 선도심사위원회 개최일정 협의 통보
↓		
의결	-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참여, 개요 등 설명 - 부득이한 경우 담당SPO 대리참석	- 심사의결서 작성, 사건담당자 통보 -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 향후절차 안내
↓		
종결	- 선도프로그램 수료 전까지 종결 보류 - 결과보고서 첨부, 처리절차에 따라 종결	- 선도프로그램 실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 사건담당자 통보 - 면담 등 사후관리 실시

* 출처: 서울관악경찰서(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Ⅲ-3 선도심사위원회와 전문가참여제 진행절차

다음으로 표준선도 프로그램은 훈방 대상 청소년 중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병원에 의뢰하는 프로그램이다. 분노조절장애나 ADHD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연계병원에 의뢰하여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회에 2시간씩 5차로 나누어 총 10시간 치료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려면 학교전담경찰이 청소년을 데리고 다녀야하기 때문에

인력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고, 정신과 치료라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거부감도 많아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랑의 교실’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III-4).

기관	절차	업무내용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대상자 의뢰	- 연계 관할 경찰서는 프로그램 실시 일주일전까지 대상자 의뢰에 대한 공문 발송 안내 - 경찰서 및 대상 청소년 상황에 따라 인접 사랑의 교실 운영기관에 연계
		↓
교육기관	프로그램 구성	- 대상자 의뢰 시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연령별 촉법(초·중·등)·범죄(고·등) 소년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일정 조율
		↓
교육기관	프로그램 진행	- 의뢰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일정과 장소, 이수시간(기본이수 10시간) 및 프로그램 참가 태도에 따라 미이수 처리됨을 사전 공지 - 계획된 일정과 프로그램에 따라 참가 청소년 지도
		↓
교육기관 →관할 경찰서	이수자 통보서 제출·평가	- 프로그램 종결 후 각 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서와 소감문 작성 - 의뢰받은 경찰서에 통보하고 프로그램 평가
* 출처: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III-4 사랑의 교실 위탁 및 교육 절차

(4) 검찰

검찰단계에서는 「소년법」 제49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 중 하나로써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는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는 ‘법사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 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게 1:1 결연을 하여 멘토링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표준화된 프로그램은 없고, 봉사위원 개개인의 선도 역량에 기대고 있다.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은 위탁 프로그램으로 민간단체나 시설 외에도 소년보호시설과 보호관찰소³⁰⁾를 의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일선 검찰에서 의뢰하는 곳은 지역사회의 인프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보호관찰소 의뢰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인 ‘선도’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동종범죄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없어야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강간과 같은 심각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한 ‘검사 의뢰 교육 및 상담’이 있다.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소년부 송치에 대한 예외로써,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나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40시간 내외의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성매매피해상담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0) 소년보호시설 의뢰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고, 보호관찰소 의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5) 법원

법원단계에서는 판사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을 할 때 ‘소년에 대한 훈계’와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교육 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년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훈계나 보호자가 소년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 선도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일선 법원에 따라 ‘청소년참여법정’을 운영하기도 한다.³¹⁾

「소년법」 제12조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상담조사’는 전문가진단의 일환으로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상담조사를 의뢰하는 제도이다. 상담조사는 최장 3개월간 진행될 수 있으나 보통 2개월 이내에 종결되는데, 이 기간 중에 상담 및 조사 뿐 아니라 선도를 위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통고제도는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사건을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로 통고의 대상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범소년,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이다(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이 제도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바로 심리하기 때문에 해당 청소년이 수사관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데 따른 심리적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수사기관을

31) 청소년참여법정이란 그동안 소년보호재판이 형사처벌적 입장에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탈피하여, 비교적 경미한 비행사건에 대하여는 청소년참여법정을 활용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재비행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가 양호할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처리하려는 제도를 말한다(대전 가정법원, 2018, 내부자료).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으로 통고된 보호소년의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년에 대한 훈계’와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교육 고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등의 사안에서 화해와 중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³²⁾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는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으로써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위탁하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적 선도 운영주체별 시행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정부기관별 교육적 선도 관련 제도 비교표

구분	명칭(근거법)	시행 기관	대상자	시행내용
여성가족부	교육적 선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구청장	비행·일탈 청소년/ 부적응 청소년	• 시행되지 않고 있음.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장관/시장/ 군수/구청장 /관할 경찰 서장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유 발 및 원인 제공 청소년	•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 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통보

32) 통고제도는 ① 소년문제의 초기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신속하고 간편한 문제해결), ②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문제해결부담 경감), ③ 전문소년조사관 에 의해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필요 시 법원에서 마련한 전문가의 진단이나 심리상담조사제도, 화해권고 위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전문가의 효과적 지원)는 장점이 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인출일: 2018.2.2.)

구분	명칭(근거법)	시행 기관	대상자	시행내용
교육부	징계 (초·중등교육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 에 관한 법률)	학교장	학칙위반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학교의 학칙(징계규정)에 따른 특별 교육 이수 • 학교장 의뢰로 소년보호시설에서의 교육
	특별교육이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 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 회→학교장/ 선도 긴급시 학교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 소년보호시설에서의 특별교육 • 관련 사례 :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의 특별 교육 이수 프로그램 등
법무부	수강명령 (소년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 관찰소	보호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처분 집행 • 관련 사례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강명령 프로그램 등
	대안교육(소년법)	소년보호 시설	보호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가 명한 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 으로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안교육 • 관련 사례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의 대안교육 등
	상담교육(소년법)	보호 관찰소 (선도단체 시설위탁)	보호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가 명한 보호관찰에 따른 가처분 으로써 선도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
경찰	조건부 훈방 (근거법 없음)	경찰	훈방대상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프로그램 • 관련 사례 : 서울관악경찰서 POL짝, 광 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랑의 교실 등
검찰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 에 관한 법률)	검사	소년 피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나 시설 에서의 상담·교육·활동(소년원, 소년분 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 찰소 포함) • 관련 사례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대학체험캠프 등

구분	명칭(근거법)	시행 기관	대상자	시행내용
검찰	검사 의뢰 교육 및 상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대상 아동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
	훈계 및 보호자 교육 고지(소년법)	소년부 판사	보호소년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경미 심리불개시에 따른 조치 • 사안 경미 불처분에 따른 조치
법원	상담조사(소년법)	소년부 판사	보호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진단의 일환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상담조사 의뢰 • 상담조사 기간 중에 선도프로그램 운영 • 관련 사례 : 대전가정법원 길 위의 학교 등
	통고제도(소년법)	소년부 판사	보호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부 판사가 심리 •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훈계하거나 상담조사 의뢰
	판사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선도보호 위탁 보호처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부 판사	보호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위탁

2. 국내 유사제도 및 사업 사례분석

1) 교육부 유사제도 및 사업

(1)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의 특별교육이수

① 개요

특별교육이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이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은 Wee센터를 통해 교육청으로부터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의뢰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교 선도 규정 위반, 비행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도활동 및 인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학교 적응력을 신장시키고, 건강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도와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것을 특별교육이수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검사와 결과 설명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를 위해 참여한 구성원의 70%가 MBTI 검사를 통하여 성격특성을 이해하고, 참여한 구성원의 70%가 자아개념검사 및 인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와 현재의 고민거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 법교육을 통해 문제행동의 결과를 깨닫고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감을 기른다. 이를 위해 참여한 구성원의 70%가 법적 절차와 법적 책임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법의 의의 및 필요성을 알고, 문제 행동의 결과와 법적 절차 등에 대해 배움으로써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키운다. 셋째,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직업인의 특징을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폭을 넓힌다.

다. 이를 위해 제과제빵 활동을 통해 제빵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도록 한다. 넷째, 집단 체험활동을 통해 성취감 고취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 스타킹, 카프라 등의 활동을 통해 개인 신체능력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도록 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으로 참여인원의 70%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의 담당인력은 청소년지도사 1인이고, 프로그램 내용별로 전문가 3-4명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청소년 1인당 1일 15,000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실과 야외 활동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② 프로그램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서울시청소년수련관에 의뢰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운영기간은 연중 운영되며, 학기와 방학 구분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교육집단은 남녀혼성으로 구성하되 학교급을 구분하여 편성한다. 교육일정은 매월 초에 Wee센터와 협의 후 결정한다. 참여 청소년의 인원은 10명씩 5일간 5회로 연인원은 총 250명이다. 5일 과정으로 운영되는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의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그림 III-5).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9:00-09:30	출석확인 및 오리엔테이션				
09:30-10:00	활동안내 O.T 관계 형성 About me	법교육	MBTI 검사해석	노동법 교육	진로활동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점심시간 및 휴식				
12:00-12:30	점심시간 및 휴식				
12:30-13:00	점심시간 및 휴식				
13:00-13:30	검사 진행 MBTI 인성검사	모의재판	MBTI 검사해석	성교육 성문화센터	직업체험
13:30-14:00					
14:00-14:30					
14:30-15:00					
15:00-15:30	집단 놀이 활동 및 개별 상담				수료식
15:30-16:00	집단 놀이 활동 및 개별 상담				

* 출처: 서울시청소년수련관(2018). 내부자료 참고.

그림 III-5 서울시청소년수련관 특별교육 프로그램 일정표

MBTI 프로그램은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고 다른 친구들의 성격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MBTI 유형에 대한 설명 및 결과를 해석해준다. 또한 인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잠재된 성격적 특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법교육은 폭력, 절도 등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법과 관련되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도록 해주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법에서 의미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알아보고,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법률과 그 관계를 알아보고, 4가지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적 처벌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모의재판은 절도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모의재판 형식의 재판을 열어 피해자 및 피의자, 방관자, 형사 등의 역할을 맡아봄으로써 감정이입 및 동화를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간이다. 노동법 교육은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권리를 깨닫게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아르바이트

수칙 교육을 통해 근로자 의무사항을 알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성교육은 남자와 여자의 신체·정신·가치관적 차이와 성과 관련된 정확한 용어에 대해 배운다. 또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 청소년시기의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해 배우고, 출산과 자녀양육, 다양한 피임법 등을 배우며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진로활동은 적성을 탐색해보는 시간으로 적성에 맞는 대학의 관련학과와 직업을 소개해주고 있다. 직업체험은 청소년이 직접 직업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요리학원과 연계하여 요리사 체험, 바리스타 체험, 제과제빵 체험 등을 실시해왔다. 지금까지는 요리학원에서 교사가 출장을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는데, 향후에는 청소년들을 요리학원으로 데리고 가서 체험을 시켜줄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밖의 집단놀이활동으로 방송댄스, 카프라 쌓기, 스크래치 나이트뷰 완성하기, 스포츠 스택킹 개인목표 달성하기 등 공동체 활동과 신체활동을 통한 협동심과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와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있다.

③ 시사점

서울시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교육이수는 입시위주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여 교칙을 위반하거나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 학생 청소년들에게 교육 참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성격검사나 체험 및 놀이 중심의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수련관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면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에도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푸른나무 청예단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교육프로그램

① 개요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 푸른나무 청예단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지 않았지만, 학교나 교육청에서 선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이다.

교육의 목적은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통한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있고, 보호자의 경우 부모력 회복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학교나 교육청의 요청사항을 고려하고, 학교폭력의 유형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조율하여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점이다.

프로그램 시행장소는 청예단 교육장이고, 청예단 직원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예산은 교육을 의뢰한 학교나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한 갈등사건인 경우에는 청예단 화해분쟁조정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②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가해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1회기 3시간을 기준으로 총 5회기 15시간 동안 진행된다. 보호자 프로그램의 경우, 1회기 2시간을 기준으로 총 5회기 10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일정과 내용은 다음 [그림 III-6], [그림 III-7]과 같다.

회기	내용
1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목적 : 다양한 감정의 이해 및 표현방법 탐색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카드를 활용한 긍정적/부정적 감정 탐색 - 나의 감정은?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한 표현 연습 - 신체화 그리기 : 감정에 따른 신체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 - 4컷 카툰 : 상황-생각-감정-행동 컷으로 나누어 카툰 제작 후 생각의 변화에 따른 결과 변화 탐색
2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목적 : 공감 및 의사소통 기술 능력 향상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 훈련 : 사진 속 이미지를 통한 감정 공유 - 최근 감정변화, 갈등상황을 피규어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 Grok활용 비폭력 대화 습득
3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목적 : 학교폭력관련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정의 및 유형 탐색 - 내가 법을 바꿀 수 있다면? : 학교폭력 관련 법률 교육 및 법률 관련 집단토의 - 나도 컨설팅 전문가 : 언론 보도된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청소년 시각의 분석 및 문제해결 방안 제시 - 내 사건이 신문예? : 자신의 사건을 객관화 하여 기사화 하기 - 재발방지 다짐 : 학교폭력 사안이 재발되지 않고 유지된 보호요인 탐색 및 보호요인 강화를 위한 방법 구체화
4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목적 : 상대측과 관계회복 및 화해를 위한 방법 탐색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의 의미 탐색 - 다툼 및 갈등상황 발생 시 사과를 통해 해소되었던 긍정경험 탐색 및 경험시 느꼈던 감정에 대한 공유 - 갈등주체에 대한 사과편지 작성 및 소감 공유
5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목적 : 자존감 향상을 통한 올바른 자기상 확립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법의 손 : 다섯 손가락에 자신의 장점 및 단점 작성 후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토론 - 희망통장 만들기 : 인적자원과 내적자원의 분석 및 활용방안 작업

* 출처: 푸른나무 청예단(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III-6 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일정

회기	내용
1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목적 : 보호자의 현재 “나”의 상태 점검, 직장내(사회)에서 worker / 집안에서의 부모로서 역할에 대한 탐색, 객관적 현재 상황 탐색을 통해 자녀 문제 해결 및 가족 회복을 위해 현재 보호자에게 필요한 가치 탐색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룹 활동 진행 : 자신을 모습에 대한 탐색 활동 - 마음 자화상 그리기 : 그림을 통한 내면 성찰 및 감정표출 활동
2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목적 : 보호자의 감정 및 기질 탐색, 직장(사회)의 모습과 가정 내모습의 밸런스 찾기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보호자의 감정 및 최강 기질 찾기 - 가치 경매 : 보호자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에 대한 탐색
3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목적 : 건강한 어른을 위한 가치 탐색, 좋은 의사소통자가 되기 위한 기술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영웅은?: 보호자가 생각하는 ‘어른’에 대한 분석 - 자녀의 선도(학교폭력, 탈선 등)를 위한 보호자의 역할 탐색 - 몸의 의사소통 : 신체언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방안 찾기
4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목적 :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치 찾기,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안 탐색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터 맵핑 : 가족의 개인력 그림 그리기 - 갈등상황 소통극 : 자녀의 감정에 반응하는 보호자 유형 탐색 및 갈등상황 역할극 진행
5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목적 : 학교폭력의 이해를 통한 학교폭력 대응력 및 자녀 소통 강화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유형, 실태 및 관련 법률의 이해 -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소통 역할극 진행 - 내가 만드는 세상 :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

* 출처: 푸른나무 청예단(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III-7 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일정

③ 시사점

푸른나무 청예단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교육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를 전문으로 활동해온 단체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교육내용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 뿐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정환경 개선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효과가 높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나도 컨설팅 전문가’로, 신문에 보도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학교 측의 입장이 되어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다. 제3자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나 학교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사건발생의 원인 분석이 학생마다 차이가 있는데, 분석내용이 각자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이후에 개인상담으로 연계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선도가 이루어진다.

2) 법무부 유사제도 및 사업

(1)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강명령

① 개요

수강명령은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처분 열 가지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의뢰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동반자가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이 센터로 출석하도록 하여 지도하고 있다.

수강명령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청소년동반자이다. 청소년동반자 1인이 1인의 보호소년을 담당하여 1:1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동반자는 “보호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위기요인을 개선(여성가족부, 2018, p.481)”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 자원을 발굴 연계하며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위기극복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여성가족부, 2018, p.482)”하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8년 전 부터 이 프로그램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위탁받는 보호소년은 200명 내외이다. 10명의 청소년동반자가 이들 보호소년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수강명령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예산은 법원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1인당 1시간 5,000원씩 총 15시간 75,000원이 책정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과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에 수강명령을 병과받은 보호소년을 연간 200명 정도 교육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매주 1시간씩 15주 동안 총 15시간의 상담이 진행된다. 원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서비스로써 내용은 상담, 문화활동과 체육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강명령 대상 청소년의 경우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센터에서만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강내용의 대부분은 상담이 차지하고 있다. 상담을 통한 자기계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은 청소년동반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심리상담이 주를 이루고 미술치료, 놀이치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지치료와 정신분석을 통해 보호소년의 현실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진로상담과 심리검사, 성격검사를 통해 보호소년의 적성을 탐색하기도 한다.

③ 시사점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출석에 비협조적인 보호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팀장급의 상담사가 청소년동반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슈퍼비전을 하고 있는 점이며, 이를 통해 사례관리의 요령을 알려줌으로써 보호소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1 상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담 회차가 거듭되면서 라포 형성과 집중적인 지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대안교육

① 개요

대안교육은 「소년법」 제32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중의 하나이다. 법에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법원과 검찰, 학교로부터 의뢰받은 대안교육명령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 교육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인력은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업무는 대안교육과 상담조사이며, 대안교육 담당직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4명이고, 전문교육을 위한 시간강사 15명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대상 청소년은 목표인원이 연인원 4,250명(1일 단위로 중복 산정)이고, 실제 사람별 인원은 연간 1,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시설은 4개의

교육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담임을 맡을 수 있는 인력이 3명뿐이라 최대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②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5일 동안 매일 9시부터 17시까지 총 35시간 동안 운영된다. 학교나 검찰에서 의뢰하는 교육은 1일 또는 3일 단위로도 운영되며, 법원에서 의뢰하는 대안교육은 35시간과 70시간이 있는데, 이 센터에는 주로 35시간 교육이 의뢰되고 있어 일주일간 5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13명 이내 소그룹 반편성과 반별 담임 제로 운영되고 있고, 상·별점 제도를 통해 엄격한 출결관리와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과별점 시 퇴교조치한다. 상·별점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업태도 : 집중하지 못하거나 산만, 필기나 과제작성 불성실, 수업시간에 즐기거나 잠을 자는 행동, 수업시간에 늦거나 종료 전에 나가는 행동, 상점(수업의 진지성, 활동지 성실 작성 등)
- 생활태도 : 식사예절 불량, 복장불량(교복, 운동화 원칙), 욕설을 자주하고 언성을 불필요하게 높임, 휴대폰·MP3·게임 시 등 교육에 방해되는 물품 미반납, 담배 및 라이터·전자담배기기 소지, 흡연, 교사에 대한 불공손한 언행이나 교사지도 불이행, 상점(인사, 휴지줍기 등)
- 교우관계 : 교육생 상호간 다투는 행위, 일방적으로 동료들을 괴롭힘, 상점(동료 교육생 도와주기 등)

구분	월	화	수	목	금
09:20-10:00	O.T 및 상담조사	폭력예방 교육	절도예방 교육	절도예방 교육	교통안전 교육
10:00-10:50					
11:00-11:40	심리검사 및 해석	자아성장	성교육	긍정마인드	미술치료
11:50-12:30					
13:30-14:10	진로지도	감수성훈련	의사소통	금연교육	예절교육
14:20-15:00					
15:10-15:50	폭력예방 교육	배려교육	영상테라피	법교육	소감문작성 및 수료식
16:00-16:40	-	-	-		

* 출처: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III-8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 주간 일정표

교육일정과 내용은 [그림 III-8]과 같다. 폭력예방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특성 이해하기, 폭력의 심각성 알기, 폭력에 대한 자신의 태도 알기, 가해자와 피해자방관자의 세 가지 입장 생각하기, 바람직한 대안 찾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도예방교육은 절도의 심각성 인식하기, 절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 알아보기, 선택과 책임의 주체 인식하기, 자기통제력 향상 및 긍정적 미래상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교육은 사춘기의 신체·심리 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생명의 소중함과 피해자 공감하기, 성폭력과 관련된 인지적 편견과 왜곡 수정하기, 올바른 성의식 형성으로 행위자·피해자 되지 않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오토바이 운전습관에 대한 자기탐색하기, 교통사고 및 비행사례 알아보기, 교통사고의 폐해, 장애 체험하기, 안전운전 방법 및 에티켓 익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절교육은 올바른 언어습관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자세, 예의바른 행동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술치료는 미술과 생활공예 등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기성찰의 계기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시사점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안교육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부센터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무부가 직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전국 센터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육적 선도 유사 프로그램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점과 달리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대상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용이한 점이 있다. 명확한 퇴교기준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때에 교육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동의서는 교육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이고 상벌점 제도에 의해 퇴교결정이 될 시에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계약서이기도 하다. 교육대상자는 비록 강제적으로 대안교육 명령을 받았지만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인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공권력에 의한 권위가 있는 점도 교육진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업 예산 역시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경찰 유사제도 및 사업

(1)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

① 개요

사랑의 교실은 경찰에서 훈방대상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의뢰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은 “경찰 단계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해 반복적인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학교, 가족, 사회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충동적인 감정에 대한 조절과 건강한 감정표현을 익힘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광진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연중 운영되고 있다. 인력은 광진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3명과 그 외 학습 정서 멘토가 담당하고 있다. 대상청소년은 경찰서에서 의뢰한 청소년 160명으로 촉법소년 6개집단과 범죄소년 10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광진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속하여 매일 2시간 30분씩 나누어 4일간 진행하고 있고,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5시간씩 나누어 2일간 진행하고 있다. 총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10시간씩 동일하다. 프로그램일정과 내용은 [그림 III-9]와 같다.

구분	일 자	내 용	
범 죄 소년	1회차 17:00~19:30 (2시간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과 미래(D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밍업 - 변화에 대한 인식여부 -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범방지 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 청소년의 범죄 종류 및 처벌기준
	2회차 17:00~19:30 (2시간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r 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브레이킹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 - 비행에 대한 양가감정을 다룸을 통한 동기부여 - 조별 프로그램을 통한 라포 형성 	
	3회차 17:00~19:30 (2시간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와 나의 감정 - 선택의 이유 - 다른 사람의 감정 공감하기 - 부정적 감정 해소하기 	
	4회차 17:00~19:30 (2시간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모습, 너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신의 자아상 살펴보기 - 자기상에 대한 탐색 - 긍정적 삶의 태도 	
촉 법 소년	1회차 09:00~15:00 (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과 미래(D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밍업 - 변화에 대한 인식여부 -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범방지 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 청소년의 범죄 종류 및 처벌기준
	2회차 09:00~15:00 (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r 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브레이킹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 - 비행에 대한 양가감정을 다룸을 통한 동기부여 - 조별 프로그램을 통한 라포 형성 • 감정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와 나의 감정 - 선택의 이유 - 다른 사람의 감정 공감하기 - 부정적 감정 해소하기 • 나의 모습, 너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신의 자아상 살펴보기 - 자기상에 대한 탐색 - 긍정적 삶의 태도 	

* 출처: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III-9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일정표

꿈과 미래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과 변화준비를 위한 확인과정이다. 변화에 대한 인식여부를 점검하고 프로그램의 규칙과 내용을 안내한다. who r u ? 프로그램은 아이스 브레이킹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으로 비행에 대한 양가감정을 다룸으로써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조별 프로그램을 통해 라포 형성을 한다.

감정다루기는 연극치료활동으로 심리극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한다. 나의 모습, 너의 모습 프로그램은 미술치료활동으로 현재 자신의 자아상을 살펴보고 자기상에 대한 탐색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으로 변화를 유도하며 긍정적 삶의 태도를 제고한다. 재범방지법교육은 범죄나 비행, 일탈에 관해 알아보기, 범주주의와 나의 행복, 형사사법체계와 처벌, 청소년의 비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비행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촉법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자존감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사후프로그램으로는 전화상담과 모바일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로 모니터링을 하고, 청소년동반자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며, 진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안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③ 시사점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은 경찰단계의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비행성향을 완화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재범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경찰단계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사법처우에 진입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가 개입함으로써 전문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후에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청소년동반자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위기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2) 서울관악경찰서 자체선도 프로그램

① 개요

서울관악경찰서에서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건부 훈방을 위한 자체선도 프로그램으로써 ‘꿈에 한 발짝 디딤돌 POL’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관악구 관내 소년범으로 2017년에는 소년범 281명 중에서 91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선도프로그램 연계율이 32.4%에 이르렀다. 이것은 학교폭력 정량지표 만점구간인 27.6%를 상회한 수치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대상청소년에게 꿈을 주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다. 대상청소년은 회차당 10명 내외이고, 교육인력은 학교전담경찰(SPO)과 전문가참여제를 위해 배정되어 있는 범죄심리사가 담당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은 학업병행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시간은 총 10시간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교육장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을 이용하고 있다. 예산은 회차당 진행비 10만원과 강사료 3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서울관악경찰서의 자체선도 프로그램은 2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III-10).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1회	13:00~14:00	• 참가신청서 작성 및 자기소개	SPO
	14:00~15:00	• 범죄예방 교육 및 진로 토론	SPO
	15:00~17:00	• 인성 향상프로그램: 인생그래프, 공감하기 • 꿈 목록 작성하기 : 서로간 응원 댓글 써주기	범죄심리사
	17:00~18:00	• 일주일간 계획표 설계, 소감문 작성 및 상담	범죄심리사
2회	13:00~16:00	• 관계형성게임 : 이름 이어말하기, 몸으로 말해요 • 분노조절 프로그램 • 미래설계 : 나에게 보내는 편지	범죄심리사
	16:00~18:00	• 소감문 작성 및 발표 • 감사노트 배부, 다짐서 작성 • 수료식, 수료증 발급, 단체사진	SPO

* 출처: 서울관악경찰서(2018).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III-10 서울관악경찰서 자체선도 프로그램 일정표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국 경찰서에 공통된 프로그램이지만 서울관악경찰서에서는 요가강사나 헬스트레이너, 인근 학교 교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범죄심리사의 강의를 대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외에도 상담관리를 통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있고, SNS 소통을 통해 경찰과 학생 간의 신뢰감을 높이고 범죄환경 접근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시사점

서울관악경찰서 자체선도 프로그램은 초기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강의인력을 범죄심리사나 청소년전문가에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춰 요가강사나 헬스트레이너, 인근 학교 교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학교전담경찰은 심사원이나 소년원에 들어간 청소년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선배들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한다. 외부위탁 프로그램과 달리 자체선도 프로그램은 경찰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긴밀하게 지도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경찰이 직접 법률상담 등의 도움도 주고 있어 조기개입과 사후지원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검찰 및 법원 유사제도 및 사업

(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조건부 기소유예

① 개요

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법」 제49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2014년 12월에 금오공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을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에게 대학체험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 비전을 가진 우수인재로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캠프는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 1차 [2015. 1. 22~23] 대학 체험
- 2차 [2015. 7. 23~24] 대학 체험 + 템플스테이
- 3차 [2015. 10. 30] 대학 체험 + 연극관람
- 4차 [2016. 8. 04~05] 대학 체험 + 템플스테이
- 5차 [2017. 8. 10~11] 대학 체험 + 템플스테이
- 6차 [2018. 8. 09~10] 대학 체험 + 템플스테이

1차와 3차는 금오공대에서 강의와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고, 나머지는 금오공대에서 대학 체험과 인근 사찰인 도리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함께 하는

것으로 운영되었다. 1일 프로그램이었던 3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1박2일간 진행되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되었던 6차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11명이 참여하였고, 금오공대 대학생 멘토 22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멘티와 대학생 멘토의 비율을 1:2로 구성하였다. 대학체험 프로그램의 강사 및 전체 프로그램 진행요원도 별도로 10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 선정기준은 검찰청에 송치된 비행청소년 중에서 프로그램 진행의 편의상 나이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로 제한하고, 성별도 남녀 간의 사고우려 때문에 비율이 높은 남학생으로 통일하였다. 비행성의 경우, 심각한 폭력범죄는 배제하고 무면허운전이나 명예훼손, 절도 등의 경미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프로그램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대학체험캠프는 1박2일 동안 진행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III-11).

구분		내용	비고
일자	시간		
1일차	10:00~11:00	[교육 1 - 멘토 교육] - 캠프 취지 및 유의사항 전달 - 멘토장 선발 - 멘티와 1:1 선(先)매칭	- 멘토 도착 시간: AM 10:00 - 장소: 든사람교육센터(도서관211호) - 멘티 도착시간 11시
	11:00~12:00	[교육 2 - 멘토·멘티 만남] - 자기소개 및 1:1 매칭	- 장소: 든사람 교육센터(도서관211호)
	12:00~13:00	[점심 식사] 든사람교육센터 ⇒ 학생회관	- 장소: 교직원식당 행사장
	13:00~15:00	[교육 3 - 치료놀이] - 멘토·멘티 친밀감 형성	- 장소: 든사람 교육센터(도서관211호)
	15:00~17:00	[교육 4 - 심리 검사] 적성 및 흥미검사[홀랜드 검사]	- 장소: 든사람 교육센터(도서관211호)
	17:00~17:30	[이동] 금오공대 ⇒ 도리사	- 전세버스 대기장소: 도서관 주차장 옆
	17:30~18:00	[저녁 식사] 도리사 도착 및 식사	- 장소: 도리사 내
	18:00~ 8:30	[입제식 준비] - 템플스테이 신청서 작성	- 방 배정 및 법복 배부
18:30~18:50	[입제식] - 스님과 참가자들 인사		

구분		내용	비고
일자	시간		
2일차		- 사찰예절 배우기	
	18:50~19:30	[체험 1 - 타종] - 참가자 중 희망자만 실시	- 장소: 종각 옆
	19:30~20:30	[교육 5 - 멘토·멘티 관계 형성] - 김천지청 검사 특강, 참가자들 1:1 멘토링	- 금오공과대학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법사령위원회 관계자 참석
	20:30~21:00	[영상 및 산책] 서대 야경 관람	
	21:00~05:00	[취침] 세면 및 취침	참가자 개별 세면도구 준비
	05:00~05:30	[가상] 세면 및 정리	
	05:30~06:00	[체험 2 - 108배 체험] - 나를 돌아보는 108배	
	06:20~07:00	[아침 식사]	- 장소: 도리사 내
	07:00~08:00	[체험 3 - 명상] - 숲속 걷기 및 명상	
	08:00~10:00	[체험 4 - 연등 만들기]	
	10:00~11:00	[자유 간담회] - 멘토·멘티 자유 간담회	- 금오공과대학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법사령위원회, 도리사 관계자 별도 간담회 진행
	11:00~13:00	[소감문 작성] - 체험 소감문 작성/ 만족도 조사 실시	- 템플스테이 팀장 진행
	11:30~12:30	[점심 식사]	- 장소: 도리사 내
	12:30~13:00	[정리]	- 방청소 및 짐정리
	13:00~13:30	[회향식] 회향식 및 출발준비	- 전세 버스 준비
	13:30~14:00	[귀가] 금오공대 도착, 귀가	- 학교 이동 후 개별 해산

* 출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III-1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대학체험캠프 일정표

1일차에는 금오공대에서 청소년 멘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대학생 멘토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멘티가 도착하면 멘토와 멘티를 매칭하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치료놀이를 진행한다. 심리검사를 통해 청소년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한 후에 인근 사찰인 도리사로 이동하여 사찰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한다. 입제식을 통해 사찰예절을 배우고 희망자에 한해 타종행사에 참여한다. 김천지청 담당 검사의 특강과 야경 관람으로 일정을 마친다.

2일차에는 희망자에 한해 108배를 실시하고 명상과 연등 만들기 체험을 하고, 멘토와 멘티의 자유간담회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소감문을 작성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에 회향식을 마치고 귀가한다.

③ 시사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대학체험캠프는 강의 중심의 교육을 최소화하고 템플스테이에 비중을 두으로써 청소년들이 평소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새벽 108배의 경우는 많은 청소년들로부터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근에 유명한 사찰인 직지사가 있으나 도리사를 활동장소로 선정한 이유는 직지사의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유명 관광지이다 보니 유혹에 빠져 이탈할 위험성이 높은 반면, 도리사는 깊은 산골에 위치하여 한번 입소하면 퇴소 전까지 사찰 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어 선정되었다.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를 2:1로 구성한 것이 특징적인데, 멘토와 멘티의 나이차가 5살 내외라서 세대차이가 거의 없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쉽고 멘토링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2) 대전가정법원 상담조사

① 개요

상담조사는 「소년법」 제12조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대전가정법원에서는 소년심판이 진행 중인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조사명령을 내리고 그 기간 중에 ‘길 위 학교’라는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길 위 학교’는 지리산 둘레길을 10박 11일 동안 걷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금년까지 5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1회씩 남자 보호소년 만으로 구성하여 5회, 2016년에는 여자 보호소년 만으로 구성하여 추가

1회 실시하여 총 7회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수행을 하고 집행은 대전문화재단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상담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받는 2개월 동안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에는 9명의 보호소년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해야 한다. 보호소년 중에는 술, 담배와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 10박 11일간 걸을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청소년을 선정한다. 둘째, 자기성찰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 보다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를 선정한다. 셋째, 경미한 비행이어야 한다. 이미 소년원 경력이 있는 청소년보다는 처음으로 6호처분이나 9호 처분을 갈 정도의 청소년에게 성찰을 통해 반성의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이 프로그램은 지리산 둘레길을 걸을 때 멘토와 멘티를 1:1로 결연하여 함께 걷게 하는데, 그 멘토를 동행자라고 부른다. 동행자는 대전지역 성공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장기쉼터와 단기쉼터, 드롭인센터에 계신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 예산은 법원 자체예산 4,500만원으로 이 중에서 3,500만원이 숙박비와 음식 등의 경비와 동행자 인건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전-사후 프로그램과 연구용역비로 사용되고 있다.

② 프로그램

‘길 위 학교’ 프로그램은 지리산 둘레길을 10박 11일 동안 걷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정이나 교육 내용은 없다. 다만 걷기 이전에 사전준비와 걷기 이후의 사후추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행자와 청소년은 1:1로 결연을 맺고, 3쌍이 한 개의 조를 이루어 걷는다. 각 팀이 만나질 간격으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지리산 둘레길 총 295km를 종주한다. 선도프로그램의 핵심은 소년의 품행과 성

행을 개선하고 환경을 조정하여 재비행을 예방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사전-사후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불량교우와 자연스럽게 단절될 수 있다. 특히 10박 11일 동안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우관계가 단절될 뿐 아니라 생활습관이 교정되고,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기본적인 품행이 교정될 수 있다. ‘길 위 학교’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매일 한 가지씩 화두를 던져준다. 예를 들면,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서 견자”와 같은 것이다. 화두는 사전에 공통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③ 시사점

대전가정법원 상담조사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길 위 학교’는 우수사례에 그치지 않고 성공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500만원의 예산을 기부받아 진행했는데, 이후에 언론의 관심과 참여 청소년의 선도효과를 인정받아 법원 자체예산 4,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후추적 관리도 하고 있다. 멘토로서 함께 걸었던 동행자를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해서 한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멘토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범을 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패인 것은 아니다. 소년원에 가든지 이후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길 위 학교’를 통해 느꼈던 성취감과 보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했던 그 경험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나갈 자양분이 될 것이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대부분은 가정과 사회가 자신을 위해 해준 게 없다면서 자기합리화를 한다.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평생 살면서 부모 뿐 아니라 누구하나 돌봐주거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이 ‘길 위 학교’에 참여했던 청소년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청소년이 경미한 범죄에 그쳤다면 청소년 개인의 측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으로 평가해주어야 한다.

3. 국외 유사제도 및 사업 사례분석

1) 독일

(1) 교육보조와 시설위탁교육

교육보조(Erziehungsbeistandschaft)와 시설위탁교육(Heimerziehung)은 「청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 이하 JGG)」 제9조(§9 JGG)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처분(Erziehungsmaßnahmen) 명령 중의 하나로, 준수사항(Weisungen), 그 외의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에서 교육(Erziehung in einer sonstigen betreuten Wohnform)등과 함께 교육처분 형식을 구성하고 있다. 이 네 가지 교육처분 형식 외에 다른 교육처분의 형식은 없다.³³⁾

「청소년법원법」 제5조 제2항(§5 II JGG)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처분은 “교육적인 이유”에서만 부과되어야 하고, 범행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될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교육처분은 “범행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청소년법원법」 제5조 제1항 - §5 I JGG).³⁴⁾ 즉, 교육적인 이유와 범행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교육처분 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처분은 「사회법(Sozialgesetzbuch - 이하 SGB)」 제8편 제27조, 제30조, 제34조(§§27, 30, 34 SGB VIII)에 따른 ‘자발적인 교육을 위한 부조신청’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 이하 BGB)」 제1666조, 제1666 a 조(§§1666,

33)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61.

34)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62.

1666a BGB)에 따른 ‘가정법원의 명령’의 형태를 통하여 적용된다. 이 두 법을 통한 적용은 무엇보다 청소년 형사절차에 의한 복잡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법」 제8편(SGB VIII)에 따른 교육제공이나 민법에 따른 가족법적인 명령이 훨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이러한 교육처분 가운데 실무상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준수사항’이다. 이는 이후 「청소년법원법」 제45조, 제47조(§§ 45, 47 JGG)에 따른 다이버전이 확대되고 일부 내용이 「청소년법원법」 제15조 제1항 제3문 제4호(§15 I 3 Nr.4 JGG)의 근로부담명령(Arbeitsauflage)으로 옮겨가면서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³⁶⁾ 그러나 이전의 절반수준에 머물게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청소년형사절차상 사용되는 형사제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국내의 교육적 선도제도와 비교하여 소개하기엔, 「청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 (§10 I JGG)에 준수사항의 예시³⁷⁾들을 특정지어 규정하고 있고,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소년법원판사의 권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내의 교육적 선도제도와 같이 특정지어 살펴보기 힘들다. 또 다른 교육처분 중 하나인 ‘그 외의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에서 교육’은 교육적 선도제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넓어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닌, 양부모나 조부모에 의한 양육, 그 밖의 친척에 의한 양육까지도 포함하는 개념³⁸⁾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에 교육처분 중 국내의 교육적 선도제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이는 교육보조와 시설위탁교육을 중심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

35)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63.

36) Ostendorf, 2011, p.181.

37) Eisenberg, 2013, p.172.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지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유지할 것 (2) 집이나 시설에서 거주할 것 (3) 직업교육장 또는 일자리를 받을 것 (4) 직업 활동을 유지할 것 (5) 정해진 자의 보호와 감독을 받을 것 (6) 지역사회 트레이닝 코스에 참여할 것 (7) 피해자와의 조정 합의를 위하여 노력 할 것 (가해자-피해자-조정) (8) 정해진 사람과의 교류나 숙박업소, 유흥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할 것 (9) 교통안전 교육에 참여할 것

38)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71.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사회법」 제8편(SGB VIII)과의 관계

교육보조와 시설위탁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교육보조와 시설위탁교육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 제8편(SGB VIII)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부조 개편을 위한 법률을 통해 새로이 제정된 청소년부조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회법」 제8편(SGB VIII)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사회법」 제8편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2항(§§1 III, 2 II SGB VIII)에 따르면, 청소년은 자신의 발달을 위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지원 이외에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법」 제27조-40조(§§27-40 SGB)에 따라 교육을 위한 부조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급부들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조로서는 「사회법」 제28조부터 제35조(§§28-35 SGB)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교육상담, 사회적인 그룹 활동, 교육보조와 보호부조인, 사회 교육적인 개별부조, 주간위탁그룹 교육, 종일위탁보호, 시설위탁교육, 사회교육학적 집중 개별보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³⁹⁾

39)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64.

(3) 카리타스 코블렌츠 지부의 ‘청소년-위기-지원’ 프로그램⁴⁰⁾

① 교육보조

카리타스 코블렌츠 지부(Caritasverband Koblenz e.V.)의 ‘청소년-위기-지원’(Jugend-Gefährdeten-Hilfe) 프로그램으로써의 교육보조는 「사회법」 제8장(SGB VIII)에 따라 교육을 위한 긴급 부조의 형태로 부과 된다. 이는 자유로운 청구로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청소년 전담판사의 「청소년법원법(JGG)」에 따른 준수사항의 한 형태로 판결되기도 한다. 「사회법」 제8편 제30조(§30 SGB VIII)에 따르면, 교육보조는 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겪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호조치는 특히 부모와의 관계, 학교 및 직업상의 문제,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교제의 촉진 등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보호대상자는 자신의 가정에 있어야 하며 교육권자인 부모 등도 교육보조의 활동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교육보조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⁴¹⁾이 갖추어지면 청소년청에 의한 청문 이후에 교육보조를 명할 수 있다. 교육보조에 대한 실무적인 실행은 청소년청이 관할한다.⁴²⁾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보조의 수행 및 종료에 관한 그 밖의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이 성년에 이르렀을 때 종료된다. 이 시점에 관해서는 각각의 위탁기관들은 개별적으로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라든지 전담판사에 의한 종료시점 등을 두고 여전히 논의가 있다.⁴³⁾

이러한 교육보조는 교육전문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그 부모의 측에서 해당 청소년의 성장과정의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40) <http://sartorius-net.de/CARITAS/erziehungsbeistandschaft.pdf>.(인출일: 2018.7.23.)

41) § 27 I SGB VIII.

42) §82 II JGG, §85 SGB VIII.

43)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68.

나갈 수 있도록 이끈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과 부모, 더 나아가 해당 청소년의 학교, 다른 가족구성원, 친구관계 등과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함께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교육보조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청이 부과하는 소년부조의 형태로 이는 「사회법」 제8장의 제27조, 30조, 36조, 41조(§§ 27, 30, 36, 41 SGB VIII)가 근거가 된다. 또한 소년판사가 부과하는 준수사항의 형태 중 하나로써 이는 「청소년법원법」 제12조(§12 JGG)가 이에 해당한다.

②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모든 관계자 (부모와 아이 또는 청소년, 미성년자 본인과 청소년청의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문제 상황과 해당 교육의 목적을 서로 토론을 통하여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해결방안들은 「사회법」 제36조(§36 SGB)에 따라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전문인력인 상담자는 개인 집중상담을 통해 앞서 토론을 통하여 마련된 문제해결방안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상담자와 보호대상자간의 신뢰형성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난 후 보호대상자의 개인적인 문제상황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교육보조의 내용이나 방법을 정한다. 상담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보호대상자와 긴밀하게 상담을 진행하되, 보조자로서만 역할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은 대체적으로 가정방문으로 진행된다. 가정방문 상담 시, 개별적 또는 그룹으로 상담을 진행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형제자매의 유무와 같은 가족특징들도 참고 한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필요에 따라 (보호대상자와 관련 있는) 관청, 유치원, 학교, 직업학교, 사업주, 치료상담사 등에게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청과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법원까지도 지속적으로 교육보조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게 된다. 상담의 시작, 종료와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상담 진행자는 교육보조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성과보고서를 남겨야 한다.

나. 상담방법

상담은 방문을 통한 개인, 그룹 상담 형태로 진행된다. 상담자는 보호대상자와 함께 가장 기초적인 일상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문제 상황과 그동안 유지해 왔던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새로운 행동방식 정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상담이나 채무 관련 상담 등과 같은 다른 연계 프로그램들과의 상담을 병행하기도 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상담에 반영하기도 한다. 자유시간의 활용이 미숙할 수도 있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다. 보호대상자

교육보조의 보호대상자는 그들의 생활환경에서 위기나 분쟁해결을 위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 만 14세부터 22세까지의 청소년과 미성년자가 이에 해당한다. 보호대상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보조를 최소 6개월 이상은 교육전문가와 함께 받겠다는 자신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라. 프로그램의 목적

무엇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보조의 보호대상자들이 개인적 능력에 따라 자기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것, 보호대상자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교정하는 것과 부모 또는 교육권한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 및 학습적 또는 직업적 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등도 이에 포함된다. 여기에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여가시간을 만들기 위한 지침 마련과 실업상태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호대상자들의 상황이 보다 나아졌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이들을 원래 가족에게 성공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본 프로그램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4) 튀링엔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집 ‘미래’ 프로그램⁴⁴⁾

① 시설위탁교육

「청소년법원법」 제12조 제2호(§12 Nr.2 JGG)에 따르면, 법관은 「사회법」 제8편 제27조(§27 SGB VIII)에 규정된 전제가 충족되었을 때 청소년에게 「사회법」 제8편 제34조(§34 SGB VIII)가 정한 전일제로 수용되는 시설이나 그 밖의 보호적 주거형태에서 교육을 위한 부조를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설위탁 교육의 실행과 구성은 청소년청이 담당한다.⁴⁵⁾ 청소년 전담 판사가 「청소년법원법」 제12조 제1호나 제2호(§12 Nr.1-2 JGG)에 따른 부조의 종류에 대하여 결정하고, 시설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보호적 주거형태에 관한 내용은 청소년청이 결정한다. 성년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시설위탁교육 종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없다.⁴⁶⁾

②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튀링엔(Thüringen)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집 ‘미래’ (Kinder-und Jugendhä

44) <https://www.awo-zeulenroda.de/einrichtungen/kinder-und-jugendhaus-future/heimerziehung/> (인출일: 2018.7.23.)

45) §82 II JGG, §§85, 86 SGB VIII.

46) Meier, Rössner & Schöch, 2013, p.170.

user 'Future') 프로그램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위탁시설인 '미래'는 튀링엔의 아우마-바이다탈(Auma-Weidatal)이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설 역시 사회법에 따른 교육을 위한 보조기관이다. 총 14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 14명을 총 2개의 그룹을 지어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이 14명의 구성은 어린이와 청소년 각 7명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수용에 있어 나이와 성별은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 위탁시설 내의 보호는 정해진 일상생활구조 속에 하루 24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보호계획에 따라 포괄적이면서도 개별적인 후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중심에는 보호대상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발전(독립적이고 자기책임감을 갖는 능력의 함양과 같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 문제 상황이나 충돌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가르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여가시간 활용과 취업알선 및 학업이나 직업교육에 관련된 문제에 보조를 하기도 한다. 더불어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위탁시설 내에서의 그룹 규칙이나 상호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을 배우기도 하고, 개인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극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보호과정은 학교, 단체, 청소년청 등과 상호 긴밀하게 모든 과정을 공유한다.⁴⁷⁾

나. 진행방법

㉠ 가정꾸리기

하루일과, 집안일 분담과 같은 (그 외에도 요리하기, 제빵, 빨래하기, 청소하기, 장보기, 다림질하기, 바느질하기 등등) 일상생활의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능력과 숙련지식을 실험해 본다.

47) Ostendorf, 2011, pp.181-182.

㉠ 경제활동

그룹 내에서 앞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연습을 시킨다. 개별 그룹들은 생필 품구입이나 여가시간 계획, 휴가활동 등과 같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에 제일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연습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건강과 신체보호

나이에 걸맞은 표준적인 생활을 이끌 수 있는 건강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 법정 전염병의 예방과 극복 방법에 대한 교육,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사가 방문한다든가, 규칙적인 건강 컨트롤 등등), 피임과 같은 예방대책들을 교육한다.

㉢ 자유시간과 체험학습

위탁시설 보호대상자들의 성향과 관심도에 따라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자유시간에 일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다. (쉬기, 음악활동, 공작활동, 탁구, 축구, 배드민턴, 당구, 신체단련실, 자전거 등) 이외에도 공식적인 자유시간과 문화체험 시간에는 위탁시설 내에서의 활동 외에도 청소년자율소방대, 스포츠클럽, 청소년클럽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 보호대상자

본 위탁시설의 보호대상자는 학교를 다니는 나이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원래 가족이 해체되지 않았더라도 행동문제나 성장저하 등의 문제를 가졌거나 절박한 위기나 충돌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살기 힘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회법」 제27조와 제34조 (§§17, 34 SGB)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용 아동과 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교육문제, 과잉행동장애, 부모 중 일부를 잃은 경우, 형제자매를 잃은 경우, 학업거부 및 학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것과 같이 학교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경우, 타인과의 교류나 교제에 어려움을 가진 경우, 자존감 결여, 학대 등을 경험한 것 같은 문제 상황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알콜, 약물 중독이나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장애 또는 절박한 자기 또는 타인에의 위협에 노출된 자들을 대상으로 수용하고 있다.

라. 프로그램의 목적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위탁시설에서의 보호를 통하여 다양한 나이와 성별이 다른 아이들과 집과 같은 시설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 특히 함께 사는 그룹 안에서 이들은 상대방에 대한 주의나 배려, 인내심과 동등한 권리 등의 다양한 감정과 분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의 개념을 통해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가장 유사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간의 신뢰상황을 형성하는 방법 또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5) 시사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법원법」 제9조(§9 JGG)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처분명령의 형식은 준수사항, 교육보조, 시설위탁교육과 그 외 보호를 위한 주거 시설에서의 교육의 총 네 가지이다. 이외의 다른 교육처분의 형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법원법」 제5조 제2항(§5 II JGG)과 제1항(§5 I JGG)에 따라 위의 교육처분은 “교육적인 이유”와 “범행의 연관성”이 있어야만 교육처분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처분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법」 제8편 이하의 ‘자발적인 교육을 위한 부조신청’과 「민법」의 제1666조, 제1666a

조(§§1666, 1666a BGB)에 따른 ‘가정법원의 명령’의 형태를 통하여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부조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청소년 형사절차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처분 중 실무상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준수사항이다. 준수사항은 시간에 흐름에 따라 다이버전이 확대되고, 일부내용이 근로부담명령으로 옮겨가게 됨에 따라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준수사항을 국내의 교육적 선도제도와 비교하기에는 「청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10 I JGG)에 준수사항의 예들이 특정지어 규정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소년법원판사의 권한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새로운 형태의 준수사항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교육적 선도제도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교육처분의 다른 한 종류인 그 외의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에서의 교육은 교육적 선도제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규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교육적 선도제도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에서만 운영되는 교육처분이 아니라 양부모나 조부모에 의한 양육, 그 밖의 친척에 의한 양육 같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과 관련 있는 자들에 의한 부조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의 교육적 선도제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여 지는 교육보조와 시설위탁교육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지 살펴보았다. 앞서 비교대상에서 제외시킨 교육처분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더라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의 제도들이 보완되기도 하면서 이전보다는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교육처분의 하나인 준수사항이 그나마 자주 이용되던 청소년 형법적 제재수단이었으나 이마저도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보다 이전에도 실무상 활용도가 미비했던

교육보조나 시설위탁교육이 요즘에 와서는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보조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소년법원판사의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인하여 - 판사 직권으로 새로운 준수사항을 만들어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준수사항의 범주에 포괄되는 경향이 있고, 시설위탁교육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형태의 그 외의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에서의 교육으로 대체되면서 그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제도로 국내의 교육적 선도제도와 비교해 보아도, 이를 받아들여 활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실무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법률들의 적용범위를 넓히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2) 일본

(1) 오사카부 소년서포트센터의 소년보도활동⁴⁸⁾

① 개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소년법은 비행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경찰에서는 행정규칙으로 소년경찰활동규칙을 제정하고 소년의 비행방지 및 보호를 통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소년경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경찰활동의 대상에는 「소년법」 상 비행소년은 물론 불량행위소년, 피해소년, 요보호소년 등도 포함된다. 특히 소년경찰활동은 도도부현 경찰에 설치된 소년서포트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년서포트센터에는 소년보도직원 또는 전문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소년경찰활동규칙 제2조 제12호, 제8조 제3항). 2008년 4월 1일 현재, 전국 193개소(그중 경찰시설 이외에 설치된 곳은

48) 보도(補導)는 우리의 선도에 해당한다.

6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년보호직원 약 1,1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소년보호 직원은 소년상담, 계속보호, 피해소년의 지원 등 전문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한 경찰직원(경찰관 제외) 중 경찰본부장이 명한 자를 말하며, 전문 경찰관은 소년경찰활동에 상당기간 종사한 자로서 각종 연수 및 강습 등을 통하여 소년의 특성이나 상담기법을 익힌 전문 경찰관을 말한다.⁴⁹⁾

소년서포트센터의 주된 활동내용으로는 소년상담활동, 가두보호활동, 계속보호·소년에게 손을 내미는 재기 지원활동, 홍보계발활동 등이 있다. 먼저, 소년상담 활동은 소년이나 보호자 등의 고민에 대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 등이 면접이나 전화, 이메일을 활용하여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2016년 경찰이 수리한 소년상담 건수는 66,035건이었으며, 그중 소년자신으로부터의 상담이 14,777건, 보호자로부터의 상담이 32,060건, 기타가 19,198건이었다. 주된 상담 내용은 가정문제(19,284건), 비행문제(10,482건), 학교문제(7,192건), 범죄피해(7,167건), 교우문제(6,854건), 건강문제(2,141건), 가출문제(2,047건), 기타(10,868건)의 순이었다.⁵⁰⁾

가두보호활동은 소년경찰자원봉사자 등과 공동으로 소년이 모이는 변화가나 공원 등을 순찰하면서 흡연, 심야배회 등을 하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고, 지도나 주의를 주는 활동을 말한다. 소년경찰활동규칙 제2조 제6호는 “비행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음주, 흡연, 심야배회,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행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불량행위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량행위소년은 가두보호 등을 통하여 발견된다. 2016년 경찰에서 발견 및 보도된 불량행위소년은 536,420명이었으며, 보도된 불량행위의 내용으로는 심야배회(309,239명), 흡연(162,231명), 불건전오락(13,303명), 음주(11,648명) 등의 순이었다.⁵¹⁾

49) 丸山直紀, 2008, p.25.

50)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2017, pp.72-73.

(https://www.npa.go.jp/safetylife/syonen/hodouhogo_gaikyou/H28.pdf, 인출일: 2018.8.15.).

소년상담이나 가두보호활동을 통하여 발견된 소년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에 근거하여 지도 및 조연 등의 계속보도가 이루어진다. 또한 문제를 안고 있어 비행의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체험활동 등에의 참가 촉진, 취학·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⁵²⁾ 홍보계 발활동은 학교에서 비행방지교실, 약물남용방지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비행정세나 비행요인에 관한 정보를 발신하고, 소년경찰활동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⁵³⁾

소년서포트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형태는 도도부현 별로 조금씩 상이한데, 이하에서는 오사카부의 소년서포트센터의 소년보호활동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오사카부의 소년서포트센터는 오사카부와 오사카부 경찰, 오사카부 교육청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계속보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재기지원활동은 2010년 12월 이후 도입된 것으로 다른 보호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② 재기지원 프로그램

오사카부 내에 설치된 소년서포트센터는 총 10개소이며, 오사카부의 육성지원실과 오사카부 경찰의 소년육성실, 오사카부 교육청의 3자 연계를 토대로 비행의 방지 및 재기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육성지원실에는 전문직원(케이스워커),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원(퇴직경찰관, 퇴직교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육성지원실에서

51)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2017, pp.48-49.

52) 警察庁, 2017, p.126.

(https://www.npa.go.jp/hakusyo/h29/pdf/pdf/06_dai2syo.pdf, 인출일: 2018.8.15).

53) 警察庁, 2017, p.127.

는 주로 소년육성실에서 면접 등을 통하여 지도·조연을 실시한 소년 중 그 특성이 나 가정환경에 비추어보아 복지적 관점에서의 지원과 체험활동을 통한 재기지원 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과 연령이 근접해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지원서포터)의 도움을 얻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⁵⁴⁾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체험활동을 통하여 직원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육성함과 동시에 조금 씩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비행 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에의 참가는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참가 대상은 비행사유가 있는 소년으로 주로 소년육성실(경찰), 아동상담소, 학교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 전문 직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 추진원, 대학생 지원서포터가 함께 활동하며, 센터 또는 외출행사 장소까지의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무료로 진행된다.⁵⁵⁾ 주된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II-4).

54) 大阪府, 2017c, pp.1-4.

(http://www.pref.osaka.lg.jp/attach/13792/00000000/sapocen_18.pdf, 인출일: 2018.8.15.).

55) 大阪府, 2017a, pp.1-2.

(http://www.pref.osaka.lg.jp/attach/13792/00000000/sapocen_16.pdf, 인출일: 2018.8.15.).

표 III-4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현황⁵⁶⁾

구분	활동목적	활동내용
학습	- 소년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원 -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등교의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나 장래를 위하여 필요한 힘을 기름	
음악	- 흥미 있는 악기를 익혀 능숙해지는 기쁨과 연습한 성과를 발표할 장을 마련함으로써 달성감을 얻을 기회를 부여	기타연주
요리	- 소년의 식생활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지원의 시작점이자 소년과의 커뮤니케이션 톨로 유효 - 자립심을 길러 살아가는 힘을 기름	
공예	- 능숙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작품부터 시작함으로써 집중력과 끈기를 배양	목공, 수공예 등
스포츠	- 스포츠를 통한 규칙이나 집단행동의 규율을 준수할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발산	탁구, 풋살, 야구, 테니스 등
농업 체험	- 흙을 만지고 농작물을 기르는 경험은 성과를 확실히 알 수 있어 달성감을 얻기 쉬움 - 살아 있는 것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음	벼농사, 고구마, 포도농장 등
야외 활동	- 야외활동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해방감을 맛봄과 동시에 타인과 상호 협력함으로써 인간관계의 구축방법을 배울 기회가 됨	하이킹, 삼림체험
사회공헌 활동	-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자기유용감의 향상에 기여 - 또한 결과가 바로 보인다는 점에서 달성감이 있고 주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을 획득	낙서지우기, 환경보전, 숲 만들기 등

(2) 치바(千葉)현 이치하라(市原)시 청소년지도센터의 보도활동

① 개요

전국 시정촌에는 청소년의 육성을 목적으로 청소년센터, 소년보도센터, 청소년 육성센터, 청소년지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소년센터 등이 설립되어 있다. 이들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활동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2013년

56) 大阪府, 2017b, pp.1-4.

(http://www.pref.osaka.lg.jp/attach/13792/00000000/sapocen_17.pdf, 인출일: 2018.8.15.).

기준 전국에 70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⁵⁷⁾ 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원(39.8%)과 비상근직원(35.8%)이 비슷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교원(5.3%), 경찰직원(1.6%)이 배치된 센터도 있다.⁵⁸⁾ 이러한 센터들은 대체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센터 가운데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종합상담센터」로 지정된 센터의 경우도 동법 역시 운영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된다. 즉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육성지원에 관한 상담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의 상담에 응하여 관계기관의 소개나 정보제공·조언을 행하는 거점으로서 기능하는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703개 센터 중 「아동·청소년 종합상담센터」로 지정된 것은 45개소이다.⁵⁹⁾

그 중에서도 치바현 이치하라시 청소년지도센터는 「이치하라시 청소년지도센터 설치조례」에 명시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비행 방지활동을 충실히 실시하기 위하여 1972년 설립된 센터로서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종합상담센터」로 지정되었다. 동 센터에는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두순찰, 상담, 지원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② 주요 활동 내용

이치하라시 청소년지도센터에서는 비행 방지활동의 일환으로 가두순찰(가두보도)을 실시하고 있다. 가두순찰은 청소년보호원으로 위촉된 자원봉사자, 시의 방범대책실,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1일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 85명의 불량행위소년을 발견, 보도하였다. 순찰을 통해 얻은 불심자 정보에 대해서는 생활안심메일이라는 형태로 시내의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57) 内閣府, 2013, p.74.

58) 内閣府, 2013, p.75.

59) 内閣府, 2013, p.76.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센터에서 입수한 불심자 정보는 총 119건이었으며, 주민들에게 발신한 안심메일은 54건이었다.⁶⁰⁾ 또한 동 센터는 2012년부터 「아동·청소년 종합상담센터」로 지정되면서 종래의 건전육성이나 비행에 관한 상담에 더하여 니트, 히키코모리 등에 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에 있어서는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전문기관을 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년간(2017.4.1. ~ 2018.3.31.) 상담건수는 총 798건이었으며, 상담내용은 비행문제 293건, 가정내 문제 123건, 등교거부 51건, 건강문제가 49건 등이었다.⁶¹⁾ 한편,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제15조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아동·청년의 주거지,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담, 조언 또는 지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웃리치(방문지원)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로 하여금 아웃리치(방문지원) 연수를 통하여 실천적인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⁶²⁾

(3) 시가(滋賀)현 나가하마(長浜)시 청소년센터의 「내일이 다가오는 나가하마」 프로그램

① 개요

시가현 나가하마시에서는 「나가하마시 청소년센터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나가하마 청소년센터」와 「키노모토(木之本) 청소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조례에 근거하여 「나가하마시 청소년센터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양 센터에서는 청소년

60) 市原市青少年指導センター, 2018, pp.1-4.

(https://www.city.ichihara.chiba.jp/bunka/320syougai/seisyounen/sidou_center.files/H30ityou1gou.pdf, 인출일: 2018.8.15.).

61) 市原市青少年指導センター, 2018, pp.1-4.

62) 内閣府, 2018, p.90.

보도위원회나 학교,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청소년이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도활동 및 상담,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센터의 소장 및 직원은 교육장의 추천으로 교육위원회가 임명하고, 지도주사는 교육장이 임명한다. 또한 센터에는 소년보도위원을 두는데, 소년보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들은 청소년센터의 사업에 협력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청소년센터의 일반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상담활동, 비행방지·가두보도활동, 직업이 없는 소년에 대한 지원활동, 환경정화활동, 계발·연수활동 등이 있다.⁶³⁾ 먼저, 상담활동으로 청소년이 안고 있는 가정·학교·사회에서의 불안과 고민에 관하여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자로부터의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가두방지·가두보도활동으로는 매일 아침 역 앞에서의 인사활동, 방법순찰을 겸한 하교 시 보호 순찰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학 또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도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정화활동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활동으로 도서, 비디오, DVD, 흥기 등과 관련된 청소년의 실태파악 및 취급 업소에의 조사, 협력 의뢰, 자가 수거함의 설치하는 등 유해도서 등에 대한 회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계발·연수활동으로는 홍보지 및 계발지의 배포, 약물남용방지교실 등의 개최, 계발 DVD의 대여 등이 있다.

② 「내일이 다가오는 나가하마」 프로그램

특히 이들 센터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 및 보도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내일이 다가오는 나가하마(あすくる長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⁶⁴⁾ 지원대상은 중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청소년 및 보호자인데,

63) <http://www.city.nagahama.lg.jp/0000001660.html>(인출일 : 2018.8.15.).

64) <http://www.city.nagahama.lg.jp/0000001651.html>(인출일 : 2018.8.15.).

예를 들어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싶은 청소년, 자신을 바꿔 장래 꿈이나 목표를 갖고 싶은 청소년,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은 청소년, 취직을 통하여 자신을 바꾸고 싶은 청소년, 가족에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청소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부모 등이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을 통하여 지원이 개시된다.

또한 동 프로그램의 지원스텝으로는 지원 코디네이터, 교원, 카운슬러, 청소년 센터직원, 청소년지원서포터가 있다. 지원 코디네이터는 청소년, 보호자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지원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지원 전체의 진행 및 조정을 실시한다. 교원은 복학 또는 진로 선택을 위한 학력보충, 자기 자신 찾기 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실시한다. 카운슬러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고민이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청소년 및 보호자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한다. 청소년센터 직원은 취학, 취업 등 청소년의 욕구에 따른 지원을 실시한다. 청소년지원서포터는 국어나 수학 등 기초적인 내용에 관한 복습 등을 지도하고, 학습 또는 생활에 관한 상담을 실시한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각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5가지 지원프로그램을 조합하여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생활개선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 복지시설 등에서의 통원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안정된 생활리듬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 찾기(목표설정) 프로그램에서는 스포츠 활동, 자연체험, 사회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기초학력 보충이나 복학, 진학, 자격(고교입학자격, 컴퓨터 검정, 한자 검정, 영어 검정 등) 취득, 자신에게 필요한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연습 등 취업을 위한 기초적 지식이나 기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보호자면담이나 카운슬링 등을 통하여 양호한 가정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4) 오사카 가정재판소의 교육적 조치로서의 「새로운 지역청소활동」

① 개요

일본 소년법은 심판이 개시된 후에 가정재판소가 소년에 대한 종국처분의 결정을 일정기간 유보하고, 조사관에게 소년의 행동 등을 관찰하게 하는 시험관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시험관찰은 잠정적 조치이기 때문에 보호관찰과 비교하면 교육적 개입의 방법, 정도, 기간 등에 있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종국결정을 유보함으로써 소년에게 심리적 강제효과를 통한 지도원호를 실시하여 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년법은 시험관찰의 기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대략 3-4개월이 기준이 되고 있다. 시험관찰을 종료하는 경우 조사관이 최종적인 처우의견을 붙여 시험관찰의 성적을 재판관에게 보고하고, 통상 다시 심판을 진행하여 종국결정이 내려진다.⁶⁵⁾

시험관찰의 요건은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인데, 실무에서는 ① 소년을 보호처분에 부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② 당장 보호처분에 부할 수 없거나 그것이 상당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며, ③ 조사관의 관찰활동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종국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고, ④ 상당기간 내에 관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시하고 있다.⁶⁶⁾ 시험관찰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소년이나 보호자와의 계속적 면접 등 조사관이 직접 관찰하는 방법, 직장의 고용주나 학교의 교사, 학교자원봉사자 등의 협력 또는 원조를 통해 실시하는 방법, 그룹워크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시험관찰의 하나로 사회봉사활동이나 합숙활동 등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65) 카와이데 토시히로, 2018, pp.209-212.

66) 카와이데 토시히로, 2018, pp.210-211.

있다. 이하에서는 오사카 가정재판소에서 시험관찰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적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② 교육적 조치로서의 「새로운 지역청소활동」

오사카 가정재판소는 지역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청소활동」으로 불리는 교육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⁶⁷⁾ 이는 건전한 사회인과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 일원임을 자각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미친 피해를 인식시킴으로써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한다. 대상소년은 불처분이나 심판불개시가 예상되는 소년이며, 지역의 자치조직이 자치단체나 지역 기업 등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도로 또는 공원의 청소활동에 이들이 참가하는 것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스케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II-5).

표 III-5 프로그램의 내용

시간	활동 내용
12:45	가정재판소 집합
13:00	가정재판소 출발
13:30	오리엔테이션
13:40	활동 개시
14:30	종료, 정리
15:00	가정재판소 도착, 감상문
15:20	복기
15:45	종료

67) http://www.courts.go.jp/osaka/vcms_lf/260520p-1.pdf#search=%27E5%A4%A7%E9%98%AA+%E6%95%99%E8%82%B2%E7%9A%84%E6%8E%AA%E7%BD%AE%E3%81%AB%E3%81%A4%E3%81%84%E3%81%A6%27(인출일: 2018.8.15.).

새로운 지역청소활동은 2014년 3월에 처음 도입되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동 활동에 대한 참가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자신의 비행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사회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긍정감 및 비행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생겼다.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오사카 가정재판소에서는 그 외에도 피해자와 사회적인 관점을 도입한 「새로운 자전거 절도 방지 강습」, 「상점절도 피해를 생각하는 강습」 등의 교육적 조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과의 협력을 얻어 다양한 교육적 조치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

(5) 시사점

오사카부 소년서포트센터의 소년보호활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경찰은 자체적으로 소년경찰활동규칙을 제정하고 소년서포트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년경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소년경찰활동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재가지원 등 계속보호활동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소년경찰활동규칙과는 별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그것이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계속보호 내지 재가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특히 오사카부의 소년서포트센터는 전문성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경찰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이 연계한 가운데, 민간의 자원봉사자도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치바현 이치하라시 청소년지도센터의 보도활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치하라시 청소년지도센터는 보도활동을 위한 지역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 센터는 비행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지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위기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개인적, 환경적 조정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행의 방지와 종합적 상담기능을 통합한 이치하라시 청소년지도 센터의 시스템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시가현 나가하마시 청소년센터는 교육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청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여러 전문가로 구성되어 실시되는 「내일이 다가오는 나가하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하고 일회적인 예방교육 내지 비행성 개선 프로그램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오사카 가정재판소의 교육적 조치는 소년법 상의 시험관찰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처분을 결정하기 전의 단계에서 비행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소년법에는 시험관찰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지만, 「소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조사절차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⁶⁸⁾ 법원 소년부에서도 중국처분에 앞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오사카 가정재판소의 교육적 조치는 비행소년끼리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역의 일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시키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제도 시행에 있어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68) 법원행정처, 2014, p.154.

3) 미국

미국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와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입 현황을 살펴보면, 조기개입을 통한 비행행동 교정을 목표로 한 교육적 선도는 다이버전(diversion)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에 명시된 교육적 선도라는 영문 용어인 “Educational Guidance”는 미국의 위기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행행동 교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된 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에 명시된 대로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미 법무부 산하 소년사법을 관할하는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이 2017년에 발표한 청소년 대상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관한 대상과 목표⁶⁹⁾, 각 주의 소년사법 기관에서 제시하는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성내용 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 제도는 다이버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이버전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경찰단계에서의 학교폭력 가해자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이버전을 통한 교육적 선도, 둘째는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법원단계의 다이버전을 통한 교육적 선도, 셋째는 범법행위를 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원단계의 다이버전을 통한 교육적 선도이다. 본 절에서는 미국의 교육적 선도는 다이버전 제도와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다이버전 제도, 다이버전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세 가지 단계에서 시행되는 다이버전 운영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교육적 선도를 목표로 한 다이버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위기 청소년 대상 교육적 선도 제도에 적용될

69) https://www.ojjdp.gov/mpg/litreviews/Diversion_Programs.pdf(인출일: 2018.5.14.)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다이버전 제도와 효과성

① 다이버전 제도

미국에서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교육적 선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는 다이버전이 라고 할 수 있다. 다이버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와 정의가 존재하지만 다이버전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미 법무부 산하 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이 제시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다이버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동시에, 비행 청소년을 정식 형사사법 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개입전략이다” 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다이버전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며, 형사 사법체계의 업무량을 줄이고, 더 중요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목적을 제시 하고 있다.⁷⁰⁾

미국 내 다이버전은 성인사범에 대해 먼저 도입이 되었으며, 이후 1960년대에 소년사범에서의 다이버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Models For Change, 2011). 1967년에 “법집행과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 소년사범 테두리 밖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1976년에 소년사범을 관할하는 “소년사범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은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개발 을 위한 자금지원을 시작했다(Warner, 2014).

다이버전은 낙인이론(Wilson & Hoge, 2013)을 기반으로 한다. 즉, 한 개인의

70) 사법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rimesolutions.gov/PracticeDetails.aspx?ID=37>(인출일: 2018.5.14.)

범죄행위가 인식이 되면 해당 개인과 사회에 의해서 부정적인 낙인이 부여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되어 반사회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Becker, 1963). 낙인 이론의 주장대로 다양한 실증연구들은 다른 영향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공식적인 소년사법 시스템을 거친 소년사범들이 비공식적 소년사법을 거친 소년사범에 비해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Farrington, 1977; Huizinga, Schumann, Ehret & Elliott, 2003; Klein, 1986; McAra & McVie, 2007; Smith, Goggin & Gendreau, 2002; Tracy & Kempf, 1996).

다이버전은 미성년자들을 전통적인 공식 형사사법 절차에서 벗어난 비공식적 절차에 참여하게 하면서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의 도움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을 교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Bishop & Decker, 2006; McAra & McVie, 2007; Loeb et al., 2015). 이러한 목표는 미시건주의 Marquette 카운티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다이버전과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차이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⁷¹⁾(표 III-6)

표 III-6 소년법원과 다이버전의 차이점

소년법원	다이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hearing)이 대중에게 공개됨 •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가 지정됨 • 법정 안에서 소년사범이 판사 앞에 나타나야 함 • 부모와 분리되어 구치소, 위탁보호소 등에 수용될 수도 있음 • 법원 비용이 부과됨 • 기소되면 기록이 남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들이 비밀유지가 되며 사적임 •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지 않음 • 청소년이 부모의 보호 하에 있음 • 낮은 법원 비용이 부과됨 •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해당 청소년의 17세 생일이 28일 지난 후에 기록이 삭제됨

다이버전의 시행과 운영에 관해서는 각 주마다 이를 관할하는 법령(statute)이

71) 미국 미시건주의 Marquette 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www.co.marquette.mi.us/departments/courts/juvenile_court/docs/Brochures2016/Diversion%20Brochure.pdf (인출일 : 2018.05.14)

있으며 각 주의 다이버전 관련 법령에서 가장 주되게 다루어지는 3대 분야는 대상자 선별기준, 다이버전의 목표,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여부 등이다(Models for Change, 2011). 다이버전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주마다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1) 비행행동 유형(type)의 속성, (2) 대상자 나이, (3) 대상자의 특성과 행동, (4) 대상자가 가정, 학교 등에서 보인 행동, (5) 다이버전에 참여했던 경험과 그 당시 보였던 태도 등이다(Warner, 2014). 2011년 민간단체인 Models for Change이 실시한 36개 주에 대한 다이버전 대상자 선별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36개 주에서 30개 주가 나이를 고려하였으며, 20개 주는 초범만을 대상으로, 10개 주는 지위비행자만을 대상으로, 26개 주는 특정한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등이었다(Models for Change, 2011). 미네소타 주의 경우에는 다이버전의 기준은 제시하지만 각 카운티 마다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일관성과 공정성의 부재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Warner, 2014). 2011년 Models for Change가 실시한 36개 주에 대한 다이버전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와 관련해서는 반 정도의 주가 미성년자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Models for Change, 2011).

다양한 형태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에 관해서 그간 연구자들이 제시한 목표는 법원으로 사건이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록으로 인해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등이다(Cocozza et al., 2005; Cuellar, McReynolds & Wasserman, 2006; Pogrebin, Poole & Regoli, 1984).

2011년 Models for Change 소년 다이버전 workgroup이 실시한 36개 주에 대한 다이버전 제도의 목표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복응답 가능), 92%의 주는 공식 형사사법체계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83%의 주는 재범 감소, 81%는 청소년과 그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것, 78%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75%는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 강화, 청소년의 범죄

성 발전을 막기 위해 청소년의 필요를 빠르게 진단하기, 72%는 비용절감 등이었다 (Models for Change, 2011).

미네소타 주의 경우 1995년 7월 1일 주 법령(Statute)에 의해서 소년사법 다이버전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목표를 (1) 선고(adjudication)을 피하고 회복적 사법을 강조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2) 소년사법과 소년법원에서의 비용과 업무량을 감소시키는 것, (3) 재범을 최소화하는 것, (4)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진하는 것, (5)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6)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으로 명시하였다(Warner, 2014).

이외에 다이버전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은 다이버전이 제공되는 시점, 프로그램 내용, 비용, 시행기관 등이다. 다이버전이 제공되는 시점과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낙인을 방지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Swayze & Buskovich, 2012), 주마다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Models for Change, 2011).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1) 경찰 체포 단계, (2) 경찰 체포 후 관련 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는 단계, (3) 법원의 청원(petitioning) 단계, (4) 재판 전 보호관찰과가 소년사법을 조사하는 단계, (5) 법원단계 등이다 (Models for Change, 2011). 2011년 Models for Change 소년 다이버전 workgroup이 실시한 36개 주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복응답 가능), 39%인 14개 주는 초기 경찰단계에서, 47%인 17개 주는 접수(intake), 42%인 15개 주는 청원(petitioning), 28%인 10개 주는 선고공판(adjudication hearing) 단계에서, 14%인 5개 주는 구금단계에서 12개 주는 기타 단계에서 다이버전을 활용하였다(Models for Change, 2011).

다이버전이 실시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odels for Change, 2011). 자금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1) 소년법원, (2) 소년법원 내 검찰사무소, (3) 보호관찰소, (4) 소년사법 교정기관, (5) 민간단체, (6) 주립 약물남용

방지 기관, (7) 지역 경찰서, (8) 주/카운티 위원회, (9) 연방정부 기금 등 다양하다.

다이버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Models for Change, 2011).

- 가족 개입(family intervention) 프로그램: 가족 상담, Multi-Systemic Therapy, Functional Family Therapy
-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 개인 및 그룹 프로그램
-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 개인 상담, 정신과 치료
- 멘토링: 1:1 멘토링
- 삶의 기술 훈련 (life skill training)
- 교육지원: 학업 지원
- 직업지원: 방학중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
- 기타: 재정지원, 방과후 학습, 후속 조치, 보호자 지원 등

2011년 Models for Change가 실시한 36개 주에 대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구성내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복응답 가능), 27개 주가 약물남용치료, 26개 주가 가족상담, 정신건강 치료, 23개 주가 삶의 기술, 멘토링, 22개 주가 교육지원, 10개 주가 보호자 지원을 제공하였다(Models for Change, 2011).

미시건 주의 Marquette 카운티 법원에서 제시하는 다이버전은 다음과 같으며, 하나 혹은 여러 개, 혹은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⁷²⁾ 이를 살펴보면 다이버전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 배상, 통행금지와 같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체험형/활동형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 지역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work)
- 글쓰기 (written assignment /essay)
- 사과편지 (letter of apology)

72) 미국 미시건주의 Marquette 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www.co.marquette.mi.us/departments/courts/juvenile_court/docs/Brochures2016/Diversion%20Brochure.pdf (인출일: 2018.05.14)

- 다이버전 전문가와의 만남 (meeting with the diversion specialist)
- 배상 (restitution)
- 마약, 알코올 교육 수업(drug and alcohol education class)
- 마약, 알코올 진단 (drug and alcohol assessment)
- 무작위 마약, 알코올 단속 (random drug and alcohol screening)
- 피해자 영향/공감 프로그램 (victim impact/empathy program)
- 회복적 사법 (restorative justice)
- 분노조절 (anger management)
- 인생기술 훈련 (life skills training)
- 통행금지 (curfews)
- 친구관계 제한 (restriction of association)
- 교육적 필수 (educational requirements)

시행기관과 관련해서 2011 Models for Change의 36개 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14개 주에서 카운티 교정/보호관찰 국에서, 9개 주에서는 검찰 사무국, 민간기관에서, 8개 주에서는 법원에서, 4개 주에서는 경찰서, 3개 주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이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16개 주가 3~6개월, 8개 주가 1~2개월, 7개 주가 6~12개월, 3개 주가 1달 이내 등이었다(Models for Change, 2011). 소년사범에 대한 다이버전 제도 도입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관 협력단체인 “Models For Change Juvenile Workgroup”이 제시하는 다이버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16개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마다 명확한 정의와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Models for Change, 2011).

- 1단계: 목표설정.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기
- 2단계: 시작지점 설정. 어떤 단계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
- 3단계: 개입의 범위 설정
- 4단계: 실행.

- 5단계: 자금,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결정
- 6단계: 대상자 선정
- 7단계: 대상자 선별
- 8단계: 참여자 준수사항 결정
- 9단계: 다이버전 내용
- 10단계: 인센티브
- 11단계: 프로그램 미수료에 대한 결과
- 12단계: 프로그램 수료에 대한 기준
- 13단계: 정보활용 범위
- 14단계: 법적 자문의 역할
- 15단계: 프로그램 지속
- 16단계: 프로그램 평가

②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효과성

다이버전의 효과성에 대한 초기연구는 1983년 Blomberg가 실시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이다(Roberts & Camasso, 1991).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 연구들로는 다이버전을 경험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에 비해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결과를 제시한다(Maroney, 2012). 반면에 부정적 결과로 제시된 것은 형사사법망의 확대, 즉 “net widening” 효과이다(Niedzwiecki et al., 2015). 다이버전을 도입하면서 프로그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범, 지위비행 사범이 프로그램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위반했을 때 정식으로 사건이 처리되게 되면서 오히려 사건이 공식화 되는 현상이 초래되었음이 보고되었다(Niedzwiecki et al., 2015).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평가한 Seroczynski와 동료들은(2016)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소년사범에 대한 다이버전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국가적인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성공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재범률이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재범 억제력에 관해서 McCord와 동료들(2001), Smith와 동료들(2002)은 특정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재범 억제력을 평가하였으며, 다이버전은 전통적인 소년사범에 비해 재범 억제력이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연구자들의 메타분석 결과 역시 다이버전의 재범억제력을 보고하고 있다.

Lipsey(2009)는 195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시행된 548개의 비행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훈육, 감시 등의 처벌 중심의 프로그램들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키기까지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인지행동 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나 학문적 훈련(academic training)과 같은 기술개발(skill building) 개입은 보호관찰이나 구금 단계에서보다 다이버전의 형태로 제공되었을 때 재범억제에 효과적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010년 Petrosino와 동료들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실시된 22개 다이버전에 대한 연구, 1990년대 이후 실시된 7개의 다이버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메타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 다이버전을 받은 비행청소년이 공식 처벌을 받은 청소년에 비해 재범률이 낮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2년 Schwalbe와 동료들은 소년사범에 대한 다이버전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을 적용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18세 이하의 소년에 대해 경찰단계와 판결(adjudication) 전 단계에서 실시된 다이버전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선별작업을 거쳐 28개의 연구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에 참여한 소년사범들의 평균 연령은 12.6세에서 15.9세이며, 88%가 남성이었다. 다이버전을 받은 실험집단의 평균 재범률은 31.5%인 반면, 다이버전을 거치지 않은 소년사범의 평균 재범은 36.3%로 분석되어 다이버전이 재범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Wilson과 Hoge(2013)는 73개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14,573명의 다이버전을 받은 소년사범과 18,840명의 다이버전을 거치지 않은 소년사범의 재범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이 분석에 사용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정의로는 공식적 절차, 완전한 기소, 기소 후 전통적인 형을 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즉, 공식적인 소년사범 시스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평가한 연구만을 실험집단(experiment group)으로 분석하였다. 비교집단(control group)으로는 어떠한 대체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과 구금형을 받은 소년사범만을 분석하였다. 다이버전에 참여한 소년사범의 재범률은 31.5%인 반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소년사범의 재범률은 41.3%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다이버전 프로그램보다는 중/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재범률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Seroczynski와 동료들(2016)은 비폭력, 초범 소년사범에 대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인 Reading for Life(RFL)에 대한 재범 억제력을 분석하였다. RFL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진행되는 인성 프로그램으로서 비행청소년이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서 자원봉사자 멘토와 함께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를 하면서 관계성과 도덕성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16주간 진행된다. 경찰에 체포된 비행 청소년들이 보호관찰관에게 회부되고 보호관찰관은 사안을 검토하여 비폭력, 초범 비행청소년에게 본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통제그룹은 다이버전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사회봉사를 경험한 408명의 비폭력, 초범 비행청소년이며 194명의 실험집단과의 재범률이 비교되었다. 분석결과, 실험집단의 재범률은 39%인 반면 통제집단의 재범률은 66%였으며, RFL의 재범억제 효과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사범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이버전이 재범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반면에 Schwalbe와 동료들(2012)의 28개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다이버

전 프로그램의 재범 억제력과 공식 형사사범 체계의 재범 억제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다이버전의 재범 억제력을 주된 효과성으로 측정하지만 다이버전의 비용 효율성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다이버전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줄여주며, 구금 시설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Petrosino et al., 2010). 플로리다 주의 경우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소년사범을 구금시설에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50.8 million인 반면, 다이버전은 14.4million이 소요된다고 분석하였다(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11). 이러한 비용 효율성으로 인해 다이버전은 소년사범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atrick & Marsh, 2005).

Cocozza와 동료들(2005)은 다이버전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대상자 선별과 진단 둘째, 소년사범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셋째,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넷째,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소년사범에 대한 다이버전 제도 도입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관 협력단체인 “Models For Change Juvenile Workgroup”는 장기적인 개입, 다기관 협력과 지원, 표준화된 계약서 개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들을 다이버전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Niedzwiecki와 동료들(2015)은 매사추세츠의 소년사범 대상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분석한 후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표준화된 선별과 진단도구의 사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상자 선별과 프로그램 연결 둘째, 데이터 축적을 통한 효과성 평가와 개선 셋째, 전문화된 다이버전 전담 직원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넷째, 다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와 효과성 강화 등이다.

(2) 단계별 교육적 선도

① 경찰단계 교육적 선도

다이버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자들은 다이버전의 목표인 공식적 형사사법 체계를 벗어난 낙인방지와 조기개입을 통한 비행행동 교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단계인 경찰 체포 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Niedzwiecki et al., 2015; Coccozza et al., 2005). 미국 내 경찰단계 다이버전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 경범죄를 저지른 초범에 대해 경찰서 자체 혹은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필라델피아 학교위원회(School District)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금, 퇴학 등의 강력조치인 Zero tolerance 전략으로 인한 학교폭력 가해자 체포는 증가했지만, 학교폭력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토대로 2012년에 Zero tolerance 전략을 폐지하고 가해자 개별 맞춤형 행동교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⁷³⁾. 이에 2014년에 필라델피아 경찰서, 인적자원부(Human Service Department), 학교위원회, 가정법원, 지방검사실, 행동건강부(Behavioral Health Department), 변호사협회(defender association)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인 “경찰 학교다이버전 프로그램(The Police School Diversion Program)”을 발족하였다.

비행에 해당되는 경우는 초범이며 경미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는 폭력에 처음으로 연루된 10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경찰 체포를 하지 않고 해당 문제 청소년과 가족/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교장이나 스쿨폴리스가

73) <https://stoneleighfoundation.org/wp-content/uploads/2018/02/Philadelphia-Police-School-Diversion-Program.pdf>(인출일: 2018.5.14.).

필라델피아 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교장, 상담사와 회의를 거쳐 소년법원에 해당 청소년의 비행기록을 조사하고 기록이 없으면, “경찰 학교다이버전 프로그램(The Police School Diversion Program)”에 접수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인적자원 부서의 사회복지사가 72시간 내에 해당 청소년과 부모를 함께 만난다. 사회복지사는 해당 청소년과 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 행동을 유발한 다양한 요인에 대해 조사한다. 사회복지사는 이외에 해당 청소년의 물리적 환경이 충분한지,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지, 건강이 어떤지를 진단한다. 사회복지사는 상황을 필라델피아 경찰서에 보고하고 경찰관은 가족과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확인한다. 해당 청소년과 가족이 동의하면 “집중 예방 서비스(Intensive Prevention Services)” 제공자에게 사건은 회부되고 서비스 제공자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당 청소년을 조사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맞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케이스 매니저가 지정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사회복지사는 매달 2번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이 참여하는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를 점검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폭력으로 인한 경찰 체포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되었다.

플로리다 주는 2011년에 체포 전 단계에서 청소년을 다이버전으로 회부하는 것을 확대하는 법안인 Fla. Stat. §985. 12를 통과시켰다(Niedzwiecki et al., 2015). Civil Citation 이라는 명칭의 경찰단계 다이버전 프로그램에서는 초범이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경찰서나 비행청소년진단센터(Juvenile Assessment Center)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받고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사건파일이 공식절차 상으로 접수되지 않는다. 다이버전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50시간의 사회봉사, 상담, 약물남용 치료, 정신건강 치료, 사과편지, 배상 등 사안들을 시행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 접수되면 해당 청소년은 정밀한 진단을 받고 개별화된 처우전략이 수립된다. 이 프로그램은 사건 당 4,600달러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Niedzwiecki et al., 2015). 네브라스

카 주 역시 플로리다와 유사하게 2012년에 법령을 통과하여 경찰이 civil citations을 발급하여 초범인 비행청소년에게 체포 전 다이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Niedzwiecki et al., 2015).

미네소타 주의 경우에도 각 경찰서는 10~18세 초범인 소년사범을 외부의 다이버전 전문기관에 회부하여 다이버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더 이상 사건을 진전시키지 않지만,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사건을 해당 카운티 검사실로 보내게 된다(Niedzwiecki et al., 2015).

오하이오 주의 Fairfield 경찰도 9~17세의 초범이며 비폭력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⁷⁴⁾ 청소년 다이버전 프로그램 상담사와 비행청소년, 부모가 만나서 동의서에 자발적 참여를 서명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부모훈련, 가족상담, 마약/음주 치료 프로그램, 사과편지 쓰기, 배상, 가택구금 등이다. 부모와 청소년 모두 명시된 조건을 이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18세가 되었을 때 해당 사건기록은 삭제된다. 해당 청소년, 부모,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의 캠브리지 경찰서 Youth & Family Service 유닛은 2007년에 캠브리지 건강협회(Cambridge Health Alliance), 캠브리지 학교위원회, 캠브리지 복지부와 함께 비폭력, 초범인 소년사범에 대한 경찰단계 다이버전 프로그램인 “Safety Net Collaborative” 프로그램⁷⁵⁾을 발족하였다. 관련 기관과의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가족, 학교, 정신건강 서비스, 청소년 활동,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성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함이다. 대상 청소년의 필요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개별 맞춤형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1) 정신건강 서비스, (2) 청소년 발달 활동, (3)

74) <https://www.fairfield-city.org/476/Juvenile-Diversion-Program>(인출일: 2018.5.14.).

75) <http://www.cambridgema.gov/cpd/communityresources/safetynetcollaborative>
(인출일: 2018.5.14.)

멘토링 연결, (4) 청소년 지원 경찰 (Youth Resource Officer 지정)을 통한 학교 안전 촉진, (5) 가정 방문을 통한 청소년과 가족 만남, (6) 회복적 사법과 중재, (7) 가족지원 등이며, 각 경찰서에 지정된 청소년지원경찰이 이러한 모든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를 관리/감독한다.

조지아 주의 Clayton 카운티에서는 소년법원에서는 경찰, school district가 연합하여 School Referral Reduction Protocol에 입각하여 학교에서의 체포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⁷⁶⁾ 경찰은 첫 번째, 낮은 레벨의 비행에 대해서는 경고를 준 후에, 두 번째 비행에서는 Conflict Diversion Program or Mediation Program 으로 회부된다. 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 후에 학교 내 체포를 80%까지 감소시켰다고 보고되고 있다.

② 지위비행 위반자 교육적 선도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와 더불어 미국 내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지위비행(status offense) 위반자에 대한 대안적 처우이다. 미 법무부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이 제시하는 지위비행의 정의는 “비범죄적 행위로, 위반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간주되는 행위”이다.⁷⁷⁾ 즉, 미성년자가 형법에 위배되는 엄연한 범법행위를 한 경우는 비행청소년(juvenile delinquents)라고 지칭하며, 반면에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행위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미성년자를 지위비행 위반자(status offender)로 규정한다.⁷⁸⁾

76) <https://www.judiciary.senate.gov/imo/media/doc/12-12-12TeskeTestimony.pdf>. (인출일: 2018.5.14.).

77) https://www.ojjdp.gov/mpg/litreviews/Status_Offenders.pdf(인출일: 2018.5.14.).

78) 미국 미시건주의 Marquette 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www.co.marquette.mi.us/departments/courts/juvenile_court/docs/Brochures2016/Diversion%20Brochure.pdf(인출일: 2018.5.14.).

지위비행은 우리나라 소년법 상에 제4조3항 우범소년⁷⁹⁾으로 분류된 행동과 유사하다. 우리나라가 우범소년에 대해 공식적인 개입⁸⁰⁾을 제한적으로 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우범소년에 해당되는 지위비행을 각 주마다 법령으로 명시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2015). 지위비행(Status Offense)이라는 용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동(Child in need of Aid)”, “감독이 필요한 아동(Children in need of supervision)”,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Family in need of services)”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미 법무부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이 제시하는 지위비행의 가장 전형적인 행동은 다음의 5가지이다.⁸¹⁾ 무단결석(Truancy), 가출(runaways), 통금위반(curfew violation), 음주(Underage drinking), 일반적인 제어불능(general ungovernability) 등이다. 통금위반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11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청소년들은 거리에 있으면 안 되며, 종교행사, 직장관련, 비상상황 등은 예외이다.

지위비행제도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부모, 학교, 지역사회를 도와 위기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가족갈등이 심화되고 학교에 더 안가거나 비행이 발전되는 부작용도 보고된바 있다.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지위비행에 대한 개입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OJJDP, 2015). 1974년에 제정된 “소년사법과 비행예방(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79)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80) 우범소년에 대한 소년법 상에 명시된 개입은 다음 두가지이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81) https://www.ojjdp.gov/mpg/litreviews/Status_Offenders.pdf(인출일: 2018.5.14.).

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소년사법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조건이 있는데, 소년과 성인의 분리구금과 지위비행자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이다. 이러한 필수조건의 의도는 지위비행 위반자를 소년사법 절차에서 벗어나서 덜 제한적이며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강화한 채우를 하기 위함이다(OJJDP, 2015). 그러나 1980년에 수정된 동법에 “타당한 법원명령 예외(Valid Court Order Exception)”에 따르면 지위비행자가 법원의 직접적인 명령, 예를 들면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할 것” “통금(curfew) 위반을 멈출 것”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지위비행 위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Maroney, 2012). 이러한 수정 법률은 판사의 명령을 어긴 지위비행 위반 청소년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들과 같은 시설에 구금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Hughes, 2011).

지위비행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찬/반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부모 및 보호자, 경찰, 학교에서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고발(complaint)을 소년법원 내의 접수와 다이버전 유닛(intake & diversion unit)에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Maroney, 2012).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다이버전이 적용되고 발전되게 된 것은 법원의 업무 과대와 청소년의 낙인방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이다(Hughes, 2011). 주에 따라 소년법원 보호관찰국(probation office)을 통해 혹은 지방검사실(Prosecuting Attorney’s office)을 통해 지위비행 위반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나 갈등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분석에 따라 각 주의 카운티 내의 소년법원에서는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Arthur & Waugh, 2009).

뉴욕 주의 경우에는 PINS(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⁸²⁾ 시스템을 통해

82) PINS (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 CHINS (Children in need of supervision), FINS (Families in Need of supervision) 시스템을 통해 접수

지위비행 위반 청소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Arthur & Waugh, 2009). 국가의 개입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청소년을 기존의 16세까지 접수를 받던 것을 18세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개입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절차를 살펴보면, 법원 내 보호관찰부가 PINS을 통해 부모의 진정을 받고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후에 새롭게 구축된 지역사회 기반 기관인 “Family Keys”에 사건을 의뢰하고, 패밀리 키는 2시간에서 48시간 내에 해당 가정에 상담사를 파견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에 “단기 개입 계획(short-term intervention plan)”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에 연결을 한다. 패밀리 키는 2~3주간 가족들이 지원계획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일한다. 이 단기 계획이 충분치 않을 경우 정신건강부(mental health department)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Multi-Systemic Therapy 혹은 Family functional Therapy를 활용한다. Thruway 카운티의 경우 PINS를 통해 접수된 사건을 법원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Family Assessment Program(FAP)를 2002년에 발족시켜서 보호관찰부에 사건을 접수시키지 않고, 긴급사안만을 보호관찰부에 접수시키고, 아동보호국의 경험있는 전문가가 사건을 접수해서 사건을 즉각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한다. Steuben 카운티는 학교에서 PINS를 통해 접수되는 사건을 줄이고자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고 접수 전에 학교에서 충분히 노력을 했는지 진단하도록 하였다(Arthur & Waugh, 2009).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다이버전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소년사범의 개선을 추구하는 “State Advisory Groups”에 발표한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에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다이버전을 활용할 것이 권고되었으며, 많은 주는 법원 공무원이 다이버전을 비공식 단계에서 지위비행 위반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로리다 주, 뉴멕시코, 뉴욕 주, 코네티컷 주의 경우, 지위비행 사건이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 다이버전을 의무적으로 시행하

도록 하기도 한다(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2015).

전국 소년법원과 가정법원 판사 위원회(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와 소년사법 연합(Coalition of Juvenile Justice)은 2014년에 “지위위반으로 기소된 청소년 처우에 대한 국가 표준(the national standards for the care of youth charged with Status Offense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위비행 청소년 문제는 교육, 사회적 서비스, 지역사회기반, 복지적 접근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다이버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2015). 본 보고서에 의하면 다이버전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청소년의 재범률은 31.5%인 반면에 공식 절차를 통한 지위비행자의 재범률은 41.5%이며, 최소 2%의 재범을 보인 다이버전 참가자들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다이버전을 실시하면 법원을 통한 명령 위반 시 지위비행 위반자가 구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매년 미국은 소년의 구금에 5.7 billion을 소비하는 반면에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1달러를 투입하면 13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비용 효율성을 강조하였다(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2015).

법원단계에서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다이버전을 실제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시건 주의 Marquette 카운티의 경우 소년법원(juvenile court)내의 지방검사실(Prosecuting Attorney’s office)에 부모, 경찰, 학교 측에서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처분해달라는 항의(complaint)를 접수할 수 있다.⁸³⁾ “조치 요청을 위한 항의, 비행 진행(complaint request for action, delinquency proceedings)” 이라고 불리는 양식이 지방검사에게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법원에 보내고, 법원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이버전 회합이나 사전조사에 참석하도록 통지한다. 다이버전 전문가는 상담과 진단을 통해 필요한

83) 미국 미시건주의 Marquette 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www.co.marquette.mi.us/departments/courts/juvenile_court/docs/Brochures2016/Diversion%20Brochure.pdf(인출일: 2018.5.14.).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Massachusetts Youth Screening Instrument Michigan Juvenile Assessment Survey 등이 해당 지위비행 위반 청소년을 진단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다. Marquette 카운티 법원에서 제시하는 다이버전 프로그램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경미한 범죄(misdemeanor) 혹은 지위비행(status offense) 초범에게 주로 부과하며, 8~16세, 10세~17세, 지위비행으로는 가출, 고집, 무단결석 등. 경미범죄는 영업장 절도, 음주 등이다. 자발적 프로그램이며 소년법원의 전문가, 해당 소년, 부모가 함께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소년사법 법령과 아동법령(Juvenile Justice Code, Children’s Code)”는 지위비행 위반자에 대한 다이버전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Children’s Law Center, 2016). 지위비행 사건이 접수되면 소년사법부(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홈페이지에 이용 가능한 지역 자원의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법 센터(Children’s Law Center)”에서 운영되는 “지위 위반 테스크 포스(Status offense Task Force)”는 접수된 청소년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정신건강 부(Department of Mental Health)에서도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Children’s Law Center, 2016).

③ 법원단계 비행청소년 교육적 선도

지위비행은 성인이 아닌 행위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는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범법 행위이다. 비행청소년 대상 다이버전은 일반적으로 소년법원(juvenile court)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미한 범죄와 초범의 경우 다이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이버전을 접수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는 법원 내의 보호관찰소 혹은 검찰 사무소(district attorney’s office)이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지만 최근에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를 통해 시행된다(Niedzwiecki et al., 2015).

미니어폴리스의 소년법원은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미니어폴리스 피해자-가해자 중재센터를 통해 비폭력, 초범에 대해 다이버전의 일환으로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피해자-가해자 중재 모임을 진행한다. 대다수의 사례는 법원과 보호관찰소에 의해 회부되지만 경찰과 법원 내 검찰 사무국에서도 회부되기도 한다(Niedzwiecki et al., 2015).

콜로라도 주의 경우 1978년에 법원 내에 “비행 청소년 서비스 부(Juvenile Offender Services Diversion)”가 설립되었으며, 10~18세의 비폭력, 비 성폭력, 초범에게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 검찰사무소에서 본 사건을 다이버전 부서로 회부하면, 해당 부서에서 선별, 진단 등을 거쳐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된다(Models for Change, 2011).

오하이오 주의 해밀턴 카운티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10~17세 소년 사범의 사건에서 초범이며, 경미범죄인 경우에는 다이버전을 적용한다. 다이버전의 내용으로는 사회봉사, 상담, 반성문 쓰기, 비공식적 보호관찰을 적용하고, 1년 동안 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관련 기록은 삭제된다. 393명 다이버전 참여자에 대한 평가에서 10.1%만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었다(Models for Change, 2011).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 소년법원 재판 전 단계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카운티/시 검찰이 해당 비행청소년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소년법원은 청소년 다이버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Juvenile Diversion Program Guidelines)를 개발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⁸⁴⁾ 다이버전의 목표와 목적에 관해서는 네브라스카 주 법령 43-260.03에 명시되어있으며, 프로

84) https://ncc.nebraska.gov/sites/ncc.nebraska.gov/files/pdf/juvenile_justice_materials/DiversionGuidelines.pdf(인출일: 2018.5.14.).

그램 참여자의 권리와 보호(비밀보장, 자발적 참여, 법률 조력 등), 프로그램 내용 (피해자 사과, 중재, 사회봉사, 부모참여, 배상, 학교생활 감독, 마약테스트, 등), 비용, 기간, 프로그램 수료와 철회, 가능한 대상 등을 명시하였다.

(3) 교육적 선도 (다이버전) 프로그램

① 플로리다 Juvenile Diversion Alternative Program (JDAP)⁸⁵⁾

개인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소년사법부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에서 회부하고 주 검찰 사무국에서 승인한 17세 이하 비행청소년만이 참여할 수 있다. 재범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대상 청소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목표로 한다.

가. 대상 청소년 기준

- 경미범죄 위반자 (misdemeanor offender)
- 두 번째 경미범죄 위반자
- 중범죄 초범

나. 제공되는 서비스 (개인의 필요 기반)

- 사회봉사, 통금, 배상 등을 포함한 법원 명령 준수사항 관리/감독
- 약물남용을 했던 기록이 있는 소년사범에 대한 랜덤 소변검사
- 개인의 필요와 위협성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 및 개인/그룹 상담
- 분노조절 교육
- 교육적 훈련
- 나이에 적합한 직업훈련

85) http://www.lwvokaloosa.org/documents/JD-JDAP_brochure.pdf(인출일: 2018.5.14.).

- 약물남용, 정신건강 서비스

다. 서비스 진행

JDAP 케이스 매니저가 최소 한 달에 한번 대면 만남을 통해 관리/감독을 한다. 개별 맞춤형 처우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외부 자원과 연결한다. 케이스 매니저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조율하고, 회부하고, 연결하고 관리한다.

라. 프로그램 기간

개인마다 다르며 보통 2~4개월 지속된다.

마. 프로그램 수료

개별적으로 수립된 계획 안에 있는 서비스와 준수사항을 성공적으로 충족시켰을 때 수료된다.

② 캘리포니아 SHORTSTOP⁸⁶⁾

1980년부터 시작된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청소년 구금대안(Juvenile Detention Alternative Initiative)” 노력의 일환으로 소년사범과 그 가족을 지원한다. 검찰 기소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으로서 회복적 사범 계획을 수립하여 소년사범에게 의사결정 전략을 통해 책임감을 가르친다. 3대 원칙은 조기개입, 부모 포함, 그래픽 법정 이용을 통한 재범방지이다. 대상 청소년은 12세~18세이며 부모의 참여는 의무다. 대상 청소년의 비행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절도, 강도, 무단결석, 무기소지, 반달리즘 등이다. 2017년 한해 299명의 청소년과 366명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하였으며, 92%가 저소득층 가정이었다.

86) <http://ocbarfoundation.org/program/shortstop/>(인출일: 2018.5.14.).

보호관찰국, 지역 경찰서, 관할 교육청이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시도한다. 즉, 지역 경찰서에서, 학교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회부되어 온다. 프로그램을 잘 완수하면 해당 비행은 공식기록에 남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90%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서비스로는 자기통제, 친구 압박 거절 기술, 부모 모니터링, 학교유대, 학업능력 강화, 이웃 유대감 강화, 친사회적 활동 참여가 있다.

나. 교육진행

1시간의 진단 평가 시간, 2번의 4시간 짜리 프로그램 진행, 담당자의 관리/감독 4시간짜리 프로그램은 법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갱, 약물남용, 갈등해결, 개인적 책임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은 법정에서 진행되며 소년사범 당사자와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 유치장을 방문하고, 가석방자를 만나며, 판사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 진행되는 의무사항도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과 법교육 자료를 읽어야 하며, 에세이 쓰기 (예를 들어 그들의 시는 낙서를 지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와 지역사회의 전문가 인터뷰: 미래 진로 설정과 긍정적인 인생 선택을 배우기, 글쓰기, 목표 설정, 가족 간 의사소통 연습이 진행된다.

다. 개별계획 수립

개별 회복적 사법계획이 수립되는데 여기서는 재정적 배상, 피해자에 대한 사과 편지, 사회봉사 등이 포함된다. 사회봉사의 경우 21시간을 완료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약물남용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부 기관에 연계된다.

③ 미네소타 미네톤카(Minnetonka) 경찰서 다이버전⁸⁷⁾

미네소타 주의 미네톤카 경찰서는 10~18세 초범을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 회부한다. 프로그램을 잘 수료하며 더 이상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지만,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필수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행청소년은 기소를 위해 Hennepin 카운티 검찰로 넘겨지게 된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지역사회 전문기관인 Northern Star Juvenile Diversion Program에서 맡아서 진행하게 되고, 이 단체는 1996년에 소년사범을 대상으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가. 대상자

남/여, 10~17세,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고, 경범죄, 학교나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한다.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다이버전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나. 회부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회부되면 청소년과 부모(보호자)는 프로그램 디렉터나 다이버전 담당자를 2주 내에 만나야 한다. 개시편지(Initial letter)라고 불리는 메일이 부모(보호자)에게 보내진다. 경찰서 혹은 센터에서의 만남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해당 청소년에 대해 알게 된다. 청소년과 부모 모두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87) <https://eminnetonka.com/youth/juvenile-diversion-program>(인출일: 2018.5.14.).

다. 등록비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는 등록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등록비는 75달러이며, 이는 시, 카운티, 주의 자금, 기부금으로 지원된다.

라. 그룹 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이버전 그룹은 15~20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이 형성될 때까지 대기자 명단에 있게 된다.

마. 프로그램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 개선, 의사소통방법, 갈등해결, 재범 예방을 배운다.

- 10대 프로그램: 13~17세. 10시간. 1주일에 한번 만남. 최소 12시간 사회봉사. 만남과 활동은 사법체계, 경찰, 교정체계, 알코올과 마약 교육, 자원봉사, 범죄효과, 개인적 인식과 성장, 학교폭력, 갈등해결, 의사결정 기술. 수업은 저녁에 진행
- 어린 10대: 10~12세. 토요일 3시간짜리 한번 프로그램. 2시간 자원봉사. 부모/보호자의 참여는 의무. 수업내용은 학교폭력, 법집행, 갈등해결, 공감

바. 기타 사항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프로그램 디렉터가 경찰서에 이를 고지하고,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성인 자원봉사자의 참여: 각 수업에 전과기록이 없는 21세 이상의 2~3명의 훈련받은 성인 그룹 리더가 배정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은 Northern Star Council and Juvenile Diversion 직원이 관리한다.

④ Reading for Life (RFL)⁸⁸⁾

인디애나 주에서 시행하는 비행청소년 대상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서 Reading for Life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호관찰관이 회부를 한다. 훈련 받은 자원봉사자 멘토가 이끌고, 문학과 고전 미덕을 소규모 그룹으로 만나서 공부한다. 목적은 도덕성을 함양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것이다. 평가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재범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가. 대상자

- 13~18세의 비폭력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
- 초범은 물론 두 번째 비폭력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나. 교육 형태와 내용

- 소규모 독서 모임
- 초기 진단단계에서 청소년은 3분간의 읽기 평가를 받게 되고 수준에 맞는 그룹에 배치
- 대상자는 5명 이내로 구성
- 2명의 훈련받은 멘토가 수업 진행
- 1개~ 5개의 문학작품을 읽음
- 구두로 읽기, 멘토가 제시한 질문에 대한 에세이 쓰기, 문학작품 등장인물에 대한 토론
- 독서한 내용과 관련된 지역사회 봉사 실시(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된 독서를 한 후에는 지역의 강을 청소하는 프로젝트 실시)
-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참여자가 부모, 보호자, 멘토, 직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 실시

88)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rimesolutions.gov/PracticeDetails.aspx?ID=37>; Reading for life 홈페이지 참조 <http://www.readingforlife.us/>(인출일: 2018.5.14.).

- 12주간 지속됨
- 1주일에 2번 모임

다. 프로그램 이수

-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비행의 기록이 고용과 학업에 제시되지 않음
- 성인이 된 후에 최소 1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참여자들은 국가에 비행 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음

라. 멘토

- 한 그룹당 두 명의 멘토 지정
- 멘토는 자원봉사자
- 12주간 이론과 실제 훈련을 받음
- 멘토들은 1년에 4번 진행되는 트레이닝에 참여

마. 비용

- 한 명당 \$1,000의 비용이 소요됨
- 멘토가 자원봉사자이므로 비용이 절감됨

(4) 시사점

미국의 교육적 선도인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의 목표달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가족참여, 개별 맞춤형 처우, 장기적 처우, 다기관 협력, 민간단체의 참여, 동의서 및 계약서 작성 등이다. 첫째,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McCord와 동료들(2001)은 다이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동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실제로 알라바마 주의 제퍼슨 카운티의 경우, 자녀사건을 지위비행으로

접수한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5회기의 상담에 참여하도록 한다. 만약 자녀가 상담을 거부하면, 부모와 상담사가 함께 처우계획서를 만든다. 2011년 Models for Change가 실시한 36개 주의 다이버전 설문조사에서도 가족상담 프로그램이 함께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개별 맞춤형 처우의 개발과 장기적 처우를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 프로그램이며,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상자가 배치되는 형태인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회부된 아동·청소년을 사회복지사나 관련기관 전문가가 면담을 통해 해당 아동·청소년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개별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매사추세츠 캄브리지 경찰서의 “개별 맞춤형 플랜”, 뉴욕 주의 “단기개입계획” 캘리포니아 SHORTSTOP 프로그램의 개별계획 수립 등이 그 예이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개입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3~6개월간의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콜로라도의 경우 1978년에 법원 내에 Juvenile Offender Services Diversion 부서가 설립되었으며, 10~18세의 비폭력, 비 성폭력, 초범에게 적용된다. 지역 검찰 사무소에서 본 사건을 다이버전 부서로 회부하며 해당 부서에서 스크리닝, 진단 등을 거쳐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된다(Models for Change, 2011).
- 아리조나 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의 “the CUTS” 프로그램에서는 무단결석이 접수되면 보호관찰관, 학교직원이 아동과 가족을 만나서 회의를 통해 무단결석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봉사, 튜터링, 결석예방교육 등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테네시 주의 멤피스 지역 검찰국에서는 “멘토링 기반 무단결석 감소 프로그램(Mentoring Based Truancy Reduc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무단결석하는 중학생을 만나서 상담, 학교 출석, 공부 등을 도와주는 멘토를 지정해주고,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한달에 최소 8시간을 만나도록 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검사, 학교대표, 멘토가 만나 논의를 한다.

셋째, 다기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은 형사사법기관만이 개입하여 실행할 수 없다. 특히 학교와의 협력체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개입과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본 절에서 검토한 매사추세츠 캄브리지 경찰서, 필라델피아 경찰서는 학교,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이버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한다. 관련 지방 정부부서가 다이버전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상자를 회부하여 개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지위비행 위반자의 경우에 법원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비영리 단체들이 위기 가정을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뉴욕 주의 경우에도 오렌지카운티는 비영리 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지위비행 가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미니어폴리스의 경우에도 민간의 피해자-가해자 중재센터를 통해 다이버전을 실시하고 있다. 미네소타의 미네톤카 경찰서 역시 Northern Star Juvenile Diversion Program이라는 전문단체에 다이버전 대상자들을 회부하고 있다.

다섯째, 동의서 및 계약서를 작성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이다. 참여에 대한 동의서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당사자인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이해하고 서명해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도 제시된 오하이오 주 페어필드 경찰서의 계약서처럼 모든 다이버전 프로그램에서 참여를 위한 동의서와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영국

영국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비공식적으로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한 비행청소년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처벌과 처분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단계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이버전(diver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동일하게 교육적 선도(educational guid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영국의 교육적 선도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유사한 목적과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다이버전 제도를 살펴보았다.

다이버전을 받게 되는 대상은 위기청소년과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 두 개의 집단이 해당되며,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받도록 회부하는 주체는 경찰, 부모, 사회복지사, 교사, 검찰, 법원 등이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에서, 법원단계에서 모두 다이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Wilson, Brennan & Olaghere, 2018).

특히 경찰단계에서는 경고(caution), 회복적 경고(restorative caution), 최종 경고 및 견책(final warning/reprimand)을 통해 다이버전으로 회부를 할 수 있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청소년회합(youth conferencing)을 통해 기소대신 다이버전 형태의 처분을 제공할 수 있다(Taylor, 2016). 해당 비행청소년에게 동의서와 설명서를 제공하고, 비디오를 통해 회합을 소개하며, Youth Justice Agency 코디네이터가 경찰, 피해자, 가해자가 참여하는 회합을 주재하게 된다(Wilson et al., 2018).

다이버전을 위한 회부를 접수하고 진단해서 이를 실행하는 기관은 각 지역의 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ing Team)이다. 소년범죄대응팀은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이 제정됨에 따라 소년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다기관이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졌다(Taylor, 2016). 소년범죄대응팀⁸⁹⁾은 Youth Justice Board 의 감독 하에 있으며 기존의 juvenile justice department의 역할을 수행한다. 소년범죄대응팀이 하는 역할은 (1)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경찰단계에서 소년사범에 대한 심문 시 적절한 어른이 동석할 수 있도록 경찰을 도우며, (2) 법원에서 소년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보고서를 제공하고, (3) 청소년이 사회내 처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돕고, (4) 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며, (5) 시설에서 퇴원하는 아동·청소년을 관리·감독하며, (6) 소년의 배경을 조사하고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우며 (7) 다이버전 등 지역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청소년 대상 교육적 선도에 해당되는 다이버전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 정부의

89)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youth-offending-team>(인출일: 2018.5.25.).

“범죄, 사법, 법(crime, justice, law)” 공식 홈페이지 상에 제시된 청소년 대상 다이버전과 잉글랜드의 서퍽(Suffolk) 주의 비행청소년 대상 다이버전, 민간단체가 제시하는 다이버전 프로그램, 정신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특수 다이버전 등을 살펴보았다.

(1) 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Youth Crime Prevention Programmes)⁹⁰⁾

영국은 비행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판을 통해 구금시설인 “secure centre for young people” 로 보내지는 처분 외에 “your crime prevention programmes”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며, 가족과 부모를 포함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 청소년은 ① 경찰에서 회부된 아동·청소년, ② 범죄를 저지를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③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이며, 지역 council의 YOT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다른 단체, 청소년지원 자선단체들이 운영하기도 한다.

청소년이 비행예방 선도프로그램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지역의 YOT가 해당 프로그램에 회부해야 하지만 교사, 사회복지사, 부모가 회부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복지사(youth worker)들은 해당 아동·청소년들을 진단한다. 진단의 목적은 예방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지원이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진단을 위해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과 배경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된다.

청소년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청소년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당사자나 가족이 동의하는 “개입계획(intervention plan)”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해당 청소년에게 무엇이

90) <https://www.gov.uk/youth-crime-prevention-programmes>(인출일: 2018.5.25.).

기대되어지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상세히 묘사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그룹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1:1로 운영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거나 혹은 학교와 직업에 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멘토링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멘토링을 제공하는 멘토는 경찰이나 학교와 연관된 사람들이 아니며 특별히 훈련된 자원봉사자이며, 멘토가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학교폭력 대응, 취업과 입학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멘토링의 기간제한은 없다.

가족참여와 관련해서는 가족과 부모는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돕는데 함께 한다는 전제하에 가족과 부모는 자녀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거나, 자녀가 해야 할 의무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부모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자발적 참여이긴 하지만 의무적 교육도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청소년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거나 분리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양육기술 향상 및 가정에 비행을 유발하는 것이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youth inclusion programmes’ and ‘youth inclusion and support panels’ 등의 주된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① Youth inclusion programmes은 8~17세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며, 6개월간 지속되지만, 필요하다거나 도움이 되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 ② Youth inclusion and support panels은 8세~13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아동복지사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해당 아동·청소년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줄 지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학교생활 지원,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 문제 치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서퍽 (Suffolk)주 소년사법 서비스(Youth Justice Service)⁹¹⁾

서퍽(Suffolk) 주는 영국의 잉글랜드 동남부에 위치한 주로서 소년사법 서비스(Youth Justice Service) 부서의 YOT를 통해 비행에 연루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퍽 주에서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분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early intervention(diversion), out of court 처분, court outcome 처분이다. 다이버전이 활용되는 단계는 조기개입, 법정 밖 등 두 개의 처분이며, 서퍽 주에서 매년 발행하는 “Youth Justice Plan”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다이버전은 증가하고 있으며, Suffolk대학에 의해 실시된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들을 반영하고, 추천사항들을 실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처분에서 교육적 선도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기개입: 다이버전 (early intervention, diversion)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비행을 저지를 위기에 처한 청소년, 혹은 비행을 저질렀지만 초범이거나, 경미한 비행일 경우, 경찰은 해당 청소년을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회부해서 더한 비행을 예방하고자 한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YOT는 아동복지국, 경찰과 부모 및 보호자, 교육기관으로부터 회부를 받는다. 이러한 회부가 개입을 위한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진단한다. Youth Justice Service가 제시한 회부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나이는 8-17세
- 가정/지역사회/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

91) <https://www.suffolkjos.co.uk/>(인출일: 2018.5.25.).

- 가출/무단결석자
- 음주와 약물 사용
-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부모의 자녀
- 학교퇴학 당한 아동·청소년
-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아동·청소년
- 해로운 성적 행동을 하는 아동·청소년


다이버전으로 회부하는 것은 리플릿에 소개된 바와 같이 아동복지국, 교육기관, 경찰, 부모 및 보호자가 문제가 되는 아동·청소년을 지역의 YOT에게 회부하는 것이며, 회부 후에는 해당 회부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진단·평가된다. 회부를 돕기 위해 회부안내서(guidance)와 회부서식(referral form)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회부서를 쓰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회부안내서에 따르면 모든 회부를 위해서는 진단 및 개입에 대한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필수이다. 따라서 동의서 서식이 제공되면 동의서와 회부서가 함께 보내져야 한다. 회부서식을 작성하는 경찰, 부모 및 보호자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회부서는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섹션 1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로 이름, 주소, 성별, 생일, 연락처, 인종, 우려되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상태와 진단, 가족 정보, 사회복지 수혜 상황 및 이력, 기타 관련 있는 아동복지기관, 교육상태, 교육 지원 이력 등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적도록 한다(그림 III-12).



**Divers ion
Programme**

**Referral Form /
Screening Tool**



Part 1: To be completed by the Referrer

Section 1: Information about the Child / Young Person

Name: Click here to enter text. **Other name:** Click here to enter text.
Date of Birth: Click here to enter text. **Age:** Click here to enter text.
Gender: Male / Female / Other
Address: Click here to enter text.

Postcode: Click here to enter text. **Mobile Tel:** Click here to enter text.
Home Tel: Click here to enter text.

Ethnic Classification (based on 2001 census):
White
 British Irish Other White
Black / Black British
 Caribbean African Other Black
Asian / Asian British
 Indian Pakistani Bangladeshi Other Asian
Chinese / Other Ethnicity
 Chinese Any Other
Mixed
 White / Black Caribbean White / Black African White / Asian Other Mixed
Information not obtainable:

Health:

GP Name: Click here to enter text.
Address: Click here to enter text.

Are there any physical or emotional health concerns or diagnoses? Yes / No
If yes, please add details:
Click here to enter text.

Family Details

Mother: Click here to enter text.	Father: Click here to enter text.	Other: Click here to enter text.
Address (if different): Click here to enter text.	Address (if different): Click here to enter text.	Address (if different): Click here to enter text.
Tel: Click here to enter text.	Tel: Click here to enter text.	Tel: Click here to enter text.

* 출처: <https://www.suffolkjos.co.uk/diversion/making-a-referral>(인출일:2018.07.07.).

그림 III-12 회부서 섹션 1

섹션 2는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위기와 예방적 요소(Risk and Protective factors to offending/anti-social behavior)”로서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를 위험을 표시하는 행동과 상황의 리스트들이 있다. 개인과 가족의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행동들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그림 III-13). 개인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단한다.

- 위험한 행동(risk): 위험한 상황을 가지길 좋아한다, 공격적이고 화났다, 음주와 약물, 죄책감과 공감능력 결여, 학교/가정/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무단결석 및 가출, 자살시도 및 자해,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은 저지르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 감정적인 고군분투(낮은 자존감,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
- 보호적: 낮은 충동성, 옳고 그름을 아는 것, 긍정적인 태도(도움을 주고 협력적인 것) 증거와 기타 관련 정보

학교와 관련해서는 위기상황으로서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교 퇴학여부, 학업성취도, 학습장애 등을 체크하고, 친구와 관련해서는 친구와의 관계성, 비행 친구 등을 기술한다. 가족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낮은 관리감독, 유대감 부족,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경험, 추가적인 지원요청, 보호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보호자의 약물과 술 문제, 범죄 연루된 가족, 가족갈등, 가족의 안정성, 적절한 관리/감독 등이 조사된다.

섹션 3은 “회부 이유(Reasons for Referral)”로서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기술해야 한다(그림 III-14). 첫째, 가정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해 어떤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해당 가정의 장점과 보호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기술한다. 둘째, 가정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기술한다. 셋째, 무엇이 성취되기를 원하는지, 무엇이 바뀌길 원하는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회부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 후 해당 지역의 YOT에게 보낸다.

Section 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o Offending / Anti-Social Behaviour (ASB)

Please select as many factors as you believe apply to the child / young person being referred and provide evidence for each.

1. Individual

- Risk:**
- Risk-taker
 - Aggressive / Angry
 - Uses alcohol / substances
 - Lack of guilt / empathy
 - Gets into trouble in school / at home / in community
 - Runs away from home / Truant
 - Self-harmed / attempted suicide
 - Positive attitude to / involvement in ASB / crime
 - Struggles emotionally (low self-esteem; worries about past/future)
- Protective:**
- Low impulsivity
 - Knows right and wrong
 - Positive attitude (helpful and co-operative)
- Evidence and/or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Click here to enter text.

Family

- Risk:**
- Moved a lot / Different carers
 - Family resolve issues with aggression
 - Poor supervision / Lacks boundaries
 - Parents require additional support
 - Parent / Carer misusing alcohol or drugs
 - Child / YP experienced abuse / violence in the home
 - Parent / Carer has health (including mental) issues
 - Family member(s) involved in ASB / crime
- Protective:**
- Stable family structure
 - Appropriate supervision and discipline
 - Infrequent parent / child conflict
- Evidence and/or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Click here to enter text.

School

- Risk:**
- Poor attitude to school
 - Low academic achievement in school
 - Excluded from school
 - Learning disability
- Protective:**
- Academic achievement
- Evidence and/or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Click here to enter text.

Peer Group

- Risk:**
- Poor relationships with friends
 - Friends involved in ASB / crime
 - Friendship group has changed
- Protective:**
- Has some friends not involved in ASB / crime
- Evidence and/or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Click here to enter text.

* 출처: <https://www.suffolkvos.co.uk/diversion/making-a-referral>(인출일: 2018.7.7.).

그림 III-13 회부서 섹션 2

Section 3: Reasons for Referral

What is working well for the child / young person and family?

This section should focus on strengths and protective factors within the family.
How will these actually improve the situation?

Click here to enter text.

What are we worried about?

What are the key issue and difficulties facing this child / young person and/or family?
What impact is this having on the child / young person and/or family?

Click here to enter text.

Next steps - what do we want to achieve, what needs to change and who needs to do it?

Based on your analysis, professional judgement and conversation with the family, what outcome do we want to achieve and what needs to be done to achieve it? Include what you have agreed with the family.

Click here to enter text.

Many thanks for completing this referral form.

Please add your details below and return the form to your YOS team

Name: Click here to enter text.

Date: Click to enter text.

Agency: Click here to enter text.

Tel: Click to enter text.

Address: Click here to enter text.

Email Click here to enter text.

* 출처: <https://www.suffolkvos.co.uk/diversion/making-a-referral>(인출일: 2018.7.7.).

그림 III-14 회부서 섹션 3

회부서는 동의서와 함께 보내야 하는데 내용은 아동과 자신에 관한 정보가 다른 기관과 전문가에게 공유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해당 부모나 보호자는 물론 해당 아동·청소년의 서명이 함께 되어야 한다(그림 III-15).



Consent Form



We have had the Diversion Programme explained to us and we agree to a referral being made to the Youth Offending Service Diversion Programme.

The Youth Offending Service will need to collect information for their assessment so that they can understand what help your child and you may need. They may need to share and obtain information with other professionals and agencies so they can help us provide the support and help that is needed.

I agree that information about me and my child can be shared with other agencies and professionals.

The sharing of information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procedures of Suffolk Youth Offending Service, information-sharing protocol.

I understand that information is stored about me / my child,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discuss what this means and consider the content of 'information we hold about you leaflet': www.thesource.me.uk/assets/Uploads/Information-we-keep-about-you/14310-CYP-InformationAboutYou-Leaflet.pdf

Parent / Carer to complete:

What do you feel is going well for your child?

What are you worried about?

What do you feel needs to happen?

Name of young person:	
Signature:	Date:
Name of parent / carer:	
Signature:	Date:

* 출처: <https://www.suffolkjos.co.uk/diversion/making-a-referral>(인출일: 2018.7.7.).

그림 III-15 동의서

회부 후 진단을 통해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기반, 가족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그룹 작업
- 가족지원
- 특정한 이슈에 관한 개입
- 1:1 지원
- 회복적 정의에 기반 한 지원
- 피해자 인식

② 법정 밖 (Out of court) 처분

비행청소년에 대한 두 번째 처분은 ‘out of court’ 처분으로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을 한다. 해당 청소년에 대해 선별 진단(screening assessment)을 실시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개입이 적절한지 결정하며 피해자의 관점도 고려하면서 적절한 개입을 결정한다. 해당 청소년이 비행사실을 인정하면 ‘out of court’ 처분 내에서 비행청소년은 세 가지 처분 “Community Resolution”, “Youth Caution”, “Youth Conditional Caution” 중의 하나를 받게 된다.

가. 청소년 경고 (youth caution)

기소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기소를 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해당 청소년에게 경고가 주어질 수 있다. YOT가 이를 고지 받게 되면 그들은 해당 비행청소년의 위기수준과 개입수준을 진단한다. 청소년이 YOT와 함께하는 것에 동의하면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러한 개입은 구직이나 보험 등의 상황에서 밝힐 필요는 없다. 이 처분이 주어지면 해당 청소년, 경찰, 부모나 보호자는 그 처분이 비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안 되는 이유가 명백히 없는 한 처분은

경찰서에서 주어져야만 한다.

나. 청소년 조건부 경고 (Youth Conditional Caution)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는 것을 인정하고,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청소년이 법정에 가는 것보다는 합의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더 부합될 때 청소년 조건부 경고가 주어진다. 즉, 기소되는 것 대신에 배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에게 주고, 교정교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비행에 비례되는 조건들을 경찰이 제시한다. 조건들은 야간 통행금지, 특정한 지역이나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기, YOT과 함께 작업하기 등이다. YOT는 위험수준과 개입 수준을 진단하고 작업은 다이버전 하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수 있다. 3개월 정도 지속되는 다이버전이 완료되면 기록은 삭제된다. 이 처분이 주어지면 해당 청소년, 경찰, 부모나 보호자는 그 처분이 비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안 되는 이유가 명백히 없는 한 처분은 경찰서에서 주어져야만 한다.

다. 지역사회 해결 (Community Resolution)

경미한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서 사용되며, 관련된 사람들 간의 비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초범에게 주로 사용된다. YOT가 연락을 받고 위험과 개입수준을 진단한다. 피해자의 바람이 고려되어지며, 지역사회 내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자들이 모두 동의하면 다이버전 하에서 진행된다.

③ 법정결과 (Court outcome) 처분

해당 아동·청소년이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몇 번의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은

법원에 기소한다. 청소년법정(youth court)에서 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게 되는데, Referral Orders, Youth Rehabilitation Order, Custodial Sentence 등 세 가지 처분 중의 하나를 받게 된다. 이 처분은 정식으로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다이버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적 선도 (다이버전) 프로그램

① Sacro's Youth Restorative Justice Services

민간단체인 새크로는 경찰서와 관련 부서에서 회부된 8~17세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회복적 정의 서비스”는 회복적 정의 원칙에 입각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회복적 정의 회합(Restorative Justice Conferencing)
- 대면 만남(Face to Face Meetings)
- 셔틀 대화(Shuttle Dialogue)
- 인식 프로그램(Awareness Programmes)
- 배상 업무 프로그램(Reparative Tasks and Programmes)

② Barnardo's Edinburgh Together⁹²⁾

민간단체인 바나도는 시설에 수용된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물론, 회부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바나도의 “에딘버러 투게더” 프로그램은 특히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에딘버러 시

92) 바나도 홈페이지 참조 <http://www.barnardos.org.uk/edinburgh-together.htm>
(인출일: 2018.5.25.)

의회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관련된 부서가 함께 하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회부 후에 바로 “아동 계획 회의”가 실시되어 전문가들이 해당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계획이 수립된다.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팀이 구성되는데, 서비스 매니저, 2명의 팀 리더, 교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치료, 상담, 양육기술 훈련, 관계성 개발, 놀이치료, 친구관계 지원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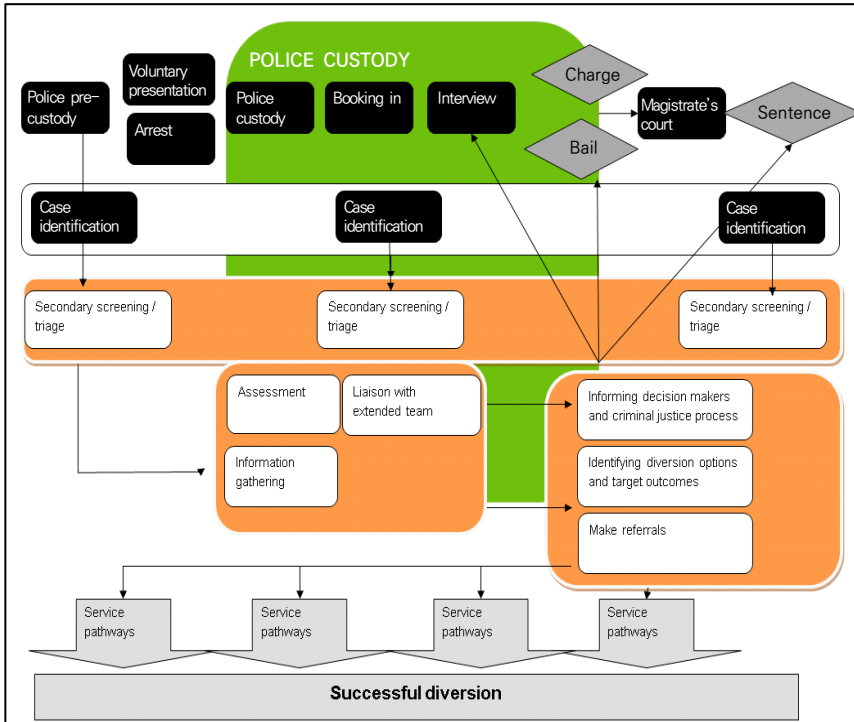
③ Youth Justice Liaison and Diversion (L&D)

YJLD 는 정신건강, 학습장애,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비행청소년에게 건강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을 가진 범법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Liaison and Diversion Services”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The Bradley Report (2009)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2011~2012년에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아동·청소년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14년부터 전국의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초기 비행을 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더한 비행을 막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식 처벌보다는 형사사법체계에서 벗어나서 필요한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게 한다.

경찰, 보호관찰관, 법관들은 그들에게 제시된 증거와 정보를 가지고 본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이러한 자료를 기록하고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사례관리, 판결, 처분 결정을 위해 사용한다. 경찰단계에서 대상자가 회부되면 정신건강 서비스, 학습장애 서비스, 사회복지(social care) 서비스, 마약과 알코올 서비스를 받게 된다. 법원 단계에서 대상자가 발견되면 벌금형, 기각, 사회 내 처분, 시설 내 처분 등을 받게 된다. Liaison and diversion 담당자는 경찰서, YOT 팀,

보호관찰소 등에서 상주하며 관련 직원들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 본 서비스를 위해서는 식별, 선별, 진단, 회부 절차가 필요하다(그림 III-16).

- 식별(Identification): 경찰과 법원단계에서의 기관들은 해당 서비스에 적합한 취약성을 가졌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 선별(Screening): 잠재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식별되면, 담당자는 그들의 필요, 위기수준, 긴급성 등을 진단하기 위해 선별작업을 한다.
- 진단(Assessment): 승인된 선별과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담당자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좀 더 상세하게 진단한다. 대상자의 필요를 좀 더 자세히 진단하고 더한 치료나 지원을 받기 위해 회부되어야 하는지를 진단한다.
- 회부(Referral): 담당자는 적절한 관련 건강과 사회지원 서비스로 보낸다.



* 출처: <https://www.england.nhs.uk/commissioning/wp-content/uploads/sites/12/2014/04/ld-op-mod-1314.pdf>(인출일:2018.08.07.)

그림 III-16 YJLD 절차도

(4) 시사점

영국의 교육적 선도인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의 목표달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시사점은 미국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족참여, 장기적 프로그램, 동의서와 계약서 작성, 정신적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첫째,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국과 동일하게 회부가 이루어지면 청소년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만나서 명확한 진단을 하게 된다. 특히 본 절에서 검토한 서퍽 주의 경우에는 회부서 작성 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상아동·청소년, 가족, 학교상황 등에 대해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처우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가족, 특히 부모가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참여가 의무적인 경우도 있다. 특히 바나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상아동·청소년이 서비스의 초점이긴 하지만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장기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경찰단계에서 제공하는 다이버전은 기본적으로 3개월간 지속된다.

넷째, 동의서와 계약서를 작성한다. 프로그램 참여가 자발적이며, 대상자와 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신적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특수 다이버전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전국에 확대된 “Youth Justice Liaison and Diversion (L&D)”을 통해 정신건강, 학습장애,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비행청소년에게 건강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특수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실시하고 있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교육적 선도의 근거 법률 및 제도와 국내외 유사제도 및 사업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교육적 선도의 근거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교육적 선도에 관해 제19조부터 제21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제20조에서는 “선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도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제19조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선도를 위한 조사상담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절차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선도내용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 제21조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선도후견인의 임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로 절차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선도내용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 선도내용에 관해서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지침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이 제도가 시범운영에 그치고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 외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많다. 「청소년 보호법」 상의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검사 의뢰 교육 및 상담, 판사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선도보호 위탁 보호처분, 「초·중등교육법」 상의 징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특별교육이수, 「소년법」 상의 훈계 및 보호자 교육 고지, 상담조사, 통고제도, 수강명령, 부가처분으로써의 대안교육과 상담교

육,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보호시설 대안 교육과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청소년 보호법」 상의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와 연계하여 운영해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⁹³⁾에 대한 보호처분의 경우에도 가급적 사법적 처우를 지양하고 교육적 선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특별교육이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로서 향후 교육적 선도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두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와 유사한 많은 제도들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상 실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찰의 훈방과 연계된 교육제도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향후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훈방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검찰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도조건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단체나 시설로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가 포함된다. 이 중에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선도역량에 한

93)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비록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하여도 보호를 받아야할 시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를 위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계가 있고, 단체나 시설 중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은 보호관찰소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은 소년법 상의 중구결정인 보호처분 중에도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조건으로써 보호관찰소에 보내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낙인효과까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다면 ‘청소년꿈키움센터’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여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증설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국내 유사제도 및 사업 중에서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내용 측면에서 강의식 교육보다는 체험이나 놀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의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수련관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고, 푸른나무 청예단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프로그램은 신문에 보도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컨설팅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대학체험캠프에서 이루어진 템플스테이에서는 새벽 108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인력 측면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지도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고, 특히 대학생 멘토와 같이 연령차가 적은 경우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관악경찰서에서는 지역사회 재능기부를 통해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강명령은 청소년동반자의 1:1 상담으로 진행되어 집중적인 지도가 이루어졌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대학체험캠프에서는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의 비율이 2:1에 나이차가 5살 내외라 멘토링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개입시기 측면에서는 조기개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교육부와 경찰의 프로그램이 장점을 갖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의 특별교육이수나 푸른나무 청예단의 가해학생 교육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개입하여 교육 이후에 개인상담으로 연계될 수 있다. 또한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랑의 교실이나 서울관악경찰서의 자체선도와 같이 경찰단계의 교육프로그램은 조기개입과 다이버전으로 낙인효과를 줄이고 지속적인 위기개입을 통해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대전가정법원의 '길 위 학교' 역시 함께 걸었던 멘토를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사후지도를 하고 있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동의를 받는 절차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대안교육에서는 명확한 퇴교기준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때에 교육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강제적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푸른나무 청예단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을 통해 가정의 보호력을 회복하고 보호자와 자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정환경 개선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 외국의 유사제도 및 사업 중에서 관련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경우는 청소년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처분명령을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이 우리나라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교육처분명령은 준수사항과 교육보조, 시설위탁교육, 그 외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에서의 교육 네 가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교육보조'와 '시설위탁교육'이지만 독일에서는 최근 들어 이러한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오히려 판사가 다양한 내용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준수사항'과 교육주체가 시설로 한정되지 않는 '그 외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에서의 교육'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교육부나 법무부,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의 적용범위를 넓히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일본의 경우는 경찰의 소년서포트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지도센터, 교육위원회 산하의 청소년센터, 가정재판소 등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이 우리나라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경찰의 소년서포트센터는 소년경찰활동규칙과 별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우리나라의 조건부 훈방의 개선 방안으로써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센터에는 경찰 외에도 전문직원을 배치하고 민간 자원봉사자도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지도센터는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교육이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윈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산하의 청소년센터에서는 일회적인 예방교육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정재판소에서는 시험관찰과 연계하여 처분 전에 봉사활동을 통해 비행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어 우리나라 대전가정법원의 상담조사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유사한데, 특히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여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시키는 효과를 높이고 있다.

셋째, 미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가족참여, 개별 맞춤형 처우, 장기적 처우, 다기관 협력, 민간단체의 참여, 동의서 및 계약서 작성 등이 우리나라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족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경우로써 알라바마 주의 제퍼슨 카운티는 자녀사건을 지위비행으로 접수한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5회기의 상담에 참여하도록 한다. 만약 자녀가 상담을 거부하면, 부모와 상담사가 함께 처우계획서를 만든다. 개별 맞춤형 처우의 개발과 장기적 처우를 시행하는 경우로는 매사추세츠 캄브리지 경찰서의 “개별 맞춤형 플랜”, 뉴욕 주의 “단기개입 계획” 캘리포니아 SHORTSTOP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상자에게 필요한 개입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3~6개월간의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 다기관 협력체계가 구축된 경우로는 매사추세츠 캠프리지 경찰서, 필라델피아 경찰서 등이 있는데, 학교,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이버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의 경우 지위비행 위반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비영리단체들이 위기 가정을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뉴욕 주의 경우에도 오렌지 카운티는 비영리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지위비행 가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오하이오 주 페어필드 경찰서의 계약서처럼, 모든 다이버전 프로그램에서는 참여를 위한 동의서와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다.

넷째,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한데,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족참여, 장기적 프로그램, 동의서와 계약서 작성, 정신적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 등이 우리나라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서퍽 주의 경우에는 회부서 작성 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상아동 청소년, 가족, 학교상황 등에 대해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처우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참여 프로그램으로서 바나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상 아동·청소년이 서비스의 초점이긴 하지만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적 프로그램으로서 경찰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이버전은 기본적으로 3개월간 지속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이며, 대상자와 부모 모두 동의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특수 다이버전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학습장애,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비행청소년에게 건강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특수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제Ⅳ장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 1. 설문조사
- 2. 면접조사
- 3. 소결

1. 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조사시점 현재 경찰, 검찰, 법원단계에서 처분 및 조치의 일환으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환경적 특성과 선도프로그램 참여경험, 그리고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견을 파악하였다.⁹⁵⁾ 경찰단계에서는 '사랑의 교실', 자체선도, 표준선도, 선도조건부 훈방 대상 청소년이 포함되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법원단계에서는 보호처분과 사회봉사명령 병합 대상 청소년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준사법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은 경찰·검찰·법원 뿐 아니라 학교에서 징계 대상 청소년 등이 참여하고 있어 사법적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94) 이 장의 1절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정소연 교수(서울여자대학교), 2절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박선영 교수(한세대학교), 3절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95) 「청소년 보호법」을 기준으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주된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교육적 선도제도의 근거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의 연령이 24세까지이고, 「소년법」이 적용되는 상한연령 만19세까지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20세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2) 조사지 개발절차 및 주요내용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여섯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조사지를 개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현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선도프로그램 참여 이후 청소년이 지각하는 변화 여부, 그리고 비행행동 증감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들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 스스로의 평가와 집단별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설문조사 관련 주요 연구문제]

1. 다종다양한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2.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참여 후 이들 청소년들의 비행수준에 변화가 있는가?
3. 이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4. 이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5. 이 청소년들은 어떤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가?
6. 이 청소년들은 자신이 경험한 선도프로그램이 비행행동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선도프로그램의 각 유형이 비행행동 교정 목표⁹⁶⁾를 고려할 때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가? 이와 같은 평가는 청소년의 성별,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96)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행동 교정의 목표를 ① 심리·정서적 안정, ② 학업에 대한 동기강화 및 교육적 성공, ③ 생활습관 개선(불규칙하거나 무절제했던 생활 개선) ④ 긍정적 가치관 확립, ⑤ 가족관계 증진, ⑥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⑦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활동 및 참여기회 확대 등 7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청소년비행행동 측정문항 개발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행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8개의 오프라인(Off-line) 비행행동 측정문항과 21개의 온라인(Online) 비행행위 측정 예비문항을 연구진이 직접 개발하였다. 문항개발 과정은 크게 5단계로 요약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청소년 비행 측정도구를 수집, 검토하여 관련된 척도를 확보하였다.⁹⁷⁾ 두 번째 단계는 예비문항개발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 확보한 개별문항을 목록화하고 각 문항이 청소년비행행동 측정문항으로서 얼마나 적절한지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 비행행동의 경우 3개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비행행동의 경우 2개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모두 예비문항에 포함시켰다. 일부문항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그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방화, 흥기소지 등의 행위는 극소수 청소년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사회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의 주 대상이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비행행위라도 예비문항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 IV-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프라인 비행행동 측정문항 28개, 온라인 비행행동 측정문항 21개를 확정하였다.

97) 기존 청소년 비행 측정도구 수집과 검토 결과는 제2장에 기술하였다.

표 IV-1 청소년비행행동 측정을 위한 예비문항

오프라인 비행행동	온라인 비행행동
• 학교 무단결석	• 채팅/게시판 등에서 나이나 성별을 속이거나 거짓말
• 가출	• 채팅이나 게시판 등에서 심한 욕이나 폭력적 언어 사용
• 청소년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소주방, 호프집 등) 출입	•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사용
• 흡연	•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
• 음주	•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무료 유포
• 환각물 사용	•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판매
• 도박(사람들과 직접 만난 상태에서 돈을 걸고 내기 또는 게임)	• 인터넷 도박
• 다른 사람의 돈, 지갑, 또는 물건 훔치기	• 사이버 절도(사이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훔침)
•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보리까기)	• 인터넷 사기(예: 중고매매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음)
•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차털이)	• 인터넷에서 물품구입을 위해 타인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
• 빈집에 들어가 돈이나 물건 훔치기(빈집털이)	• 미성년자관람불가의 성인물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시청
•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빙뜰기)	• 포르노사이트 방문
• 술 취한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아리랑치기)	• 성인 유료사이트 가입
•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 인터넷쇼핑몰에서 성인용품 구입
• 집단따돌림하기(왕따시키기)	• 성인대화방 이용
• 협박(어떤 이유에서건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겁을 줌)	•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
• 다른 사람과 주먹싸움 하거나 때리기	• 채팅에서 성관계 요구
• 패싸움	• 음란물 제작·유포
• 방화(일부러 불을 지름)	• 바이러스 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 흥기소지	• 폭탄메일(스팸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 다른 사람의 물건(휴대폰 등)에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	•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
• 공공기물에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손상시키기	
• 음란물(성인전용의 잡지나 케이블TV방송) 시청	
• 성희롱(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함)	
• 성추행(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오프라인 비행행동	온라인 비행행동
건드림)	
• 돈 거래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	
• 성매매(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	
• 강제적인 성관계(강간)	

* 주: 비행행동에 대한 명칭과 은어(隱語)는 전문가 의견과 예비조사에 참여한 선도대상 청소년(5명)의 의견을 반영함.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 내용타당도 검증과 개별비행행동의 경중(輕重)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장, 학계, 정책 영역의 청소년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즉, 전문가들로부터 개별 예비문항 하나하나가 청소년비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얼마나 적절한지를 5점 리커트척도(①매우 부적절~⑤매우 적절)로 평가받는 방식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평가 결과 평균값이 3.5이상인 경우에만 최종척도문항으로 포함하였는데, 비행행동의 경중평가를 위해 김준호와 이동원(1995)의 연구에서 소개된 청소년비행행동의 죄질평가 방법을 일부 차용하였다. 즉, 비행행동 가운데 지위비행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죄질’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음주’행위에 일종의 죄질 값 ‘1’을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의 죄질이 기준인 음주행위보다 몇 배나 더, 혹은 덜 나쁜지를 평가함으로써 비행행동의 경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극단치를 제외한 전문가 평가의 평균값을 비행행동의 경중(죄질)을 나타내는 가중치(weight)로 활용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정도를 측정하는 단계이다. 먼저 예비문항으로 확정된 목록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경험 여부를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이후 각 항목에 부여된 비행정도(경중)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이 역시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

였다. 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이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에 흡연과 빈집털이를 경험하였는데, 이 두 행위에 부여된 가중치가 각각 1과 37로 평가되었다면 이 청소년이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 비행행동 정도는 38로 계산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청소년비행행동 측정문항 개발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I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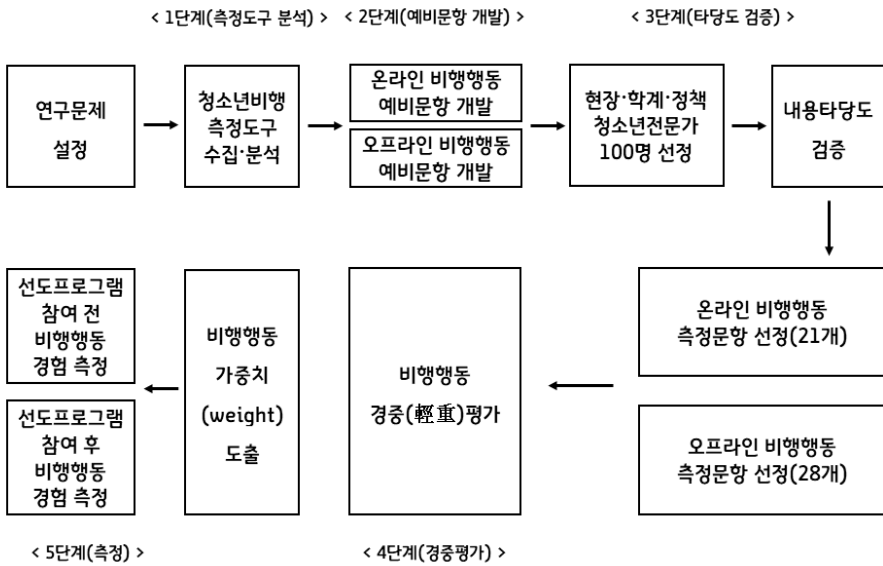


그림 IV-1 청소년비행행동 측정문항 개발 절차

② 청소년비행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측정문항 개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 측정하기 위하여 이은경, 지승희, 이지은, 최수미와 정찬석(2003)의 연구, 김지연과 정소연(2017)의 연구가 근거로 활용되었다. 전자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적, 질적연구를 통해 비행 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후자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다양한 보호요인을 선정하고, 그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이다. 두 연구 모두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청소년비행 또는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은경 외의 연구(2003)는 15년 전의 연구라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와 청소년의 특성, 그리고 최근 학계의 연구성과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하여 하위차원별 접근을 시도할 뿐 구체적인 개별 요인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반면 김지연과 정소연의 연구(2017)는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의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요인분석, Cronbach의 alpha값 산출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개인,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 총 다섯 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③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효과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그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정부부처의 자료를 검토하여 선도프로그램의 실행 기관,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및 형식 등을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7개의 범주에 따른 36개 개별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였다(표 IV-2).

표 IV-2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범주화

<p>범주1: 상담 및 치료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 집단상담 • 도래상담 • 범죄예방위원과의 정기적 만남 • 성인자원봉사자와의 멘토링 	<p>범주2: 행동교정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 프로그램 • 금주 프로그램 •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사용 치료 프로그램
<p>범주3: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 분노조절 프로그램 • 연극을 활용한 프로그램(소시오드라마, 역할극 등) •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대인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p>범주4: 교육 및 진로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멘토링 • 학업/학습 지원 • 감정고시 준비 지원 • 대입준비 지원 • 적성검사 • 진로탐색 • 직업체험 • 직업훈련 • 창업교육 • 취업알선
<p>범주5: 여가·문화·취미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체험활동 • 요리활동 • 미술활동 • 음악활동 •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 댄스/비보잉 • 동아리 활동 • 체육/운동 	<p>범주6: 봉사활동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 기타 봉사활동 <hr/> <p>범주7: 가족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 • 가족캠프 • 부모교육

조사단계에서 36개 개별프로그램 각각에 대하여 조사대상 청소년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의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자신의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4점 리커트척도(①전혀 도움이 안됨~④매우 도움이 됨)로 평가하도록 하여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비행행동 교정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어떤 선도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비행행동 교정 목표를 ‘학업에 대한 동기강화 및 교육적 성공’, ‘생활습관 개선’, ‘긍정적 가치관 확립’, ‘가족관계 증진’,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활동 및 참여기회 확대(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t Prevention, 1995)’, 그리고 ‘청소년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은경 외, 2003; Catalano & Hawkins, 1996) 등 7가지로 설정하였다. 이에 조사대상 청소년이 선도프로그램의 각 범주(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교육 및 진로, 여가문화취미, 봉사활동, 가족대상 프로그램)가 7개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각각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지를 5점 리커트척도(①매우 비효과적~⑤매우 효과적)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조사지의 개발절차와 조사영역별 주요내용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IV-2], [그림 IV-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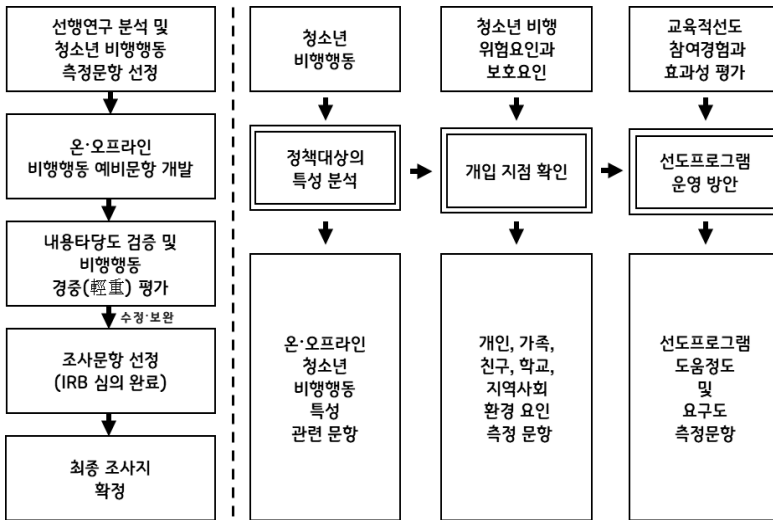


그림 IV-2 조사지 개발절차

그림 IV-3 조사영역 및 주요내용

이상에서 언급한 조사영역에 따른 조사내용과 문항에 대한 세부정보를 요약한 것이 표 IV-3이다.

표 IV-3 조사문항 구성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비고
			문항수	문항번호	
청소년 비행 행동 위험 요인	개인차원	우울 및 불안	6	4(6, 9, 10, 13, 14, 17)	이은경 외 (2003)
		충동성 및 공격성	7	4(1, 2, 4, 19, 20, 27, 30)	
	가족차원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3	5(1, 7, 9)	
		부모-자녀 갈등	3	5(21, 23, 24)	
		부부갈등	3	5(16, 18, 25)	
		학대 및 기타	4	5(2, 4, 10, 17)	
	친구차원	비행행동 경험이 있는 친구	5	7(1~5)	
	학교차원	교사-학생 간 비우호적 관계	3	8(3~5)	
		학교체벌	2	8(6, 7)	
		기타 학교환경	3	8(1, 2, 8)	
지역사회 차원	유해환경 접근성	5	10(1~4)	김지연, 정소연 (2017)	
	지역사회해체	3	10(9~11)		
청소년 비행 행동 보호 요인	개인차원	책임성/성실성	5	4(3, 5, 15, 16, 18)	이은경 외 (2003)
		지적능력	2	4(7, 8)	
		사회성	1	4(11)	
		꿈/비전 성취 동기	2	4(21, 22)	
		내적 통제소재	4	4(23~25, 28)	
		자아탄력성	3	4(12, 26, 29)	
	도덕관념	4	3(1~4)	김지연, 정소연 (2017)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비고
			문항수	문항번호	
청소년 비행 행동 보호 요인	가족차원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4	5(3, 5, 6, 8)	김지연, 정소연 (2017)
		부모의 지도감독	4	5(11~14)	
		부모의 자녀존중 태도	4	5(15, 19, 20, 22)	
	친구차원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	4	6(1~4)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3	6(5~7)	
	학교차원	우호적 관계의 교사 존재	4	9(1~4)	
	지역사회	이웃과의 관계	3	10(13~15)	이은경 외 (2003)
		친사회적 활동기회	4	10(5~8)	김지연, 정소연 (2017)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3	10(16~18)	
선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효과성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5	11(1~5)	연구진 개발
		효과성	7	12(1~7)	
	행동교정 프로그램	참여경험	3	13(1~3)	
		효과성	7	14(1~7)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참여경험	5	15(1~5)	
		효과성	7	16(1~7)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참여경험	10	17(1~10)	
		효과성	7	18(1~7)	
	가족대상 프로그램	참여경험	3	19(1~3)	
		효과성	7	20(1~7)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참여경험	9	21(1~9)	
		효과성	7	22(1~7)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경험	2	23(1, 2)	
		효과성	7	24(1~7)	
선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선도경험	운영 기관	1	25	연구진 개발
		처분 경험	1	26	
		참여 계기	1	27	
	경찰단계	참여 경험	1	28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비고
			문항수	문항번호	
효과성	전문가 참여제	필요성	1	28-1	연구진 개발
		도움 정도	1	28-2	
		도움 분야	1	28-3	
비행 행동 경험	오프라인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 행동경험	28	1(1~28) A	
		선도프로그램 참여 후 행동경험	28	1(1~28) B	
	온라인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 행동경험	21	2(1~21) A	
		선도프로그램 참여 후 행동경험	21	2(1~21) B	
개인적 특성	성별		1	29	
	연령		1	30	
	거주지역_광역시도		1	31	
	거주지역_도시화 정도		1	32	
	재학 여부		2	33(1, 2)	
	가족형태		1	34	
	어머니 교육수준		1	35	
	아버지 교육수준		1	36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수준		1	37		

(3) 자료수집 방법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은 표집틀이 없기 때문에 연구기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먼저 목표표본 수(1,000명)를 설정하고, 조사기관별 조사규모를 할당한 후 조사기간 내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다만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보호자)가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I-2에 기술한 바와 같이 조사목적에 따라 조사기관의 유형을 민간(청소년기관, 민간기관), 사법/준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 비행예방센터)으로 구분하였으며 비확률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는 전문조사기관 위탁으로 추진되었고 2018년 5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2개

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면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조사대상 청소년이 극소수인 경우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우편조사 방식이 병행되었다. 최종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쳤으며, 본 조사에서 총 1,001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분석에 모두 투입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4) 분석방법

연구목표 및 연구과제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이 활용되었다.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산출 등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분포, 연령, 재학여부 등 개인적 특성과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인식, 가족구조, 선도프로그램 참여 기관 등에 대한 기본 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2>는 설문조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청소년이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실제 비행행동이 악화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제한적이거나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도구 개발 시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를 구분하여 비행행동 경험 여부를 응답하도록 설계하였고,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통해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다만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적(retrospective)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목적의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문제 3>, <연구문제 4>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규명하였다. 즉, 성별, 연령 등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 비행행동을 통제한 후, 선도프로그램 참여 후의 비행행동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충동성 및 공격성, 부모-자녀 갈등, 해체된 지역사회 등)이 종속변수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보호요인(사회성, 긍정성, 부모의 자녀존중태도, 지역사회 내 친사회적 활동 기회 등)이 종속변수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5〉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어떤 내용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총 80여 개로 구체화된 프로그램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의 참여여부를 확인하였고 빈도와 백분율 등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6〉은 참여한 선도프로그램이 자신의 비행행동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연구문제 7〉은 7개 범주로 구분된 선도프로그램의 유형이 비행행동 교정 목표를 고려할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인 평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성별, 연령대,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집단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활용하였다.

2) 주요변수 측정

(1) 청소년비행행동의 위험요인

① 개인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개인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은 ‘우울 및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으로 이은경 외(2003)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우울 및 불안’ 측정에는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등 6개 진술문이, ‘충동성

및 공격성'은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등 7개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각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표 IV-4).

표 IV-4 개인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우울 및 불안	4-(6)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이은경 외(2003) •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 Cronbach's α : .900
	4-(9) 자주 우울함	
	4-(10) 나른하고 피곤	
	4-(13)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낌	
	4-(14) 항상 스트레스를 받음	
	4-(17) 자주 불안함	
충동성 및 공격성	4-(1)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복수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이은경 외(2003) •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 Cronbach's α : .849
	4-(2) 치고받으며 잘 싸움	
	4-(4) 말보다 주먹이 앞섬	
	4-(19)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음	
	4-(20) 문제를 일으켜서 어른들에게 자주 혼나는 편	
	4-(27) 하고 싶은 것을 참기 어려움	
	4-(30) 결과를 생각지 않고 행동함	

② 가족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

가족차원의 위험요인 역시 이은경 외(2003)의 척도가 활용되었다. 부모의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부모-자녀 갈등, 부부갈등, 학대 및 기타로 구분되며, 각 요인별 문항은 3~4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는 '나는 부모님에게 왜 혼나는지 모른 채 혼나는 경우가 많다' 외 2개 문항, 부모-자녀

갈등은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외 2개 문항, 부부갈등은 '부모님은 서로 대화가 거의 없다' 외 2개 문항, 마지막으로 학대 및 기타는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한다' 외 3개 문항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응답을 위해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가 활용되었다(표 IV-5).

표 IV-5 가족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5-(1) 부모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따르도록 명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이은경 외(2003)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5-(7) 이유를 모른 채 부모님에게 혼나는 경우가 많음	
	5-(9) 부모님이 혼내지 않던 일로 갑자기 혼을 내곤 함	
부모-자녀 갈등	5-(21) 부모님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onbach's α : -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774 - 부모-자녀 갈등: .875 - 부부갈등: .727 - 학대 및 기타: .687
	5-(23) 부모님과 말만하면 싸우게 됨	
	5-(24)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긴장됨	
부부갈등	5-(16) 부모님은 자주 싸움	
	5-(18)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것을 본 적이 있음	
	5-(25) 부모님은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음	
학대 및 기타	5-(2)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림	
	5-(4) 부모님은 내게 심한 욕설을 함	
	5-(10) 부모님은 공부이야기만 함	
	5-(17)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귀여워 함	

③ 친구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

친구차원의 비행행동 위험요인도 이은경 외(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친구차원의 위험요인은 ‘비행행동을 경험한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의미한다. 즉, 음주, 가출, 경찰에 잡힘, 폭력서클 가입, 학교 중퇴 등 5개 비행행위를 경험한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없음~⑤10명 이상)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친구차원의 위험요인을 측정하였다(표 IV-6).

표 IV-6 친구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비행행동 경험이 있는 친구	7-(1) 일주일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이은경 외(2003) 응답범주 : ① 전혀 없음~⑤ 10명 이상 Cronbach's α : .855
	7-(2) 가출한 경험이 있는 친구	
	7-(3)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혔던 적이 있는 친구	
	7-(4)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	
	7-(5) 학교를 그만 둔 친구	

④ 학교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

학교차원의 위험요인 역시 이은경 외(2003)의 척도가 활용되었다. 이 척도에서 학교차원의 위험요인은 총 8개 문항과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나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 하시는 편이다’ 등 교사-학생간 비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과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와 ‘우리 학교는 체벌이 심한 것으로

유명하다' 등 체벌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학교 주변에는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학생들은 학교를 싫어한다' 등 서로 묶이기 어려운 내용은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표 IV-7).

표 IV-7 학교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교사-학생간 비우호적 관계	8-(3)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생각함	• 출처: 이은경 외(2003) •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8-(4) 선생님이 내게 관심이 없음	
	8-(5) 선생님은 내게 싫은 소리를 자주 함	
학교체벌	8-(6)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은 적이 있음	• Cronbach's α : - 교사-학생간 비우호적 관계: .911 - 강압적 학교분위기: .687
	8-(7) 우리학교는 체벌이 심함	
기타 학교환경	8-(1)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함 ⁹⁸⁾	
	8-(2) 나는 가끔 수업도중에 땡땡이를 침	
	8-(8)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음	

⑤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접근성과 지역사회해체가 가장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지연과 정소연(2017)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청소년유해환경 접근성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거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PC방, 노래방, 짬뽕방 등에 출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총 4개의 진술문을 통해 평가된다. 지역사회해체는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서로 싸우거나,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거나, 술에 취한 모습이 지역사회에서 자주 목격되는지' 등을 묻는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측정도구에서도 응답 시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98) 원척도에서는 '친구들이 학교를 싫어한다'고 표현되었으나 이 문항은 친구 특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학교특성을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친구' 대신 '학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가 사용되었다(표 IV-8).

표 IV-8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비행 위험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유해환경 접근성	10-(1)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쉽게 살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김지연 & 정소연 (2017)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Cronbach's 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환경접근성: .903 - 지역사회해체: .884
	10-(2) 청소년이 술/담배를 해도 어른들이 개의치 않음	
	10-(3) 심야시간대에 보호자 동행 없이 청소년이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에 출입할 수 있음	
	10-(4) 심야시간대에 보호자 동행 없이 청소년이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에 출입해도 어른들은 개의치 않음	
지역사회해체	10-(9) 사람들이 자주 싸움	
	10-(10) 술에 취한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음	
	10-(11) 고성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음	

(2) 청소년비행행동의 보호요인

① 개인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

개인차원의 보호요인 측정을 위해 이은경 외(2003)가 개발한 척도와 김지연과 정소연(2017)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먼저 도덕관념의 경우 김지연과 정소연(2017)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이 도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야단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가끔 할 수도 있다' 등 비도덕적 행위를 정당하게 여기는 태도에 관한 4개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은경 외(2003)가 개발한 개인차원의 보호요인 하위척도는 모두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내용적으로 책임성/성실성, 지적능력, 사회성, 꿈과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내적 통제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 자아탄력성과 같이 6개 요인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 요인은 문항수가 1~2개에 불과하여 측정의 정확성과 정상분포에서의 이탈 문제가 우려될 수 있어 주성분분석을 통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표 IV-9).

표 IV-9 개인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책임성/ 성실성	4-(3)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이은경 외(2003)
	4-(5) 싫어하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함	
	4-(15) 한 번 결심을 하면 꼭 지킴	
	4-(16)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냄	
	4-(18)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	
지적능력	4-(7) 나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4-(8) 나는 공부를 잘 함	
사회성	4-(11) 친구를 잘 사귀고 친구관계를 잘 유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onbach's 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성: .861 - 지적능력: .790 - 꿈/비전 성취동기: .849 - 내적통제소재: .934 - 긍정성: .736
꿈/비전 성취 동기	4-(21)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음	
	4-(22)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내적 통제소재	4-(23) 모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24)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함	
	4-(25) 현재 상황은 앞으로의 내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아탄력성	4-(12) 나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여 해낸 적이 있음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4-(26)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감을 잃지 않음	
	4-(29)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	
도덕관념	3-(1) 야단맞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김지연 & 정소연 (2017)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Cronbach's α : .928
	3-(2) 주인에게 묻지 않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해도 괜찮음	
	3-(3)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가끔 할 수도 있음	
	3-(4) 주인을 알 수 없는 돈을 주었다면 그냥 가져도 괜찮음	

② 가족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의 자녀존중태도가 청소년비행 감소와 관련이 있는 보호요인인지를 검증하고자 하며, 세 요인 모두 김지연과 정소연(2017)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4개의 진술문을 사용하고 각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다른 하위차원과 마찬가지로 본 조사표본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표 IV-10).

표 IV-10 가족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5-(3) 부모님은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김지연 & 정소연 (2017)
	5-(5) 부모님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심	
	5-(6) 부모님은 나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5-(8) 부모님은 내게 잘해주려고 애쓰심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부모의 지도감독	5-(11) 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기준이 명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onbach's α : -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902 - 부모의 지도감독: .736 - 부모의 자녀존중 태도: .876
	5-(12) 부모님은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 내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심	
	5-(13)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잘 아심	
	5-(14)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아심	
부모의 자녀 존중태도	5-(15)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심	
	5-(19) 부모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심	
	5-(20) 부모님은 내가 스스로 의견을 내도록 격려하고 경청하심	
	5-(22) 부모님은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심	

③ 친구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

친구차원의 보호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조사도구는 김지연과 정소연(2017)이 개발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친구들의 친사회성 정도와 문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시키거나 긍정적 제지를 가하는 친구들의 존재를 다루고 있다. 먼저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총 4개로서, 그 중에는 '내 친구들은 대체로 학교생활에 충실하다', '내 친구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및 제지는 3개 문항으로 측정되는데,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려 하거나, 술을 마시려고 하거나 혹은 학교나 학원을 빠지고 놀러가자고 할 때, 친구들이 말릴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문이 사용된다. 앞의 다른 하위차원 척도를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응답범주로서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가 활용되었다(표 IV-11).

표 IV-11 친구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	6-(1) 내 친구들은 대체로 학교생활에 충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김지연 & 정소연 (2017)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Cronbach's 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 .813 -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917
	6-(2) 내 친구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음	
	6-(3) 내 친구들은 대체로 담배나 술을 멀리 함	
	6-(4) 내 친구들은 대체로 학교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킴	
문제행동에 대 한 친구의 통제	6-(5) 내 친구들은 내가 담배를 피우려고 한다면 말릴 것임	
	6-(6) 내 친구들은 내가 술을 마시려고 한다면 말릴 것임	
	6-(7) 내 친구들은 내가 학교나 학원을 빠지고 놀러가자고 한다면 나를 말릴 것임	

④ 학교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

학교차원의 보호요인은 우호적 관계에 있는 교사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며 김지연과 정소연(2017)이 개발한 도구가 활용되었다. 이 척도에서는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계시다’, 내가 발전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등 4개 진술문 각각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표 IV-12).

표 IV-12 학교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우호적 관계의 선생님의 존재	9-(1) 내가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김지연 & 정소연 (2017)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9-(2)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계시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9-(3) 내가 발전된 모습을 보였을 때, 알아채고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계심	• Cronbach's α : .964
	9-(4)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는 선생님이 계심	

⑤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차원의 보호요인은 ‘이웃과의 관계’, ‘친사회적 활동 기회’,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이며, 이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경 외(2003)가 개발한 측정도구와 김지연과 정소연(2017)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함께 사용하였다. 세 개의 지역사회 보호요인 중 이웃과의 관계는 ‘동네 어른들이 나를 안다’, ‘부모님 외에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잘 따르는 동네어른이 있다’ 등 이은경 외(2003)가 개발한 3개의 척도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머지 두 개의 보호요인은 김지연과 정소연(2017)이 개발한 척도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다른 요인을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시된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로서 5점 리커트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가 활용되었다(표 IV-13).

표 IV-13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비행 보호요인과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이웃과의 관계	10-(13) 동네어른들은 내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 이은경 외(2003)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Cronbach's α : .787
	10-(14) 동네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음	
	10-(15) 내게 잘해주고 내가 잘 따르는 동네어른이 있음	
친사회적 활동기회	10-(5) 우리 지역은 도서관, 문화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출처: 김지연 & 정소연 (2017)

변수	설문문항 번호 및 주요내용	비고
	10-(6) 우리 지역은 청소년 동아리나 자원봉사 기회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범주 :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 Cronbach's 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사회적 활동기회: .813 -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858
	10-(7) 우리 지역은 청소년이 운동이나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10-(8) 우리 지역은 청소년이 건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음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10-(16) 우리 동네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음	
	10-(17) 오랫동안 이 곳에서 살고 싶음	
	10-(18) 우리 동네는 청소년으로서 생활하기에 만족스러움	

(2) 선도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효과성 평가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그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연구진이 직접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선도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에 대한 유목화 과정을 거쳐 [그림 IV-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7개 범주에 따른 36개 개별프로그램을 목록화하였다.

<p>범주 1</p> <p>상담 및 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 집단상담 • 또래상담 • 범죄예방위원과의 정기적 만남 • 멘토링 	<p>범주2</p> <p>행동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 프로그램 • 금주 프로그램 •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사용 치료 	<p>범주3</p> <p>사회성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해 향상 • 분노조절 • 연극활동 (소시오드라마 등) • 의사소통 기술 향상 • 대인관계 증진 	<p>범주4</p> <p>교육 및 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멘토링 • 학업 및 학습 지원 • 검정고시 준비 지원 • 대입 준비 지원 • 적성검사 • 진로탐색 • 직업체험 • 직업훈련 • 창업교육 • 취업알선
<p>범주 5</p> <p>가족 대상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 • 가족캠프 • 부모교육 	<p>범주 6</p> <p>여가 · 문화 · 취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체험활동 • 요리활동 • 미술활동 • 음악활동 •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 댄스 및 비보잉 • 동아리 활동 • 체육/운동 활동 	<p>범주 7</p> <p>봉사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 기타 선도목적의 봉사활동 	

*주: 저자 작성

그림 IV-4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 목록화

조사과정에서는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6개 개별 프로그램 각각에 대하여 조사대상 청소년의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주체(기관 유형)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자신의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4점 리커트척도(①전혀 도움이 안됨~④매우 도움이 됨)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선행행구에 기초하여 선도프로그램의 (교정)목

표를 학업에 대한 동기강화 및 교육적 성공, 생활습관 개선, 긍정적 가치관 확립, 가족관계 증진,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활동 및 참여 기회 확대(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t Prevention, 1995), 청소년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은경 외, 2003; Catalano & Hawkins, 1996) 등 7개로 설정하였다. 이후 7개 선도프로그램의 범주(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교육 및 진로, 여가문화취미, 봉사활동, 가족대상 프로그램)가 각각의 목표 성취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5점 리커트척도(① 매우 비효과적~⑤매우 효과적)를 통해 측정하였다.

3) 분석결과

(1) 청소년비행 사정도구 개발 : 전문가대상 조사결과

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 측정문항의 적절성 평가 및 비행의 경중을 의미하는 가중치 산정을 위해 전문가조사를 병행하였다. 응답자⁹⁹⁾ 중 여성이 53.5%로 남성(46.5%)보다 7% 많았다. 연령대는 30대와 20대가 각각 28.0%, 27.3%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그 다음은 40대(24.0%), 50대 이상(20.0%) 순이었다.

조사 참여자의 최종학력은 2~3년제 대학 졸업 5.1%, 4년제 대학 졸업 30.3%, 석사과정 수료/졸업 29.3%, 박사과정 수료/졸업 35.4% 등이었다. 대학과정에서 전공학문은 기타 학문 전공(33.7%)를 제외하면 사회복지학이 22.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교육학(13.3%), 심리학과 청소년학이 각각 10.2%, 9.2% 순이었고

99) 전문가조사 참여자는 모두 100명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에 모두 무응답 한 한 명을 제외하여 최종 99명의 응답이 전산 처리되었다.

법학(7.1%), 사회학(4.1%) 순이었다.

이들의 직무는 현장에서 청소년과 직접 대면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전문가와 청소년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각각 36.5%로 동일한 비율을 구성하였다. 정부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18.8%, 그 외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응답자가 8.3%였다. 이들의 업무경력은 2년 미만부터 20년 이상까지 다양하였는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경력자가 전체의 26.4%로 가장 많았고, '2년 미만'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력자가 각각 24.2%, 20.9%로 그 뒤를 이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와 '20년 이상' 경력자는 각각 15.4%, 13.2%의 구성비를 보였다. 전문가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 표 IV-14이다.

표 IV-14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유효(%)	누적(%)
성별	여	53	53.5	53.5
	남	46	46.5	100.0
	소계	99	100.0	-
연령	20대	27	27.3	27.3
	30대	28	28.0	55.6
	40대	24	24.0	79.8
	50세 이상	20	20.0	100.0
	소계	99	100.0	-
최종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이하 ¹⁰⁰⁾	5	5.1	5.1
	4년제 대학 졸업	30	30.3	35.4
	석사과정 수료/졸업	29	29.3	64.6
	박사과정 수료/졸업	35	35.4	100.0
	소계	99	100.0	-
대학교 주전공	교육학	13	13.3	13.3
	법학	7	7.1	20.4

변수	구분	빈도	유효(%)	누적(%)
	심리학	10	10.2	30.6
	사회복지학	22	22.4	53.1
	사회학	4	4.1	57.1
	청소년학	9	9.2	66.3
	기타	33	33.7	100.0
	소계	98	100.0	-
직업	서비스제공자/현장전문가	35	36.5	36.5
	연구자/교육자	35	36.5	72.9
	공무원	18	18.8	91.7
	기타	8	8.3	100.0
	소계	96	100.0	-
업무경력 (평균: 7.83 sd: 7.52)	2년 미만	22	24.2	24.2
	2년 이상-5년 미만	24	26.4	50.5
	5년 이상-10년 미만	14	15.4	65.9
	10년 이상-20년 미만	19	20.9	86.8
	20년 이상	12	13.2	100.0
	소계	91	100.0	-

② 비행측정 항목으로서의 적절성 및 비행의 경중(죄질) 평가

전문가조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비행측정을 위해 개발한 49개 예비문항 각각에 대해 적절성을 5점 척도(①매우 부적절~⑤매우 적절)로 평가하게 하고, 음주가 1만큼 나쁘다고 할 때 각 비행행위가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그 경중(죄질)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편의 상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크게,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성비행’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전문가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100) 4년제 대학 중퇴자를 포함하였다.

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비행측정을 위한 예비항목 중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으로 분류된 행위는 모두 14개였는데, 이중 오프라인과 온라인 영역에 속하는 항목이 각각 7개였다.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행측정 문항으로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절성 평가에서 평균 3.5이상의 기준을 미리 설정하였다. 오프라인 행위 중에서는 ‘음란물 시청’이 유일하게 기준값인 3.5에 미달하였고 ‘무단결석’은 3.5를 상회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외하였다. 온라인 행위 중에서는 7개 항목 중 단 2개만 기준을 통과하였다. 즉,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최종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최종 문항으로 선정된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행위 7개 중 비행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평가된 것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청소년의 음주행위보다 18.82배 나쁜 행위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은 근소한 차이로 ‘환각물 사용(18.28)’,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사용(11.72)’ 순이었다. 그 외 가출(3.25), 청소년 출입제한/금지 구역 출입(3.15), 흡연(1.65)도 음주보다 비행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되었으나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음주는 비행행위 경중평가에서 기준값(1)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표 IV-15).

표 IV-15 비행측정항목 적절성 및 경중 평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변수	문항적절성 평가		경중평가 (weight)
		평균	표준편차	
오프라인 (Off-line)	청소년 출입 제한/금지 구역 출입(소주방, 호프집 등)	4.20	1.02	3.15
	무단결석	3.56	1.04	-
	가출	3.95	1.15	3.25
	흡연	3.87	1.06	1.65

	변수	문항적절성 평가		경중평가 (weight)
		평균	표준편차	
	음주	3.89	0.99	1.00
	환각물 사용	4.41	1.12	18.28
	음란물(성인용 잡지나 케이블 TV방송) 시청	3.17	1.10	-
온라인 (On-line)	인터넷 채팅, 게시판 등에서 나이나 성별을 속이거나 거짓말	2.99	0.99	-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사용	3.96	1.17	11.72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	4.21	1.21	18.82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성인물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시청	3.25	1.13	-
	포르노사이트 방문	3.23	1.20	-
	성인유료사이트 가입	3.40	1.13	-
	인터넷쇼핑몰에서 성인용품 구입	3.30	1.14	-

* 주: 문항적절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문항에 대해서는 경중평가 점수를 제시하지 않음

나. 재산비행

비행측정을 위한 예비문항 중 재산비행으로 분류된 행위는 오프라인 영역에서 7개, 온라인 영역에서 6개로 모두 13개였다. 13개 행위 모두 비행평가 문항으로서의 적절성 기준값인 3.5를 초과하여 최종 문항에 포함되었다. 오프라인 재산비행 중 비행정도가 가장 심한 행위는 ‘술 취한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로 음주 보다 26.17배 나쁜 행위로 평가되었다. ‘빈집에 들어가 돈이나 물건 훔치기’와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는 음주와 비교하여 각각 23.29배, 23.16배 정도 중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 훔치기(21.70)’와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21.60)’도 음주 보다 20배 이상 나쁜 행위로 평가되었다.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19.79)’도 20에 가까운 비행 가중치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도박은 오프라인 재산비행 중에서는 비행정도가 가장 낮은 11.16이었다.

다음으로 온라인 재산비행 중에서는 ‘인터넷에서 물품구입을 위해 타인의 계좌

나 신용카드 사용'이 35.40으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사기와 사이버절도가 각각 27.96, 22.91을 기록하였다. 인터넷 도박(17.94),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판매(16.99),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무료 유포(13.41)도 음주보다 적게는 13배, 많게는 17배 정도 나쁜 행위로 평가되었다(표 IV-16).

표 IV-16 비행측정항목 적절성 및 경중 평가: 재산비행

	변수	문항적절성 평가		경중평가 (weight)
		평균	표준편차	
오프라인 (Off-line)	도박	4.21	1.07	11.16
	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 훔치기	4.35	1.19	21.70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보리기)	4.28	1.20	19.79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차털이)	4.38	1.18	23.16
	빈집에 들어가 돈이나 물건 훔치기(빈집털이)	4.36	1.20	23.29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빙뜯기)	4.38	1.16	21.60
	술 취한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아리랑치기)	4.38	1.19	26.17
온라인 (On-line)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무료 유포	3.90	1.29	13.41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판매	4.11	1.25	16.99
	인터넷 도박	4.26	1.15	17.94
	사이버절도(사이버 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훔침)	4.37	1.16	22.91
	인터넷 사기	4.41	1.16	27.96
	인터넷에서 물품구입을 위해 타인의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	4.38	1.23	35.40

다. 폭력비행

폭력비행 범주에 포함된 예비문항은 모두 13개였다. 이중 오프라인 비행이 9개, 온라인 비행이 4개였다. 이들 13개 문항 모두 기준점인 3.5점을 초과하여 최종 문항에 포함되었다. 오프라인 폭력비행 9개 행위 가운데 가장 심각한 행위는 '방화'로 가중치가 32.76으로, 전문가들은 방화를 음주보다 약 32배 더 심각한 행위

로 판단하고 있다. 협박과 흥기소지는 경중평가에서 각각 17.61, 17.38을 기록하였고, 집단따돌림은 이보다 근소하게 낮은 16.28을 보였다. 그 외 항목들은 대략 음주보다 10배 정도 나쁜 행위로 평가되었는데, 다른 사람과 주먹싸움 하거나 때리기(13.41),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11.48), 패싸움(11.38), 다른 사람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11.02), 공공기물에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손상시키기(10.72) 등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은 음주보다 32.87배 나쁜 행위로 평가되어 온라인 폭력비행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바이러스 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28.52)하거나 폭탄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25.44)하는 행위도 가중치 25점 이상의 중한 비행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온라인 폭력행위 중 가중치가 가장 낮은 것은 인터넷 채팅, 게시판 등에서 심한 욕이나 폭력적 언어사용을 하는 것이었는데 음주보다 5.76배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IV-17).

표 IV-17 비행측정항목 적절성 및 경중 평가: 폭력비행

	변수	문항적절성 평가		경중평가 (weight)
		평균	표준편차	
오프라인 (Offline)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3.58	1.07	11.48
	집단따돌림하기(왕따시키기)	3.99	1.10	16.28
	협박(어떤 이유에서건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겁을 줌)	4.07	1.06	17.61
	다른 사람과 주먹싸움 하거나 때리기	3.80	1.16	13.41
	패싸움	3.98	1.14	11.38
	방화 (일부러 불을 지름)	4.31	1.25	32.76
	흥기소지	4.01	1.18	17.38
	다른 사람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	3.74	1.02	11.02
공공기물에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손상시키기	3.78	1.09	10.72	
온라인 (Online)	인터넷 채팅, 게시판 등에서 심한 욕이나 폭력적 언어 사용	3.68	1.01	5.76

	변수	문항적절성 평가		경중평가 (weight)
		평균	표준편차	
line)	바이러스 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4.08	1.27	28.52
	폭탄메일(스팸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4.02	1.24	25.44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	4.22	1.20	32.87

라. 성(性)비행

성비행 범주에 포함된 예비문항은 오프라인 성비행이 5개, 온라인 성비행이 4개로 모두 9개였다. 8개 항목이 문항적절성 평가기준(3.5)을 초과하였고 ‘돈 거래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3.31)’의 경우 설정한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청소년비행 최종 측정문항에서 제외되었다(표 IV-18).

표 IV-18 비행측정항목 적절성 및 경중 평가: 성비행

	변수	문항적절성 평가		경중평가 (weight)
		평균	표준편차	
오프라인 (Off-line)	성희롱 (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함)	3.96	1.08	21.33
	성추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건드림)	4.16	1.17	30.85
	- 돈 거래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	3.31	1.30	-
	성매매(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함)	4.36	1.14	34.46
	강제적 성관계(강간) ¹⁰¹⁾	4.49	1.22	98.15
온라인 (On-line)	인터넷 성인대화방 이용	3.62	1.14	5.79
	인터넷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	3.64	1.15	8.03
	- 인터넷 채팅에서 성관계 요구	4.11	1.19	23.39
	음란물 제작 및 유포	4.28	1.23	36.73

* 주: 문항적절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문항에 대해서는 경중평가 점수를 제시하지 않음

101) 다만 이 문항의 경우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로서의 경험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프라인 성비행 중 비행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판정된 것은 ‘강제적 성관계’로 가중치 98.15점이 부여되었다. 이는 비행측정문항으로 최종 선정된 41개 행위 가운데 가장 높은 가중치로 전문가들은 음주보다 98배 이상 나쁜 행위로 판정한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와 성추행은 각각 34.46, 30.85로 음주보다 약 30배 이상 정도가 심한 행위도 평가되었다. 오프라인 성비행 중 경증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성희롱(21.33)이나 음주행위와 비교할 때 비행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성비행 중에서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와 ‘인터넷 채팅에서 성관계 요구’의 경증평가 값이 각각 36.73, 23.39로 비행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반면, ‘인터넷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와 ‘인터넷 성인대화방 이용’의 가중치는 각각 8.03, 5.79로 상대적으로 경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2) 조사대상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 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경험한 처벌과 처분 내용을 각각 검토하였다.

① 개인 및 가족 특성

응답자는 모두 1,001명으로 여자와 남자의 비율은 각각 24.9%, 75.1%로 남자 청소년의 수가 3배 이상 많았다. 연령은 최하 12세부터 최고 20세까지의 범위를 보였는데, 15세(21.0%), 16세(20.3%), 17세(18.8%)의 비율이 약 20% 내외로 가장 많았다. 14세(15.3%)와 18세(13.9%)의 비율은 10% 수준이었고, 13세(7.3%), 12세(1.5%), 19~20세(2.0%)의 비율은 각각 10% 이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15.73세(sd=1.606)였고, 학교재학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한

청소년은 88.8%(889명)로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 이들 중 재학생이 전체의 91.7%, 학교 밖 청소년이 8.3%였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6.1%로 다수였고, 매우 빈곤(1.7%)하거나 빈곤한 편(9.1%)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8%, 반면 매우 부유(3.8%)하거나 ‘부유한 편(19.3%)’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배 이상 많은 23.1%로 집계되었다. 가족구조의 경우, 양친가정(재혼가정 포함)이 76.3%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정(20.2%), 기타(1.9%), 조손가정(1.5%) 순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대도시 거주자는 63.8%였고,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거주자가 각각 29.1%, 7.1%였다. 현재 응답자가 참여하고 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분포를 보면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 및 치안기관(30.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찰단계의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26.4%), 준사법기관인 비행예방센터(24.6%)와 기타 민간기관(18.9%) 순이었다(표 IV-19).

표 IV-19 청소년조사 응답자 및 가족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유효(%)	누적(%)
성별	여	249	24.9	24.9
	남	751	75.1	100.0
	소계	1,000	100.0	-
연령 (평균=15.73 sd=1.606)	12세	15	1.5	1.5
	13세	73	7.3	8.8
	14세	152	15.3	24.1
	15세	209	21.0	45.1
	16세	202	20.3	65.4
	17세	187	18.8	84.1
	18세	138	13.9	98.0
	19세~20세 ¹⁰²⁾	20	2.0	100.0
	소계	996	100.0	-

변수	구분	빈도	유효(%)	누적(%)
학교재학 여부	학생(학교재학 중)	815	91.7	91.7
	학교 밖 청소년	74	8.3	100.0
	소계	889	100.0	-
가정의 경제적 형편(인식)	매우 빈곤	16	1.7	1.7
	빈곤한 편	87	9.1	10.8
	중간	633	66.1	76.9
	부유한 편	185	19.3	96.2
	매우 부유	36	3.8	100.0
	소계	957	100.0	-
가족구조	양친(兩親)가정	732	76.3	76.3
	한부모가정	194	20.2	96.6
	조손가정	14	1.5	98.0
	기타	19	1.9	100.0
	소계	959	100.0	-
거주지역 특성 (도시화 정도)	대도시	629	63.8	63.8
	중소도시	287	29.1	92.9
	농어촌(읍, 면, 리)	70	7.1	100.0
	소계	986	100.0	-
표집기관 유형 (선도프로그램 운영 기관)	청소년기관(사랑의 교실)	264	26.4	26.4
	민간기관(사랑의 교실)	189	18.9	45.3
	사법 및 치안 기관	302	30.2	75.4
	준사법기관(비행예방센터)	246	24.6	100.0
	소계	1,001	100.0	-

② 조치 및 처분 경험

조사대상 청소년이 경찰, 검찰, 법원단계에서 어떤 조치와 처분으로 선도프로그램

102) 만 20세 한 명이 포함되었다

램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이 전체 표본의 2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검찰의 기소유예(19.2%), 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프로그램 이수(17.7%), 수강명령(6.6%), 감호위탁(6.5%),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6.0%), 경찰의 즉결심판(5.0%), 보호자교육(4.5%), 법원의 통고(4.2%), 사회봉사명령(4.1%), 보호처분 4호 이상(3.6%), 소년분류심사원 입소(2.5%) 순이었다(표 IV-20).

표 IV-20 조치 및 처분 경험(N=1,001)

처분 유형	빈도	유효(%)	조치 및 처분 유형	빈도	유효(%)
검찰의 기소유예	192	19.2	청소년꿈키움센터 입소	177	17.7
경찰의 즉결심판	50	5.0	보호처분1호(감호위탁)	65	6.5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	60	6.0	보호처분2호(수강명령)	66	6.6
(경찰) 선도프로그램	283	28.3	보호처분3호(사회봉사명령)	41	4.1
(법원) 통고	42	4.2	보호처분4호 이상	36	3.6
소년분류심사원입소	25	2.5	보호자교육	45	4.5

* 주 : 중복응답을 묻는 문항임.

(3)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경험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비행을 경험하였고 이들의 비행수준은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비행경험 및 수준에 있어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교차분석(Crosstab analysis)을 실행하였고 결과는 4개의 비행범주(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성비행)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①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경험 및 성별 차이

먼저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행위를 얼마나 경험했는지 살펴보고, 성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 범주의 비행에는 모두 7개의 행위가 포함되었는데, 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행위는 흡연(69.4%), 음주(62.4%)였는데 청소년 10명 중 약 6~7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 출입 제한/금지 구역을 출입한 경험도 전체 표본 가운데 1/3(35.8%)을 넘었고, 환각물 사용 경험은 3.2% 수준이었다. 온라인 영역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사용 경험, 타인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험도 각각 12.4%, 6.3% 규모였다.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범주로 분류된 비행행위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 간의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경험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IV-21).

표 IV-21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에 있어서 성별 차이

	변수	구분	여 (%)	남 (%)	전체 (%)	χ^2 값 (자유도, N)
오프라인 (Offline)	청소년 출입 제한/금지 구역 출입(소주방, 호프집 등)	없음	61.1	65.2	64.2	$\chi^2=1.358$
		있음	38.9	34.8	35.8	(1, N=975)
	가출	없음	68.1	73.0	71.8	$\chi^2=2.166$
		있음	31.9	27.0	28.2	(1, N=978)
	흡연	없음	32.3	30.1	30.6	$\chi^2=0.407$
		있음	67.7	69.9	69.4	(1, N=979)
	음주	없음	32.7	39.3	37.6	$\chi^2=3.438$
		있음	67.3	60.7	62.4	(1, N=979)
	환각물 사용	없음	96.8	96.8	96.8	$\chi^2=0.003$
		있음	3.2	3.2	3.2	(1, N=974)

	변수	구분	여 (%)	남 (%)	전체 (%)	χ^2 값 (자유도, N)
온라인 (On line)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사용	없음	91.0	86.4	87.6	$\chi^2=3.626$ (1, N=964)
		있음	9.0	13.6	12.4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	없음	93.5	93.7	93.7	$\chi^2=0.021$ (1, N=963)
		있음	6.5	6.3	6.3	

② 재산비행 경험 및 성별 차이

다음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재산비행 경험률과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오프라인 재산비행에는 총 7개의 행위가 포함되었는데, 이 중 도박($\chi^2(1)= 6.280, p<.05$)과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chi^2(1)= 4.102, p<.05$)만 성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의 경우 여자청소년의 경험률은 11.7%인 반면 남자청소년은 그 보다 7%가 높은 18.7%의 경험률을 보였다.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경험은 여자와 남자청소년의 경험률이 각각 3.2%, 6.7%로,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 외 오프라인 재산비행에서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 훔치기(22.5%),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20.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18.4%)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행정도가 약한 행위의 경험률은 전체의 20%내외였던 반면,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5.9%), 술취한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5.8%), 빈집에 들어가 돈이나 물건 훔치기(2.1%) 등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비행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재산비행 중에서는 인터넷도박($\chi^2(1)= 13.991, p<.001$)만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자청소년 중 7.3%만 인터넷도박 경험이 있었던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험률은 그 두 배가 넘는 17.1%로 집계되었다. 인터넷 도박 이외 다른 온라인 재산비행의 경우 성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경험률은 인터넷 사기

(5.1%),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무료 유포(3.9%), 사이버 절도(3.7%), 인터넷에서 물품구입을 위해 타인의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3.2%),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판매(2.5%) 순으로 2~5% 수준이었다(표 IV-22).

표 IV-22 재산비행의 성별 차이

	변수	구분	여 (%)	남 (%)	전체 (%)	χ^2 값 (자유도, N)
오프라인 (Offline)	도박	없음	88.3	81.3	83.1	$\chi^2=6.280$ *
		있음	11.7	18.7	16.9	(1, N=976)
	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 훔치기	없음	80.1	76.6	77.5	$\chi^2=1.265$
		있음	19.9	23.4	22.5	(1, N=973)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보리기)	없음	78.9	79.8	79.5	$\chi^2=0.073$
		있음	21.1	20.2	20.5	(1, N=973)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차털이)	없음	96.8	93.3	94.1	$\chi^2=4.102$ *
		있음	3.2	6.7	5.9	(1, N=974)
	빈집에 들어가 돈이나 물건 훔치기(빈집털이)	없음	98.0	97.9	97.9	$\chi^2=0.002$
		있음	2.0	2.1	2.1	(1, N=973)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빙뜰기)	없음	84.6	80.6	81.6	$\chi^2=1.932$
		있음	15.4	19.4	18.4	(1, N=972)
	술취한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아리랑치기)	없음	92.7	94.8	94.2	$\chi^2=1.421$
		있음	7.3	5.2	5.8	(1, N=972)
온라인 (Online)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무료 유포	없음	95.9	96.1	96.1	$\chi^2=0.016$
		있음	4.1	3.9	3.9	(1, N=963)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판매	없음	98.4	97.2	97.5	$\chi^2=0.999$
		있음	1.6	2.8	2.5	(1, N=963)
	인터넷 도박	없음	92.7	82.9	85.4	$\chi^2=13.991$ ***
		있음	7.3	17.1	14.6	(1, N=963)
	사이버절도(사이버 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훔침)	없음	97.6	95.8	96.3	$\chi^2=1.518$
		있음	2.4	4.2	3.7	(1, N=963)
	인터넷 사기	없음	96.7	94.3	94.9	$\chi^2=2.261$

변수	구분	여 (%)	남 (%)	전체 (%)	χ^2 값 (자유도, N)
인터넷에서 물품구입을 위해 타인의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	있음	3.3	5.7	5.1	(1, N=963)
	없음	97.1	96.7	96.8	$\chi^2=0.138$
	있음	2.9	3.3	3.2	(1, N=963)

* $p < .05$, *** $p < .001$

③ 폭력비행 경험 및 성별 차이

폭력비행 범주에는 총 13개의 세부 비행행위가 포함되었는데 오프라인 폭력비행 9개 중 4개에서 성별 경험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사람과 주먹 싸움을 하거나 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타 유형의 비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는데, 특히 남자(39.3%)가 여자(24.0%)를 크게 상회하였다($\chi^2(1) = 18.743$, $p < .001$). 방화경험도 여자(2.8%)보다 남자(7.0%)가 유의미하게 높았다($\chi^2(1) = 5.758$, $p < .05$). 반면 집단따돌림을 시킨 경험은 여자청소년(18.2%)이 남자청소년(12.0%)보다 6%p 이상 높았다($\chi^2(1) = 6.110$, $p < .01$). 나머지 6개 오프라인 폭력비행의 경우 성별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즉, 다른사람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7.3%), 흥기소지(3.5%)와 같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25.0%), 협박(17.8%), 패싸움(15.0%), 공공기물에 일부로 흠집 내거나 손상시키기(10.3%) 등 경험률이 10~25%에 이르는 비행행위도 성별 경험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온라인 폭력비행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채팅, 게시판 등에서 심한 욕이나 폭력적 언어를 사용한 경험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40%대의 경험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타인의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2.5%), 폭탄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1.5%), 바이러스 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1.1%) 행위는 남자의 경험률이 여자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 표본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온라인 폭력비행 경험률은 약 1~2% 수준이었다(표 IV-23).

표 IV-23 폭력비행의 성별 차이

	변수	구분	여 (%)	남 (%)	전체 (%)	χ^2 값 (자유도, N)
오프라인 (Offline)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없음	79.8	73.4	75.0	$\chi^2=3.997$
		있음	20.2	26.6	25.0	(1, N=972)
	집단따돌림하기(왕따시키기)	없음	81.8	88.0	86.4	$\chi^2=6.110$ **
		있음	18.2	12.0	13.6	(1, N=973)
	협박(어떤 이유에서건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겁을 줌)	없음	81.3	82.5	82.2	$\chi^2=0.183$
		있음	18.7	17.5	17.8	(1, N=972)
	다른 사람과 주먹싸움 하거나 때리기	없음	76.0	60.7	64.6	$\chi^2=18.743$ ***
		있음	24.0	39.3	35.4	(1, N=972)
	패싸움	없음	87.4	84.2	85.0	$\chi^2=1.564$
		있음	12.6	15.8	15.0	(1, N=973)
	방화 (일부러 불을 지름)	없음	97.2	93.0	94.0	$\chi^2=5.758$ *
		있음	2.8	7.0	6.0	(1, N=970)
	흥기소지	없음	97.6	96.1	96.5	$\chi^2=1.121$
		있음	2.4	3.9	3.5	(1, N=968)
	다른 사람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	없음	94.7	92.0	92.7	$\chi^2=1.998$ ***
		있음	5.3	8.0	7.3	(1, N=971)
	공공기물에 일부러 흠집 내거나 손상시키기	없음	90.2	89.5	89.7	$\chi^2=0.101$
		있음	9.8	10.5	10.3	(1, N=968)
온라인 (Online)	인터넷 채팅, 게시판 등에서 심한 욕이나 폭력적 언어 사용	없음	58.5	60.6	60.6	$\chi^2=0.312$
		있음	41.5	39.4	40.0	(1, N=966)
	바이러스 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없음	99.2	98.7	98.9	$\chi^2=0.309$
		있음	0.8	1.3	1.1	(1, N=963)
	폭탄메일(스팸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없음	98.8	98.5	98.5	$\chi^2=0.121$
		있음	1.2	1.5	1.5	(1, N=963)

	변수	구분	여 (%)	남 (%)	전체 (%)	χ^2 값 (자유도, N)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	없음	98.0	97.4	97.5	$\chi^2=0.267$
		있음	2.0	2.6	2.5	(1, N=962)

* $p < .05$, ** $p < .01$, *** $p < .001$

④ 성비행 경험 및 성별 차이

성비행 범주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각각 4개씩 모두 8개의 세부 행위가 포함되었으며,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프라인 성비행 중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행위는 성희롱(9.5%)이었으며, 그 다음은 성추행(3.7%)이었다. 성매매, 강제적 성관계 경험률은 각각 1.4%, 1.2% 수준이었다. 온라인 성비행 영역에서는 인터넷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9.3%) 경험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인터넷 성인대화방 이용 경험(3.2%), 인터넷 채팅에서 성관계 요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경험이 각각 1.7%, 1.1% 순이었다(표 IV-24).

표 IV-24 성비행에 있어서 성별 차이

	변수	구분	여(%)	남(%)	전체(%)	χ^2 값(자유도, N)
	성희롱(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함)	없음	92.3	89.9	90.5%	$\chi^2=1.166$
		있음	7.7	10.1	9.5%	(1, N=972)
오프라인 (Off-line)	성추행(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건드림)	없음	95.5	96.5	96.3%	$\chi^2=0.533$
		있음	4.5	3.5	3.7%	(1, N=970)
	성매매(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함)	없음	98.4	98.6	98.6%	$\chi^2=0.007$
		있음	1.6	1.4	1.4%	(1, N=970)
	강제적 성관계(강간) ¹⁰³⁾	없음	98.0	99.0	98.8%	$\chi^2=1.700$
		있음	2.0	1.0	1.2%	(1, N=969)
온라인 (On-line)	인터넷 성인대화방 이용	없음	97.1	96.7	96.8%	$\chi^2=0.138$
		있음	2.9	3.3	3.2%	(1, N=963)
	인터넷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	없음	93.1	89.8	90.7%	$\chi^2=2.230$
		있음	6.9	10.2	9.3%	(1, N=964)

	변수	구분	여(%)	남(%)	전체(%)	χ^2 값(자유도, N)
	인터넷 채팅에서 성관계 요구	없음	98.0	98.5	98.3%	$\chi^2=0.292$
		있음	2.0	1.5	1.7%	(1, N=964)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없음	99.6	98.6	98.9%	$\chi^2=1.568$
		있음	0.4	1.4	1.1%	(1, N=963)

⑤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경험 및 연령대별 차이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경험의 연령대에 따른 차이 검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프라인 영역의 3개 비행행위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저연령대의 46.6%, 중간연령대의 66.9%, 고연령대의 74.8%가 흡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p 값 .001이하에서 유의미하였다($\chi^2(2)= 29.803$). 음주경험도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chi^2(2)= 46.263$, $p<.001$), 저연령대의 31.8%, 중간연령대의 59.8%, 고연령대의 69.1%가 선도프로그램 참여 전 1년 동안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소주방, 호프집 등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을 출입한 경험도 저연령대(8.0%) 보다 중간연령대(25.6%), 고연령대(47.2%)로 갈수록 높아져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률이 증가하였다($\chi^2(2)= 75.350$, $p<.001$). 다만 이 범주에 포함된 6개 비행행위 중 나머지 세 유형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V-25).

103)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로서의 경험이 포함되었을 수 있음

표 IV-25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에 있어서 연령대별 차이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 값 (자유도, N)
오프라인 (Offline)	청소년 출입 제한/ 금지 구역 출입(소 주방, 호프집 등)	없음	92.0	74.4	52.8	64.3	$\chi^2=75.350$ ***
		있음	8.0	25.6	47.2	35.7	(2, N=971)
	흡연	없음	53.4	33.1	25.2	30.7	$\chi^2=29.803$ ***
		있음	46.6	66.9	74.8	69.3	(2, N=975)
	음주	없음	68.2	40.2	30.9	37.6	$\chi^2=46.263$ ***
		있음	31.8	59.8	69.1	62.4	(2, N=975)
	환각물 사용	없음	95.5	96.6	97.2	96.8	$\chi^2=0.776$
		있음	4.5	3.4	2.8	3.2	(2, N=970)
온라인 (Online)	다른 사람의 아이 디를 허락 없이 사용	없음	93.2	86.5	87.4	87.6	$\chi^2=2.935$
		있음	6.8	13.5	12.6	12.4	(2, N=960)
	다른 사람의 주민 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	없음	96.6	94.5	92.5	93.6	$\chi^2=2.817$
		있음	3.4	5.5	7.5	6.4	(2, N=959)

* 주: 1) 단위는 백분율(%)임.

2) *** $p < .001$

⑥ 재산비행 경험 및 연령대별 차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13개의 행위가 재산비행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가운데 4개 비행행위의 경험률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도박의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 영역 모두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험률이 상승하는 일관된 양상이 나타났다. 오프라인 도박의 경우 저연령대(8.0%), 중간연령대(14.4%), 고연령대(20.0%)로 갈수록 증가하였다($\chi^2(2)=10.221$, $p < .01$). 인터넷 도박도 저연령대의 경험률은 4.5% 수준인 반면 중간연령대와 고연령대는 각각 11.2%, 18.5%로 연령에 따른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chi^2(2)=16.884$, $p < .001$).

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을 훔친 행위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행위도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다만 중간연령대 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높고, 고연령대 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저연령대 청소년은 24.1%였는데, 이 경험률은 중간연령대에서 28.0%까지 상승하였다가 고연령대에 이르러 18.4%로 감소하였다($\chi^2(2)= 11.393, p<.01$).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경험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저연령대의 경험률은 21.6%였고, 중간연령대에서는 이보다 3%이상 증가한 24.9%를 기록하였으나, 16세 이상의 고연령대에서는 17.0%까지 낮아졌다($\chi^2(2)= 8.213, p<.05$). 재산비행으로 분류된 다른 행위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표 IV-26).

표 IV-26 재산비행의 연령대별 차이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 값 (자유도, N)
오프라인 (Offline)	도박	없음	92.0	85.6	80.0	83.1	$\chi^2=10.221$ **
		있음	8.0	14.4	20.0	16.9	(2, N=972)
	타인의 돈, 지갑, 또는 물건 훔치기	없음	75.9	72.0	81.6	77.6	$\chi^2=11.393$ **
		있음	24.1	28.0	18.4	22.4	(2, N=969)
	가게에서 물건 훔 치기(보리기)	없음	78.4	75.1	83.0	79.7	$\chi^2=8.213$ *
		있음	21.6	24.9	17.0	20.3	(2, N=969)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 기(차털이)	없음	95.5	93.8	94.1	94.1	$\chi^2=0.363$
		있음	4.5	6.2	5.9	5.9	(2, N=970)
	빈집에 들어가 돈 이나 물건 훔치기 (빈집털이)	없음	97.7	97.5	98.3	97.9	$\chi^2=0.768$
		있음	2.3	2.5	1.7	2.1	(2, N=969)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뺏기)	없음	83.0	77.9	83.7	81.5	$\chi^2=4.816$
		있음	17.0	22.1	16.3	18.5	(2, N=968)
	술취한 사람의 돈	없음	96.6	93.2	94.7	94.3	$\chi^2=1.838$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 값 (자유도, N)
	이나 물건 뺏기(아 리랑치기)	있음	3.4	6.8	5.3	5.7	(2, N=968)
온 라 인 (On - line)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물 무료 유포	없음	96.6	97.1	95.2	96.0	$\chi^2=2.074$
		있음	3.4	2.9	4.8	4.0	(2, N=959)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물 판매	없음	97.7	98.0	97.1	97.5	$\chi^2=0.649$
		있음	2.3	2.0	2.9	2.5	(2, N=959)
	인터넷 도박	없음	95.5	88.8	81.5	85.4	$\chi^2=16.884$ ***
		있음	4.5	11.2	18.5	14.6	(2, N=959)
	사이버절도(사이 버 머니나 게임아 이템을 훔침)	없음	97.7	97.1	95.4	96.2	$\chi^2=2.290$
		있음	2.3	2.9	4.6	3.8	(2, N=959)
	인터넷 사기	없음	97.7	96.6	93.5	95.0	$\chi^2=5.617$
		있음	2.3	3.4	6.5	5.0	(2, N=959)
인터넷에서 물품구 입을 위해 타인의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	없음	97.7	96.6	96.7	96.8	$\chi^2=0.311$	
	있음	2.3	3.4	3.3	3.2	(2, N=959)	

* 주 : 1) 단위는 백분율(%)임.

2) * $p < .05$, ** $p < .01$, *** $p < .001$

⑦ 폭력비행 경험 및 연령대별 차이

폭력비행으로 분류된 총 13개의 행위 중 유일하게 방화행위의 경험률이 연령대 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 = 18.001$ $p < .001$).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1년 동안 방화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연령대에서 4.5%였는데, 중간연령대에서의 경험률은 10.3%로 두 배 이상에 달하였고, 16세 이상의 고연령 대에서는 3.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른 유형의 폭력비행에서는 연령대 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대체로 각 행위의 경험률은

중간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고연령대, 저연령대 순이라는 공통점을 보였다(표 IV-27).

표 IV-27 폭력비행의 연령대별 차이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 값 (자유도, N)7
오프라인 (Off-line)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없음	79.5	71.2	76.7	75.0	$\chi^2=4.500$
		있음	20.5	28.8	23.3	25.0	(2, N=968)
	집단따돌림하기 (왕따시킴)	없음	88.6	83.5	88.1	86.5	$\chi^2=4.269$
		있음	11.4	16.5	11.9	13.5	(2, N=969)
	협박(어떤 이유에 서건 때리거나 괴롭혔다고 겁을 줌)	없음	85.2	80.3	83.0	82.2	$\chi^2=1.672$
		있음	14.8	19.7	17.0	17.8	(2, N=968)
	다른 사람과 주먹 싸움 하거나 때리기	없음	68.2	60.3	66.8	64.6	$\chi^2=4.454$
		있음	31.8	39.7	33.2	35.4	(2, N=968)
	패싸움	없음	92.0	82.3	85.7	85.0	$\chi^2=5.571$
		있음	8.0	17.7	14.3	15.0	(2, N=969)
	방화 (일부러 불을 지름)	없음	95.5	89.7	96.6	94.0	$\chi^2=18.001$ ***
		있음	4.5	10.3	3.4	6.0	(2, N=966)
	흥기소지	없음	96.6	95.1	97.3	96.5	$\chi^2=3.030$
		있음	3.4	4.9	2.7	3.5	(2, N=964)
	다른 사람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	없음	96.6	90.3	93.8	92.8	$\chi^2=5.905$
		있음	3.4	9.7	6.2	7.2	(2, N=967)
공공기물에 일부러 흠집 내거나 손상 시키기	없음	94.3	87.4	90.5	89.7	$\chi^2=4.355$	
	있음	5.7	12.6	9.5	10.3	(2, N=964)	
온라인 (On-line)	인터넷 채팅, 게시판 등에서 심한 욕이나 폭력적 언어 사용	없음	63.6	57.5	61.0	60.0	$\chi^2=1.643$
	있음	36.4	42.5	39.0	40.0	(2, N=962)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 값 (자유도, N)7
- line)	바이러스 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없음	98.9	98.6	99.0	98.9	$\chi^2=0.426$ (2, N=959)
		있음	1.1	1.4	1.0	1.1	
	폭탄 메일(스팸 메 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없음	100.0	98.3	98.5	98.5	$\chi^2=1.490$ (2, N=959)
		있음	0.0	1.7	1.5	1.5	
	다른 사람의 컴퓨 터나 웹사이트 해킹	없음	97.7	97.1	97.7	97.5	$\chi^2=0.316$ (2, N=958)
		있음	2.3	2.9	2.3	2.5	

* 주 : 1) 단위는 백분율(%)임.

2) *** $p < .001$

⑧ 성비행 경험 및 연령대별 차이

이 범주에 포함된 8개의 행위 중 성희롱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chi^2(2) = 6.297$, $p < .05$). 조사대상 청소년 중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2~13세의 저연령대 청소년은 4.5%였는데, 이 비율이 14~15세의 중간연령대에서는 3배 가까이 증가한 12.3%를 기록하였고 16세 이상 고연령대에서도 다시 8.5%로 소폭 감소하였다. 나머지 6개 유형의 성비행도 중간연령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고, 고연령대의 경험률이 다소 낮고, 저연령대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일관된 패턴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IV-28).

표 IV-28 성비행의 연령대별 차이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 값 (자유도, N)
오 프 라 인	성희롱(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으로 다 른 사람을 불쾌하게 함)	없음	95.5	87.7	91.5	90.5	$\chi^2=6.297$ (2, N=968) *
		있음	4.5	12.3	8.5	9.5	

	변수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전체	χ^2 값 (자유도, N)
(Off - line)	성추행(상대방이 원 하지 않는데 신체부 위를 만지거나 건드 림)	없음	97.7	94.6	97.2	96.3	$\chi^2=4.499$
		있음	2.3	5.4	2.8	3.7	(2, N=966)
	성매매(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함)	없음	100.0	98.0	98.7	98.6	$\chi^2=2.094$
		있음	0.0	2.0	1.3	1.4	(2, N=966)
	강제적 성관계 (강간)	없음	100.0	98.0	99.1	98.8	$\chi^2=3.112$
		있음	0.0	2.0	0.9	1.2	(2, N=965)
온 라 인 (On- line)	인터넷 성인대화방 이용	없음	98.9	95.7	97.1	96.8	$\chi^2=2.751$
		있음	1.1	4.3	2.9	3.2	(2, N=959)
	인터넷 채팅에서 음 란한 대화	없음	92.0	89.7	91.0	90.6	$\chi^2=0.696$
		있음	8.0	10.3	9.0	9.4	(2, N=960)
	인터넷 채팅에서 성 관계 요구	없음	98.9	97.4	98.9	98.3	$\chi^2=2.816$
		있음	1.1	2.6	1.1	1.7	(2, N=960)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없음	100.0	98.3	99.0	98.9	$\chi^2=2.212$
		있음	0.0	1.7	1.0	1.1	(2, N=959)

* 주 : 1) 단위는 백분율(%)임.

2) * $p<.05$

(4)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 수준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수준과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와 선도프로그램 운영기 관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 독립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행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소년 개인의 비행수준은 비행 측정을 위해 선정한 41개 세부 행위별로 전문가의 비행경중(죄질) 평가점수를 통해 부여된 가중치를 합산한 값으로 산정되었다.

① 비행수준과 성별 차이

먼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범주에는 총 7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되며 가능한 값의 범위는 0점부터 57.870까지이다. 조사표본의 평균은 6.908(sd=9.687)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산비행 범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세부 비행행위는 13개이며 이 항목에 부여된 비행수준(죄질) 값을 모두 합할 경우 최소 0부터 최대 281.480까지 가능하다. 응답자의 평균 재산비행 수준은 22.667(sd=33.515)로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폭력비행도 세부 측정 항목이 13개로 비행수준의 점수 범위는 0부터 234.630으로 본 조사표본의 평균은 25.099(sd=41.263)였다.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의 폭력비행 수준이 5점 이상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8개의 세부행위가 포함된 성비행 범주의 경우 가능한 비행수준 값은 0점부터 259.730으로 본 표본의 평균은 6.553(sd=23.927)으로 확인되었다. 비행범주 4개 가운데 유일하게 성비행에서 여자청소년의 평균 비행수준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였는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비행측정을 위한 41개 항목을 모두 고려할 경우 비행수준(죄질)값은 최대 832.710까지 가능한데 응답자의 평균은 60.700(sd=91.908)이었다. 남자청소년의 평균 비행수준이 여자청소년보다 10점 이상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기술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4개 범주 및 전체 비행수준 모두 표준편차의 값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표본 내 상당한 정도의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29).

표 IV-29 비행수준의 성별 차이 분석

비행범주 (측정항목 수, 점수범위)	구분	전체표본	여	남	t값 (자유도)
전체 (41개 항목, 0~832.710)	평균	60.700	53.181	63.337	-1.479
	s.d.	(91.908)	(88.419)	(93.020)	(945)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7개 항목, 0~57.870)	평균	6.908	6.753	6.970	-1.479
	s.d.	(9.687)	(9.334)	(9.814)	(956)
재산비행 (13개 항목, 0~281.480)	평균	22.667	19.656	23.725	-1.635
	s.d.	(33.515)	(32.284)	(33.898)	(954)
폭력비행 (13개 항목, 0~234.630)	평균	25.099	21.085	26.492	-1.767
	s.d.	(41.263)	(38.410)	(42.140)	(959)
성비행 (8개 항목, 0~259.730)	평균	6.553	6.955	6.424	0.299
	s.d.	(23.927)	(26.869)	(22.870)	(960)

② 비행수준과 연령대별 차이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하고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확인된 경우 두 가지 유형의 사후검증 즉, LSD와 Bonferroni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명확히 검증하고자 하였다. 비행범주 중 폭력비행을 제외한 3개 범주에서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수준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 951) = 4.343, p < .05$). 조사대상 청소년 중 저연령대의 평균은 4.311($sd=8.989$)로 가장 낮았으며, 중간연령대에서는 6.648($sd=9.478$), 고연령대에서는 7.519($sd=9.890$)를 기록하였다. LSD 분석결과 저연령대의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수준이 중간연령대와 고연령대 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Bonferroni 분석에서는 저연령대와 고연령대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재산비행 수준에서도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F(2, 949)=6.555, p<.01$), 저연령대의 비행수준은 18.204($sd=29.947$)인 반면 중간연령대는 무려 10점 가량 높은 27.819($sd=37.456$)를 기록하였고 고연령대는 다소 낮아진 20.014($sd=30.893$)의 평균값을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에 기초할 때 중간연령대의 재산비행 수준이 저연령대와 고연령대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저연령대와 고연령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30 비행 수준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 분석

비행범주 (측정항목 수, 점수범위)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집단A)	중간연령대 (14-15세) (집단B)	고연령대 (16세 이상) (집단C)	F값 (자유도)	사후 검증
전체 (41개 항목, 0~832.710)	평균	45.790	70.607	56.558	3.679 *	B>A ^L
	s.d.	(82.635)	(106.783)	(81.736)	(2, 940)	B>C ^L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7개 항목, 0~57.870)	평균	4.311	6.648	7.519	4.343 *	B>A ^L
	s.d.	(8.989)	(9.478)	(9.890)	(2, 951)	C>A ^{LB}
재산비행 (13개 항목, 0~281.480)	평균	18.204	27.819	20.014	6.555 **	B>A ^{LB}
	s.d.	(29.947)	(37.456)	(30.893)	(2, 949)	B>C ^{LB}
폭력비행 (13개 항목, 0~234.630)	평균	20.346	27.012	24.537	1.001	-
	s.d.	(43.596)	(43.608)	(39.122)	(2, 954)	-
성비행 (8개 항목, 0~259.730)	평균	2.641	9.306	5.439	4.050 *	B>A ^L
	s.d.	(9.459)	(31.372)	(19.426)	(2, 955)	B>C ^L

* 주: 1) - 기호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함.

2) 윗첨자 L과 B는 각각 사후검증의 분석방법인 LSD와 Bonferroni를 의미함.

3) * $p<.05$, ** $p<.01$

성비행 수준 역시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 955)=4.050, p<.05$). 중간연령대의 성비행 수준이 평균 9.306($sd=31.372$)으로 가장 높았고, 고연령대 5.439($sd=19.426$), 저연령대 2.641($sd=9.459$) 순이었다. LSD 분석결과에서는 중간연령대의 성비행 수준이 저연령대와 고연령대 보다 유의미하

게 높았으나 Bonferroni 분석결과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든 유형의 범주를 고려한 전체 비행수준에서도 연령대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 940) = 3.679, p < .05$). 중간연령대의 비행수준이 70.607($sd=105.783$)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였고 고연령대와 저연령대의 평균값은 각각 56.558($sd=81.736$), 45.790($sd=82.635$)이었다. 사후검증 방법 중 LSD만 중간연령대의 평균값이 저연령대와 고연령대 평균값 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지지하였고, 저연령대와 고연령대의 차이는 두 가지 사후검증 방법 중 어느 것으로도 지지되지 않았다(표 IV-30).

③ 비행수준과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별 차이

현재 다양한 기관과 조직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기관유형과 청소년의 비행수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표 IV-31).

표 IV-31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별 비행수준 차이 분석

비행범주 (측정항목 수, 점수범위)	구분	청소년 기관 (기관유형A)	민간기관 (기관유형B)	사범·치안 조직 (기관유형C)	준사범 기관 (기관유형D)	F값 (자유도)	사후 검증
전체 (41개 항목, 0~832.710)	평균	47.625	67.052	57.526	74.368	3.751 *	B)A ^L D)A ^{LS}
	s.d.	(86.730)	(84.862)	(74.368)	(118.612)	(3, 944)	D)C ^L
지위·물질사용·신 분도용 비행 (7개 항목, 0~57.870)	평균	6.106	7.504	7.176	6.966	0.893	-
	s.d.	(9.452)	(10.162)	(9.478)	(9.826)	(3, 955)	

비행범주 (측정항목 수, 점수범위)	구분	청소년 기관 (기관유형A)	민간기관 (기관유형B)	사범·치안 조직 (기관유형C)	준사범 기관 (기관유형D)	F값 (자유도)	사후 검증
재산비행 (13개 항목, 0~281.480)	평균	16.356	24.581	22.447	28.531	5.550 ***	B>A ^L C>A ^L D>A ^{LS} D>C ^L
	s.d.	(30.497)	(31.278)	(30.220)	(40.913)	(3, 953)	
폭력비행 (13개 항목, 0~234.630)	평균	20.103	30.626	21.808	30.558	4.340 **	B>A ^L B>C ^L D>A ^L D>C ^L
	s.d.	(37.427)	(46.583)	(32.886)	(49.079)	(3, 958)	
성비행 (8개 항목, 0~259.730)	평균	4.821	5.794	6.343	9.435	1.602	-
	s.d.	(21.450)	(15.671)	(20.172)	(34.474)	(3, 959)	

* 주 1) - 기호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함.

2) 윗첨자 L과 S는 각각 사후검증의 분석방법인 LSD와 Scheffe를 의미함.

3) * p<.05, ** p<.01, *** p<.001

본 연구에서는 운영주체와 서비스 대상을 고려하여 기관유형을 경찰단계에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기관(A)과 민간기관(B), 자체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찰, 검찰 등 사범·치안조직(C), 그리고 준사범기관인 비행예방센터(꿈 키움센터)(D)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관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LSD, Scheffe 분석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총 4개의 비행범주 중 재산비행과 폭력비행의 수준에서 기관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재산비행의 경우 청소년 기관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16.356(sd=30.497)으로 가장 낮았고, 사범 및 치안조직과 민간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각각 22.447(sd=30.220), 24.581(sd=31.278)로 6~8점 이상 높았으며 비행예방센터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행수준은 28.531(sd=40.91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기관유형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F(3, 953) = 5.550, p < .001$). LSD 분석결과

청소년 기관과 나머지 세 유형의 기관 간 차이, 그리고 비행예방센터와 사범·치안조직 간 차이가 유의미함이 지지되었으나 Scheffe 분석결과에서는 점수가 가장 낮았던 청소년 기관과 가장 점수가 높았던 비행예방센터의 평균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기관유형별로 폭력비행의 수준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F(3, 958) = 4.340, p < .01$).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폭력비행 수준은 청소년 기관과 사범·치안조직이 각각 $20.103(sd=37.427)$, $21.808(sd=32.886)$ 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비행예방센터와 민간기관이 각각 $30.558(sd=49.079)$, $30.626(sd=46.583)$ 로 대체로 높았다. LSD 분석결과 청소년 기관과 다른 세 유형의 기관 간 평균 차이와 비행예방센터와 사범·치안조직의 평균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네 개 유형의 비행범주를 모두 고려한 전체 비행수준에서도 기관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 944) = 3.751, p < .05$). 비행예방센터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수준 평균이 $74.368(sd=118.612)$ 로 가장 높았고 민간기관과 사범·치안조직의 청소년이 각각 $67.052(sd=84.862)$, $57.526(sd=74.368)$ 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기록하였으며 청소년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47.625(sd=86.730)$ 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LSD 분석결과 청소년기관의 평균값이 다른 세 유형의 기관보다 유의미하게 낮음을 지지하였다. 반면 Sheffe 분석결과 평균값이 가장 낮은 청소년 기관과 가장 높은 준사범기관 간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5)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인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개인, 가족, 또래, 학교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체계에 존재하는 11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여 통제변수의 영향력이 고려된 상황에서 각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수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①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

표 IV-32는 비행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모형B0은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가족의 경제적 수준만 투입된 기본모형이며 3개의 통제변수 모두 비행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모형R1부터 모형R11까지는 3개의 통제변수만 포함된 기본모형에 각각 한 개의 위험요인만 추가된 모형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선정된 11개 잠재적 위험요인 모두 비행수준 증가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위험요인의 영향력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 개인의 우울 및 불안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beta=.179$, $p<.001$)
- 청소년 개인의 충동성 및 공격성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beta=.366$, $p<.001$)
- 부모의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높아짐($\beta=.176$, $p<.001$)
-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갈등이 커질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높아짐($\beta=.198$, $p<.001$)
- 부부 갈등이 클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높아짐($\beta=.205$, $p<.001$)
-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학대하고 소외시킬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높아짐($\beta=.161$, $p<.001$)
- 비행행위를 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beta=.425$, $p<.001$)
- 학교교사와의 관계가 비우호적일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beta=.245$, $p<.001$)
- 학교의 분위기가 강압적일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beta=.216$, $p<.001$)
- 지역 내 유해환경 접근이 용이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beta=.306$, $p<.001$)

- 지역사회해체의 특성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beta=.214, p<.001$)

표 IV-32 청소년비행 위험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s.e.	β	t값	R2	R2 변화량
B0	성별(여=0, 남=1)	10.551	6.962	.050	1.515	.005	
	연령	-1.109	1.890	-.020	-0.587		
	가족의 경제적 수준(인식)	-3.171	2.141	-.049	-1.481		
R1	우울 및 불안	2.950	0.558	.179	5.281 ***	.036 ***	.030 ***
R2	충동성 및 공격성	6.106	0.524	.366	11.643 ***	.138 ***	.133 ***
R3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5.878	1.105	.176	5.321 ***	.035 ***	.031 ***
R4	부모-자녀 갈등	6.265	1.049	.198	5.975 ***	.043 ***	.039 ***
R5	부부(부모)갈등	7.184	1.173	.205	6.127 ***	.046 ***	.040 ***
R6	학대 및 소외	6.067	1.254	.161	4.837 ***	.031 ***	.026 ***
R7	비행 경험이 있는 친구	8.323	0.599	.425	13.892 ***	.182 ***	.177 ***
R8	교사-학생간 비우호적 관계	7.241	0.966	.245	7.499 ***	.064 ***	.059 ***
R9	강압적 학교분위기	7.512	1.139	.216	6.596 ***	.052 ***	.047 ***
R10	지역 내 유해환경 접근성	7.013	0.737	.306	9.520 ***	.098 ***	.093 ***
R11	지역사회해체	6.681	1.027	.214	6.503 ***	.050 ***	.045 ***

*** $p<.001$

② 비행범주별 위험요인

위험요인의 효과가 비행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4개 범주별 비행수준을 각기 하나의 종속변수로 하여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추가로 검증하였다. 각 요인의 영향력은 앞에서와 같이 통제변수만 포함된 기본모형에 해당 위험요인 하나만 추가로 투입한 후 추가된 요인의 회귀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먼저 통제변수의 경우 비행범주를 망라한 비행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성별, 연령, 가족의 경제적 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비행범주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일부 비행범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폭력비행과도 부(-)적 관련성이 있었다(표 IV-33).

표 IV-33 비행범주별 위험요인 검증 분석결과 요약

구분	위험요인	지위, 물질사용, 신분도용	재산비행	폭력비행	성비행
통제 변인	성별(남)	.006	.055	.061	-.010
	연령	.089 **	-.054	-.006	-.016
	가족의 경제적 수준(인식)	-.073 *	-.027	-.066 *	-.012
개인 차원	우울 및 불안	.167 ***	.199 ***	.151 ***	.096 **
	충동성 및 공격성	.343 ***	.423 ***	.331 ***	.143 ***
가족 차원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203 ***	.195 ***	.173 ***	.069 *
	부모-자녀 갈등	.224 ***	.205 ***	.192 ***	.079 *
	부부(부모)갈등	.217 ***	.214 ***	.172 ***	.119 ***
	학대 및 소외	.177 ***	.171 ***	.144 ***	.089 **
또래차원	비행 경험이 있는 친구	.403 ***	.447 ***	.386 ***	.204 ***
학교 차원	교사-학생 간 비우호적 관계	.249 ***	.272 ***	.236 ***	.089 **
	강압적 학교분위기	.225 ***	.231 ***	.227 ***	.054
지역사회 차원	지역 내 유해환경 접근성	.304 ***	.309 ***	.289 ***	.145 ***
	지역사회해체	.204 ***	.236 ***	.190 ***	.113 ***

*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β 값임.

2) * $p < .05$, ** $p < .01$, *** $p < .001$

11개의 위험요인은 비행범주와 상관없이 대체로 음(-)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표준화 회귀계수(β)에 기초하여 위험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가늠해 보면 가장 두드러진 위험요인은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와 ‘충동성 및 공격성’이

다. 전자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beta=.403$, $p<.001$) 및 재산비행($\beta=.447$, $p<.001$)과의 관계에서 .4를 상회하였고 폭력비행과의 관계($\beta=.386$, $p<.001$)에서는 .4에 육박할 정도로 각 범주의 비행수준과 높은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재산비행 및 폭력비행의 수준 모두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충동성 및 공격성 변수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특히 재산비행($\beta=.423$, $p<.001$)과의 관계에서 β 값이 .4를 상회할 정도로 강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자신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욕구를 자제하기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 이 위험요인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beta=.343$, $p<.001$), 폭력비행($\beta=.331$, $p<.001$)과도 β 값 .3 이상의 관련성을 보였다. ‘충동성 및 공격성’외 또 다른 개인차원의 위험요인인 ‘우울 및 불안’의 β 값은 대체로 1점대 중후반으로 종속변수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족체계에서는 ‘부모-자녀 갈등’,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부부(부모)갈등’ 요인의 β 값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초반으로 종속변수와의 관련성 정도가 유사하였고, ‘학대 및 소외’의 β 값은 1점대 중후반으로 영향력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학교체계의 위험요인인 ‘교사-학생 간 비우호적 관계’와 ‘강압적 학교분위기’는 전반적으로 2점대 중반의 β 값을 보였다.

지역사회체계에서는 ‘지역 내 유해환경 접근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 요인의 β 값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beta=.304$, $p<.001$), 재산비행($\beta=.309$, $p<.001$) 및 폭력비행($\beta=.289$, $p<.001$)과의 관계에서 .3 전후로 이 위험요인과 각 범주의 비행수준과의 관계는 크게 강하지는 않지만 약하다고도 볼 수 없는 중간수준 정도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사회 위험요인인 ‘지역사회해체’의 β 값은 2점대 내외의 수준을 보였다.

위험요인의 영향력은 대체로 비행범주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에 있어 성비행은 예외였는데 즉, 지위물 질사용·신분도용 비행, 재산비행 및 폭력비행에 대한 각 위험요인의 영향력(β)은 상당히 유사한 반면, 성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낮아지는 일관된 경향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의 β 값은 대체로 4점대 내외였으나 성비행에 대해서는 2점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강압적 학교분위기의 β 값은 다른 3개의 비행범주에 대해서는 2점대 초반을 기록하였으나 성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낮아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성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우 다른 비행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6) 청소년비행의 보호요인

네 번째 연구문제는 비행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개인, 가족, 또래, 학교 및 지역사회 특성 중 청소년의 비행수준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15개의 잠재적 보호요인을 선정하였다. 위험요인 검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분석을 실행하여 각 보호요인과 청소년 비행수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① 청소년비행의 보호요인

표 IV-34는 청소년 비행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앞서서와 같이 이 표에서 모형B0은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가족의 경제적 수준만 포함된 것이며 모형F1부터 모형F15는 통제변수만 포함된 모형B0에 각각 한 개의 보호요인만 추가된 것이다. 분석결과 총 15개 잠재적 보호요인 중 도덕관념($\beta = -.300, p < .001$),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beta = -.142, p < .001$), 부모의 자녀존중 태도($\beta = -.077, p < .05$),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B = -.323, p < .001$),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beta = -.271, p < .001$), 우호적 관계의 교사($\beta = -.129, p < .001$) 등 6개 요인이 청소년비행 수준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친밀한 이웃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비행수준의 증가와 관련성을 보였다($\beta = .117, p < .001$). 이러한 결과는 친밀하게 지내는 이웃으로부터 청소년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을 비행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친밀한 이웃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는 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해석 상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책임성($\beta = -.028, p > .05$), 지적능력($\beta = .023, p > .05$), 꿈·비전 성취지향($\beta = -.058, p > .05$), 내적 통제소재($\beta = -.059, p > .05$), 자아탄력성($\beta = .041, p > .05$), 부모의 지도감독($\beta = -.061, p > .05$), 지역 내 친사회적 활동 기회($\beta = -.018, p > .05$),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beta = -.015, p > .05$)는 본 표본에서 청소년의 비행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표 IV-34).

표 IV-34 회귀분석을 통한 보호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s.e.	β	t값	R2	R2 변화량
B0	성별(여=0, 남=1)	10.551	6.962	.050	1.515	.005	
	연령	-1.109	1.890	-.020	-0.587		
	가족의 경제적 수준(인식)	-3.171	2.141	-.049	-1.481		
F1	책임성	-0.658	0.785	-.028	-0.838	.007	.001
F2	지적능력	0.997	1.490	.023	0.669	.006	.001
F3	꿈·비전 성취 지향	-2.535	1.460	-.058	-1.736	.008	.003
F4	내적 통제소재	-1.847	1.050	-.059	-1.760	.009	.003
F5	자아탄력성	1.533	1.262	.041	1.215	.007	.002

모형	변수	B	s.e.	β	t값	R2	R2 변화량
F6	도덕관념	-7.883	0.859	-.300	-9.176 ***	.095 ***	.089 ***
F7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3.678	0.865	-.142	-4.250 ***	.025 ***	.020 ***
F8	부모의 지도감독	-1.746	0.954	-.061	-1.830	.009	.004
F9	부모의 자녀존중 태도	-1.937	0.851	-.077	-2.276 *	.011	.006 *
F10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	-8.620	0.857	-.323	-10.054 ***	.107 ***	.102 ***
F11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7.029	0.846	-.271	-8.306 ***	.077 ***	.072 ***
F12	우호적 관계의 선생님	-3.073	0.794	-.129	-3.868 ***	.022 ***	.016 ***
F13	친밀한 이웃관계	4.118	1.176	.117	3.501 ***	.019 **	.014 ***
F14	지역 내 친사회적 활동 기회	-0.461	0.883	-.018	-0.522	.006	.000
F15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0.518	1.140	-.015	-0.455	.005	.000

** p<.01, *** p<.001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된 요인의 영향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 개인의 도덕관념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낮아짐($\beta = -.300$, $p < .001$)
-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낮아짐($\beta = -.142$, $p < .001$)
-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수준이 낮아짐($\beta = -.077$, $p < .05$)
- 친구들의 성향이 친사회적일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낮아짐($\beta = -.323$, $p < .001$)
- 문제행동에 대한 또래친구의 통제가 강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낮아짐($\beta = -.271$, $p < .001$)
- 선생님과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낮아짐($\beta = -.129$, $p < .001$)
-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기대되는 달리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아짐($\beta = .117$, $p < .001$)

② 비행범주별 보호요인

보호요인의 영향력이 비행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행범주 각각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일련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각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방법은 위험요인의 효과검증 방법과 동일하다. 즉, 통제변수만 포함된 기본모형에 각기 하나의 보호요인만 추가한 후 추가된 요인의 회귀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에 기초하여 각 보호요인이 비행수준 감소와 관련이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표 IV-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증을 실시한 15개 보호요인 중 일부만 비행수준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β)에 기초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관념, 또래 차원에서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과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가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요인의 β 값은 성비행과의 관계에서 -1점 내외를, 그리고 나머지 비행범주와의 관계에서는 -3점 내외를 기록하였다. 즉, 도덕관념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가 존재할수록,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통제가 강할수록 비행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강력하게 예측되며, 이러한 효과는 모든 비행범주를 망라하였다.

가족차원에서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와 학교차원에서 '우호적 관계의 교사'도 모든 범주의 비행수준을 감소시키는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요인의 β 값은 대체로 -1점대 중초반을 기록하였다. 부모의 자녀존중 태도는 성비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범주의 비행수준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계의 강도를 의미하는 $|\beta|$ 값은 1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꿈비전 성취 지향'($\beta = -.078, p < .05$)과 '부모의 지도감독'($\beta = -.071, p < .05$)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에 대해서만 약한 보호효과가 있었고, '내적 통제소재'는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beta = -.110, p < .001$)과 성비행($\beta = -.076, p < .05$)을 낮추는 보호효과가 있었다.

표 IV-35 비행범주별 보호요인 검증 분석결과 요약

구분	위험요인	지위, 물질사용, 신분도용비행	재산비행 DT2A	폭력비행 DT3A	성비행 DT4A
통제 변인	성별(남)	.006	.055	.061	-.010
	연령	.089 **	-.054	-.006	-.016
	가족의 경제적 수준(인식)	-.073 *	-.027	-.066 *	-.012
개인 차원	책임성	-.049	-.004	-.034	-.016
	지적능력	-.022	.040	.024	-.001
	꿈-비전 성취 지향	-.078 *	-.049	-.041	-.051
	내적 통제소재	-.110 ***	-.039	-.023	-.076 *
	자아탄력성	.016	.047	.074 *	-.040
	도덕관념	-.297 ***	-.316 ***	-.258 ***	-.181 ***
가족 차원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168 ***	-.122 ***	-.110 ***	-.121 ***
	부모의 지도감독	-.071 *	-.055	-.045	-.051
	부모의 자녀존중 태도	-.074 *	-.070 *	-.074 *	-.040
또래 차원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	-.289 ***	-.331 ***	-.306 ***	-.155 ***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288 ***	-.289 ***	-.261 ***	-.093 **
학교 차원	우호적 관계의 선생님	-.159 ***	-.119 ***	-.123 ***	-.076 *
지역 사회 차원	친밀한 이웃관계	.124 ***	.111 ***	.113 ***	.058
	지역내 친사회적 활동 기회	-.033	-.007	-.023	-.011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011	-.047	-.006	-.003

* 주 : 1)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β 값을 가리킴

2) * $p < .05$, ** $p < .01$, *** $p < .001$,

친밀한 이웃관계의 경우 성비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범주의 비행수준과 모두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전체 비행수준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는데, 이는 ‘친밀한 이웃관계’가 청소년비행의 보호요인이 아니라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행 혹은 위법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또는 그런 행동을 장려, 묵인, 방임하는 친밀한 이웃의 존재가 결과적으로 청소년비행을 강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폭력비행에 대한 ‘자아탄력성’도 정(+)¹⁰⁴적 영향력을 보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클수록 폭력비행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beta = .074, p < .05$), 이는 ‘폭력행위를 행사해도 자아회복력이 높은 청소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폭력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으로 일부 해석되나 측정도구의 한계 등 체계적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위험요인의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보호요인의 영향력도 성비행 범주에서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재산비행 등 다른 3개의 범주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들’의 $|\beta|$ 값은 3점 내외,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의 $|\beta|$ 값은 2점대 중후반을 기록하였으나, 성비행과의 관계에서 그 값은 각각 .155와 .093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비행행동을 예방, 억제하고자 할 때 성비행은 다른 범주의 비행과는 보다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7)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유형별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¹⁰⁴)

연구문제 5, 연구문제 6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청소년이 참여한 적이 있는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특성과 비행 감소에의 도움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선도프로그램을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행동교정 프로그램, 사회성증진 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포함되는 세부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참여여부를 확인하였다.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비행행동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산출 등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4점

104)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선도프로그램의 유형 구분과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척도로 평가된 응답내용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제시하고 부정평가(① 전혀 도움이 안됨 & ②도움이 안되는 편)와 긍정평가(③도움이 되는 편 & ④매우 도움이 됨)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비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①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범주에는 5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그 중 조사대상 청소년의 참여경험이 가장 많은 것은 ‘개별상담(49.5%)’과 ‘집단상담(40.5%)’이었다. 반면 또래상담, 범죄예방위원과의 정기적 만남, 멘토링의 경우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대체로 10% 중반에서 20% 초반 정도로 분포하였다. 이 범주에 포함된 5개 세부 프로그램 경험률의 평균은 28.8%로, 본 표본에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10명 중 2명 이상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표 IV-36).

표 IV-36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개별상담	49.5	19.6	80.4	2.99	0.79
집단상담	40.5	24.1	75.9	2.90	0.81
또래상담	21.8	24.4	75.6	2.92	0.86
범죄예방위원과의 정기적 만남	17.1	18.5	81.5	3.09	0.80
멘토링	15.0	15.4	84.6	3.10	0.70
평균	28.8	20.4	79.6	3.00	0.79

다음으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유형에 속한 5개 세부 프로그램이 비행행동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4점 리커트척도로 평가하게 한 결과, 평균값이 모두 2.9점 이상이였다. 특히 ‘범죄예방위원과의 정기적 만남’, ‘멘토링’의 평균이

3.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평가 응답률은 멘토링(84.6%)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범죄예방위원과의 정기적 만남(81.5%), 개별상담(80.4%) 순이었으며, 집단상담(75.9%)과 또래상담(75.6%)의 긍정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도움정도는 보통(3.0) 수준이며, 참여 청소년 10명 중 약 8명 정도가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표 IV-36).

② 행동교정 프로그램

행동교정 프로그램 유형에는 ‘중독문제’와 관련된 치료프로그램 세 개가 포함되었다. 이 중 조사대상 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은 금연프로그램(46.5%)이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스마트폰·게임 과사용 치료 프로그램(24.1%), 금주프로그램(22.1%) 순이었다. 평균값이 높은 프로그램은 금주프로그램(평균=2.69, sd=0.933), 인터넷·스마트폰·게임 과사용 치료 프로그램(평균=2.65, sd=0.869), 금연프로그램(평균=2.50, sd=0.960) 순이며, 이 세 프로그램의 전체 경험률 평균은 30.9%,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평가는 2.61점으로 ‘도움이 되는 편’으로 인식하였다.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응답률은 금주프로그램(64.0%)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은 인터넷·스마트폰·게임 과사용 치료 프로그램(63.3%), 금연프로그램(53.6%) 순이었다(표 IV-37).

표 IV-37 행동교정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금연 프로그램	46.5	46.4	53.6	2.50	0.96
금주 프로그램	22.1	36.0	64.0	2.69	0.93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사용 치료	24.1	36.7	63.3	2.65	0.87
평균	30.9	39.7	60.3	2.61	0.92

③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사회성증진 프로그램 유형에는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5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의 프로그램 경험률은 10%후반에서 20%초반이며 전체 평균은 20.3% 수준으로 나타나 심리 및 치료 프로그램(28.8%)과 행동교정 프로그램(30.9%)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이해(22.3%), 분노조절(22.3%), 의사소통 기술향상(22.0%)보다 (소시오드라마 등)연극활용(17.8%), 대인관계증진(17.3%) 프로그램 경험률이 대체로 낮았다.

다음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의 비행행동 감소에 대한 도움정도는 2.84에서 2.97까지의 범위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평균값은 2.92점으로 '도움이 되는 편'으로 양호한 평가결과를 보였다. 비행행동 감소에 있어 긍정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자기이해향상(79.8%), 대인관계증진(77.2%), 의사소통기술 향상(76.4%), 연극활용(75.2%), 분노조절(72.5%) 순이었다(표 IV-38).

표 IV-38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자기이해 향상	22.3	20.2	79.8	2.95	0.74
분노조절	22.3	27.5	72.5	2.84	0.84
연극활용(소시오드라마 등)	17.8	24.8	75.2	2.89	0.86
의사소통 기술 향상	22.0	23.6	76.4	2.94	0.81
대인관계 증진	17.3	19.0	77.2	2.97	0.78
평균	20.3	23.0	76.2	2.92	0.81

④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에는 직업체험, 진로탐색 등 모두 10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각각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률은 5.9%부터 46.1%까지 다양하였는데, 전체 평균은 22.6% 수준이었다. 특히 직업체험(46.1%), 진로탐색(45.4%), 적성검사(40.6%) 등 일회성이나 단기간 적성과 직업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이 40% 이상으로 높았고 취업알선(5.9%), 창업교육(7.0%), 검정고시준비 지원(7.7%), 대입준비 지원(7.8%) 등 장기간에 걸쳐 구직과 학업지속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경험률은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직업훈련’, ‘학업멘토링’, ‘학업 및 학습 지원’ 경험률은 각각 25.9%, 21.1%, 18.7%로 조사대상 청소년 4~5명중 1명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이 비행행동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보면, 총 10개 중 8개 프로그램이 평균 3.0을 상회하고, 나머지 2개도 3.0에 근접하는 평균값을 보였다.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응답률도 10개 프로그램 모두 80%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표 IV-39).

표 IV-39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학업멘토링	21.1	19.4	80.6	2.95	0.83
학업 및 학습 지원	18.7	20.5	79.5	2.96	0.74
검정고시 준비 지원	7.7	19.1	80.9	3.03	0.77
대입 준비 지원	7.8	15.9	84.1	3.04	0.81
적성검사	40.6	15.1	84.9	3.06	0.73
진로탐색	45.4	13.1	86.9	3.07	0.70
직업체험	46.1	15.2	84.8	3.05	0.72
직업훈련	25.9	18.2	81.8	3.02	0.80
창업교육	7.0	19.0	81.0	3.08	0.85
취업알선	5.9	21.6	78.4	3.10	0.88
평균	22.6	17.7	82.3	3.04	0.78

⑤ 가족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상담, 가족캠프, 부모교육이 해당된다. 참여 경험률은 부모교육 13.3%, 가족상담 11.5%, 가족캠프 9.6% 등 평균 경험률은 11.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비행행동 감소에 대한 도움 정도는 가족캠프 3.11, 가족상담 3.07, 부모교육 3.0 등 평균 3.06점을 기록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는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가족캠프(84.1%)였고 그 다음은 가족상담(82.5%), 부모교육(79.1%)으로 모두 80% 수준의 긍정평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표 IV-40).

표 IV-40 가족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가족상담	11.5	17.5	82.5	3.07	0.81
가족캠프	9.6	15.9	84.1	3.11	0.75
부모교육	13.3	20.9	79.1	3.00	0.80
평균	11.5	18.1	81.9	3.06	0.79

⑥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유형에는 음악, 미술, 댄스, 체육 및 각종 체험활동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매개로 하는 8개의 세부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참여 경험률은 최소 12.6%(댄스 및 비보잉)부터 44.6%(체육/운동 활동)까지 차이를 보였는데 평균은 26.8% 수준이었다. 참여경험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체육/운동 활동(44.6%), 동아리활동(35.3%), 각종 체험활동(29.1%), 음악활동(26.8%), 미술활동(25.2%), 요리활동(23.9%),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16.6%), 댄스 및 비보잉(12.6%) 순이었다.

한편,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이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8개 세부 프로그램 전체 평균이 3.18점으로, 이는 선도프로그램 7개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이다. 특히 체육/운동활동에 대한 긍정 평가가 3.31점을 기록할 정도로 두드러졌고, 그 다음은 동아리활동(3.20)과 댄스 및 비보잉(3.19), 음악활동(3.17),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프로그램(3.17), 요리활동(3.16), 미술활동(3.11), 각종 체험활동(3.10) 순이었다.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긍정응답률도 80%를 크게 상회하였는데, 긍정평가 비율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제시하면 체육/운동 활동(92.8%), 요리활동(88.7%), 동아리활동(87.5%),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87.1%), 각종 체험

활동(86.6%), 댄스 및 비보잉(86.0%), 미술활동(84.8%), 음악활동(84.3%) 순이었다(표 IV-41).

표 IV-41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각종 체험활동	29.1	13.4	86.6	3.10	0.74
요리활동	23.9	11.3	88.7	3.16	0.74
미술활동	25.2	15.2	84.8	3.11	0.75
음악활동	26.8	15.7	84.3	3.17	0.77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16.6	12.9	87.1	3.17	0.76
댄스 및 비보잉	12.6	14.0	86.0	3.19	0.86
동아리 활동	35.3	12.5	87.5	3.20	0.73
체육/운동 활동	44.6	7.3	92.8	3.31	0.69
평균	26.8	12.8	87.2	3.18	0.76

⑦ 봉사활동

보호처분의 일환인 사회봉사명령도 대표적인 선도프로그램에 해당되는데, 이 외 보호처분과 관계없이 선도목적의 봉사활동도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조사표본 중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37.3%, 그리고 기타 선도목적의 봉사활동 참여경험은 그보다 다소 낮은 35.0%로 나타났다. 이 두 세부프로그램의 경험률은 평균 36.2%로 7개 유형의 선도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높았다. 즉, 보호처분 시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봉사활동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선도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2.86점)는 대

체로 부정적이었으며,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및 기타 선도목적의 봉사활동의 도움정도는 각각 2.77, 2.94점을 각각 기록하였다. 긍정평가 응답률도 선도목적의 봉사활동(76.8%)과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68.2%) 모두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라 처분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노역(勞役)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고, 아울러 봉사활동의 의미나 취지에 대한 공감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표 IV-42).

표 IV-42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구분	경험률 (%)	도움여부(%)		도움정도(4점척도)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s.d.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37.3	31.8	68.2	2.77	0.91
기타 선도목적의 봉사활동	35.0	23.2	76.8	2.94	0.83
평균	36.2	27.5	72.5	2.86	0.87

(8) 선도프로그램 유형별 효과성 인식

마지막 연구문제 7번과 관련하여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개입의 성과 혹은 효과성은 목표성취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통해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하므로 선행연구(유성경 외, 1999; 이은경 외, 2003; OJJDP, 1995)에 기초하여 청소년 교정의 목표를 ‘심리·정서적 안정’, ‘학업에 대한 동기강화 및 교육적 성공’, ‘생활습관 개선’, ‘긍정적 가치관 확립’, ‘가족관계 증진’,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활동 및 참여기회 확대’ 등 7가지로 구체화하고 각 목표를 고려하여 5점 척도(①매우 비효과적~⑤매우 효과적)에 따라 청소년이 각각의 효과

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105)

①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표 IV-43). 분석결과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도프로그램의 각 유형별 효과성 정도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는 효과성 차원(청소년 교정의 목표)과 상관없이 균질적이었다. 즉, 최하위 평가점수를 받은 ‘학업증진과 관련한 봉사활동의 효과성(3.16)’과 최상위 평가점수를 받은 ‘긍정적 가치관 형성과 관련한 여가문화취미 활동의 효과성(3.48)’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특히 모든 효과성 차원이 고려된 평균값에서 이러한 균질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여가문화취미 활동’의 평균이 3.42로 가장 높았고, ‘봉사활동’이 3.26으로 가장 낮았지만 그 차이(0.16)가 미비하고, 이 외 5개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한 평가평균도 모두 3.33부터 3.35의 범위 내에 있어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IV-43 프로그램 유형별 효과성 인식 (5점 척도 사용)

효과성 차원 (교정목표)	프로그램 유형						
	상담 및 치료	행동 교정	사회성 증진	교육 및 진로	가족 대상	여가 문화 취미	봉사 활동
심리-정서적 안정	3.38	3.34	3.34	3.33	3.34	3.44	3.23
	(0.94)	(0.93)	(0.94)	(0.93)	(0.93)	(0.95)	(0.99)
학업증진(학업동기 포함)	3.20	3.22	3.26	3.35	3.23	3.35	3.16
	(0.95)	(0.93)	(0.96)	(0.97)	(0.95)	(0.96)	(0.99)

105) 이 부분은 4개의 세부 연구문제로 구체화하여 검토하였다. 즉, ①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대상 청소년의 전반적인 평가를 확인하였다. 이후 이러한 평가결과가 ② 성별, ③ 연령대, ④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효과성 차원 (교정목표)	프로그램 유형						
	상담 및 치료	행동 교정	사회성 증진	교육 및 진로	가족 대상	여가 문화 취미	봉사 활동
생활습관 개선	3.32	3.34	3.33	3.35	3.31	3.41	3.27
	(0.95)	(0.94)	(0.94)	(0.96)	(0.94)	(0.95)	(0.99)
긍정적 가치관 형성	3.45	3.39	3.39	3.41	3.39	3.48	3.31
	(0.96)	(0.96)	(0.97)	(0.94)	(0.95)	(0.96)	(0.99)
가족관계 향상	3.32	3.35	3.35	3.31	3.44	3.37	3.24
	(0.10)	(0.97)	(0.98)	(0.99)	(0.97)	(0.99)	(1.00)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3.40	3.39	3.38	3.37	3.30	3.47	3.28
	(0.98)	(0.96)	(0.98)	(0.97)	(0.97)	(1.01)	(1.01)
지역내 건강한 활동기회 확대	3.30	3.30	3.32	3.33	3.29	3.41	3.26
	(0.96)	(0.96)	(0.99)	(0.96)	(0.97)	(1.01)	(0.943)
전체 평균 및 표준편차	3.34	3.33	3.34	3.35	3.33	3.42	3.26
	(0.86)	(0.95)	(0.97)	(0.96)	(0.96)	(0.97)	(1.02)

둘째,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프로그램 유형이나 효과성 차원과 관계없이 균질적인데, 점수도 대체로 3.3~3.4점에 머물러 ‘보통(3점)’보다는 양호하지만 ‘효과적(4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와 같은 실험설계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과학적 평가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인식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서비스 품질 관점(Martin & Kettner, 2010)에서 보면 이와 같이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평가결과는 향후 선도프로그램의 만족도와 효과성 제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셋째,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평가는 프로그램 유형에 관계없이 상당히 균질적이었으나 여가문화취미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이 프로그램 유형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평균을

효과성 차원별로 제시하면, 긍정적 가치관 형성 차원 3.48,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차원 3.47, 심리·정서적 안정 차원 3.44, 생활습관 개선 차원 3.41, 지역 내 건전한 활동 기회 확대 차원 3.41, 학업증진 차원 3.35로 이러한 수치는 각 차원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에 해당한다. 여가문화취미 활동에서 유일하게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기록하지 못한 것은 가족관계 향상 차원인데, 가족대상 프로그램이 3.44로 가장 높은 값을, 여가문화취미 활동이 3.37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여가문화취미 활동의 효과성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 유형에 속한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 내는 활동프로그램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비행행동을 대체하는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차별적 교제’ 즉, 긍정적인 사회화 경험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선도프로그램의 각 유형과 교정목표(효과성 차원)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유형은 심리·정서적 안정 차원(3.38), 긍정적 가치관 형성 차원(3.45),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차원(3.40)에서 여가문화취미 활동 다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 세 가지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가족대상 프로그램 유형 역시 관련성이 가장 높은 가족관계 향상 차원에서 3.44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도 학업증진 차원에서 3.35의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유형의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하는 바에 충실할 경우 실제 교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의 효과성이 모든 프로그램 유형 가운데 가장 저평가되었다는 점이다. 봉사활동의 효과성은 낮게는 3.16(학업증진 차원)부터 높게는 3.31(긍정적 가치관 형성)까지 분포하여 모든 차원에서 ‘보통’ 수준이므로 선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이 교정효과가 미흡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각각의

효과성 차원에서 볼 때, 봉사활동이 예외 없이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은 교정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즉, 봉사활동이 비행행동을 ‘처벌’하는 단순한 매개체가 아니라 교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의미와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기성찰과 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운영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선도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의 성별 차이 검증

선도프로그램의 유형별 효과성 인식에 있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7개의 효과성 차원(교정목표) 각각에 대해 청소년이 5점 척도로 평가한 선도프로그램 효과성의 평균값이다. 분석은 7개 프로그램 유형별로 실시되었는데 모든 프로그램 유형에서 남자청소년의 평가가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프로그램 유형은 ‘상담 및 치료’, ‘여가문화취미활동’ 2개였다. 선도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IV-44, 그림 IV-5).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973) = -2.061, p < .05$). 여자청소년의 효과성 평가점수는 평균 3.235($sd=0.905$), 남자청소년은 그 보다 근소하게 높은 3.368($sd=0.862$) 수준이었다.
- 여가문화취미활동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t(962) = -2.243, p < .05$), 남자의 평가점수 평균(3.457, $sd=0.881$)이 여자(3.300, $sd=0.944$)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 행동교정 프로그램의 경우 남자(3.358, $sd=0.862$)가 여자(3.253, $sd=0.908$)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t(971) = -1.623,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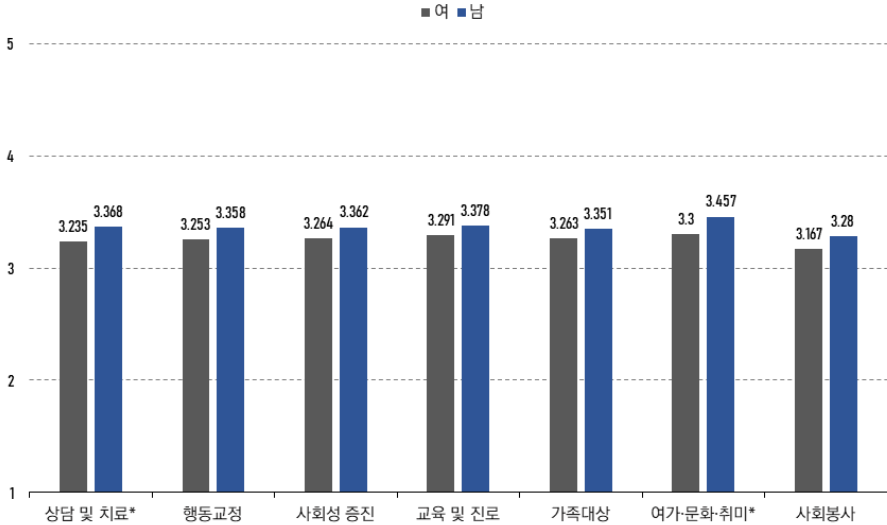
표 IV-44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에 있어 성별 차이

프로그램 유형	구분	여	남	t값 (자유도)
상담 및 치료	평균	3.235	3.368	-2.061 *
	s.d.	(0.905)	(0.862)	(973)
행동교정	평균	3.253	3.358	-1.623
	s.d.	(0.908)	(0.862)	(971)
사회성 증진	평균	3.264	3.362	-1.451
	s.d.	(0.961)	(0.882)	(961)
교육 및 진로	평균	3.291	3.378	-1.468
	s.d.	(0.911)	(0.877)	(959)
가족대상	평균	3.263	3.351	-1.340
	s.d.	(0.906)	(0.871)	(958)
여가·문화·취미	평균	3.300	3.457	-2.243 *
	s.d.	(0.944)	(0.881)	(962)
사회봉사	평균	3.167	3.280	-1.624
	s.d.	(0.963)	(0.927)	(963)

* $p < .05$

-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은 여자(3.264, $sd=0.961$)가 남자(3.362, $sd=0.882$)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t(961) = -1.451, p > .05$).
-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남자(3.378, $sd=0.877$)가 여자(3.291, $sd=0.911$)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t(959) = -1.468, p > .05$).
- 가족대상 프로그램도 남자(3.351, $sd=0.871$)가 여자(3.263, $sd=0.906$)보다 좋게 평가했으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958) = -1.340, p > .05$).
-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도 남자(3.457, $sd=0.881$)가 여자(3.300, $sd=0.944$)보다 약 0.16점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t(962) = -2.243, p > .05$).
- 사회봉사 프로그램 역시 남자(3.280, $sd=0.927$)가 여자(3.167, $sd=0.963$) 보다 긍정

적으로 평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t(963) = -1.624, p > .05$).



* $p < .05$

그림 IV-5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에 있어 성별 차이

③ 선도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의 연령대별 차이 검증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대별 평가점수 평균값만 살펴보면, 대체로 12~13세 저연령대 청소년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16세 이상 고연령대 청소년의 평가점수가 중간, 그리고 14~15세 중간연령대 청소년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 증진, 교육 및 진로, 가족대상, 여가문화·취미, 봉사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표 IV-45, 그림 IV-6).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저연령대(평균=3.420, sd=0.938) 평균이 가장 높고, 고연령대(평균=3.369, sd=0.813), 중간연령대(평균=3.275, sd=0.946) 순이며,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 968) = 1.637, p > .05$).
- 행동교정 프로그램 효과성 평균 점수도 저연령대(평균=3.399, sd=0.970), 고연령대(평균=3.338, sd=0.842), 중간연령대(평균=3.315, sd=0.904) 순이며,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 968) = 0.893, p > .05$).
-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효과성 평균 점수는 고연령대(평균=3.371, sd=0.825)가 가장 높고, 저연령대(평균=3.362, sd=1.029), 중간연령대(평균=3.287, sd=0.989) 순이나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 956) = 1.012, p > .05$).
-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저연령대(평균=3.390, sd=0.989)가 가장 높고 고연령대(평균=3.379, sd=0.824), 중간연령대(평균=3.315, sd=0.955) 순이나 연령대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 955) = 0.608, p > .05$).
- 가족대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저연령대(평균=3.394, sd=0.968)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고연령대(평균=3.358, sd=0.820), 중간연령대(평균=3.277, sd=0.946) 순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2, 954) = 1.132, p > .05$).

표 IV-45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에 있어 연령대 차이

프로그램 유형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F값 (자유도)	사후검증
상담 및 치료	평균	3.420	3.275	3.369	1.637	-
	s.d.	(0.938)	(0.946)	(0.813)	(2, 968)	
행동교정	평균	3.399	3.315	3.338	0.893	-
	s.d.	(0.970)	(0.904)	(0.842)	(2, 968)	
사회성 증진	평균	3.362	3.287	3.371	1.012	-
	s.d.	(1.029)	(0.989)	(0.825)	(2, 956)	
교육 및 진로	평균	3.390	3.315	3.379	0.608	-
	s.d.	(0.989)	(0.955)	(0.824)	(2, 955)	
가족대상	평균	3.394	3.277	3.358	1.132	-
	s.d.	(0.968)	(0.946)	(0.820)	(2, 954)	

프로그램 유형	구분	저연령대 (12-13세)	중간연령대 (14-15세)	고연령대 (16세 이상)	F값 (자유도)	사후검증
여가문화취미	평균	3.506	3.369	3.442	1.108	-
	s.d.	(0.994)	(0.978)	(0.830)	(2, 958)	
봉사활동	평균	3.396	3.225	3.247	1.188	-
	s.d.	(1.033)	(0.987)	(0.888)	(2, 958)	

* 주 1) - 기호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함

-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도 저연령대(평균=3.506, sd=0.994), 고연령대(평균=3.442, sd=0.830), 중간연령대(평균=3.369, sd=0.978)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는데,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 958) = 1.108, p > .05$)
-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역시 저연령대(평균=3.396, sd=1.033), 고연령대(평균=3.247, sd=0.888), 중간연령대(평균=3.225, sd=0.987) 순으로 평균값이 높았으나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 958) = 1.188,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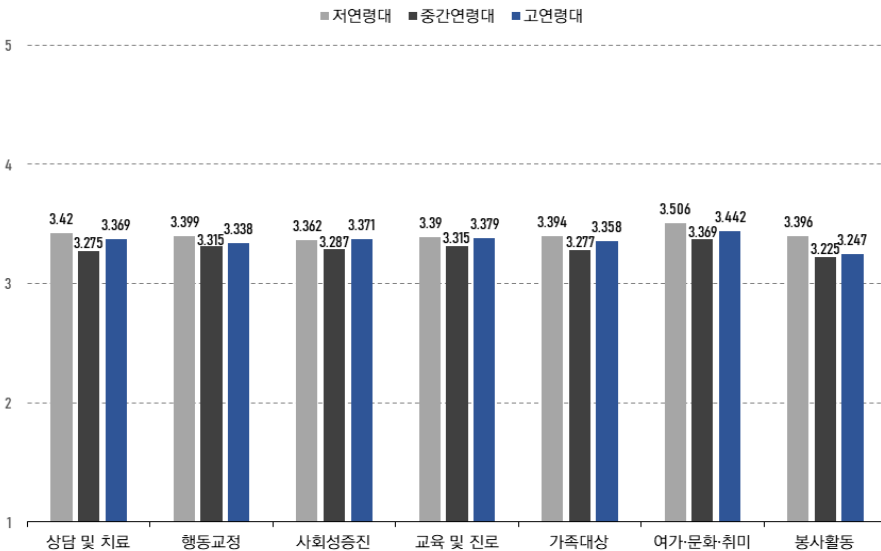


그림 IV-6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

④ 선도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의 운영기관별 차이 검증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참여 청소년의 인식이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된 경우 LSD와 Sheffe분석을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7개 프로그램 유형 모두에서 운영기관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IV-46). 모든 프로그램 유형에서 청소년기관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민간기관과 사법·치안조직, 비행예방센터 순이었다. 다만 단순 평균값의 차이를 '더 높다', '더 낮다'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만큼 사후검증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는 기관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 972)=5.638, p<.05$). 효과성 평가의 평균값은 청소년기관(평균=3.492, $sd=0.880$)이 가장 높았고, 민간기관(평균=3.373, $sd=0.862$), 사법·치안조직(평균=3.299, $sd=0.863$), 준사법기관(평균=3.179, $sd=0.874$) 순이었다. LSD 분석 결과 청소년기관과 사법·치안조직 간 차이,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 그리고 민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Sheffe 분석에서는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 행동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F(3, 970)=5.663, p<.001$). 효과성 평가의 평균값은 청소년기관(평균=3.505, $sd=0.849$)이 가장 높고, 민간기관(평균=3.337, $sd=0.922$)과 사법·치안조직(평균=3.297, $sd=0.824$)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았으며 준사법기관(평균=3.190, $sd=0.901$)이 가장 낮았다. LSD 분석결과 청소년기관은 다른 세 유형의 기관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Sheffe 분석에서는 청소년기관과 사법·치안조직,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역시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3, 960)=4.185, p<.01$). 효과성 평가의 평균값은 청소년기관(평균=3.478,

sd=0.886), 민간기관(평균=3.363, sd=0.907), 사법·치안조직(평균=3.323, sd=0.899), 준사법기관(평균=3.192, sd=0.910) 순이었다. LSD 분석결과 청소년기관과 사법·치안조직 간 차이,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Sheffe 분석결과에서는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만 지지되었다.

표 IV-46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별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

프로그램 유형	구분	청소년 기관 (기관유형A)	민간기관 (기관유형B)	사법·치안 조직 (기관유형C)	준사법기관 (기관유형D)	F값 (자유도)	사후 검증
상담 및 치료	평균	3.492	3.373	3.299	3.179	5.638 *	A)C ^L A)D ^{LS}
	s.d.	(0.880)	(0.862)	(0.863)	(0.874)	(3, 972)	B)D ^L
행동교정	평균	3.505	3.337	3.297	3.190	5.663 ***	A)B ^L A)C ^{LS}
	s.d.	(0.849)	(0.922)	(0.824)	(0.901)	(3, 970)	A)D ^{LS}
사회성 증진	평균	3.478	3.363	3.323	3.192	4.185 **	A)C ^L A)D ^{LS}
	s.d.	(0.886)	(0.907)	(0.899)	(0.910)	(3, 960)	
교육 및 진로	평균	3.493	3.415	3.300	3.228	4.350 **	A)C ^L A)D ^{LS}
	s.d.	(0.900)	(0.900)	(0.863)	(0.872)	(3, 958)	B)D ^L
가족대상	평균	3.475	3.372	3.287	3.192	4.564 **	A)C ^L A)D ^{LS}
	s.d.	(0.860)	(0.851)	(0.889)	(0.902)	(3, 957)	B)D ^L
여가문화취미	평균	3.568	3.444	3.377	3.289	4.204 **	A)C ^L A)D ^{LS}
	s.d.	(0.899)	(0.851)	(0.887)	(0.938)	(3, 961)	
사회봉사	평균	3.446	3.279	3.193	3.088	6.595 ***	A)C ^{LS} A)D ^{LS}
	s.d.	(0.923)	(0.893)	(0.938)	(0.951)	(3, 961)	B)D ^L

* 주: 1) 윗첨자 L과 S는 각각 사후검증의 분석방법인 LSD와 Scheffe를 의미함
2) * p<.05, ** p<.01, *** p<.001

-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기관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3, 958)=4.350, p<.01). 효과성 평가의 평균값은 청소년기관(평균

=3.493, sd=0.900)이 가장 높았고, 민간기관(평균=3.415, sd=0.900), 사법·치안조직(평균=3.300, sd=0.863), 준사법기관(평균=3.228, sd=0.872) 순이었다. LSD 분석결과 청소년기관과 사법·치안조직 간 차이,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 그리고 민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Sheffe 분석에서는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 가족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에서도 기관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3, 957)=4.564, p<.01$). 효과성 평가의 평균값은 청소년기관(평균=3.475, sd=0.860), 민간기관(평균=3.372, sd=0.851), 사법·치안조직(평균=3.287, sd=0.889), 준사법기관(평균=3.192, sd=0.902) 순이었다. LSD 분석결과에서 청소년기관은 사법·치안조직과 준사법기관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이중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는 Sheffe 분석에서도 유의미성이 입증되었다.
-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서도 기관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 961)=4.204, p<.01$). 청소년기관(평균=3.568, sd=0.899), 민간기관(평균=3.444, sd=0.851), 사법·치안조직(평균=3.377, sd=0.887), 준사법기관(평균=3.289, sd=0.938)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다. LSD 분석결과 청소년기관은 사법·치안조직 및 준사법기관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Sheffe 분석에서도 유의미성이 확인된 것은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였다.
-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서도 기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3, 961)=6.595, p<.001$). 특히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의 값은 기관유형에 따라 대체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그 값은 다른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관(평균=3.446, sd=0.923)이 가장 높고, 민간기관(평균=3.279, sd=0.893), 사법·치안조직(평균=3.193, sd=0.938), 준사법기관(평균=3.088, sd=0.951) 순이었다. 청소년기관과 사법·치안조직 간 차이, 그리고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가 LSD, Sheffe 분석결과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반면 민간기관과 준사법기관 간 차이는 LSD 사후분석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2. 면접조사

1) 조사개요

(1)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① 조사내용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사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실무자의 자문을 통해 조사내용이 확정되었다. 조사내용은 교육에 관련된 내용, 개인적 상황,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의견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부록 1 참조).

< 교육 현황 >

- 프로그램 참여 이유
-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인식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생각과 느낌
- 도움이 되는 점과 도움이 되지 않는 점
- 프로그램 참여의 힘든 점
-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좋았던 점
- 프로그램 추천 여부

< 개인적 상황 >

- 유사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이유

- 현재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
-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도움
-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친구 여부
- 선도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가족의 인지와 반응
- 선도프로그램의 도움 여부

〈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의견 〉

- 바람직한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에 관한 의견
- 부모님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과 참여 의향
-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본인 동의”에 관한 현황과 의견
- 위기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조사기간은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이며 연구진이 선도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방문하여 대상 청소년과 1~2시간에 걸쳐 직접 면접을 진행하였다. 대상 청소년은 조사목적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본인, 부모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최종 선정하였다.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주요 질문내용, 자발적 참여와 거부 의사 표시 방법, 익명성 보장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재차 설명하였다.

② 참여자 특성

표 IV-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층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15명으로서,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 법무부 산하 비행예방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섯 가지 경로로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경찰서는 두 곳에서 나머지는 각각 한군데로 총 6개 장소에서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15명 가운데 남학생은 12명, 여학생은 3명이었

으며, 학력을 살펴보면 1명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이고 5명은 고등학교 자퇴, 중학생 4명, 고등학생 5명이었다.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 참여경로를 살펴보면 3명은 경찰서 A 자체선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부 기관에서 받았으며, 3명은 경찰서 B 자체선도 프로그램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3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3명은 법무부 산하 비행예방센터 프로그램, 2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2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2명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 이유를 살펴보면 경미한 비행으로 경찰단계에서 훈방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7명이었으며, 검찰단계에서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참여한 학생이 1명, 보호처분의 수강명령으로 참여한 학생이 2명, 보호관찰 중인데 보호관찰관의 권유로 참여한 학생이 2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참여한 학생이 1명, 학교선도위원회의 수강명령으로 참여한 학생이 2명이었다.

교육진행과 관련해서는 5일 교육이 5명, 4일 교육이 2명, 3일 교육이 3명, 2일 교육이 1명, 12회 상담 1명, 15회 상담 1명이었으며, 2명은 보호관찰관의 권유로 장기적인 검정고시와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전에 이러한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을 받은 경험 여부와 관련해서는 6명은 경험이 있었으며, 9명은 처음 받는 교육이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8명이 동의를 했으며, 경찰서 B의 자체 프로그램, 경찰서 C의 훈방조치, 수강명령으로 인한 상담, 꿈드림센터는 동의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다. 반면에 경찰서 A의 훈방조치를 받은 3명, 경찰서 C를 통해 사랑의 교실 수업을 받는 1명, 학교의 결정으로 온 3명 등 총 7명은 동의절차가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15명 대상자들의 비행 경력과 관련해서는 두 명이 기소유에 경험이 있었으며, 1명은 6호, 8호, 9호 처분 등의 경험이 있었으며, 5명은 현재 보호관찰 중이었다.

표 IV-47 참여자 특성

	성별	학년	경로	이유	일수	이전 교육경험	동의여부 (동의절차)	비고
01	남	고1 재학	경찰서A 자체 선도 프로그램	경찰단계 훈방 (언어폭력)	2번 (일요일 두번)	없음	없었음	향후 학교선도위 원회 결정으로 특별교육 30시간 받아야함
02	남	고1 재학	경찰서A 자체 선도 프로그램	경찰단계 훈방 (폭력)	5일	있음	없었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경험 현재 보호관찰중
03	남	16세 (고1 자퇴)	경찰서A 자체 선도 프로그램	경찰단계 훈방	5일	있음	없었음	교육후 재비행 했음 현재 보호관찰중
04	여	18세 (고교 졸업)	경찰서B 선도 프로그램	경찰단계 훈방 (공문서 부정 행사, 미성년자 음주)	3일	없음	했음	현재 취업
05	남	중3 재학	경찰서B 선도 프로그램	경찰단계 훈방 (서클조직 및 경미범죄)	3일	없음	했음	
06	남	중3 재학	경찰서B 선도 프로그램	경찰단계 훈방 (서클조직 및 경미범죄)	3일	있음	했음	
07	여	중1 재학	비행예방 센터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결정 (언어폭력)	5일 (9시 30분~ 4시반)	없음	없었음	
08	남	고2 재학	비행예방 센터	학교선도 위원회 수강명령 (규칙위반)	5일 (9시 30분 ~ 4시반)	있음	없었음	

	성별	학년	경로	이유	일수	이전 교육경험	동의여부 (동의절차)	비고
				별점)				
09	남	고2 재학	비행예방 센터	학교선도 위원회 수강명령 (규칙위반 별점)	5일 (9시 30분 ~ 4시반)	없음	없었음	
10	남	고1 재학	경찰서 C (사랑의 교실) 청소년 수련관	특수절도 (검찰단계 결정용 자료)	4일 (5시 20분~ 7시 20분)	없음	없었음	
11	남	중3 재학	경찰서 D 청소년 수련관	경찰단계 훈방 (절도)	4일 (5시 20분~ 7시 20분)	없음	했음	
12	남	18세 (고등 학교 2학년 자퇴)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보호처분 수강명령 (금품갈취, 오토바이 번호판 위조)	12회 상담	없음	했음	보호관찰중
13	남	18세 (고1 자퇴)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보호처분 수강명령	15회 상담	있음	했음	기소유예 2번 보호관찰중
14	남	18세 (고교 자퇴)	꿈드림	보호관찰 중 보호관찰관의 권유	검정 고시 및 글쓰기	있음	했음	6호, 8호, 9호 처분 경험있음 보호관찰중
15	여	19세 (고교 자퇴)	꿈드림	보호관찰 중 보호관찰관의 권유	검정 고시 및 글쓰기	없음	했음	보호관찰중

(2) 현장실무자

① 조사내용

본 연구의 분류체계에 따라 현재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교육적 선도제도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유사 선도제도와 연계 및 기존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진단, 그리고 소속기관의 선도프로그램 우수사례 및 타 기관 운영사례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부록 2 참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교육적 선도 >

- 선도대상의 범위와 적절성
- 선도방법의 타당성과 전문화 및 다양화 방안
- 선도체체와 선도후견인의 임무와 적절성
-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와 실효성 확보 방안

< 교육적 선도제도 전반 >

- 소년사법체계 및 청소년복지 지원체계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문제
- 선도제도 각각의 유사점과 차이점
- 기존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진단

<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운영현황 >

- 대상, 시설, 주체, 예산 등 운영 개괄
- 선도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효과성 평가
- 우수사례 소개 및 타 기관 사례 추천

조사기간은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이며, 조사기간 중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회기별로 약 2시간 내외로 진행되었고 반구조화된 질문지가 공통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세부질문은 각 회기에 참여한 현장실무자의 소속기관과 선도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② 참여자 특성

현장실무자 대상 면접조사에는 경찰과 연계하여 ‘사랑의 교실’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의 실무자 3명과 ‘자체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직 경찰 4명, 법무부 산하의 대표적인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인 비행예방센터 실무자 1명, 그리고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검사, 판사가 각각 1명씩 포함되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 실무자의 특성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표 IV-48이다.

표 IV-48 실무자 면접 대상자의 특성

사례번호	소속	직위	성별	연령 (만)	재직기간 (년)	면접 차수
0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남	31	7	1차
02	청소년지원센터	주임	남	33	4	1차
0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석청소년동반자	남	34	6	1차
0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사계장	남	43	15	1차
05	경찰서	경장	남	35	5	2차
06	경찰서	경장	여	32	3	3차
07	경찰서	경사	남	30	7	3차
08	경찰서	경위	남	43	17	3차
09	법원	판사	남	45	12	4차
10	검찰	검사	남	37	3	5차

2) 분석결과

(1)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심층면접 참여 대상 청소년에게 크게 세 가지 영역, ① 교육에 관련된 내용, ② 개인적 상황, ③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의견 등이 질문되었으며, 각 영역별로 세부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 현황

가.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관해 질문하였다. 15명 가운데 가장 많은 이유로는 경찰단계 훈방조치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학생이 7명이었다. 규칙위반으로 인해 학교선도위원회의 수강명령으로 참여한 학생이 2명, 보호처분으로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처분을 병합처분 받은 학생이 2명, 수강명령은 아니지만 보호관찰관의 권유로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학생이 2명,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1명, 교내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1명 이었다.

경찰단계 훈방조치 7명의 경우, 3명은 경미범죄로 인해 경찰서 A에서 경찰단계 훈방조치로 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3명 역시 경미범죄로 인해 경찰서 B에서 경찰단계 훈방조치로 B 경찰서 자체에서 개발한 3일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청소년 수련관의 사랑의 교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1명은 경미한 범죄로 인해 경찰서 D의 경찰단계 훈방조치의 일환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두 명은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을 받아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5회기, 12회기 상담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2명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권유로 꿈드림센터에서 검정고시와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2명 모두 학업 중단자이므로 보호관찰관이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했으며 수강명령이 아니라 권유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동일한 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2명의 학생은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5일간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두 명 다 교내 규칙위반으로 별점이 쌓였으며, 더 이상의 별점이 쌓인다면 퇴학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본 교육에 참여하면 별점이 감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1명은 무단결석으로, 1명은 잦은 교내 이탈이었다. 무단결석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가출을 했으며, 교내 이탈은 흡연을 위해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외부로 나간 경우였다. 1명은 언어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5일간 비행예방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조치는 대상 학생에 대한 두 번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첫 번째 언어폭력의 경우는 반성문과 사과문을 쓰는 것으로 끝났으며, 이 후 또다시 언어폭력으로 위원회가 열렸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프로그램 참여 명령이 이루어졌다.

한 명의 청소년은 특수절도(친구들과 오토바이 절도)로 인해 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서 C에서 해당 학생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교실에서 4일간의 교육에 참여토록 하였다. 해당 학생은 본 교육의 참여 의미를 혼동하고 있었는데, 연구진이 알아본 바로는 검찰에 본 사건이 송치될 때 본 교육에 참여한 기록이 함께 제출되면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확인되었다.

나.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인식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지를 대상자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교육에의 참여와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 대상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15명 가운데 가장 동일한 응답은 재범방지로 3명의 대상자가 비행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명은 교육을 통한 변화, 2명은 선처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 예방 그런거요 (사례 9)”

“솔직히...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거 교육을 들으면, 아니면 충실히 이행하면 좀 한 번 선처해준다? (사례 2)”

“형량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더 수업을 받음으로서 좀 더 범죄를 더 낮게 처분하는 그런거요 (사례 10)”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었는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정신적 치유와 마음의 문제 해결, 검정고시에 참여하는 학생은 미래를 위해, 나를 도와주기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이 이제 잘 어른들처럼 밖으로 표현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모르는 것도 있으면 같이 나누고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이 해결하고 선생님이라 속마음을 꺼내면서 얘기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사례 12)”

이외에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1명), 학교를 다니기 위해 기초를 배우는 곳(1명)이라고 응답하였다.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대상자만이 설명을 들었으며, 대다수의 대상자들은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형사님이 선도 목적으로 참여를 하라고 하셨어요 (사례 1)”

“문자로 통보만 해주고 전화로도 설명을 안해줬어요 (사례 10)”

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생각과 느낌

교육적 선도에 참여하면서 대상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되었다. 6명의 학생은 자신이 한 행동이 잘 못된 것이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3명은 고맙게 느끼거나 긍정적으로 교육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2명은 귀찮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뻘한 교육을 하고 있다, 1명은 생각보다 힘들다, 1명은 아무 느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어... 우리가 저질렀던 게 인식이 안 좋았구나 (사례 5)”

“막 졸리고 배고픈데, 엄청 답답하고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잖아요. 엄청 답답하고 괴로운데 이만큼 내가 막 살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례 8)”

“제 속마음을 잘 말할 수 있어서 고민이나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사례 12)”

“스스로 못하니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사례 15)”

“솔직히 좀 귀찮죠. 가는 게 (사례 3)”

“전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냥 교육 몇 번 다니면 되는구나 했는데, 교육이 이렇게 힘든 건줄 몰랐어요 (사례 7)”

라. 도움이 되는 점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2번 참여(일요일 두 번), 3번 참여, 4번 참여(평일 저녁 2시간씩), 5번 참여(방학 중 9시 30분에서 4시 20분까지), 12~15 회기, 지속적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본 프로그램 참여가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15명 대상자 중에 11명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도움이 된 부분과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3명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 응답한 12명 가운데 6명은 다시는 비행이나 규율을 어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외에 혼자하

기 힘든 것을 도와주셔서(2명) 법에 대한 지식 습득(1명),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점, 관심있는 수업 듣게 된 점(1명), 관계개선(1명) 등이 도움이 되는 점으로 제시되었다.

“여기 이제 다시 오지 않아야겠다는 동기부여? (사례 9)”

“분류심사원 견학 갔을 때요, 아 이러면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사례 4)”

“뭐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로랑 가족, 그런 관계 개선 같은거,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나 법 관련한 그런 얘기도 도움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 도움이 됐어요 (사례 10)”

반면에 3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너무 빠른 얘기들이라 시간 낭비 같아서(1명), 귀담아 듣지 않아서(1명), 수강명령이라 귀찮아서(1명) 등이었다.

“솔직히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교육이라고 하니까 수업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사례 3)”

도움이 되는 점과 도움이 되지 않은 점 모두를 말한 1명의 대상자는 법교육은 이해가 돼서 도움이 되었으나 다른 수업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법 교육 빼면 나머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례 11)”

마. 프로그램 참여 시 힘든 점

대상 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진단하는 것은 향후 프로그램의 개선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서는 15명 가운데 2명은 힘든 점이 없으며 자신이 잘못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어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13명은 다양

한 점을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초,중,고등학생을 한 반에서 함께 수업하는 점(5명, 복수응답),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갇혀있는 점(4명, 복수응답), 수업이 지루한 점(3명, 복수응답), 수업시간에 서로 낮설었던 점(3명, 복수응답), 어른들의 시선이 부정적이었던 점(2명, 복수응답) 등이었다.

힘든 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5명의 학생이 제기한 문제점으로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모두 한 반에 섞여있다는 점이었다. 5명의 학생 중에 1명의 학생은 자신의 반에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2명의 중학생은 같은 반에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다소 불편했으며, 3명의 고등학생은 중학생과 같이 수업을 듣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저번에는 화요일에 초등학생도 봤는데 그런 애가 막 고등학교 덩치 큰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받으면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을 하나 더 개설을 하든가 아니면 뭐 초등학생들끼리, 중학생들끼리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같은 건끼리 묶어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약간 뭔가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다 묶어 놓고 그냥 귀찮아서 한 번에 설명한다는 뜻이 그런 식으로 개설이 되어서 좀 그런 면에서는 불편했죠 (사례 10)”.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같이 수업하는 거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거기 규칙 따르는 거고 중학생은 또 중학생 규칙 따르는 건데 그것도 다르고....(사례 9)”

“최대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떨어뜨려 놓는게 좋지 않을까. 고등학생하고 섞여있는 거는 제가 첫날에는 좀 반에 들어가서 좀 그랬고, 좀 불편한 점이 있었긴 있어요 (사례 7)”

4명의 학생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방학 5일 동안 아침 9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진행되는 수업에 있어서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업을 받는 건물에서 하루 종일 나가지 못하고 점심도 실내에서 도시락을 먹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런 어려운 점들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4층에 감금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4층에서. 월요일 이후로 3층 여기 내려온 것 처음이에요 (사례 9)”

“그죠.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학교는 막 체육수업도 하고 움직이고 뒤에 누워 퍼 자면 되는데 여기서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근데 그거에 그렇게 불만이 있진 않아요 제가 잘못해서 온 거니까 (사례 8)”

수업이 지루한 점에 대해 3명이 어려운 점으로 제시하였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받는 교육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업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솔직히 말하면 좀 아니었어요 많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고 쳐서 그런 교육 같은걸 받는 친구들은 아까도 쌤한테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착한 짓하고 그런 착한 짓해서 온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질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나쁘고 해도 질이 아무리 좋을지언정 안들을 애들은 진짜 안 들어요 그냥 끼놓고 말하면 넌 짓어라 난 잔다 뭐 이런 느낌 (사례 2)?”

“지루하고... 학교 수업도 들을까 말까인데요 (사례 3)”

비행청소년 교육이나 성인 교정교육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바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를 학습하는 이른바 ‘악풍감염’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적 선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도 수업시간에 악풍감염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서로가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3명의 학생들은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말 한마디도 안하고 몰라가지고 재미 없었어요 (사례 11)”

“프로그램 때문은 아닌데 눈치를 많이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랑 있는 게 낯설어서 그것만 조금 그랬고... (사례 4)”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어른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불편함

을 호소한 학생들도 있었다(2명)

“교육하는 선생님도 약간 애네는 나쁜 짓을 해서 왔으니까 수준을 낮게 보는 게 있어요 (사례 2)”

기타로는 인원이 너무 많았던 점(1명, 복수응답), 법원에서 온 아이들과 학교에서 온 아이들의 다른 점(1명, 복수응답), 거리가 먼 점(1명, 복수응답), 경찰이 수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준 점(1명, 복수응답), 공범과 같이 수업을 들은 점(1명, 복수응답), 15주간 지속되는 점(1명, 복수응답) 등이었다.

“제가 법원에서 두 번을 왔는데 법원에서 있는 사람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학교는 학교끼리 모이고. 근데 뭔가 법원이랑 학교랑 확실히 차이를 느낀 게 법원 애들은 이걸 다 완수 못하고 만약 퇴교처리가 되면 분류심사원 이런 거 가니까 엄청 잘해요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데 학교 애들은 그냥 게을러서 온 거니까,..솔직히 막말하면 게을러서 온 건데 그러니까 말을 더 안 듣는 것 같아요 (사례 8)”

“경찰이 얘기를 해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거나 아니면 동의서라도 끊어줬으면 제가 인지하고 왔을텐데 무슨 수업인지도 모르고 알아서 찾아보라는 듯이 그냥 통보만 해주니까 여기가 찾아오는 것도 힘들었고 그 제가 좀 아는 동네여서 그나마 찾아오기 쉬웠지. 다른 동네 애들이 이 근처에서 사건을 저질러서 이 사랑의 교실로 오게 된다면 찾아오기 막상 힘들 것 같아요. 골목에 있어서 (사례 10)”

“매주 와야 하는데 15시간을 한꺼번에 못하고 1시간씩 4개월 동안 다니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사례 13).”

바.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좋았던 점

대상 청소년들에게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점이 좋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았다. 향후 본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느낀 좋았던 점은 좋은 사례 혹은 강화될 부분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15명 대상자 중에 2명은 좋았던 점이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13명은 좋았던 점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복수응답),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 교사의 태도가 달랐던 점이 좋았다고 말한 청소년들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는 없구, 전에 했던 것 중에 어르신들 도시락, 연탄 가져다 드린 프로그램 있었는데 좋아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해서 울컥하고... 그게 좀 좋았어요 (사례 2)”

“거기 선생님들은 애를 나쁜 애라고 생각안하고 그냥 학생. 학생 자체를 좀 처음부터 많이 믿어주고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줘요 (사례 2)”

“분류심사원 견학했을 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느꼈고, 가족에 대해서 계획서 쓰는 거 좋았습니다 (사례 4)”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갑갑한 건 아니였고, 교육은 아니여서 좋았고 (사례 5)”

“진로교육 할 때 강사분이 우리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걸 만든 어른들도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좀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좀 짜금식 작은 거로 하셔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례 6)”

“좋았던 점은 일단 모르던 지식을 조금 더 알게 되어서 좋았고, 그냥 여기 수업 받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다 그냥 학교 수업 같고 그렇게 강제로 ‘너 이거 해.’이런 식으로 시키지 않아서 거부감은 없었는데 (사례 10)”

또한 학교 규율위반으로 인해 학교선도위원회 결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2명의 학생은 학교 수업시간에는 집중하지 않고 자는데 이곳 수업은 집중할 수 있게, 깨어있게 해주어서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그죠. 맨날 자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평가도 안 나눠주고 수행평가하라고 하면 안한다고 저 그냥 뺄점주세요 하고 조활동 하라고 그러면 저 이 조에 피해갈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그럼 알겠다고 빼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반포기상태 에요 제가 포기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니깐 근데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하려고 보면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고 남아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길 오면 아 나도 이런 건 알아듣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는 데도 계속 깨우고 재밌는 얘기해서 웃겨주려고 하고.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례 8)”

이 외에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것(3명), 모르던 것을 배우게 된 것(2명), 좋아하고 관심있는 것을 하게 된 것(2명), 방학동안 생활패턴이 무너지지 않은 점(1명), 간식을 준 것(1명), 시간이 잘 가는 점(1명),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움 받는 점(1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 프로그램 추천 여부

나와 비슷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또래 청소년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15명의 대상자 가운데 12명은 추천하겠다고 한 반면, 3명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추천하겠다고 한 12명이 제시한 추천 이유로는 반성하게 되었고(3명), 프로그램이 괜찮았기 때문에(3명), 도움도 되고(2명), 배우는 것도 있고(2명) 등의 이유였다.

“네. 나보다 힘든 사람 배려하는 것. 저보다 몸 아프고 나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 도와주는 것 추천해주고 싶어요 (사례 2)”

“예, 범죄를 저질러서 오는 거여도 추천할 만하고 범죄가 아니라도 상담이나 그런 면에서 이 교실을 추천한다면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사례 10)”

“예.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그냥 속마음도 못 털어놓는 애들 와서 한번씩은 해보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례 12)”

② 개인적인 상황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으로 면접을 시작한 후에는 현재 대상 청소년이 처한 상황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질문이 주어졌다.

가. 유사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이유

현재 받고 있는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 외에 학교 특별교육, 경찰 훈방, 검찰 선도조건부 기소 유예, 법원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지금 받고 있는 프로

그럼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받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15명 대상자 중에 7명이 경찰이나 검찰, 법원 보호처분의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2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특별교육, 경찰 훈방을 통한 교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을 모두 경험했으며, 현재 집중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폭력으로 인해 경찰서 A의 자체 선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모두 폭력 사건이었으며,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봉사활동을 제외한 프로그램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3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특별교육, 경찰 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받았으며, 기소유예와 보호관찰 경험도 있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으며 그나마 분류심사원에서 받은 교육이 다소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례 8의 학생은 법원에서의 보호처분으로 두 번의 수강명령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으며, 한 번은 학교 특별교육으로 참여했었다. 보호처분은 폭력사건이었으며, 학교는 무단결석과 가출이었다. 현재는 학교 규정위반(무단결석)으로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례 9의 경우 중학교 때 미성년자 음주로 교육 없는 경찰 훈방을 받았으며, 사이버 폭력(악성댓글)으로 학폭위가 열렸지만 특별수업에 회부된 적은 없었다. 현재는 학교 규정위반(무단외출)으로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례 13의 학생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경찰단계에서 훈방조치를 받았으며, 그때 당시 파출소에서 2시간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이후 무면허 운전, 초등학교 무단침입으로 두 번의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모두 교육 없는 기소유예였다. 현재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수강명령으로 15시간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례 14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으로 경찰단계에서 훈방조치를 받았으며, 검찰단

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5일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한 분류심사원, 6호 처분, 8호 처분, 9호 처분 두 번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현재는 보호관찰 중이며, 교육은 보호관찰관의 권유로 꿈드림에서 검정고시와 글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사례 15의 경우는 분류심사원, 6호 처분 두 번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선도는 받은 적이 없었으며 현재는 보호관찰 중이며 사례 14와 동일하게 보호관찰관의 권유로 꿈드림에서 검정고시와 글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 현재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

대상 청소년들이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운 점을 느끼는 지를 파악한다면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 청소년들에게 현재 내 생활 전반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질문이 주어졌다. 15명 대상자 중에 3명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나 현재 걱정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2명은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을 토로하였다(복수응답). 6명은 학교와 관련된 걱정이었는데 2명은 대학진학, 2명은 학교 다니기 싫어서, 1명은 학교 다니고 싶어서, 1명은 검정고시 준비가 걱정된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대상자는 학교에 다니고 싶은 것이 고민이었다.

“학교. 아... 학교 다니고 싶은데 지금 학교를 못다녀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저는 집에서 핸드폰이랑 TV 보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화나요 (사례 14)”

학교선도위원회 결정으로 교육을 받는 두 명은 모두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학교 다니기 싫고 놀고 싶어서 가출해서 놀았는데 돈 떨어져서, 그러가지고 집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할게 없는 거예요 커가지고, 막 한 달 동안 밖에 나가서 살았는데 제가 좋다고 막 살다 보니까 학교는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애들이 된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계속 밖에 나가서 놀다가 학교는 빠지고 선생님한테 연락은 오는데... (사례 8)”

3명은 부모님과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한 명은 부모님이 이혼 후 아버지와 살고 있는데, 최근에 아버지와 갈등으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래 저한테는 안그러셨는데... 중학교 들어와서 좀 의견 갈라지고... 아빠가 워낙 다혈질이시니까... 근데 머리채를 잡고 약간 주먹으로 막 때리고 배를 때린 다든지 욕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저는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여서...(사례 7)”

다른 한 명도 부모님이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대화가 단절되었으며 아버지가 본인이 원하는 꿈을 지지해주지 않는 점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너무 어색해요. 엄청 오래 전부터 말 안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하고 공부만 시키니까..(사례 11)”

또 다른 한 명은 부모님이 본인이 원하는 꿈을 지지해 주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갈등이 생겨서 반복된 가출을 했으며, 지금은 할머니 집에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 점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일단 제가 원하는 꿈이 있고 그 진로계획도 다 세워놨는데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하라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하라는 것도 하기 싫고 그러다가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서 안 갔죠 (사례 10)”

두 명은 돈을 더 쓰고 싶은데 돈이 없는 점, 한 명은 학교 선배들이 괴롭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해주는 점, 한 명은 보호관찰을 받는 것, 한 명은 수면장애가 있는 것을 힘든 점으로 제시하였다.

“선배들이 제가 어떤 행동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계속 의미부여를 하면서 계속 괴롭히는데 아니 그걸 저는 조금 솔직히 다른 선생님한테 말을 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서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상관없기는 한데 그거를 너무 대놓고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넌 애랑 놀아. 애랑 놀아.” 떨어뜨려 놓거든요 (사례 7)”

다. 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도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앞선 질문에서는 12명의 대상자들은 각자 자신의 문제나 고민, 힘든 점을 제시하였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12명 가운데 4명만이 대답을 제시하였다. 학교 다니기 싫어서 가출한 한 대상자는 담배에 대해 언급하였다.

“근데 여기는요 뭐라 해야 되지, 담배가 청소년한테 나쁜 거잖아요, 원래 담배 자체가 나쁜 건데, 19세 미만 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그냥 담배를 피우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다른 애들 다 힘들어하는 게 담배 못 피는 거랑 밥 제대로 안 나오는 거랑 (사례 8)”

흡연을 위해 친구들과 학교 무단이탈로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든 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움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등교시간을 좀 늦추고, 담배 좀 피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9)”

아버지의 폭력과 학교선배들의 괴롭힘을 호소한 대상자는 가정의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학교 선배들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길 원했다.

“상담은... 제가 아빠랑만 사는 건 알고는 계시는데 제가 원래 제 진짜 진심은 아무한 테나 말 안 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상담해도 그냥 좀 그러니까.... (사례 7)”

“저는 일단 제가 교장선생님이라면, 그냥 아예 층을 떨어뜨려 놓거나 건물을 따로 놓거나 그러고 싶어요. 왜냐면 선배랑 접촉이 있다고 좋은 게 없거든요. 선후배 관계가 어떤지. 선후배 관계로 힘들어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 다니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고 싶어요. (사례 7)”

부모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무엇을 하기보다는 본인 혼자 상담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1 상담이요. 어른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선배나 대학생한테 상담받고 싶어요 (사례 10)”

라.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친구 여부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기 위하여 친구들 가운데 이와 유사한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15명 가운데 친구가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7명이었으며, 그 중 4명은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응답하였고, 1명은 같이 오토바이를 훔친 학원 친구와 선배가 지금 같은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많다고 응답한 4명중에 세 명은 비행 경력이 상당히 있는 대상자였으며, 한 명은 학교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온 대상자로서 같이 무단이탈한 친구들이 교육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마. 본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가족의 인지와 반응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이 가족의 지지나 지원을 받는다면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부모님이나 가족구성원이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15명 대상자 모두 부모와 가족이 교육받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두 명을 제외하고 13명 모두는 가족의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버지가 제 기분 풀어주시려고 농담하셨습니다 (사례 2)”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받으면 좋지 않냐. 기회라고 생각해라 (사례 12)”

“처음엔 뭐라고 하셨다가 갈 때 되니까 응원해주셨어요 (사례 9)”

반면에 두 명의 부모는 상당히 화를 낸 상황이었는데 두 명 모두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다.

“엄청 때리고 화내셨어요 (사례 7)”

“첫날에는 그냥. 막 반성문 쓰라고 하고 끝났는데. 두 번 째 날에 갑자기 들어와서 욕하면서 뭐냐고 그러면서. 그 때 시험기간인데 학원이 10시에 끝나잖아요. 학교 끝나고 바로 가서. 그래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도 풀 겸 친구들이랑 당구장 갔다 왔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쌍욕 하면서 뭐하는 새끼냐고 (사례 11)”

바. 선도 프로그램의 도움 여부

다수를 모아놓고 하는 교육 외에 1:1 지도가 효과적이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선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선도후견인, 지도위원, 청소년동반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선도를 목적으로 결연, 멘토링, 지도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선도위원과의 관계가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15명 가운데 선도를 목적으로 선도위원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단 두 명 뿐이었으며, 두 명 다 비행 경력이 있었으며, 선도위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사례 3의 경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형사님과 어떤 결연을 통해 지도를 받았으며 분류심사원에 면회와서 본인과 부모님과 얘기도 나누고 소년부 판사에게 서류를 잘 제출해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재비행을 막는데 도움이 된 것을 모르겠으나 분류심사원에서 마음이 편했다고 응답했다.

사례 14의 경우는 6호처분, 8호처분, 9호 처분 등 비행경력이 상당히 있었으며 현재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였는데, 선도위원이 두 번이나 연결되었었는데 한번은 경찰로 강력팀 팀장이었으며, 한번은 검찰 수사관이었다. 각각 한달 반 정도 기간 동안 1주일에 한번 선도위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가셔서 비행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선도위원들과 연락이 끊기고 비행을 저질렀다고 답하였다.

③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의견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바람직한 교육내용과 방법, 부모의 참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본인 동의,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조사되었다.

가. 바람직한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에 관한 의견

대상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15명 대상자 가운데 3명은 잘 모르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12명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복수응답). 교육내용면에서는 법교육이 필요하다(5명), 진로 설계나

직업 알선 등 실용적인 내용의 교육(3명), 실제적 반성을 이끄는 교육이 필요하다(1명), 생활습관을 고치는 교육(1명) 등이 제시되었다.

“법률 교육, 준법정신 교육이요. 애들이 불법 도박 토토 사이트도 많이 하고 (사례 14)

“안될 놈은 백날 뭘해도 안되는데... 적성을 알아내는 상담이나 자기 적성 알아내는 테스트 같은 거, 뭐 일자리 구하는 거요 (사례 13)”

“나한테 이득이 오는 교육은 자발적으로 해요. 인턴쉽 교육같이 (사례 3)”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뭘 잘못하고 내가 이러면 안되겠다.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겠어요 (사례2)”

“생활습관을 좀 바꿔준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겸 이제 생활습관을 좀 청소년들한테, 성인들은 솔직히 새벽에 놓고 아침에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자기 인생이니까. 청소년들은 그게 아니니까. 법적으로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보호받아야 할 나이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사례 12)”

방법적인 면에서는 지루한 강의식 교육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10명),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험활동(4명), 능력있는 강사 활용(2명), 함께 하는 수업(2명), 비슷한 경험이 있는 선배와의 상담(2명), 토론 수업(1명)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저는 좋지 않는 방법이 체험하고 만지고 약간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 설명을 짧게 하고 직접 해보는 게 저는 교육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안 잤지만, 그래도 그러는 게 자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연관성 있게 재밌게 하려고 체험해보기도 하게 하고 만드는 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싶는데 (사례 7)”

“자꾸 선생님들이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흘러나가거든요 그러면 애들도 다 지루해하고 졸리고 그래요, 졸린 걸 계속 자꾸 깨우니까 애들 더 짜증나죠 더 졸리고, 그러니까 좀 신나게 하는 선생님들 몇 명 있거든요. 막 애들 웃게 만들고, 억지로라도 웃게 만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선생님들이 진짜로 수업 잘하고 (사례 8)”

“서로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울려서 함께하는 교육이요 (사례 6)”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 주시거나 (사례 7)”

“상담의 경우에는 그 학생이랑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유경험자,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이랑 선생님이랑 셋이서 카페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닿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례 2)”

또한 대상자를 분리해서 교육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3명). 즉, 초범과 재범을 다르게 교육하는 것, 초/중/고 학생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 사건별로 분리해서 교육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교육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초범이나 그런 애들한테 필요하죠. 나이 어린 애들이나. 잘 모르고 한 거니까/ 재범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일할 거를 찾아주든가 다른 쪽으로 시간을 쓰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앉아서 하는 것보단 인턴십 프로그램처럼 약간 일을 소개시켜준다든지 범죄예방교육 그런 거는 이미 재범한 경우에는 심사원에서도 들었고 소년원에서도 들었고 사회에서도 들었고. 다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말하면. 똑같아요. 들은 것도 똑같고. 솔직히 말할 게 별로 없잖아요 (사례 3)”

“일단은 규모를 좀 늘려서 뭐, 반을 여러 개 개설해서 초, 중, 고 다 따로 보게 하든가 아니면 사건별로 따로 보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반을 좀 편성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사례 10)”

이 외에 강력한 규율을 적용하되 재미있는 수업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도 제기되었다.

“저 같으면 그냥, 나갈 사람은 나가라 남을 사람만 남아라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일단 노는 건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뭐 사먹고 점심시간에 밥 부족했으면 먹기 싫거나 그러면 밖에 나가서 먹고 오라고, 안 들어오면 그냥 바로 자를 거예요, 남을 사람만 남으란 거예요(사례 8)”

“사랑의 교실이 이게 보니까 해당 경찰서에서 가까운 데로 송치가 되는 것 같은데 동네가 먼 애들은 동네가 먼데 이곳에 오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학교가 또 멀고, 특성화고는 멀고 고등학교는 일단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멀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고 (사례 10)”

나. 부모님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과 참여의향

국/내외 비행청소년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가족의 문제, 부모의 부재, 부모의 잘못된 양육, 부모의 학대, 부모와의 갈등 등이 비행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함께 진행되는 다양한 비행예방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에서도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나와 비슷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까요?”라는 질문과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대상자에게 물었다. 15명 가운데 5명만이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동의하고 참여의향이 있다고 밝힌 반면 10명은 프로그램도 반대하고 본인도 참여의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5명 가운데 세 명은 경찰서 B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부모와 함께 분류심사원을 방문하고, 가족이 대화하고,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읽고, 가족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가졌었다. 세 명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사례 5 학생은 가장 좋았던 부분을 부모님과 함께 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긍정적 답변을 한 나머지 두 명의 경우, 본인들이 부모님과 관계성이 좋지 않은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모님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바빠 가지고. 관심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주고 그래야죠. 진짜 관심, 사랑 그런 걸 줘야죠. (사례 14)”

대다수인 10명의 학생들은 반대의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로는(복수응답) 내가 불편해서(6명), 미안한 마음(2명), 그냥 싫다(1명), 부모님이 생계로 바쁘셔서(1명), 남의 가정사 참견(1명) 등이었다. 이미 부모님과 청소년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며, 부모님과의 갈등을 토로한 3명 가운데 3명 모두 그냥 싫고, 불편하다고

단호하게 답변하였다.

“부모님이 오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느낀 것도 있지만 제 친구들도 느낀 게 있는데 가뜰이나 부모님이나 자기나 교육오는 걸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받으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커져요 확실하게 커져요 그리고 부모님들 좀 미안한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부모님이랑 같이 하기 싫은, 그런 게 그런 애들 속마음을 보면 대부분 미안해서 그런 거래요 (사례 2)”

“학생들은 부모님이랑 하는 거 다 꺼리죠. 전 불편해서 싫어요 (사례 10)”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은 속마음을 얘기 안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가족들이랑 하는 것은, 가족한테 말하는 것도 솔직히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부모님이랑 말 잘 안하잖아요 (사례 12)”

그러나 반대를 표명한 10명 중에서도 4명은 처음에는 반대의 의사를 나타냈으나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였다.

“부모님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6호 처분 받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막 심사원에 들어와 있는데 부모님이 나몰라라 하고 면회 안 오고 그러면 6호 처분 받잖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 받는 거는 되게 좋다고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죠. 시간을 잘 조율해가지고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례 3)”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하러 왔는데 아빠 신경 쓰느라 좀 그렇고, 제 솔직한 의견을 못 말할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데,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특고 만약에 5일 받으러 왔으면 하루 이틀정도는 부모님하고 한 교시만 같이 하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중학교 올라와서 부모님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교육할 때 그러니까 애들의 화장도 못 하게 하고 뭐 자유를 좀 억제하시는 게 있는데 같이 와서 좀 저희 또래의 그런 거나. 또래 문화를 알려주시거나 조금 이런 거는 그냥 화장품 같은 거는 숨기지 말고 숨겨서 하는 것 보다는 좀 개방적으로 안전한 걸 사주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좀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례 7)”

“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꼭 오토바이. 제가. 요즘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를 타잖아요. 부모님들은 오토바이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물론 위험하죠. 위험한데. 이제 애들은 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잖아요. 서로. 만약에 이야기 주제를 오토바이라고 치자면, 오토바이를 타려면 면허를 일단 기본으로 있어야 하고 장비를 다 착용을 해서 타면 부모님도 솔직히 좀 배려를 하면서 탈 만 한데. 이제 그것도 안하고 그냥 타겠다고 하면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배려를 안 해준 거잖아요. 가족한테. 내 인생 내가 살겠다. 이런 식으로 배 짜라 나오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솔직히 서로 배려도 되고 싸우는 것도 줄어들고 뭐든지 적당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례 12)”

“근데 그것도 저처럼 찢어지게 가난하면, 저희는 맞벌이 가족이라 누구 한 명이 빠지면 그 일당을 못 받으니까 거기 직장에서도 빠지면 안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이제 점점 늙고 계셔서 그래가지고 그걸 딱 시간 낼 만큼 하는 건 제 상황에서는 나쁜 것 같은데 다른 좀 부유한 가정에서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쉬고 계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례 13)”

다.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의 “본인 동의”에 관한 현황과 의견

그간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은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최근에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자발적 참여는 참여자의 동기를 강화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해당 프로그램 참여 전에 “본인 동의”를 요청 받았는지, 이러한 절차가 있다면 동의하고 참여할 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해당 프로그램 참여시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15명 가운데 8명은 동의를 했으나 7명은 동의절차가 없었다.

8명 가운데 3명은 경찰서 B에서 자체 개발해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었으며, 두 명은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 병합처분을 받아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두 명은 보호관찰 중이지만 보호관찰관의 권유로 꿈드림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 받는 학생들이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경찰서 C에서 훈방조치의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받는 학생이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7명의 경우, 3명은 경찰서 A에서 제시한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었으며, 1명은 학폭위의 결정에 따른 명령, 2명은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명령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나머지 1명은 경찰단계에서 교육에 참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때 프로그램 수료증을 함께 접수하는 관행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 본인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대상 청소년에게 동의서를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15명 대상자 중에 한 명만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동의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4명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훈방이나, 처분 완화, 문화상품권 제공 등의 수혜나 메리트가 없다면 자발적인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득을 취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만약에 ‘이걸 하면 훈방을 받는다.’ 그런 거면은. 만약에 문화상품권 주고 그렇게 한다면 할게요. 그냥 (사례 3)”

“솔직히 없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얘기할 바에는 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거나 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거나 한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게 더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생도 뭐 운동을 하면 더 좋아지고 공부를 하면 머리가 더 좋아지고 하니까 솔직히 안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기보다 이걸 마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동의하는 거 (사례 13)”

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비행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을 위해 어떠한 도움과 지원을 해주어야 할 지에 대해 대상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15명 가운데 3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2명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으로는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진로교육을 강화해줄 것(3명), 학교에서 법교육을 시켜줄 것(3명), 학교 상담을 강화해 줄 것(1명),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깨워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것(1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저는 꿈이 일찍 생긴 편이잖아요? 제 친구들도 꿈 없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모르고. 그래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 왜냐면 학교에 있으면 진로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 때 자습하거든요. 자습하거나 영화 틀어주거나 그러는데. 아니면 무슨 초반 1~2번 수업 때는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무슨 자기 하고 싶은 거랑 잘 하는 거 이런 거를 쓰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진로를 못 정했다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거 찾는 거를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례 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차라리 초, 중, 고 때 자기가 원하는 진로 그런 거라든지 미리 정해놔서 그런 거로 하나를 파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진로교육 그런 건 없었어요. 학교는 그냥 솔직히 대표적이게 국, 수, 사, 과, 영. 솔직히 그런 것만 가르치지.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학교에서 학교는 빠져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매일 학교는 가는 거고 주말 빼고. 차라리 가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 같이 공부도 할 겸 진로선택도 하고 하면은 좋잖아요.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사례 12)”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필수적으로 이런 경우를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 교육을 받긴 한데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니까 애들이 그냥 일단은 수업을 뭐 그런 교육이나 성교육, 법교육 그런 것들을 일단 애들이 안 들어요. 아예.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듣게 만드는 식으로. 교과목으로 만들어서요 (사례 10)”

“부모님 이혼하시고 심적으로 좀 힘들었고, 진로 문제로 부모와 갈등이 있는데... 이런 상담을 학교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례 11)”

“학기초에는 깨우는데 그 다음엔 그냥 내버려 뒹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좀 깨워줬으면. 공부하게 해줬으며 (사례 9)”

교육선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음악/미술 치료(2명), 흥미로운 프로그램 개발(1명), 예방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줄 것(1명) 등이었다.

“음...저는 심리상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미술심리나 그림 그려서 심리 나타내는 거나 그 결과를 알려주고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심리상담, 미술치료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7)”

“그거 도움 많이 되더라구요 그 클리닉? 뭐 약주는 그런 거 말고요, 무슨 치료, 모래치료, 색감치료. 선생님이랑, 교실이 이거 한 세배만해요, 그럼 거기 막 놀이기구들이 짝 있거든요 거기서 모래 샌드모래 있잖아요 막 멍쳐지는 모래, 그런 걸로 선생님이랑 뭐 만들고 하는데, 대부분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뭐 몸 움직이는 거 하면 오감이 다 재밌어야 사람이 안잘 거 아니에요 안 지루하고, 그냥 클리닉 같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도 분노조절장애 그렇게 고쳤고, 다스리는 것도 배웠고, 그래서 클리닉 추천하고 싶어요 (사례 8)”

“양아치가 됐든 비행청소년이 됐든 애들은 솔직히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이 없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생각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에 끌리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흥미가 있고 관심이 많이 갈 정도의 흥미가 좀 필요하고 좀 도움이 됐다. 이런 걸 느끼게 교육을 해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아. 오늘은 이걸 배웠다.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좀 그거를 알리고 그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례 12)”

또한 진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위에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외에도 4명의 학생들은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이 관심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애네가 하고 싶은 적성이나 특기나 흥미를 가진 것을 알아봐가지고 운동을 좋아하면 헬스를 보내고 헬스를 끊어 줘가지고 헬스를 뭐 2시간 하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가 2시간 하겠다. 그 증명 같은 거를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 오는 거예요. 그럼 애가 그걸 보고 만약에 2시간을 못하고 1시간을 하거나 아니면 빠졌다. 그러면 제재 같은? 벌을 주는 거죠 (사례 13)”

“지원해 줘야죠. 교육이라든지. 교육 그런 거. 아니 체험? 자기들이 미래가 없으니까.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진로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배울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면 바로 갑니다 (사례 14)”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걸 그걸 체험하게 해주든가 그 쪽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교육받는다고 그렇게 나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원해 주면 바로 배우죠 (사례 15)”

또한 미성년자 처벌에 관해서 현재는 너무 관대하니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에(1명), 국가가 청소년들의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만드는 관행(1명)이

지적되었다.

“정말로 청소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하는 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빨라지고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벌수위를 어른들이랑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정해져 있는 소년법에서 추가를 해서 더 심하게 준다거나. 만약 한번 범죄를 했으면, 뭐 한번까지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이랑 똑같이 별차이 없이 기소유예를 주든가 아니면 교육받는 대신에 그걸 끝내주든가 하고 만약 그게 반복됐음 진짜 반복되는 경우에는 어른들하고 똑같이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전. 근데 너무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년법이 세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폐지하는 건 좀 무리수인 것 같기는 하고 좀 딱딱 세계 올려버리면 (사례 2)”

“2명이 했다는 이유로 특수가 붙었어요. 특수절도. 형이 훔치는 거 망쳤고, 일부러 제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수절도 이렇게 막 뜨니까 그런 걸 보면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는 특수절도를 했으니까 나쁜 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아니면 죄목을 특수절도로 하지는 않고 좀 거부감들게 표현하지 말고. 진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됐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죄목을 붙이거나 해서 좀 더 그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끝내거나. 어차피 청소년은 미성년자여서 성년이 안됐기 때문에 뇌도 다 안 자랐고 판단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쪽에서 좀 생각을 해서 청소년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법을 만들고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강력계로 보내는지. 그 강력계는 진짜로 살인해서 오는 사람들도 오고 그런 곳인데 강력계를 미성년자를 보내버리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례 10)”

또한 국가가 청소년, 비행청소년들에게는 무관심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솔직히 지금 한국 비행청소년들한테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표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비행청소년들이니까 좀 무시하려고 하죠? 빼려고 하죠? 그런 막 선거 나와 가지고 비행청소년을 어찌고 저찌고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조금 무관심한 것 같고 (사례 3).”

표 IV-49 청소년 면접조사 주요 내용 요약

구분	항목	주요 내용
청소년	참여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단계 : 사랑의 교실, 자체선도, 조건부 훈방(7명) 검찰단계 : 보호처분 수강명령, 보호관찰 중 참여(5명) 기타 : 학교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3명)
	도움이 된 부분 (좋았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반성, 혼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 내용 이해,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학습 지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 마련, 관계개선, 학교수업보다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서, 강사의 지지적인 태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체험 기회, 간식 제공, 일상생활습관 개선 등
	힘든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식상한 내용이라 시간 낭비라고 생각됨, 법교육을 제외하면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음. 운영 : 초·중·고교생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는 부분, 학교에서 온 아이들과 법원에서 온 아이들이 함께 수업을 받는 점, 공범과 같이 수업을 듣는 점, 교육기관이 실내에서 하루 종일 교육만 듣는 점, 수업이 지루함, 어른들의 시선이 부정적임, 교육기관이 너무 멀어서, 15주 간 1시간/1주씩 진행되는 점 등
	현재 주요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부적응, 자퇴 고민, 검정고시 준비 등 진학 문제 부모와의 갈등(부모이혼, 아버지의 폭력, 대화 단절, 가출) 학교 선생들의 지속적 괴롭힘, 보호관찰, 수면장애 등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준)법 교육, 진로설계, 직업 연계 등 실용적 내용, 생활습관 개선, 자기반성을 이끌어내는 내용 등 운영 : 지루한 강의 방식 지양, 체험활동, 능력 있는 강사 활용, 함께하는 수업, 멘토링, 토론식 수업 등

(2) 현장 실무자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

가. 선도대상의 범위와 적절성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교육적 선도제도는 ‘강제성’이 없음에도 부적응을 사유로 선도를 받도록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단계의

다양한 선도프로그램도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

“우리(경찰)단계에서 강제성을 뗄 수 있는 법률로 못 박을 수 있는 대전제의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략) 사랑의교실, 표준선도프로그램 한계는 본인이 안 가면 컨트롤이 안돼요. 부모참여 선도프로그램 참석률이 꽤 높았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05).”

“회복적 보호지원사업 예전에 했잖아요? 소년원 출원하면 CYS-Net으로 연계 시켜서 거기에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보내도 안 되고 연계도 안 되고. 정교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지(04).”

“아이들이 자발성이 있으면 다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애네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자꾸 사고를 치게 돼요. 이제는 연락 좀 끊고 싶어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효과가 있죠. (중략) 주기적으로도 사실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항상 불참하거나 안 오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03).”

검찰단계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경미한 폭력, 사기, 절도, 모욕 등 교육이 필요하고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직 검찰은 초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선도과 성인이 된 후 동종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재범을 억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이 이미 있다’고 하면 이미 선을 넘었다고 봐서 (검찰에서)선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판으로 넘기고요, 성범죄는 바로 재판에 넘기고 경미한 폭력 범죄나 사기절도, 인터넷 사기라든가 모욕, 무면허 운전, 이런 거 위주로. 가해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경우에 선도를 하고 피해회복이 안 되고 ‘엄벌 해 달라’는 경우는 소년재판을 보내서 거기서 한 번 더 합의할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11).”

“(재범의 경우)이미 무감각해진 애들이 많아서 차라리 초범에 더 엄하게. 안타까운게 이런 애들이 성인이 된 순간 초반에 구속되는 애들이 많아요. 소년 때 선처 받던 거 생각하고 계속 하다가(11).”

이와 함께 기존의 다양한 선도제도와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 ‘훈방’되거나 입건된 이후 ‘검찰에 송치되기 전’ 단계, 그리고 소년원을 출원하거나 보호관찰이 완료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이 종결’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선도대상의 범위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보호처분이 종료된 19세 이상 성인기에 접어든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의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이 종결된)이후에는 뭔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으니까(04).”

“소년원 나오거나 아니면 보호관찰이 끝났을 경우에 본인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20살, 21, 22살 넘어가게 되면 할 게 없고 두려워지니까 오히려 센터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02).”

또한 경찰에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훈방 조건으로 하는데,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식적인 매뉴얼 중 하나가 훈방결정 할 때 피의자의 처분불원서를 첨부하거든요(05).”

나. 선도방법의 전문화 및 다양화 방안

교육적 선도제도가 (검찰)교육조건부기소유예와 방법론 면에서 겹치더라도 대상자의 중복을 피하고, 소년사법절차상 다이버전을 활성화하는 일환으로 교육적 선도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검찰단계의 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 경우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교육적 선도제도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내용을 보면 교육적 선도와 검찰의 교육조건부기소유예하고 똑같아요. (중략) 방법론은 중첩이 되더라도 대상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검사들이 잘 활용을 안 해요. 단순기소유예가 많아요. 보호자들이 민원제기를 엄청 많이 해요. 교육조건부기소유예는 방학 중에 최대한 많이 하는 것으로... 몰리면 방학 중에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04).”

현장실무자들은 선도제도와 방법을 전문화하는 방안으로 각 기관이 우범소년 등 비행청소년과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초범, 그리고 재범자를 구분해서 담당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체계가 잡혀 있으면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지 않을까.. 비행청소년, 소년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섞어버려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07).”

“비행을 한 청소년이랑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랑 구분 없이 진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명이나 재범 그런 아이들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08).”

“(초범)애네들은 수감 던지면 무서워하는데 재범은 ‘한 번 차보면 안되요?’ 하고 열쇠 찾으러 다니고. 초범은 경찰이 2범 이상은 무조건 지자체에서(선도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09).”

“소년범은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선도를 몇 % 이상 해야 되니까. 비행청소년이랑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랑 구분 없이 진짜 하고 있어요. 구분이 필요하고요 소년범 중에도 죄명이나 상습적인 재범 아이들도 구분하는 기준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08).”

다. 선도주체와 선도후견인의 임무와 적절성

청소년 재범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도대상 청소년이 발생하기 전에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각 시도 및 시군구 내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선도후견인 풀(pool)을 만들고 필요 시 이들이 즉각 투입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 지자체마다 있는 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마다 후견인 역할 담당자를 딱 만들어라.’라고 역할을 주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만약 갑자기 기관에서 후견인 하라고 하면 업무 외적인 일이라 말 그대로 순수한 목적이 되지 않는 거죠. 기관에 후견인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01)”

라.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와 실효성 확보 방안

선도대상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방식을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이므로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은 최소 1개월 이상 “1:1 관계기반의 접근”을 통해 “역할모델(role model)”을 제공하고 긴 호흡으로 청소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1 아니면 2:1로 이렇게 소수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외적인 것도 다 할 때 정말 그 아이가 개선이 되더라고요(08).”

“(검찰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벌 받는 거로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심지어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고. (중략) 대학생 둘에 학생 하나 2:1로 멘토, 멘티 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108배하고 1박 2일이지만 효과가 좋지 않았나(11).”

“역할모델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중략) 단기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아이들 습관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길 위의 학교)동행자 선생님이 저희(법원)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 되셔서 아이를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만나서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데 (효과가 좋아)올해는 법원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중략) 다녀올 동안 약 2주, 사후프로그램까지 약 한 달 동안 불량교우하고 단절하고 휴대폰 사용 안하고 생활습관이나 이런 게 변화되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품행이 교정돼요(10).”

“학교에서 특별교육 대상자가 나와서 센터를 보내요. 얘가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해서 또 받으면 또 다른 기관 또 다른 기관으로 계속 돌리더라고요. 학생 한명을 가지고. 그럼 이 학생이 와서 ‘다른 기관은 이렇게 했는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필요성을 점점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는 그냥 내가 학교에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특별교육을 보내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01).”

“(프로그램은)거의 유사하죠. 교육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우수하고 정교하게 잘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교사와 애들 간의 관계형성이 얼마나 잘 됐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갖다 대도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직원 역량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직원들이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04).”

한편, 청소년이 “입건”된 경찰서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청소년의 “거주지”에서 교육적 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청소년 개인의 특성이 고려된 ‘관계기반’의 선도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입건된 경찰서, 사고 친 곳에서 해버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 힘들어요. 주소지로 (사랑의 교실)보내기가(07, 08, 09).”

“미안한데 내(판사)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도 현 단계에서 어른들이 마련한 좋은, 너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 소년원에 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사회 인식은)그 비용도 아깝다는 거잖아요. 소년원 한 끼 식사비가 천 원 수준이에요(10).”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적 선도의 경우 ‘사건’이 아닌 ‘대상’인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각각의 개별사건으로 상호 연결된 ‘청소년 간 네트워크’에 개입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대상 청소년 개인이 아니라 소위말해 ‘비행또래집단’을 하나의 개입대상으로 설정하여 집단역동(group dynamic)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말한다.

“독고다리로 비행을 저지르는 애들은 잘 없어요. 비행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비행을 저지르는데 10명이 팸에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저질러서 한꺼번에 소년원에 가든가 보호관찰 가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 들어갔다 나오면 또 어울리게 되고.. 애들을 단체로 개입을 해서 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04).”

이와 관련하여 꿈드림센터에 배치된 청소년동반자 가운데 학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러 명이 비행포래집단에 함께 개입하거나, 이들 청소년동반자를 선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선도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생애주기라는 긴 안목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꿈드림)는 학교나 가정 이런 데를 찾아다니다 보면 학교에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고치는 애들, 힘든 애들이 있는데... 예산이 나 수당이 있으면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 같아요(03).”

“재판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 선발되어서 ‘길 위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소년원 갔다 그럼 실패냐?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소년원 가도 이후에 사회생활 할 때 ‘길 위 학교’ 를 통해서 성취와, 보람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성찰했던 그 경험들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 계속 하는 거고. ‘열흘 가는데 아이 한 명 당 400씩 들여서 갔다 온 아이 재범하고 소년원 가는 애들 수두룩한데 그걸 왜 하나?’ 그렇게 하면(안 됩니다)(10).”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단기가 아니라 몇 년 후를 내다보면서(03).”

다양한 프로그램 형태 가운데 교육적 선도에서 특별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의 ‘부모참여 프로그램’과 ‘역할극’ 형태의 심리극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현장 실무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경찰, 검찰, 법원에서 부모참여 프로그램과 심리극, 체험활동을 운영하기에는 전문가 확보와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많아 지자체와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의 협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이들이 이 교육(부모 참여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기 자신의 뒤늦어진 인생을 바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절대 눈물 안 흘릴 것 같았던 아이가 눈물 흘리고.. 얘기들을 억지로라도 풀어내고..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05).”

“미술치료는 소년법의 경우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스피치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10초도 얘기 못하고 있다가 2시간 정도 지나면 5분에서 7분 정도는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꺼내고 그 다음 차수에는 서로 자기가 가해했던 학생, 자기가 훔쳤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역할극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범죄심리사들은 비전공자가 많아서 저희가 외부에서 섭외해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실 SPO 예산에서는 굉장히 출혈이 큰 부분이에요. (중략)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07).”

“(법원)저희가 코레일과 연계해서 ‘멘토와 함께하는 비전여행’ 이라고 1년에 두 세 번 정도 당일 기차여행인데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에 대전에 도착하는. 보호소년 아이 중 한 명이 17살이었는데 평생 KTX를 처음 타본대요. 그런 아이들과 자원봉사위원,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들과 부산 가서 교육, 문화 체험을 시도하는데 많이 부족해요. 아이들 수백 명 중에 한 열 명밖에 법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그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공동모금회나 민간자원도 활용하고(10).”

“(검찰)도리사 템플스테이하면서 명상도 하고 108배하고. 할 때는 불평이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절에 가서 시간 보내면서 명상도 해야 되고 자연 속에서 경치도 한 번 바라보고 스님이 와서 강의하면 느낌이 다르고 하나(아이들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11).”

특히 CYS-Net(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필수연계기관인 경찰이 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에 대상 청소년을 연계한 경우 빠른 개입이 요구되는 이들 청소년의 특성 상 서비스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우선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선도프로그램의 경우 보호자가 병원에 동행할 수 없을 때 전담경찰이나 청소년동반자가 동행하여 상담과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틈새 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아예 꿈드림(센터)의 원칙에 최우선으로 두면(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그냥 (개입하죠)소화해버리죠(09).”

“표준선도프로그램 문제점이 전담경찰이 따라가야 되고 문제가 있어요. 연계까지만 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병원에)데려다달라 밖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07, 09).”

“(표준선도프로그램)병원이라는 데 (부모가)부담을 엄청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요즘 특히 분노장애나 ADHD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오히려 의뢰를 하는 학부모들이 6개월에 한 번씩은 있어요. ‘경찰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근데 돈이 안 드니까. 면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록에도 안 남잖아요. 정신과 치료라는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총 4명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10시간 이수까지 했는데 10시간 하려면 5번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SPO만 계속 쳐다봐요 왜 안 데리고 오냐(07).”

선도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본인 동의 절차의 경우, 경찰과 검찰 단계의 선도프로그램도 공통적으로 본인 및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 다만 교육적 선도의 경우 경찰의 훈방, 검찰의 기소유예와 같이 강력한 ‘혜택’이 없을 경우 자발적인 동의와 실효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선도조건부 보호관찰도 부모를 같이 불러서 위탁동의서를 받고 첨부하죠. (중략) ‘이거 제대로 안 받아서 이쪽에서 취소 들어오면 재판 보낸다. 그럼 너 가서 몇 달 동안 재판 받고 그 뒤에 더 엄한 처벌 받게 된다’ 하거든요. 개네들도 그걸 알고 동의하죠. 만약 ‘널 위한 거야. 동의할래?’ 하면 동의를 한다 해도 ‘이거 안 나가도 되네?’ 딱 알고. 정말 그게 필요한 애들은 정작 연락 끊기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11)”.

② 교육적 선도제도 전반

가. 소년사법체계 및 청소년복지 지원체계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문제
전문가들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한편, 경찰과 학교 간 정보공유를 포함한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사건에 대한 이중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이 근절되어야 하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비행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걸 계속 서로 감추려고 하니깐. 아이는 계속 다시 걸도는(05).”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법원)가 동행영장을 발부하거나 소재탐지 촉탁을 한 게 전산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안타까웠던 사례는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는데 별건으로 다른 사건을 또 저질렀어요. 똑같은 00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하고 동행영장 발부했는데 그 의뢰서가 00서에 7월 10일에 도달했고, 그 아이가 7월 15일에 별건으로 00서에 또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담당자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돼서)소재탐지촉탁은 ‘집에 가 보니 아무도 없다. 아이 신변을 알 수 없다’ 그런 케이스가 계속 발생하는데 소년보호재판 핵심은 아이가 비행을 저지른 후 보호처분이 최대한 빨라야 실효성이 있는데 소재탐지가 안되고 여러 기관의 협력이 안 돼서 1년 후에 재판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10).”

“(정보공유가 미흡한 것이)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일 수 있어요.. (중략) 소년을 기를 때에는 다 공유를 해야 돼요. 감추려고 하고 엄마가 ‘제가 케어 할 게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꾸 재범을 저지르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먼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절도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도프로그램에 돌리기 위해서 학교에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인정 조퇴 같은 경우는 (공문)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부모가 원치 않아요. 근데 부모가 원치 않았을 때 저희가 통보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05).”

각종 제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선도프로그램 간 유사중복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부처 간 연계, 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해 개입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처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같은 대상자를 갖고 있고 각자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02).”

“중복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애들 상담 하다보면 보호관찰소에서도 상담 받으라.. 위탁위원하고도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중복으로 계속 시키는 것들이 많아서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03).”

“사실 저희(검찰)는 보내기만 하지 그 뒤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을 잘 못 하다보니까. 어떤 애들은 큰 강력사건 터뜨린 거 아니면 선처 받는걸 아니까 또 보호관찰 또 보호관찰 좀 많이 하면 소년원 1~2개월 이러니까 별로 무서워할 질 않아요(11).”

이와 함께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이중처벌’의 우려도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교육적 선도제도가 운영될 경우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고, 낙인과 처벌의 일환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학교폭력을 저질렀어요. 그럼 애가 학교에서 학폭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특별교육 명령을 받아서 저희센터(비행예방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이지. 근데 피해자 쪽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 학폭법이 아닌 소년법 상으로 또 오게 돼요. 법원까지 가게 되면 상담조사로 올 수 있고 검찰단계에서 종료가 되면 교육조건부기소유예로 또 오게 돼요. 여기에 학교장이 지자체에 교육적 선도를 요청하면 애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애가 한 짓은 한 가지 행동인데, 그것을 다스리는 법들이 소년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폭력대책법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04).”

“경찰에 잡혀서 온 아이들인데 교육 오고 나서 학교에서 알게 되면 학교에서 또 별도로 선도위원회가 열리더라고요(01).”

“낙인 효과 때문에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자퇴해서 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02).”

특히 경찰에서 ‘사랑의 교실’을 포함하여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청소년을 연계하여 진로, 구직 등을 병행지원 한 경우 경험적으로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경찰단계에서 외부 기관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비행 초기단계의 청소년이 다수이므로 타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지침과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멘토링을 하다 보면 외부 기관에 연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꿈드림센터, 청소년 복지센터에 연계해서 검정고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학교 안 다니고 불법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불법 토토나 사채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빙도 많이 뜯고..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끔 연계하는데 사실 검정고시보다는 알바.. 편의점이라도... 자기들이 월급 안 떼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알바를 찾아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재범이 낮아지는 경우는 있어요(07).”

“저희들(경찰)이 유선 상으로 확인하고.. 좀 획일화되거나 통합된 시스템 같은 게 있다면 편리할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학업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 이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게 딱딱딱 되어 있으면 저희도 연계하기가 엄청 쉬운데(07).”

이어 현직 판사는 경찰, 검찰 뿐 아니라 가정법원도 후견복지사업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선도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법원에서 지역 내 청소년 지도자 등을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원은 손발이 없어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집행은 연합(연계)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길 위 학교’는 대전지역에 쉼터가 여러 개 있거든요. 거기 선생님들이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라서 이 분들이 동행자로 참석해주셔서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사비로라도 아이들과 10박 11일 계속 걸으면서 좋은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교육 받으시고 법원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해서 법적 근거도 갖추고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10).”

나. 선도제도 각각의 유사점과 차이점

현장실무자들은 기존의 선도제도가 전반적으로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여 차별화가 되지 않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선도효과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랑 보호관찰소, 경찰서 세 기관을 연계하는데 학교에서 이 친구가 징계위원회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다음에 사랑의 교실로 또 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두 달 뒤 쯤 보호관찰소 또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연속으로 세 번 만나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이들도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다 거기서 거기인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피드백을 하고 난감해요(02).”

“학교에서 특별교육 대상자가 나와서 센터를 보내요. 애가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해서 또 받으면 또 다른 기관 또 다른 기관으로 계속 돌리더라고요. 학생 한

명을 가지고. 그럼 이 학생이 와서 '다른 기관은 이렇게 했는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필요성을 점점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는 그냥 내가 학교에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특별교육을 보내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01)."

한편, 현장 실무자들은 모든 선도프로그램은 청소년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투자 관점에서 국가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특히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가족의 보호력을 상실한 위기청소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처벌 이전에 반드시 사회적 지원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정책대상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변화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낙인이 아니라 교육하고 교화하고 선도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거거든요. (중략) 아이들 열 명 중 한 두 명이 변화되면 분명히 훨씬 이득이다(10)."

"소년보호사건 90%이상은 가정 결손과 보호력이 없는... 아이들이 본인 의지만으로 어떻게 개선되고 선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의 보호와 안정된 생활력이 없으면 안 돼요. 안타까운 사건은 보호력이 없어서 사회 내 처우를 반복해도 비행을 반복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너는 어쩔 수 없이 소년원을 가야 된다." 비행은 중하지 않고 차탈이에요. 차에 몰래 들어가서 기껏1,300원 이런 걸 반복하는데. 집에 알코올중독인 아버지하고 엄마는 3살 때 이혼해서 없고, 아버지는 때리고 할머니는 장애가 있으셔서 애를 챙겨줄 수가 없고 오히려 보호자들이 '애 소년원에 가면 안 된다고. 애가 소년원 가면 우리는 누가 돌봐주냐'는 얘기에요. 그런 상황인데(10)."

"제가(검사) 한 6개월 하면서 청소년 약 100여명 사건을 봤는데, 대부분 결손가정,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사고를 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사건은 터졌고 처벌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진행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느낀 건 애네들 생활, 교육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처벌을 받더라도 검사실에서만 잘 못 했다고 반성문 쓰지 돌아가면 또 사고를(11)."

검찰에서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선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선도가 필요하더라도 지역 내 인프라와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재판에 회부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소년의 입장에서 선도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검찰의)선도프로그램으로는 지역마다 많이 다릅니다. 다만 보호관찰소는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조건부기소유예가 있고...(중략) 선도조건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거의 보호관찰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지역 사정에 맞춰서 하는데 전청에 있을 때는 대학과 제휴해서 심리상담, 미술치료 이걸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했는데. (중략) 지금(현 지역) 선도조건부는 법사랑위원회 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 도리사 템플스테이 하는 거(11).”

다. 기존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진단

경찰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경찰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선도’, 치료프로그램의 일환인 ‘표준선도’ 등 사실상 경찰단계에서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이후 선도프로그램의 이수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에서)경찰단계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이런 여부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가 독단적으로 재판단해서 소년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는 (검찰단계에서)보호관찰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가지고 소년보호재판 또는 사건이 클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렇게 끝납니다(05).”

특히 현직 경찰은 선도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서 경찰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소년을 ‘입건’부터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비현실적으로 많아 실질적인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선도위원의 전문성과 역량에 한계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쩔 수 없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프레셔는 결국 그 가정이 받는 거예요. 경찰단계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검찰로 갔더니 검찰에서 또 이런 걸 이수하라고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부담이.. (중략) 제가 소년업무를 3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을 법의 잣대로만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어요. 소외계층, 가정의 붕괴, 보호자의 부재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을 근본적인 원인에서 찾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오는 사건들을 그냥 처리하는(05).”

“저희 관내에 소년범이 지금 한 300명 정도... 어마어마해요. 쏟아져 나오는데 직원은 5명밖에 안되는데, 이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09).”

“애들한테 물어보면 “밥 먹으러 가요. 간식 먹으러 가요.” 이렇게만 하는.. 진짜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분들 애들을 통해서 많이 못 봤어요. 그 분들은 애들의 그런 걸 잘 파악 못 하는구나(09).”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은 대상과 목적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또한 검찰단계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지역별로 운영 편차가 큰 상황인데, 필요에 따라 청소년 관련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훈령은 아주 간략한 내용만 나와 있어요. 세부지침이 있는데 딱 들어가 있는 대상들이 있어요. 경찰 관서 내 자체선도프로그램은 어떤 아이들을 하라. 사랑의 교실은 어떤 아이들을 보내라. 표준선도프로그램은 어떤 아이들을 보내라. 문제는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05).”

“법사랑위원이 민간단체잖아요. 지방검찰청에 가면 법사랑위원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랑 검사들이랑 연계가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서로 데면데면 하는 곳은 잘 안돼요(04).”

“검찰 자체적 (선도는) 반성문이 불성실하면 다시 쓰라고 하는데 사실 반성문 한 번 더 쓴다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략) 법사랑위원분들이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젊어도 40대, 5~60대 이런 분이 많은데 10대 학생들과 매칭해도 공감대 자체가 없어서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이정도고 사실 그것도 많지 않아서(11).”

경찰에서 운영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범죄심리사가 작성하는 자료는 경찰 뿐 아니라 검찰, 법원단계에서 모두 참고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범죄심리사의 역량과 전문성에 편차가 커서 질 관리와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범죄심리사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경찰 단계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보는 유일한 자료이거든요. 법원에서도 보는 자료예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심리사의 경험정도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심리사가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돼요. 이 시간에 그 아이의 암수범죄나 가정환경을(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심리사의 재량인 것 같아요. 너무 대충 대충하는 것이 만연화되어 있는(05).”

“전문상담사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수련생이고.. 수련은 자기 스킬을 늘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죠(06).”

“범죄심리사 선생님이 경찰서에 몇 명씩 배정이 됐어요. 이분들이 (상근이 아니라)투잡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말에 된다 그러면 애들이 안 되고 맞추는 게 너무 힘든거죠(09).”

「소년법」에 따른 ‘우범송치제도’의 경우, 현재 대상 청소년이 너무 많고 소년분류심사원이 과밀일 정도로 입소자가 많아 가정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거나 제도를 이용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호관찰제도의 경우 소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선도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범송치)요즘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09).”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분류심사원도 가득차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07).”

“(민간기관과 연계하면)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보호관찰 보내도 ‘잘하고 있지?’ 확인하는 정도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보호관찰 안 된다고 취소 통보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소년재판으로 보내야 되고(11).”

전반적으로 경찰과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만족도와 수요도가 매우 높았다. 반면 우범송치 시 ‘1호 보호자위탁’은 선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고,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 판결 시 관찰 지역 내 SPO 또는 청소년상담사 등 특정 선도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검찰 내부 전산망(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에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하여 동행영장 발부 및 소재탐지촉탁도 전산 등록하는 등 현행 정보공유와 관련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날 입건된 애들이 20명인데 (사랑의 교실에) 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4명은 우리가 해야돼요. (중략) 사랑의 교실은 자체선도프로그램과 다르게 짝시키고 되게 좋아요. 인원만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최고인 것 같아(09).”

“겨우 보내 놔는데 1호 보호자 위탁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는 이거 왜한거지? 이렇게 돼버려요(07).”

“(판사님이) “너 재판받고 너 나가서 똑바로 해.”가 아니고 “나가서 관내에 000 형사 있지? 계속 지켜보라고 내가 지시했으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말 한마디만 넣어달라고 부탁했었어요(09).”

“유관기관 간의 협력관계가 안타깝고 KICS에 소년보호사건 관련된 동행영장 발부나 소재탐지촉탁도 전산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10).”

한편 현재의 선도프로그램은 대상 청소년의 특성이 고려되기보다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요구 등 물리적 여건에 따라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저지르는 범죄가 가벼운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선처할 여지가 많은데(남학생만 대상으로 합니다). 운영상 한계 때문에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남학생으로 해 달라’ 요즘 성범죄 이런 게 민감하니까(11).”

표 IV-50 현장 실무자 면접조사 주요 내용 요약

구분	항목	주요 내용
현장 실무자	선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성이 없으므로 사실상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경찰·검찰·법원단계에 있는 선도대상 청소년이 적절(다이버전 제도 일환으로 추진) 경찰단계 선도조건부 훈방 대상(처벌불헌), 검찰 송치 전,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처분이 종결된 청소년 대상 제도화 필요
	선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범소년, 초범, 재범청소년을 구분하는 등 지역사회 내 선도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다양화 모색 필요 1:1 관계기반 접근이 가능하도록 자치구 단위에 선도후견인 풀을 구축하고 대상 청소년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필요 역할모델을 통해 청소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접근 필요 선도후견인을 법원의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간 연계와 공식적 활동 근거 마련 필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건된 관할 경찰서가 아닌 청소년의 거주지 내 선도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공범, 초·중·고교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등 비형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집단교육 방식 지양 필요 지역 내 비형 또래집단을 하나의 개입·지원 단위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선도프로그램 도입 필요 (경찰단계)선도프로그램 참여율, 단기 재범을 뿐 아니라 해당 청소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접근이 되어야 함.
	실효성 제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참여를 강제,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필요 역할극, 법교육, 문화·체험·체육 등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 필요(경찰-지자체-민간 협력) 경찰이 CYS-Net 필수연계기관임에도 대상자 의뢰 시 대기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우선 개입 근거 마련 필요 표준선도의 경우 보호자가 병원 등에 동행하기 어려울 때 전담경찰, 청소년동반자, 선도후견인 등이 동행하여 상담과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틈새 조력서비스 도입 필요 강제성이 없으므로 교육적 선도제도 참여 시 유인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법절차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와 체계를 개선하여 사안 발생 시 빠른 시일 내 선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상 청소년에 대한 이중처벌과 각종 불이익이 근절되어야 함.

3. 소결

1) 비행의 경중(輕重)에 따른 선도프로그램 제공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있어 성별, 연령대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행위가 일부 확인되었다. 먼저 오프라인 도박과 인터넷 도박,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과 주먹싸움 하거나 때리기, 다른 사람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리기, 방화의 경우 남자청소년, 집단따돌림 하기는 여자청소년의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흡연, 음주, 청소년출입제한/금지구역출입 등 지위비행의 경우 16세 이상 고연령대 청소년의 경험률이 높았지만, 그 외 비행행위는 중간연령대(14~15세)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비행의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보면,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비행의 경우 고연령대가, 재산비행, 성비행, 그리고 전체 비행 정도는 중간연령대의 비행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였다. 특히 청소년 및 현장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에서도 대상 청소년의 초범, 재범 여부 등 죄질에 대한 고려 없이 집단형태로 선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이른바 ‘악풍감염’ 등 부작용 문제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도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선도프로그램에 배치할 때 성별, 연령대별 고려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요소보다 비행의 경중(죄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청소년비행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본 연구를 통해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영향력이 각각 확인되었다. 먼저 위험요인의 경우 우울 및 불안, 충동성 및 공격성, 강압적·비일관적 양육태도, 부모-자녀 갈등, 부부갈등, 학대 및 소외,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 교제, 교사-학생 간 비우호적 관계, 강압적 학교분위기, 지역사회 내 유해환경 접근성, 지역사회해체 등 11개 요인 모두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압적 학교분위기 요인만 성비행 범주에 해당하는 비행행위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친밀한 이웃관계 요인은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 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미시적환경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보호요인의 경우 일부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관념, 가족차원에서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 또래차원에서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 교제,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 학교차원에서 우호적 관계의 교사 존재가 비행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의 도덕관념,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 문제행동을 통제하는 친구 세 가지 요인은 비행행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선도프로그램에서 법교육, 인성교육 시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요소를 대폭 강화하거나,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중장기 성과지표로 '도덕성'을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행 및 범죄에 연루된 대다수 청소년이 또래집단 내 역동(dynamic)의 영향을 받는데, 또래의 제지와 영향력은 비행을 억제하는 핵심 보호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활용한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가족 및 여가·문화·취미 영역 선도프로그램 확충

본 연구에서는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제한적이거나 각각의 선도프로그램의 선도효과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여가·문화·취미’에 해당하는 각종 활동들이 비행행동 감소에 가장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은 가족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 상담 및 치료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된 세부프로그램은 체육/운동활동, 동아리활동, 댄스 및 비보잉, 음악활동,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요리활동, 가족캠프, 미술활동, 멘토링, 각종 체험활동, 취업알선 등이었는데 여가·문화·취미 유형에 속한 프로그램이 다수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및 현장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에서도 선도프로그램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기회가 제공되거나, 교육보다 체험과 활동이 수단으로 활용될 때 참여도와 선도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현장 실무자는 가족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청소년의 경우 가족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가족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효과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가족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는 ‘부모님께 피해를 끼치고 부끄러워서’ 등을 이유로 선호와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다만 경찰, 검찰, 법원에서 가족프로그램과 여가·문화·취미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특화 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조사표본에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가운데 처분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경우가 10명 중 3명에 달했는데,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각종 봉사활동의 경우 모든 선도프로그램 유형 가운데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가장 낮았다. 이는 봉사활동 자체가 선도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정과 선도의 수단으로 봉사활동을 활용할 경우 청소년이 그 의미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성찰과 반성의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내용전반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지역사회 내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유형 사회서비스 확충

본 연구의 조사표본에서 10명 중 9명(91.7%)이 재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5명 가운데 9명이 재학생이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듯 이들은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해 학교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학교에서 교육과정 기반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기준 등 실제적인 법교육을 실시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도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학습여건이 갖추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청소년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진로 유형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수업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학습경험과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담의 기회가 되어 비행행동 억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교육 및 진로 유형 선도프로그램은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등으로 비행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취업알선, 창업교육, 진로탐색, 적성검사, 직업체험, 대입준비지원, 검정고시 준비지원 등의 교육 및 진로 지원이 비행행동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및 상담을 활성화하고, 선도대상 청소년을 위한 학교 안팎의 진로·진학·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유형에 해당하는 선도프로그램을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5) 선도프로그램의 교정목표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본 연구에서는 선도프로그램의 7개 유형이 7개 교정목표(심리·정서적 안정, 학업증진(학업동기 포함), 생활습관 개선, 긍정적 가치관 형성, 가족관계 향상,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지역 내 건전한 활동기회 확대)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청소년의 성별, 연령, 운영기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가하는 선도프로그램의 각 유형별 효과성은 교정목표와 관계없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3~3.4점 정도로 대체로 균질적이었다. 다만 선도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정목표가 관련성이 높을수록 선도효과가 높았다. 즉, 선도프로그램 유형 중 가족관계 향상 차원에서는 가족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았고, 학업증진 차원에서는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선도프로그램이 목표를 명확히 할 때 실질적인 교정목표 달성과 선도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자청소년의 효과평가가 여자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프로그램 유형은 여가·문화·취미활동 영역에 불과하였다. 또한 12~13세, 14~15세, 16세 이상 청소년 간의 효과성 평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존의 선도프로그램이 성별, 연령대에 따라 효과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일부 확인되었다. 다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가·문화·취미활동 영역의 선도프로그램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비행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선도프로그램 기획 및 배치 시 이러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의 표본에서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 유형에 따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선도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7개 선도프로그램 유형 모두에서 예외 없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청소년기관과 민간기관이 사법·치안조직

보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선도프로그램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는데, 사후검증 결과 청소년기관과 준사법기관(비행예방센터) 간 차이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당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관과 민간기관이 경찰을 포함한 소년사법체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각각의 선도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교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선도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가 있는 선도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는 등 근거기반(evidence based)의 제도 추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청소년의 거주지 기반 선도프로그램 운영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은 대상 청소년의 사건이 발생, 처리되는 관할 경찰서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관할서가 원거리에 있을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경찰에서 대상 청소년의 주소지 내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는 민간기관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뢰하는 경우도 많지만, 해당 기관에서 이들 청소년에게 개입해야 할 의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면접조사에 참여한 15명의 청소년들은 경찰의 훈방조치 조건으로, 검찰단계에서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호처분 내 수강명령의 일환으로, 보호관찰관의 권유 등 다양한 경로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도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참여를 위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특히 선도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관에서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원활한 참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선도프로그램 제공자보다

대상 청소년의 여건을 우선 고려하여 주거지 내 기관에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의 교실 운영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제V장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1. 제안배경
- 2. 정책 추진과제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¹⁰⁶⁾

1. 제안배경

1) 주요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선도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2차 자료 분석, 조사 시점 현재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현장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등 다각적인 분석이 활용되었다. 먼저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 자료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제도를 다이버전(diversion)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소년사법절차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행청소년 대상 선도제도를 다루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최소 8개에 달하였다. 각종 선도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조직도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6개에 달하며 이들 각각의 제도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06) 이 장은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독일,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유사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다이버전 제도를 중심으로 가족참여, 개별 맞춤형 처우, 장기적 처우, 다기관 협력, 민간단체 참여, 동의서 및 계약서 작성 등 선도효과에 도움이 되는 운영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독일은 형사절차보다 법원의 교육처분명령의 일환으로 ‘준수사항’을 통해 선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보호자위탁 등 「소년법」에 따른 1호 보호처분과 유사한 내용도 포함하는 등 선도제도의 개념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었다. 일본은 경찰이 ‘소년경찰활동규칙’을 근거로 소년서포트센터를 기반으로 민간기관과 연계한 선도프로그램 사례와 처분 결정 전 선도프로그램 운영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은 미국의 다이버전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정신건강, 학습장애, 약물남용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특수 다이버전을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2차 자료 분석은 선도대상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먼저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위법행위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이 있는 재학생은 약 19만 명으로 추정되며, 중·고교생 가운데 환각성물질 이용경험자는 약 120만 명,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을 이용한 경험자는 약 3.5만 명 등 약 1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다음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단계에서 포착되는 비행청소년의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경찰단계 약 6.3천명, 검찰단계 5.6만 명, 법원단계 약 1.2만 명(우범소년 약 3백 명, 「청소년 보호법」 등 7개 법률 위반행위자 가운데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약 4천명, 소년원 출원 등 보호처분 종결 대상 약 8천명 포함),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계에서 파악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연간 약 3만 명 규모로 각각 추산되었다. 즉, 이들을 모두 선도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정책대상의 규모는 약 150만 명 정도로 추산되

는데, 이는 19세 미만 청소년 인구의 약 25.2%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결과는 규모 추정 과정에서 행위 중복과 누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감안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여건이 과연 대상의 규모와 개별 사안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인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현재 경찰, 검찰, 법원단계의 처분 및 조치의 일환으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비행 경험에 있어 성별, 연령대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행위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특히 지위·물질사용·신분도용비행 경험은 16세 이상 청소년이 가장 많았지만, 비행의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비행과 성비행, 그리고 전체적인 비행 정도는 중간연령대(14~15세)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重)하였다. 이는 해당 청소년을 선도프로그램에 배치할 때 연령과 성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초범, 재범여부를 포함하여 행위 특성과 경중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였는데 청소년 스스로의 도덕관념,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의 존재, 문제행동을 통제(제지)하는 친구의 존재가 비행행위를 감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요인이었다. 또한 기존의 선도프로그램 가운데 비행억제 효과가 높은 영역은 여가·문화·취미, 가족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 표본에서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별 선도프로그램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년기관과 민간기관의 프로그램이 준사법기관이나 사범·치안조직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참여 청소년의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실제 재범억제 효과와 괴리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프로그램 참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프로그램의 질이나 효과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선도 효과가 입증

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과 동시에 청소년기관과 민간기관이 선도프로그램의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과 현장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에서는 교육적 선도제도의 운영방식과 효과적인 내용 요소를 확인하였다. 즉, 1:1 관계기반, 부모참여, 여가·문화·취미·진로 등 청소년활동과 체험 영역의 프로그램이 비행행위 억제에 도움이 되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진학·취업·창업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실무자들은 중복처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교육적 선도제도의 핵심 정책대상은 경찰에서 훈방, 즉결심판 대상인 비행 초기단계의 청소년, 그리고 소년원 출원 등 보호처분이 종결된 이후 사회적으로 재범예방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적합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재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은 사건을 처리하는 관할 경찰서를 기준으로 실시되는데, 청소년의 원활한 접근성과 참여도를 감안할 때 주소지(거주지) 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기관 간의 연계 뿐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콜로키움과 학계·현장·정책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에서는 비행 초기단계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의 일환으로 교육적 선도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법」과의 연계 추진,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었다. 결국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제도는 처벌이 아닌 처우의 일환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법제의 정비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선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연구방법에 대한 결과와 시사점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V-1~3]이다.

〈 문헌분석 〉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주요결과 및 시사점	정책방향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교육적 선도제도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 동법 발의법률안에 포함되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제도는 존치하되 내용 상당부분이 변경되어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임. 선도제도는 청소년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식적인 형사절차를 중단하거나 경미하게 제재하여 비범죄하는 다이버전의 대표적인 유형이며 동법상 선도제도는 비행청소년 선도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소년사법절차의 중복 및 사각지대와 연계-운영 필요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존치 여부를 포함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 경중(輕重) 등 비행행동 측정 도구개발을 목적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영역에 대한 예비문항을 개발함. • 선도대상의 범위, 효과성, 프로그램 구성요소, 개인정보공유 등 교육적 선도제도 관련 현안 및 쟁점을 분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사법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교육적 선도제도 존치 여부 및 실효성 확보방안 도출 •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행행동특성 분석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현재 각종 선도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외,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8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선도제도를 운영,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조직도 교육부, 법무부, 경찰, 검찰, 법원, 여성가족부 등 6개에 달하며 각각의 사례를 분석함. • (미국) 교육적 선도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는 다이버전(diversion)제도이며, 가족참여, 개별 맞춤형 처우, 장기적 처우, 다기관협력, 민간단체 참여, 동의서 및 계약서 작성 등 선도효과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요소를 도출함. • (독일) 청소년법원법을 근거로 형사절차보다 법원의 교육처분명령의 일환으로 준수사항 형태로 선도가 이루어지며, 보호자위탁 등 선도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임. • (일본) 경찰의 소년경찰활동규칙을 근거로 소년서포터센터를 중심으로 소년경찰활동이 이루어짐. 오사카 가정재판소의 교육적 조치는 소년법상 시험관찰과 연계하여 처분 결정 전 선도프로그램으로 의미가 있음. • (영국) 미국의 다이버전제도와 유사한 형태이며, 정신적 문제가 있는 대상자(정신건강, 학습장애, 약물남용 등)를 위한 특수 다이버전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맞춤, 다기관협력, 가족참여 확대 필요 • 선도효과 및 선도목표 등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정신건강 등 특별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 포함 대상별 프로그램 다양화

그림 V-1 분석자료와 주요결과 요약 (문헌분석)

〈 2차 자료 분석 〉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주요결과 및 시사점	정책방향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이 있는 재학생은 약 19만 명, 환각성물질 이용경험이 있는 중고교생 약 120만 명, 유흥·단란주점 등 업소이용 경험이 있는 중교생은 약 3.5만 명 등 약 1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다만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과소추정 가능성을 감안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 중 선도대상 약 140만 명 추산
범죄분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경찰단계의 선도대상 청소년은 연간 약 6.3천명 규모로 추산 • (검찰) 검찰 및 법원단계의 선도대상 청소년은 연간 5.6만 명 규모로 추산 • (법원) 소년보호사건에서 우범소년 규모는 연간 약 3백 명, 「청소년 보호법」 등 7개 법률 위반행위자 중 선도가 필요한 대상은 연간 약 4천 명으로 추산 • (처분종결) 소년원 출원생,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보호 등 연간 약 8천명 규모 •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계에서 파악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연간 약 3만 명 규모 • (선도대상 규모) 위의 비행·범죄소년 약 11만 명, 부적응(일탈)청소년 약 140만 명 등 선도대상 청소년은 약 15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9세 미만 청소년 인구의 약 25.2%에 달하는 규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범죄, 일탈 등 선도대상 규모는 약 150만 명 추정 (19세 미만 청소년 4명 중 1명)

그림 V-2 분석자료와 주요결과 요약 (2차 자료 분석)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 분석 〉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주요결과 및 시사점	정책방향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있어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확인하고,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청소년의 도덕관념,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통제(억제))을 밝힘. • 기존 선도프로그램 가운데 비행억제 효과가 높은 선도프로그램 영역은 여가문화취미, 가족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영역 순으로 나타남. • 선도대상 청소년들은 청소년기관, 민간기관이 존사법기관이나 사법·치안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선도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비행 보호요인 강화 • 민간기관 참여 확대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검찰, 법원단계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선도프로그램 참여경로, 비행예방 효과 및 도움정도, 만족도와 개선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 • 1:1 관계기반, 부모참여 프로그램, 여가·문화·취미 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평가가 긍정적이며, 진로·진학·취업·창업 지원 요구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청소년의 특성 고려 맞춤형 개입 • 관계기반, 가족참여, 진로지원 등 사회서비스 확충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선도대상은 경찰단계(훈방, 즉결심판)의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 소년원 출원 이후 사회적응 및 재범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중복적인 처우를 최소화해야 함. • 사건을 처리하는 관할 경찰서보다 청소년의 주소지 내 경찰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참여도 제고 • 1:1 관계기반, 부모참여, 경험하지 못한 체험 중심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는 내실 있는 운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단계, 소년원출원생 집중 지원 • 거주지 기반 체험활동중심 프로그램 확대
학계, 현장, 정책 전문가 의견조사 (플로 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영역에 대한 11개 정책과제 도출] • 비행 초기단계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의 일환으로 제도 운영, 간이송치제도 운영, 청소년보호법과의 연계,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 특성화 운영, 특별준수사항(법원)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로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정비를 통한 선도프로그램 운영효과 제고

그림 V-3 분석자료와 주요결과 요약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 분석)

2)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자료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개선방향과 추진과제를 모색하였다.¹⁰⁷⁾

- (1) 비행청소년 보호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확충
: 선도대상과 선도내용의 명확화,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용어 변경
검토 필요

대한민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베이징준칙, 리야드지침 등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위법행위를 한 아동·청소년이라도 구금, 낙인을 최소화하고,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수단을 증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우범, 지위비행 규정 철폐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나가면서 청소년 비행(범죄)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처우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적 선도제도는 사법절차 진입 직전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사법절차 내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 그리고 사회 내 처우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유사한 제도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의 규모와 기존 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교육적 선도제도를 유지할 경우 유사중복에 따른 논란보다 사각지대의 발굴·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특히 교육적 선도제도의 시행주체가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현행 사법체계 내에서 민간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체계화, 내실화를 통해 기존 선도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107) 이 연구는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제도를 소년사법체계 내 다양한 선도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존치(存置) 필요성을 검토하고 실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교육적 선도제도와 기존 선도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지엽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있으나, 소년 강력범죄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법제 전반의 개선 논의는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혀둔다.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폐지보다 존치가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적 선도제도는 비행청소년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의 일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법」을 근거로 이러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접근권을 보장하여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적, 발달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제도의 정체성이 정립되어야 한다. 교육적 선도제도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처우(treatment)이자 조치라는 점에서 처분을 포함한 처벌과 구별된다. 따라서 각종 보호처분과 병합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보호지원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선택권과 자율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운영절차를 포함한 선도내용과 수단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인 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준칙 상의 규약을 이행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이와 같은 본인 동의가 일반적으로 심리적 제약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이후 처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발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적 선도제도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같이 기소의 유예라는 이익(이득)도 없기 때문에 자발적 동의를 의무사항으로 유지할 경우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선도제도가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호조치이자 사회서비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통고의무자 등 청소년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도 당연히 본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교육적 선도제도는 청소년의 자

유를 구속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강제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본인 동의를 전제로 선도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도내용에 '유인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정책대상(선도대상)의 범위와 선도내용을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각각 규정할 필요가 있고, '선도'라는 용어를 '(비행)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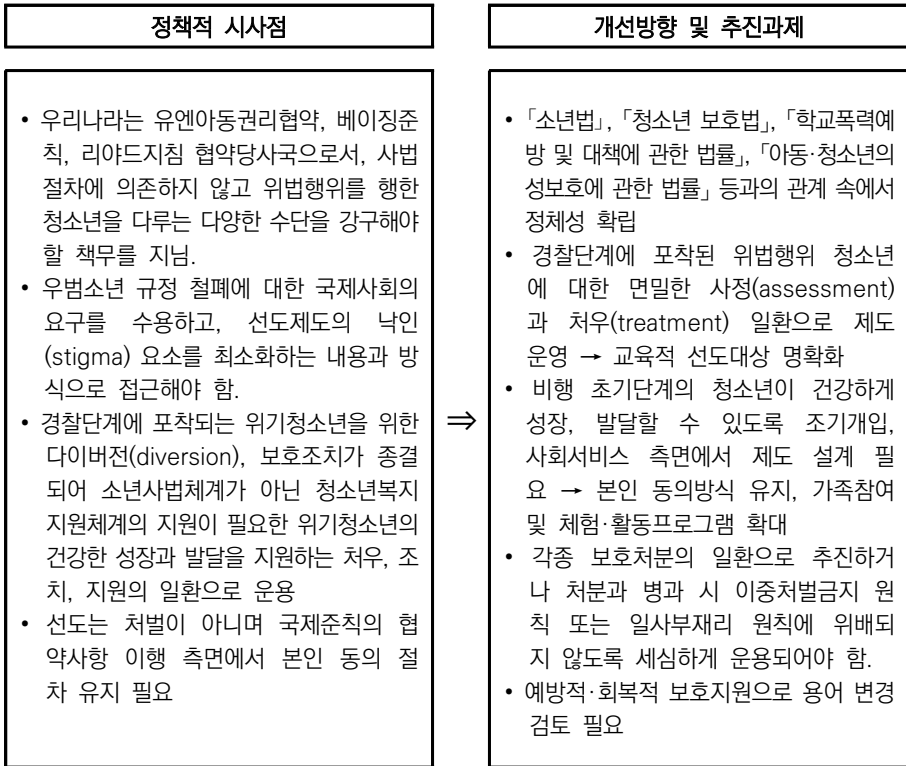


그림 V-4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1)

(2)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의 파트너십 구축

: 위기청소년(비행청소년) 보호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 강화 및
경찰-지자체 연계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제도’ 법제화 모색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분과 처우를 통해 비행의 촉발원인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행 소년사법체계 내 각종 선도제도가 행위의 처벌보다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와 같이 비행예방에 대한 처분의 효과를 높이고 해당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이들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적 선도제도는 사법체계 진입 전·후에 걸쳐 위기청소년을 포착하는 게이트웨이의 기능 뿐 아니라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선도처분의 효과를 높이고, 처분이 종료된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reentry)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보호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독자적인 제도운용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현행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복지 지원체계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비행소년의 처우와 관련하여 「소년원법」을 제정·적용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교육사상 원칙’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교육은 ‘국가의 침해를 최소화한 가운데 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범소년과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원법」이 아닌 「아동·청소년복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들이 처분대상이 아닌 사회서비스의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공적 기구인 ‘소년국(jugendamt)’이 「소년원법」을 보조하는 사무와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국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시이자 보호시설 및 후견인과 관련된 법원지원 업무와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감시행정까지 담당한다(원혜옥, 2018, p.34). 우리나라의 경우 일선 시·군·구의 아동·청소년복지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에서 우범소년과 14세 미만 비행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등의 업무는 일체 담당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 전략으로 자치구 행정조직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비행소년 보호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이행을 강화하거나, 공공기관이자 준사법조직인 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가 이들 아동·청소년과 가족복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단계에서 포착된 비행소년에 대한 입건과 검찰송치를 최소화하고 재비행을 예방하는 근원적인 지원 책무가 자치단체장에게도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해당 위기청소년에 대한 면밀한 사정(assessment)을 통한 맞춤형 처우(treatment)를 의미하는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기반으로 개별 맞춤형 처우계획서가 개발되고 이를 토대로 개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미국,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은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며 모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책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경찰의 훈방실무를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로 법제화하여 경찰과 자치단체가 연계한 초기 비행청소년 대상 다이버전 제도로 운영하고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통해 제도안착을 도모하는 것이 주효(奏效)할 것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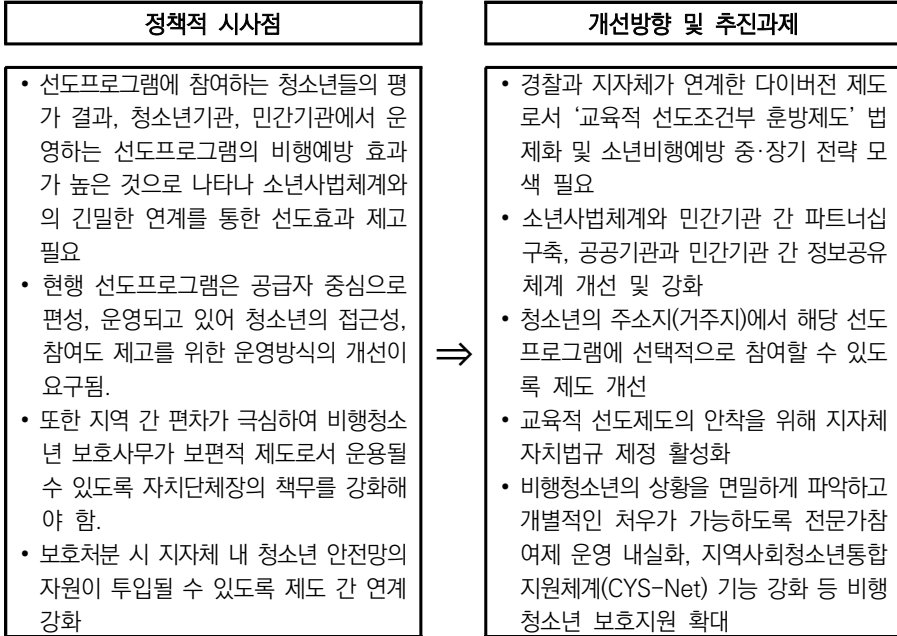


그림 V-5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2)

(3)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위험(risk)과 요구(need)를 고려한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적 선도제도의 핵심 성과지표는 재범 여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범률 감소는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부차적인 효과일 뿐이다. 교육적 선도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성과지표를 예로 들자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가족관계 향상', '학업증진(학업동기 포함)', '친사회적 친구관계의 형성과 유지', '생활습관 개선',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등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선도프로그램이 부모(보호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거나, 역할모

텔(role model)과의 1:1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활동과 (극기 훈련을 포함한)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일 때 청소년의 재범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봉사활동을 포함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그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행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식과 행동변화 효과가 검증된(evidence-based)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당 청소년의 위험과 요구가 고려된 다양한 수단이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모참여 선도프로그램의 효과가 일부 확인된 만큼 참여한 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 장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경우 지역 내 인적, 물리적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운영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소년의 상담·교육·활동을 ‘보호관찰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적 선도제도와 연계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례수와 보호관찰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검찰단계에서의 선도는 보호관찰소보다 시·군·구 단위 청소년기관 및 시설, 민간 전문기관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하여 반감이 클 수밖에 없고 충격(shock) 이외에 선도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시 선도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제정·시행을 통한 운영여건 개선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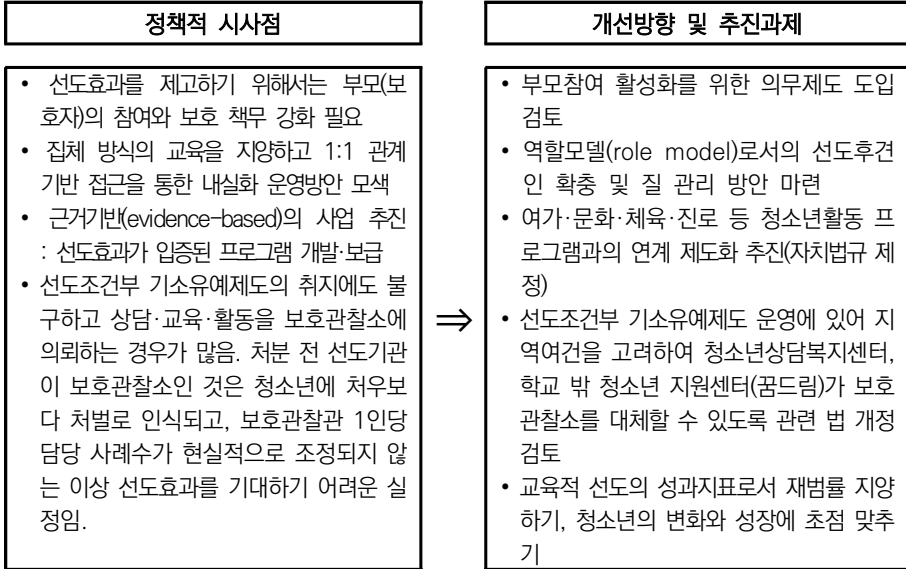


그림 V-6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3)

이상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 및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교육적 선도제도의 기본방향 및 원칙을 포함한 중·장기적 운영방향(안)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V-7이다.

비전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목표	선도(善道) 기능 및 실효성 제고						
기본 방향 및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청소년 보호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강화 • 처벌(처분 포함)과 구별되며, 비행청소년에 대한 낙인화, 범죄화를 방지하는 지역사회 내 서비스 →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 준수 • 비행행동의 근본원인에 대한 조치, 친권자(보호자)의 효과적인 양육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조치 • 위법행위를 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구금,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한 재범 예방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우범소년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진입관문(gate-way) • 청소년 당사자의 동의와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기청소년이 전문가의 지원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민·관 파트너십, 소년사법체계와 청소년복지 지원체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제도 운영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검찰, 법원단계의 다이버전(대상 특성 고려 6단계 프로그램 구분 운영) • 파·가해자 간 관계회복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서비스(회복지원) 						
점검 (성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안정 • 학업증진(학업동기 포함) • 생활습관 개선 • 긍정적 가치관 형성 • 가족관계 향상 • 친사회적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 •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확대 						
정책 대상	<table border="1"> <tr> <td>경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청소년 • 처분결정(선도조건부 훈방) 청소년 • 선도·지원결정 청소년 • 검찰 송치 전 선도 청소년 </td> </tr> <tr> <td>검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td> </tr> <tr> <td>법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고제도에 따른 선도조치 청소년 •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도에 따른 특별교육 청소년 • 보호처분 종결 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td> </tr> </table>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청소년 • 처분결정(선도조건부 훈방) 청소년 • 선도·지원결정 청소년 • 검찰 송치 전 선도 청소년 	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고제도에 따른 선도조치 청소년 •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도에 따른 특별교육 청소년 • 보호처분 종결 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청소년 • 처분결정(선도조건부 훈방) 청소년 • 선도·지원결정 청소년 • 검찰 송치 전 선도 청소년 						
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고제도에 따른 선도조치 청소년 •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도에 따른 특별교육 청소년 • 보호처분 종결 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19세 미만 청소년

그림 V-7 교육적 선도제도의 중장기 운영방향(안)

2. 정책 추진과제

1 법률 정비를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

표 V-1 법률 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 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	예산 사업	법률 재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	신규	○		여성가족부
1-2. 「소년업무규칙」 개정: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근거 마련		○	신규	○		경찰청
1-3. 「청소년 보호법」 개정: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마련		○	신규	○		여성가족부
1-4. 「소년법」 개정: 특별교육(보호관찰 부가 처분 및 사회봉사명령 연계 운영		○	신규		○	법무부
1-5. 「학교폭력법」 개정: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및 특별교육조치와의 연계 근거 마련		○	신규		○	교육부
1-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유·회복지원 강화		○	신규		○	여성가족부

1)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1) 1-1-1.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 변경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부터 제21조와 하위법령에서 각각 규정한 교육적 선도의 정책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 상 교육적 선도제도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이 이탈·부적응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임에도 ‘선도’라는 용어가 통제·처벌·제재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용어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동법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¹⁰⁸⁾ 교육적 선도라는 용어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할 경우 낙인을 해소하고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처분이 종결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추수지원을 ‘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는 점도 장점이라 하겠다.¹⁰⁹⁾ 다만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선도’가 다수의 법률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며, 교육적 선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경찰·검찰·법원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을 보조하는 기능이 강하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¹¹⁰⁾

(2) 1-1-2. 경찰서장 등 신청권자 범위 확대 및 선도대상 범위 제한

한편,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선도 신청권자에 ‘경찰서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장’, ‘상담·복지시설장’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신청권자’와 ‘통고의무자’

108) 동법 제19조 및 제2항에서 선도를 각각 ‘보호지원’, ‘선도활동’, ‘보호지원활동’으로, 복귀를 ‘복귀 및 적응’으로 대통령령을 ‘상담·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선도후견인을 ‘보호지원후견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1849, 제안일자 : 2018.02.08.).

109) 동법 제19조에서 교육적 선도의 용어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할 경우 동법 제20조, 제21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뿐 아니라 유관 법률에서도 용어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법률 상 용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교육적 선도제도로 기술하였다.

110) ‘선도’라는 명칭을 ‘보호지원’으로 변경할 경우 ‘선도후견인’은 ‘보호후견인’ 등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를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¹¹¹⁾ 무엇보다 선도대상인 ‘비행·일탈·부적응 청소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위비행을 포함한 일탈·부적응을 사유로 선도라는 개입을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net-widening)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①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에 따른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 ②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부가처분에 의한 특별교육 대상 청소년
- ③ 「소년법」 제4조에 따른 통고 대상 청소년,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종결되어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수강명령 대상 청소년
- ④ 「소년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
- 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대상 청소년 및 보호자
-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가운데 사법경찰관, 상담시설의 장이 요청한 청소년
- ⑦ 「소년업무규칙」 제31조에 따른 선도프로그램의 대상 청소년

(3) 1-1-3. 법률 및 하위법령에 교육적 선도내용 및 절차 규정

이와 함께 현행 법률 상 교육적 선도 시행주체에 ‘국가’가 제외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국비 투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원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신청자들이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교육적 선도제도의 시행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3조의 상담 및 교육,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포함하고 해당

111) 통고의무자로부터 통보된 선도대상의 경우 사후에 본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활동·체험 등을 수단으로 한다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교육적 선도 실시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도록 한다(표 V-2).

시행령에서는 선도내용에 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교육 및 진로, 여가·문화·취미, 봉사, 가족지원을 명시하여 지원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제11조). 시행규칙에서는 선도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와 지원내용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가 의뢰한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고(제13조 제1항) 기본적 상담·조사, 전문적 상담·조사 조문을 삭제, 해당 청소년에 현물·현금·서비스 형태로 직접 지원하거나 또는 선도 실시 기관 및 선도후견인이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내용과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제13조 제2항).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에 선도결정 결과 뿐 아니라 선도결과 통보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제14조). 이상에서 언급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개정방향과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V-3이다.

표 V-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제19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에 적응 및 복귀를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장, 상담·복지시설장의 신청과 경찰서장, 보호관찰소장의 통고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개정안
<p>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1.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p> <p>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p> <p>② 선도는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학교·사회생활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p> <p>③ 선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도의 결과를 검토하여 선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p> <p>④ 선도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1.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에 따른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p> <p>2.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부가처분에 의한 특별교육 대상 청소년, 제4조 통고 대상 청소년, 제32조 보호처분이 종결된 청소년, 제32조 수강명령 대상 청소년, 제49조 제2항에 따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p> <p>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대상 청소년 및 보호자</p> <p>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가운데 사법경찰관, 상담시설의 장이 요청한 청소년</p> <p>5. 「소년업무규칙」 제31조에 따른 선도프로그램의 대상 청소년</p> <p>② 보호지원은 제13조 상담 및 교육,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포함하며 해당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활동·체험 등의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p> <p>④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표 V-3 교육적 선도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적 선도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 ①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청자 : 청소년, 보호자, 학교장, 경찰서장, 보호관찰소장, 상담복지시설장(청소년 이외 신청 시 청소년의 동의 필수) 대상자 : 「청소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선정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도신청 : 지자체장에 제출(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 ①항 : 선도대상자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장은 신청을 받은 후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내용 신속 결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법, 「소년법」, 「학교 폭력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소년업무규칙 상 선도대상 및 피해아동·청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 ②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방법 : 제13조 상담 및 교육, 제14조 특별지원 포함 상담·교육·활동·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대통령령 위임 • 제19조 ③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기간 : 6개월 이내 (청소년 동의 받아 6개월 범위 한번 연장 가능) • 제19조 ④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여성가족부령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 : 선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 실시 전 선도 대상 청소년과 상담 - 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교육 및 진로, 여가·문화·취미, 봉사, 가족지원 내용 실시 - 선도후견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들어 선도의 내용·방법 및 기간을 정함. -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교육적 선도 대상자의 선정 및 선도 실시 등에 관한 사무 	<p>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가 의뢰한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지원 가능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선도 실시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 • 제13조 ②항 : 기본적 조사 상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제13조 ③항 : 전문적 조사 상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제13조 ②항(신설) :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청소년에 현물, 현금, 서비스 형태로 직접 지원 - 또는 선도 실시 기관 및 선도후견인이 지원 가능 • 제14조 : 선도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의 선도결정 서면 통보 - 학교장 통보는 청소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 상담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선도결과 통보
<p>시설의 설치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자체는 선도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선도 후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조 ①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단체는 청소년 개인 별로 전담 지도하는 선도 후견인 지정 가능 제21조 ②항 : 선도후견인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시설·단체·기관 종사자, 청소년지도위원, 학교전담경찰관 중에서 지정 제21조 ③항 : 선도후견인의 임무지정기준 등은 여성가족부령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 ①항 : 선도후견인의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선도대상 청소년의 선도 내용 변경, 선도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 제출 - 그 밖에 선도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제15조 ②항 : 지자체장은 선도후견인에 대하여 교육 실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1-2. 「소년업무규칙」 개정: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근거 마련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소년업무규칙」을 근거로 하는데, 동 규칙에서 '(경찰은)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재비행 방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단계의 교육조건부 훈방은 제도의 취지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에 경찰에서 해당 청소년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지역사회 내 선도프로그램에 의뢰(referral)할 경우 입건하지 않도록 하여 조건부 훈방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표 V-4). 이러한 조치는 소년사법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청소년을 가급적 빨리 제도적으로 전환조치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경찰단계의 훈방을 입법화하여 제도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의 책무를 경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에게도 공히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V-4 「소년업무규칙」 제31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1조(선도프로그램의 운영)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비행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비행소년의 재비행 방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1조(선도프로그램의 운영) ① 작동 ② 작동 ③ <u>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비행소년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으로 통보한 경우 입건을 아니 할 수 있다.</u>

3) 1-3. 「청소년 보호법」 개정: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및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근거 마련

(1)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마련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3항에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자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를 받은 친권자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물론 친권자가 사안을 인지하게 되면 적절한 지도감독을 통해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친권자가 부양의무자로서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각지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책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 상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에 대한 통보는 보호자로 하여금 자녀를 지도감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① 해당 보호자가 부모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② 해당 보호자가 교육적 선도를 신청하

도록 하거나, ③ 해당 보호자에게 교육적 선도제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보호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강제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보호자의 책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①과 ③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특히 통보 시 해당 친권자에게는 교육적 선도제도에 대한 리플릿과 부모교육 신청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안내자료가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보호자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부과주체가 되어 사안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과태료가 책정되도록 한다. 비슷한 예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 6월에 완료된 바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조치는 「청소년 보호법」상 선도·보호 조치 대상 청소년에 대한 통보 시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는 강제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보호자(친권자)가 부모교육을 통해 교육적 선도를 포함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보호자(친권자)가 선도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법 제14조를 근거로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반드시 심사하여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물품, 서비스, 금전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하도록 한다(표 V-5, 표 V-6).

표 V-5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64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및 선도 신청) ① 좌동 ② 좌동 ③ 선도·보호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은 친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현행	개정안
<p>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19조에 따른 교육적 선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도대상 청소년에게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고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서비스, 금전을 제공할 수 있다.</p>
<p>제64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7호·제7호의2·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3. 24.></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p> <p>2.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64(과태료)</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제50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고 친권자가 부모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p>

표 V-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2와 같다.</p>	<p>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6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2와 같다.</p>

(2) 범죄피해 청소년 보호 근거 마련 :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신규 법률 제정

청소년 비행 사안의 대다수가 피·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또래 가해자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보호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년범죄의 재발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현행 법률과 보호체계 내에서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이에 19세 미만 범죄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내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할 경우 19세 미만 성 착취 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청소년 보호법」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성 착취 피해 청소년을 포함한 범죄피해 청소년 전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세 미만 범죄피해 청소년 등의 보호를 위한 신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항목과 주요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표 V-7),

표 V-7 소년범죄 및 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항목	주요 내용
소년범죄피해 상담기관의 설치·운영	- 소년범죄의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기능)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 피해자의 상담, 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 보호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급여 제공(생계비, 의료비, 교육·훈련비 등)

항목	주요 내용
소년범죄 조사 심리 피해자 보호	- 소년범죄 조사와 심리 시 아동·청소년의 비밀보장 등 인권 보호 조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준용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학업지원	-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에 준하여 주소지 이외 지역의 학교에 대한 취학을 원할 경우 지원 - 학교 차원의 이중처벌 등 불이익 금지를 통한 학업중단예방

4) 1-4. 「소년법」 개정

: 특별교육(보호관찰 부가처분) 및 사회봉사명령 연계 운영

교육적 선도제도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보호지원이라는 점에서 현행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한 형태로 포함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의 일환으로 연계 운영하거나, 사회봉사명령 처분 시 교육적 선도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V-8). 특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CYS-Net 필수연계기관에 보호관찰소 등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내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연령을 하향 14세 이상에서 12세 이하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봉사활동을 포함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비행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봉사활동이 선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적 선도제도와 연계한 내실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V-8 「소년법」 제32조의2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p> <p>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p> <p>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 ③ 좌동</p> <p>④ 제32조제2항제3호에 의한 특별교육에는 교육적 선도를 포함하며, 선도 기간과 내용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를 준용한다.</p>

5)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및 특별교육조치와의 연계 근거 마련

「학교폭력법」 상 특별교육이수는 학교폭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사 법률 및 제도와 중복될 경우 「학교폭력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동 법률상 특별교육은 교육적 조치로서 직영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교육적 선도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학교폭력 대응 조치를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자치단체장 역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업무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이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PO의 주요 업무 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동법 제17조의 개정 문제는 최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조치 이전 단계에서의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등 교육적 방법의 적용과 학교의 해결 권한을 인정하는 조치와 연장선상에서 함께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교육적 선도제도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화해와 조정을 목적으로 학교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에도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V-9).

표 V-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p>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p> <p>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p> <p>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p> <p>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p>	<p>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동 1.~4. 좌동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교육적 선도 또는 심리치료(신설) 6.~9. 좌동 ② ~ ⑧ 좌동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교육적 선도를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⑩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적 선도를 말한다. ⑪ ~ ⑫ 좌동

현행	개정안
<p>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p> <p>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p> <p>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p> <p>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p> <p>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p> <p>(후략)</p>	

6) 1-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한 피해아동·청소년의 치유·회복지원 강화¹¹²⁾

(1) 1-6-1. 국제인권규범을 적용한 법 개정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 사안을 다룸에 있어 국제협약을 포함한 세계적 동향은 처벌, 통제, 제한과 같은 수단은 어디까지나 성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폐해로 인한 피해자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과 접근을 견지할 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하여 임명한 아동의 매매와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은 당사국에게 “모든 형태의 아동 매매와

112)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십대여성인권센터,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입법조사처,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두루, 한국YMCA연합회, 액팍코리아 탁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2018.08.28.)” 자료집을 참고할 수 있다.

성착취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불법화하는 법을 제·개정함으로써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내법이 성학대 및 성착취 아동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동은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Champion, 2018, p.16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도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2017. 06. 15 동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성매매 사안에 있어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혹은 상호 합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상대방에서 절대 동의한 것이 아니며 아동·청소년은 언제나 피해자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관련법에서 아동성매매를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요보호아동·청소년(children in need)에 준하여 보호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대상아동·청소년 관련 규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개정하여 국제인권규범을 적용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2) 1-6-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현행 법률 상 ‘대상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과 달리 국선변호사 선임이 배제되고 해바라기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도움과 지원 요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정책추진 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구분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안전망의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들이 성착취 피해상황에 이르게 된 경로에 개입하지 못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에 소모적인 논란을 이어가기보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용하여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성착취 위협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피학대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않듯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역시 처분이 아닌 치유와 회복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대체하는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률 개정을 통해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청소년의 재통합 프로그램 및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와 특별지원이 활용되도록 한다. 이때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 본인, 보호자, 학교의 장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학교의 장이 성착취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에서와 같이 친권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낙인과 이중처벌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찰’ 또는 ‘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기관의 장’이 신청권자가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적 선도대상 피해아동·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치유지원과 생계·학업·자립지원을 통해 탈위기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본인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규정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우선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소년부 송치),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를 대체하는 교육 및 치유 상담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교육적 선도제도 내에서 개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이 가능하도록

성착취 피해청소년에 특화된 기관, 인력을 확충하고, 자치법규에서 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표 V-10).

표 V-10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제3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은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법경찰관, 제46조 상담시설의 장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교육적 선도를 요청한 경우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소년부 송치)	삭제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 처분)	삭제

(3) 1-6-3. 란사로테협약(Lanzarote Convention) 가입·비준 및 보호대상 범위 확대

각종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국제기준인 란사로테협약(Lanzarote Convention)에 가입, 비준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의 재통합 지원을 위한 법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전에 대한민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선택의정서,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을 관련법과 제도에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각종 성폭력 문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305조에 13세로 명시된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 즉,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을 영국과 같이 16세로 상향조정하거나, 「아동복지법」 상 아동

연령인 18세 미만으로 맞출 경우 보호대상 범위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Champion, 2018, pp.72-73).¹¹³⁾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보호제도 관련 해외 사례]

[영국]

- 성교 등의 연령(age of consent)을 16세로 성매매(prostitution)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로 '상호 합의에 의한 것, 아동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판단 하에 2015년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 2015)」, 「거리범죄법(Street Offences Act, 1959)」에서 아동 성매매(child prostitution)라는 용어가 삭제되었고, 거리에서 상업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처벌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 → 대상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아동·청소년
- 성착취 방법인 그루밍(grooming)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성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에게 한 번이라도 접근할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형사 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개정
- 아동 성착취, 그루밍, 아동학대를 관련 범죄, 성범죄자 기소를 위한 국가 간 협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란사로테 협약*에 2018년 6월 비준
- ※ 란사로테 협약(Lanzarote Convention) : 유럽연합(EU)의 성착취, 성학대 등 모든 종류의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조약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동 대상 각종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 처벌,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등을 골자로 하며, 국제법 최초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하는 '그루밍'을 가장 위험한 방식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함. 2007년 채택, 2010년 7월 시행된 국제기준

[미국]

- 연방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2000)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의 성매매는 자발적인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정의하여 처벌이 아닌 피해를 지원하도록 함. 이를 근거로 2008년 뉴욕주를 시작으로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 사안에 있어 면책법(Safe Harbor Law)을 적용, 미성년자를 범죄자로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지원함.

* 출처 : Champion S., 2018, Lanzarote Convention. pp.61-106.
<https://www.coe.int/en/web/children/lanzarote-convention> 인출일: 2018.10.17.;
<https://sharedhope.org/about-us/our-mission-and-values/> 인출일: 2018.10.17.

113)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012275, 제안일자 2018.03.02.),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 추행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동법 개정법률안(백해련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012364, 2018.03.07.)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제364회 정기회, pp.1-7), 원안가결 공포되었다(의결일자 2018.2.20.).

표 V-11 청소년보호 추진체계 정비 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신 규 개 선	추진시기		주무 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2-1.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		신규	○		경찰청 여성가족부
2-2. 소년사법절차 단계별 제도 연계: 비행 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		개선	○		경찰청 지자체
2-3. 민·관 협력 및 기관 연계 강화: 정보공유체계 개선	○		개선	○		범부처 지자체

1) 2-1.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 :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1) 2-1-1. 지자체-경찰단계의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제도 근거 마련

현재 경찰단계에서 경미한 소년사건에 대하여 훈방, 즉결심판, 선도·지원을 결정하여 사안을 종결하는 절차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사 종결 권한이 검사에게 있고 경찰의 (조건부)훈방을 공식적인 다이버전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판례에서 경찰의 훈방권한을 인정해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학교와 경찰의 공동대응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위기 학생·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선도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법 시행령에 SPO의 업무를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우범소년을 포함하여 경미한 소년사건을 다룸에 있어 구금과 입건을 최소화하고 해당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국제준칙에도 부합하는 처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기준 경찰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 참여대상은 연간 9천 명을 넘어서었다(표 V-12, 표 V-13). 향후 경찰의 자체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전문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선도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V-12 경찰의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참여인원	사랑의 교실		표준선도 프로그램		자체선도 프로그램	
		운영단체	참여인원	운영병원	참여인원	운영관서	참여인원
2014	29,654	96	5,661	42	627	237	23,366
2015	21,789	118	5,985	45	463	228	15,341
2016	20,105	126	5,861	52	254	235	13,990
2017	20,092	149	9,559	60	179	195	10,354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416; 2017년 통계는 경찰청 내부자료 활용.

표 V-13 사랑의 교실 운영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참여인원	5,883	7,630	6,837	17,877	9,859	8,531	6,659	5,661	5,985	5,861	9,559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417; 2017년 통계는 경찰청 내부자료 활용.

한편, 본 연구의 조사표본에서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은 경찰의 자체선도, 준사

법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행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범률을 추적한 결과가 아니며 참여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응답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긍정적 평가는 프로그램의 질과 효과를 담보하는 기본 요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경찰의 자체선도와 비교할 때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비행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민간의 전문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효과적일 수 있음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에 기존의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등을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경찰단계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주로 선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1천 여 명이 선정·관리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4,763명, 선도 교육대상은 1.3만 여 명(연계율 40.5%)이며(관계부처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2018.8.31.),¹¹⁴⁾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약 10.2개에 달한다(여성가족부, 2018, p.415). 즉, 관계기반의 맞춤형 선도·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경찰이 선도과정에서 상담, 복지 등 직접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내 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지자체가 경찰의 선도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각급 경찰서는 CYS-Net 필수연계기관 이기도 하다. 이에 법적 근거가 부재한 현행 경찰단계의 조건부 훈방을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제도화할 경우 제도운용은 경찰이 담당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개발·발굴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무는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된다.

114)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17.12.22)' 및 '보완대책(2018.8.31.)'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위기학생·청소년 지원 및 선도 강화, 범죄가 우려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한 재범방지 내용이 포함되었다.

(2) 2-1-2.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제도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교육적 선도제도의 관리 및 운영체계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1안은 현행 지자체 청소년복지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찰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1안은 시·군·구 단위까지 설치가 완료된 CYS-Net,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허브로 활용하여 선도대상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므로 기존의 전달체계 내에서 훈련된 전문 인력과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에서 미흡했던 비행청소년 보호지원업무를 체계화·내실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시·도 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선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 대안학교, 민간단체 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1안의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광역단위 기관(시·도 센터)이라 할 수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 선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군·구 센터와 민간기관이 차별화된 선도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선도후견인 등 전문가 풀 확보, 인력양성, 프로그램 질 관리,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협력 등의 총괄 업무가 포함된다. 1안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V-8]이다.

2안은 준사법기관인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를 광역단위 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2안은 꿈키움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청소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자치구 단위까지 설치를 확대할 경우 예산 부담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다만 비행청소년 선도라는 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인 꿈키움센터를 기반으로 전국단위의 보편적 사업으로 선도프로그램을 확장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선도프로그램과 노하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 역시 최대 장점이라 하겠다. 반면, 청소

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자원연계 등 추수지도는 기존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센터 본연의 사업내용과 기능의 대폭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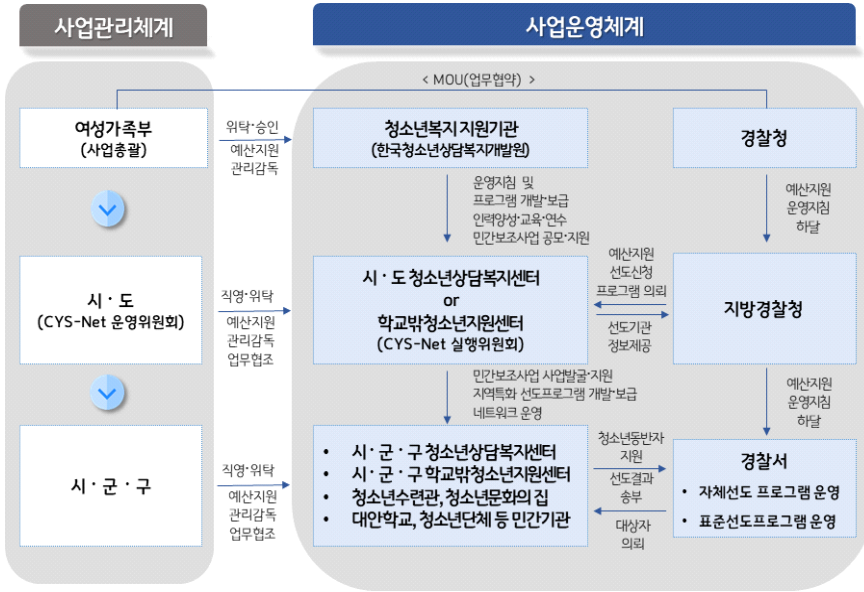


그림 V-8 교육적 선도제도 관리 및 운영체계(1안)

2) 2-2. 소년사법절차 단계별 제도 연계: 비행청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1) 2-2-1. 경찰단계 전문가참여제 확대 및 청소년지도자의 선도심사위원회 참여 강화

경찰, 검찰, 법원단계에서 포착되는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절차의 각 단계와 교육적 선도제도와와의 연계

를 강화하도록 한다. 먼저 경찰단계에서 가·피해자에 대한 조사 이후 선도심사위원회 단계에서 의사, 변호사, 교사 뿐 아니라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조력과 사안에 대한 세밀한 사정(assess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경찰에서 ‘전문가참여제(범죄심리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참여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하였다(그림 V-9). 유경험자 가운데 본 제도가 필요하다(매우 포함)는 긍정응답은 10명 중 6명(60.4%), 도움이 되었다(매우 포함)는 긍정응답도 비슷한 수준(63.8%)으로 나타나 본 제도가 필요하고, 또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요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률의 각각 5% 수준이었다(그림 V-10).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도움을 받은 부분은 ① 성찰을 통한 개선의 기회가 되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27%), 그 다음은 ② 수사에 대한 불안감 감소로 심리적 안정에 도움(17.6%), ③ 고민 해결을 위한 조언(16.7%), ④ 처벌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10.8%), ⑤ 기타 다른 도움(5%) 순이었다(그림 V-11). 이상의 결과는 전문가참여제를 확대하고 비상근인 범죄심리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최소 면담시간 보장 등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선도심사위원회 단계에 지역 내 청소년지도자가 참여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다양한 조력을 제공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115)

115) 본 연구의 일환으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과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① 전문가참여제에 참여하는 범죄심리사 상당수가 수련과정에 있어 개인 간 전문성과 할애 할 수 있는 시간 편차가 크다는 문제, ② 청소년 1인 당 조사시간이 평균 40~60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해당 청소년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입방향을 설정하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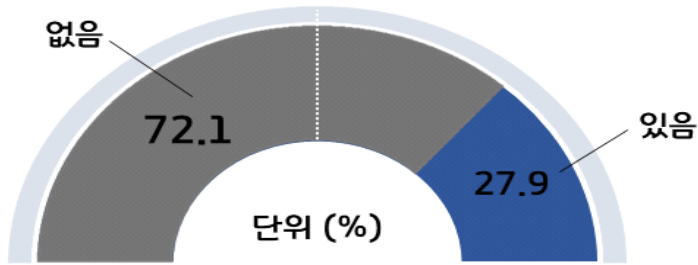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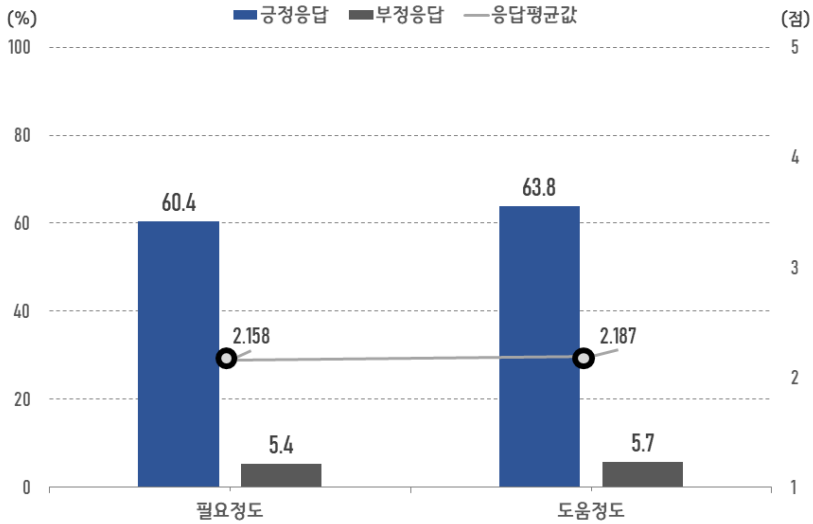


그림 V-9 전문가 참여제도 참여경험 여부



- * 주: 1) 전문가 참여제도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전문가 참여제도의 필요정도의 응답 가운데 '보통이다' 응답률은 34.2%임.
 3) 전문가 참여제도의 도움정도의 응답 가운데 '보통이다' 응답률은 30.5%임.
 4) 응답평균값은 5점 척도 기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임.

그림 V-10 전문가 참여제도의 필요정도 및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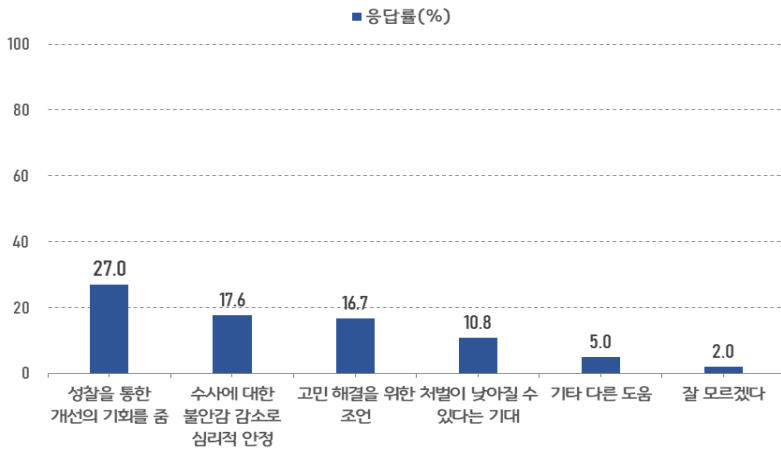


그림 V-11 전문가 참여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은 부분

(2) 2-2-2. 경찰, 검찰, 법원단계의 처분·조치와 교육적 선도 연계

소년사법체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CYS-Net을 대폭 정비하거나 소년비행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내 실무협의체를 가동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비효율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부처별 역할 등에 대한 조율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경찰단계의 조치와 교육적 선도제도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을 제도화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상담 및 특별지원제도와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지원이 결정된 경우, 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교육적 선도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안전망 내에서 추수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경찰단계에서 입건이 결정된 후 ‘송치 전 선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 송치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 기소 결정 시 반드시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지도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단계의 조치와 교육적 선도제도의 연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다. 즉, 현행 제도 운용 시 '교육적 선도'를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범죄예방위원회에 의한 선도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며 '보호관찰소'에 의한 선도를 교육적 선도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보호처분에 의한 보호관찰(제4호, 제5호)과 구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낙인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선도 책무를 자치단체장, 지역사회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일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운영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단계의 처분·조치의 경우 '통고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안은 통고 대상 청소년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다양화하는 일환으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 지원법」 상 교육적 선도제도와 특별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이 종결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적 보호지원'을 제도화하고, 「소년법」 상 화해권고제도 및 보호처분의 부가처분인 특별교육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해권고제도와 관련하여 교육적 선도 운영기관이 화해권고기관으로 참여하여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도록 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성사된 화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등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¹¹⁶⁾ 이상에서 언급한 소년사법절차와 교육적 선도제도의 연계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간략하게 도식화 한 것이 [그림 V-12], [그림 V-13]이다.

116)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는 2007년 「소년법」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신동주판사(의정부지방법원)의 법원행정처 보호사법 연구반 자료집(2018.04)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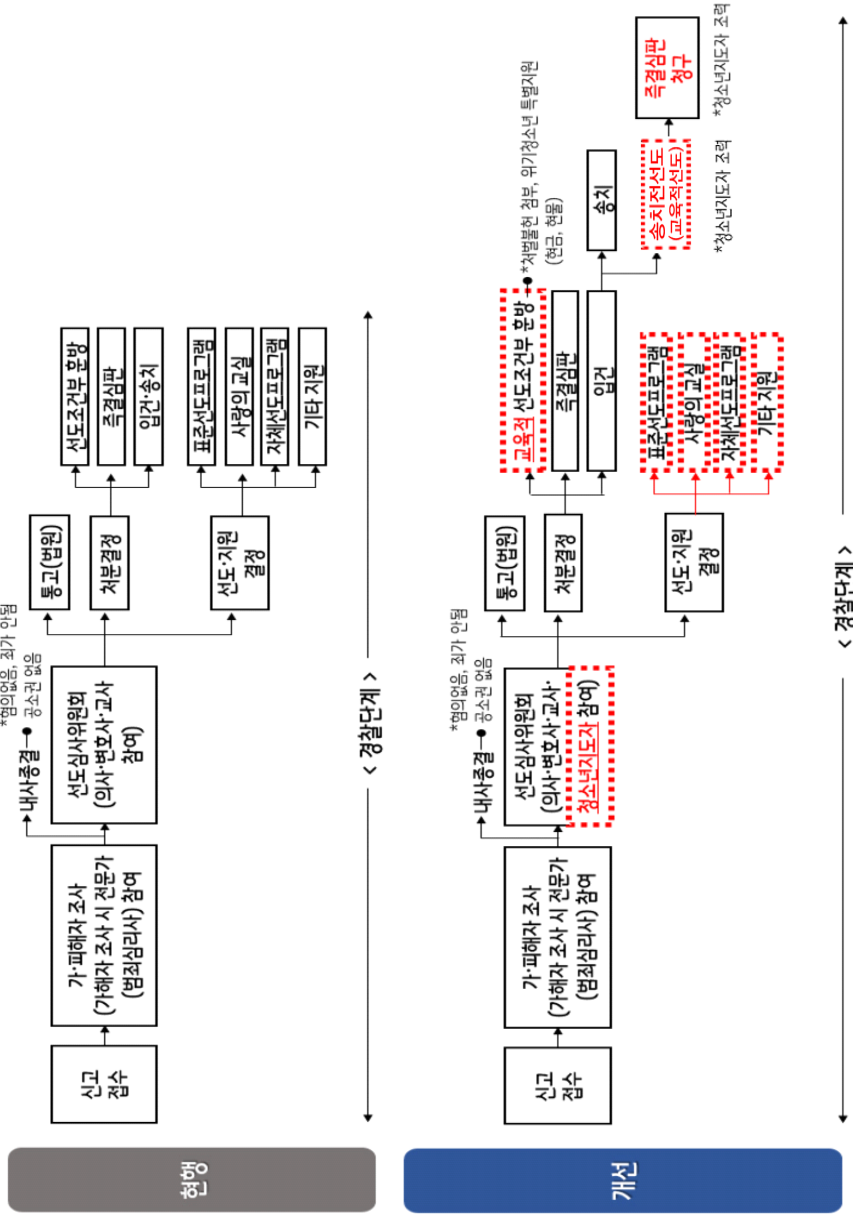


그림 V-12 소년사법절차와 교육적 선도 연계방안(경찰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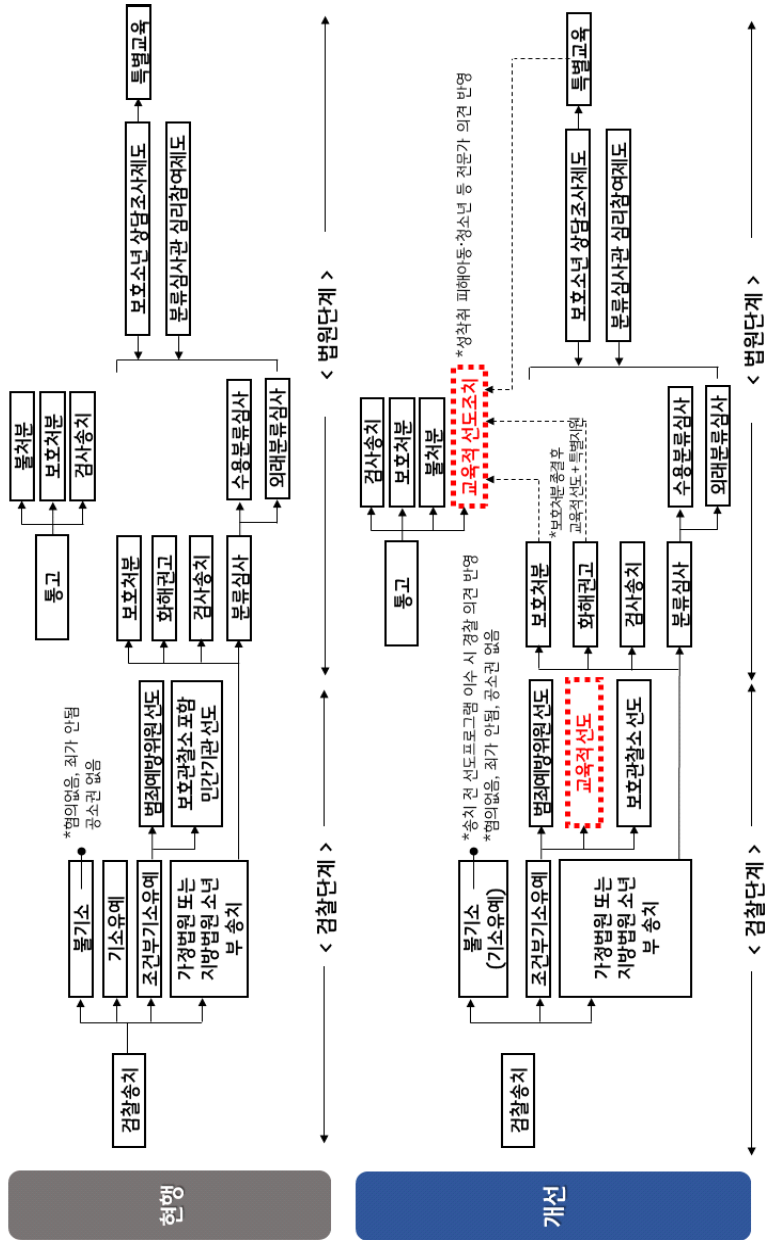


그림 V-13 소년사법절차와 교육적 선도 연계방안(검찰, 법원단계)

3) 2-3. 민·관 협력 및 기관 연계 강화: 정보공유체계 개선

그간 정부기관 간 또는 민·관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청소년 비행에 있어 조기 개입하거나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해도 보호관찰관과 선도위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개입 적기를 놓치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재범을 할 경우 경찰 입건 등의 정보가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 V-14]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경찰이 학교와 가해자 정보를 공유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 중에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8.09.11.).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18.09.1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5251&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 (인출일 : 2018.10.2.).

* 주 : SPO(School Police Officer), 전담기구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부서)를 의미함.

그림 V-14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공유 체계도

이러한 최근의 제도개선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inter-agency), 학제(inter-disciplinary), 부처(inter-government) 간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협업을 기반으로 보호체계(safeguarding system)를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편의보다 ‘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의 윤리의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각종 선도제도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정보공유범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특별히 의도된 경우가 아님에도 유사한 내용의 선도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찰되는데, 이는 비행행동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둔감하게 하고 프로그램이 의도한 효과를 도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선도과정에서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선도후견인이 선도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적인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역사회 내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agency) 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방식보다 일차적으로 허브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된다. 즉,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중심점이 되어 정보공유지침(protocol)에 따라 대상자를 의뢰하고 선도결과와 이력을 축적하여 해당 청소년이 중복된 프로그램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허브기관은 선도후견인 풀 구축, 교육적 선도 관련 ‘사회서비스 바우처’ 운영, 시·도 교육청과 연계한 학력 인정 등의 사업도 관리하도록 한다(그림 V-15).¹¹⁷⁾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내에서 이들 선도대상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도대상 청소년의 DB와 CYS-Net 통합정보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연계되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위기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및 유통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법」에서 ‘재판,

117) 사회서비스 바우처 및 학력 인정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과제 3-2에 기술하였다.

수사, 군사상 필요 외의 조회응답을 금지'하고 있는데 '소년범죄 예방과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발굴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조회응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동법 제70조).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를 근거로 지자체(아동·청소년과)가 학교, 경찰서, 보호관찰소, 아동·청소년시설 등의 위기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통합관리, 활용하는 세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활용과 유통에 관여하는 관·민의 윤리강령, 교육,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에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 및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청소년의 발굴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의무교육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16세 미만의 자로 할 것인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18세 미만의 자로 할 것인지,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림 V-15 교육적 선도 관련 정보공유 체계(안)

표 V-14 선도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3-1. 대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		개선	○		범부처 지자체
3-2.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		신규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3-3. 친권자(보호자) 책무 이행 강화	○		신규	○		여성가족부 지자체

1) 3-1. 대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1) 3-1-1. 위기수준별 선도프로그램 운영

본 연구에서 네 가지 유형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따라 참여 청소년의 비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표본에서 재산비행, 폭력비행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재산비행의 경우 준사법기관(비행예방센터)에서 담당하는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重)하였고, 그 다음은 경찰, 민간기관, 청소년기관 순이었다. 폭력비행은 민간기관, 준사법기관, 경찰, 청소년기관 순이었다. 네 개 유형의 비행범주를 모두 고려했을 경우는 준사법기관, 민간기관, 경찰, 청소년기관 순이었다. 즉, 본 연구의 조사 표본에서는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가장 고위기청소년(youth at

high risk)이며, 민간기관과 경찰단계(자체선도)에 있는 청소년은 중위기청소년(youth at middle risk),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저위기청소년(youth at low risk)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등 현행 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위기수준별 예방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기관 간 협조 및 선도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청소년 비행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부처별 사업 추진을 통한 비효율과 사각지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존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반면 네 가지 기관별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참여 청소년의 인식을 검증한 결과 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 증진, 교육 및 진로, 가족프로그램, 여가·문화·취미, 사회봉사 등 7개 영역 모두에서 청소년기관과 민간기관이 경찰 및 비행예방센터보다 비행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적인 재범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비행정도가 경(輕)할수록 선도프로그램의 효과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비행예방센터는 비행행동 교정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학교 및 지역사회, 경찰, 보호관찰소, 검찰, 법원 등 다양한 단계에서 의뢰되는 청소년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선도효과는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내용과 수단의 적절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소년사건은 150여 개 소년재판소의 소년전담판사가 담당하며, 청소년의 연령과 위기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적 조치, 교육적 징계와 같은 선도조치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초범과 경범죄 등 경미한 소년사건은 기소하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교육적 조치가 취해지나, 미성년자라도

누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과 유사한 지역사회봉사활동의 경우 청소년의 교육·진로·취업 등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 10세 생일부터 교육적 징계에 해당하는 선도 조치를 받은 경우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 다만 교육적 징계 처분 이후 3년 동안 재범이 없을 경우 기록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선도프로그램의 적용과 사후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의 비행청소년 다이버전 및 선도 조치]

- 프랑스 전역에 약 150여 개 소년재판소가 있고, 소년전담판사(le juge des enfants)가 배치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초범 및 경범죄는 기소되지 않고 부모 참석하게 훈계, 교육적 조치 등으로 대체됨.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재범(누범)인 경우 95% 이상 형사처벌됨.
- 미성년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기소를 대체하는 다양한 교육적(선도적) 조치와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손해배상, (법률적)경고와 같은 처분뿐 아니라 사회·직업교육, 조정과 중재, 형사화해, 법률적·규범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상황을 합법화하는 조치 등을 포함함.
- 10세 미만은 교육적 조치(mesures éducatives), 10~13세 미만은 교육적 조치와 교육적 징계(sanctions éducatives)만 가능하며,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적 조치, 교육적 징계 이외 일반형이 선고될 수 있음.
- 교육적 조치(mesures éducatives)는 소년전담판사의 경고, 훈계, 부모 또는 후견인 위탁, 기소유예(미성년 사법보호기관 전문가의 지속적 접촉 전제), 보호관찰, 손해배상, 기물수리, 학업·취업진로활동, 교육적 조치 유예 또는 면제를 포함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교육적 징계(sanctions éducatives)는 출입금지(최대 1년 간 비행이 이루어진 장소의 출입통제), 피해자 접촉금지, 공범 접촉금지, 손해배상, 기물수리, 시민교육 실습(약 30시간 내외의 사회적 가치 함양, 민·형사상 법적 책임 이해 교육), 훈계 및 경고, 시설 및 가정위탁, 학업 유지 등을 포함함. 단, 벌금형, 구금형, 지역사회봉사활동은 전과기록이 남는데, 처분 이후 3년 동안 재범이 없는 등의 조건 충족 시 전과기록이 삭제됨.
- 일반형(peine)에는 손해배상, (보호관찰조건)집행유예, 보호관찰, 벌금(7,500유로 이내), 지역사회봉사활동(16~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반드시 교육·진로·사회 진입에 도움이 되는 활동), 시민교육 실습, 구금(13세 이상), 사회적·사법적 지속 관찰 등이 포함됨. 처분 이후 3년 동안 재범이 없을 경우 전과기록에 대한 삭제요청이 가능함.

*출처 : <http://www.justice.gouv.fr/justice-des-moneurs-10042/> (인출일 : 2018.10.25.)

*주 : 이 부분은 H.R.Kim-Lescarret이 집필한 원고를 요약한 것임.

(2) 3-1-2. 교육적 선도제도 7단계 운영(안) 개발·적용

한편, 교육적 선도제도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선도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할 때 [그림 V-16]과 같이 크게 7단계로 구분하여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사회 단계로 청소년 당사자와 보호자, 학교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로 청소년활동 및 체험프로그램, 가족지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① 단계). 두 번째는 경찰단계로 여기에는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②-1단계), 검찰 송치 전 선도프로그램(②-2단계) 등 두 가지 모듈(module)이 개발·적용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검찰단계로 기존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 시 교육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일부 대체하는 방안이다(③-1단계).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법원단계로 통보에 따른 불처분 조건부 교육적 선도(④-1), 보호소년 상담조사 시 특별교육 일환으로 교육적 선도 제도 활용(④-2), 보호처분 종결 이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한 회복적 보호 지원으로서의 교육적 선도(④-3)로 구분하여 개발·적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단계별 적용은 기본적으로 대상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도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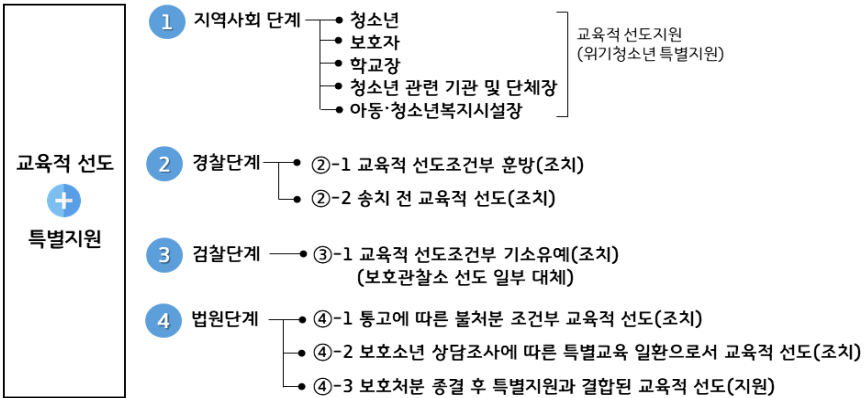


그림 V-16 교육적 선도제도 7단계 운영(안)

2) 3-2.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 :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1) 3-2-1. 정책대상 규모를 고려한 사업 예산 확보

본 연구를 통해 교육적 선도대상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역사회와 경찰단계에서 예방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약 140만 명, 기존의 사법절차와 연계하여 선도시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약 7.1만 명, 처분과 조치가 종결되어 적응과 회복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약 3.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V-17).¹¹⁸⁾

118) 정책대상의 규모 추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의 제3절을 참고할 수 있다.

<교육적 선도>				
목적	예방적 보호지원	대안처분 또는 처분 효과 제고	회복적 보호지원	
단계	학교 · 지역사회	경찰	검찰 · 법원	학교 · 지역사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 환각성 물질 이용 · 유흥/단란주점 업소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조건부) 훈방 · 즉결심판 · 선도지원결정 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기소 처분자 · 보호 · 위탁소년 · 학교폭력사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 위탁 종료 · 학교폭력 가해학생
규모추정 (중복가능)	약 140만명	약 6천명	약 7.1만명	약 3.7만명

*주: 저자 작성

그림 V-17 교육적 선도대상 및 규모 추정(안)

반면, 2018년 현재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 총액은 약 14억 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전문가참여제 운영 예산은 약 5억 7천 만원 수준이다. 이 외 국비 및 지방비는 미확보 상태이다. 이마저도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운영비는 인건비(전문가)와 간식비 이외의 분야에는 집행하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며, CYS-Net 등 지자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예산지원은 없거나 지역 간 운영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교육적 선도제도를 운영할 경우 정책 대상의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예방적 보호지원’의 일환으로 경찰단계(연간 최소 6천명)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가정할 경우 연간 약 12억 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위탁종료 등 ‘회복적 보호지원’ 청소년(연간 약 3.7만명)을 포함하면 연간 약 86억원(지방비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기에는 선도후견인 대상 교육 등 기타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현행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운영비(경찰청)와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비(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여성가족부, 지자체)와의 연계·운영하는 방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선도사업 예산 추계]

[경찰] 2018년도 '전문가참여제' 예산 5.7억만원

※ 산출근거 50,000원/1회기(명) × 11,400회(명)

※ 현 가정법원 보호처분(2호 수감명령) 처분 상담 의뢰 기준(5만원/1회기)

[국비 및 지방비] 2018년도 교육적 선도 사업비 미확보

[소요예산 추계]

· (예방적 보호지원) 경찰단계 약 6천명 × 20만원* = 12억원

· (회복적 보호지원) 위탁종료 등 약 3.7만명 × 20만원 = 74억원

· 86억원 × 50%(국비) = 약 43억원

※ 20만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2019년도 기본수당을 적용한 것이며, 선도후견인 대상 교육 등 기타 사업비는 제외된 것임.

(2) 3-2-2.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 지원제도' 신설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 내 처우를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현행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의 내용과 종류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¹¹⁹⁾ 그 일환으로 먼저 '(가칭)청소년 바우처'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¹²⁰⁾, 평생교육바우처¹²¹⁾, 스포츠바우처 등 다종다양한 바우처제도가 지역에

119) 사회서비스는「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정부와 민간 등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 총체를 의미한다.

12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부유지원, 아이돌봄, 에너지바우처 등이 대표적이며 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바우처는 청소년산모 대상 의료비 지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http://www.socialservice.or.kr/> 인출일 : 2018.10.14.).

121) 2018년의 경우 만25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5천 명 내외를 선발하여 1인당 35만원(연간)을 지원하여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이다

서 운영되고 있으나 각종 범죄의 가·피해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바우처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에서 선도프로그램 이수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바우처 제도를 신규 트랙으로 개발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특수 다이버전 프로그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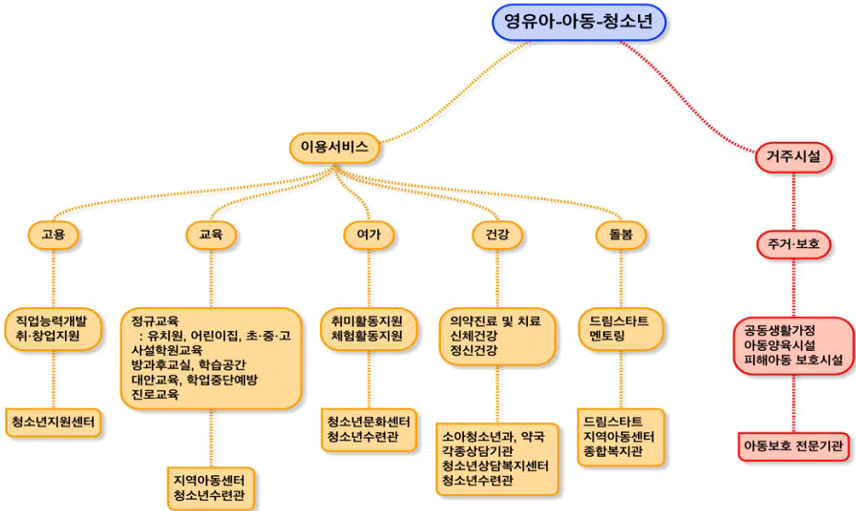
[그림 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고용·여가·교육·건강·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데, 노인에 비해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과소공급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길현중, 이영수, 2017, p.92).

[주요국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사례]

- [영국] 수용처분 비율이 낮으며, 이는 소년사법 단계별로 다양한 사회 내 처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임. 여기에는 경찰의 경고처분(youth caution), 경찰 또는 검사의 조건부 경고 처분(youth conditional cautions), 법원의 조건부 종료처분(conditional discharge), 소년재활명령(youth rehabilitation order) 등을 포함함. 소년재활명령은 교육명령(education requirement), 정신치료명령(mental health requirement) 등 14종이며 복수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미국] North Carolina 주의 경우 12개월까지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피해자-가해자 화해프로그램 참여, 특정인물 접촉·특정장소 출입 금지, 최고 500불까지의 손해배상,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 등을 포함하며, 보호관찰 기간은 최장 2년이며, 운전면허 취득금지, 정기적 학교출석, 부모의 합리적 지도 순응 등의 내용을 포함함.

*출처: 윤웅장, 2018, p.72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lllcard.kr/guide/bizVcUser.do> 인출일 : 2018.10.14.).



* 출처: 길현중, 이영수, 2017, p.40.

그림 V-18 영유아·아동·청소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체계

특히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내에서 경찰·검찰·법원단계에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이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이다. 다만 현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상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의 확충 문제는 지역 내 사회서비스 총량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장 서비스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보다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전문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효율과 효과 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즉, 사안에 따라 선도대상 청소년을 특정 기관에 배치하는 방식보다 상담·교육·여가·체육·문화·가족 등 관련 분야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고 당사자가 거주지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우처 방식은 현금에 비해 자율성이 낮지만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어 지원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 선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가칭)청소년바우처'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바우처 제도의 장점은 해당 청소년이 선도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낙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 바우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수요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공급자로 하여금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가칭)청소년바우처의 설계 개요(안)는 다음과 같다.

[교육적 선도 관련 '(가칭)청소년바우처' 제도 설계(안)]

- [사업목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에게 프로그램 참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
- [지원대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교육적 선도지원 대상
 -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범위] 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 증진, 교육 및 진로, 가족대상프로그램, 여가문화취미, 사회봉사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비용
 - ※ 부모 및 가족 참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1인당 월 10만원 이내 활동지원(상담지원은 월 20만원 이내)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와 연계 운영할 수 있고 특별지원 내용별 지원 금액을 상한으로 적용함.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선도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사용방법] 지자체에서 교육적 선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결제

(3) 3-2-3. 학력인정제도 연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체계 구축

선도프로그램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동기(motivation)’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력 인정’은 선도대상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동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고, 선도제도의 철학과 관점, 방법과 내용에도 부합한다. 이에 비행청소년의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교육적 선도제도와 학력인정제도 간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도대상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면밀한 사정(assessment)을 기반으로 맞춤형 선도계획이 수립되면 앞에서 언급한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경찰(전문가참여제 등), 지자체(청소년복지 지원체계), 민간기관(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시·도교육청(고교학력인정제도 운영) 간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학력인정제도와 연계할 경우 경찰·검찰·법원단계의 학교 밖 선도대상 청소년 뿐 아니라 소년원 출원생, 보호처분이 종료된 청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지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교학점은행제’와 연계할 경우 재학생의 참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인정을 위해 필수이수와 선택이수 영역을 구분하고, 선도대상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이수 영역에는 ‘교육 및 진로’와 인성에 해당하는 ‘행동교정’, ‘가족’을 포함하고, 선택이수 영역에는 ‘상담 및 치료’, ‘사회성 증진’, ‘여가·문화·취미’, ‘봉사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학력인정제도와 연계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서비스 체계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V-19]이다.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주체(교육감)와 부과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2018.06.04.)가 완료되었다.

이에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의 보호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청소년보호법」 제50조를 근거로 선도·보호 대상 청소년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정책과제 1-3 참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원)
법 제17조 제9항을 위반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법 제23조 제2항	300

*출처 : 입법·행정예고(2018.06.04.)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141&boardSeq=74449&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40401&opType=N>(인출일: 2018.10.22.)

이상에서 논의한 교육적 선도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 [그림 V-20]이다.

국정과제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예산 사업	법률제 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¹⁾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1. 법률 및 지침개정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1-1-1.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명칭 변경 검토 1-1-2. 경찰서장 등 신청권자 범위 확대 및 선도대상 범위 제한 1-1-3. 법률 및 하위법령에 교육적 선도내용 및 절차 규정		○	신규	○		여성가족부
	1-2. 「소년업무규칙」 개정 :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근거 마련		○	신규	○		경찰청
	1-3. 「청소년 보호법」 개정 :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마련		○	신규	○		여성가족부
	1-4. 「소년법」 개정 : 특별교육(보호관찰 부가처분) 및 사회봉사명령 연계 운영		○	신규		○	법무부
	1-5. 「학교폭력법」 개정 : 학교폭력 피해 분쟁조정 및 특별 교육조치와의 연계 근거 마련		○	신규		○	교육부
	1-6.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유·회복지원 강화 1-6-1. 국제인권규범을 적용한 법 개정: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1-6-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 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1-6-3. 란사르테협약 가입·비준 및 보호대상 범위 확대		○	신규		○	여성 가족부
2. 추진체계 및 제도정비	2-1.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 :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2-1-1. 지자체-경찰단계의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제도 근거 마련 2-1-2.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제도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	신규	○		경찰청 여성가족부
	2-2. 소년사법절차 단계별 제도 연계 : 비행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2-2-1. 경찰단계 전문가 참여제 확대 및 청소년지도자의 선도심사위원회 참여 강화 2-2-2. 경찰, 검찰, 법원단계의 처분·조치와 교육적 선도 연계		○	개선	○		경찰청 지자체
	2-3. 민·관 협력 및 기관 연계 강화 : 정보공유체계 개선		○	개선	○		범부처 지자체

그림 V-20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안)

(다음장 계속)

국정과제	예산 사업	법률제 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¹⁾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3. 선도 효과 제고	3-1. 대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3-1-1. 위기수준별 선도프로그램 운영 3-1-2. 교육적 선도제도 7단계 운영(안) 개발·적용	○		신규	○	범부처 지자체
	3-2.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 : 사회 내 치우 프로그램 다양화 3-2-1. 정책대상 규모를 고려한 사업 예산 확보 3-2-2.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 지원제도 신설 3-2-3. 학력인정제도 연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체계 구축	○		신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3-3. 친권자(보호자) 책무 이행 강화	○		개선	○	여성가족부 지자체

* 주: 1) 단기 정책과제는 기존 정책 내에서 1~2년 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중장기 정책과제는 조정·연계·신규 추진이 요구되어 5년 내 추진 필요 과제를 기준으로 함.

○———— 참고문헌

참고문헌

경찰청 (2013). 내부자료.

_____ (2017). **경찰백서**. 경찰청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899>에서 2018년 4월 11일 인출.

_____ (2018). 내부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17.7.11.).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Xl3q1vLZ8-cJ:https://moe.go.kr/boardCnts/fileDown.do%3Fm%3D0503%26s%3Dmoe%26fileSeq%3Dee7475fa784d4834e0cfbf1fb4d820a9+&cd=1&hl=ko&ct=clnk&gl=kr>에서 2018년 3월 12일 인출.

_____ (2017.12.22.).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마련**.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92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에서 2018년 3월 12일 인출.

_____ (2018.09.1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5251&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에서 2018년 10월 2일 인출.

교육부 (2018). 내부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치·중등교육통계**

- 편 (통계자료 SM 2017-06).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jsessionid=gzD16estgpwODp1vin3a4Qh96LmVvCwji4iyajKflzHrNxfa09lameqcy0MEnMTu?survSeq=2017&menuSeq=3894&publSeq=43&itemCode=02&menuId=0&language=>에서 2018년 5월 2일 인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595>에서 2018년 5월 2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18.8.31.).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교육부 홈페이지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517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에서 2018년 10월 2일 인출.
-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8). 내부자료.
- 길현중, 이영수 (2017).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대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7-16).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금정, 최윤경 (2018). 비행청소년의 개인 및 집단 분노조절 훈련의 비교: 자아존중감과 초기 부적응 도식의 조절 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1), 65-77.
- 김기현, 정현주, 윤주리 (2015). 기소유예 청소년을 위한 회복적 사법 실천전략으로서 예술: 음악의 회복적 기능. **청소년학 연구**, 22(5), 275-300.
- 김남규, 조윤오 (2017). 역기능적 가정이 청소년 재범에 미치는 영향: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심으로. **아동보호연구**, 2(2), 95-112.
- 김두상 (2017).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개선과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5(3), 1-19.
- 김문귀 (2015). 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사례와 의의: 강원지방경찰청의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 **법학연구**, 23(4), 23-48.
- 김봉수 (2016). **촉법소년의 처우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

- 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식 (2017). 소년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11(3), 67-114.
- 김정환 (2012). **실효적 청소년 선도보호조치 방안 마련 연구** (연구보고 2012-50). 서울: 여성가족부.
- 김준호, 이동원 (1995).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95-01).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정소연 (2017).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17-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량, 김경화 (201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2), 628-643.
- 나은정, 류정미 (2016). 도예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1(8), 85-94.
- 남민영, 이에경 (2016). 인물탐구학습기반 모델링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3(4), 91-119.
- 남상철, 박상석 (2011). 수행자의 재범요인 연구. **교정연구**, 제50호, 115-139.
- 대검찰청 (각년도). **범죄분석**.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에서 2018년 4월 11일 인출.
- _____ (2017). **2017 범죄분석**.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에서 2018년 4월 11일 인출.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8). 내부자료.
- 대전가정법원 (2018). 내부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7).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라민오 (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권옥, 박재원 (2016). 에니어그램 심리역동검사가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사랑의 교실' 참가자를 중심으로. **에니어그램심리역동연구**, 3(1), 185-208.
- 류창현 (2015). 비행청소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CBT)와 웃음치료(LT)의 장기적 효과. **교정담론**, 9(1), 167-200.
- 문화관광위원회 (2003). **청소년복지지원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성수.
- 박성훈, 전영실(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특성에 관한연구: 일반적인 비행 요인과 다문화 특성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1(3), 55-76.
- 법원행정처 (2014). **법원실무제요 소년**(보급판). 서울 : 법원행정처.
- _____ (2017). **2017 사법연감**. 서울 : 법원행정처.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3&gubun=719>에서 2018년 4월 11일 인출.
- 서울관악경찰서 (2018). 내부자료.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18). 내부자료.
- 서울시청소년수련관 (2018). 내부자료.
- 손진희, 최윤진 (2015).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적 사법: 뉴질랜드의 회복적사법제도를 근거로. **사회복지법제연구**, 6(1), 125-148.
- 손창균, 김미곤, 강신욱, 김계연, 오지현, 김민희, 신재동, 손기철, 김은주, 이봉주, 김태성, 구인희, 강상경, 안서연, 조미라, 이원진 (2009). **2009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연구보고서 2009-32-1).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송영지, 김수영, 김진현 (2016). 위기청소년을 위한 비행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제40호, 49-74.

- 송혜정 (2013).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분노조절·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근화 (2017).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4(2), 127-155.
- 신동주 (2018.04). 법원행정처 보호사법 연구반 자료집. 내부자료.
- 심진숙 (2008).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윤숙 (2015).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위탁보호위원회제(1호 처분)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39호, 83-112.
- 안윤숙, 김명희, 이정미 (2016). 중간처우 시설의 부모자녀관계 회복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효광원의 허그캠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제41호, 59-98.
- 안윤숙, 박길태 (2016).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정복지연구**, 제43호, 99-118.
- 양수택, 차은주, 김정현, 김영재 (2016). 위기청소년의 신체활동 의미 탐색. **한국 스포츠사회학회지**, 29(4), 51-68.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04).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2017). **2017 청소년백서**. 서울 : 여성가족부.
- _____ (2018). **2018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제364회 정기회, pp.1~7
- 오승주, 최세민 (2015). 인지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소년원재소 비행청소년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공감능력에 미친 영향. **교정복지연구**, 제 38호, 120-145.
- 유서구 (2017). 가출팸 경험과 비행행동의 차이: 실천 대안의 탐색. **비판사회정책**, 제54호, 52-80.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청소년인권활동가네

- 트윅크 (편.), 아동권리위원회 58차 회기, 1-20.
- 윤용장 (2018).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7-64.
- 원혜욱 (2018). **소년 강력범죄 대응 관련 입법 개선 방향**. 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토론회 자료집 :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보호처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9-36.
- 이기원 (2013). 청소년 관련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소년보호·육성의 원리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제59호, 149-174.
- 이명은 (2016).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7(3), 437-452.
- 이성식 (2008). **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연구총서 07-22).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수정, 강승민 (2017). 범죄소년의 인지기능 손상이 비행력 진전에 미치는 영향: 주의력 집행기능 그리고 성차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17(2), 139-170.
- 이수정, 윤옥경, 황태정 (2007). **비행 및 일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현황과 프로그램 이용 실태조사 및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강화 방안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승현 (2010). **소년법상 다이버전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_____ (2017).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36.
- 이유나 (2017). 소년보호기관내 인성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 소년꿈키움센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2), 167-190.
- 이유진, 이창훈, 강지명 (2014).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 14-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은경, 지승희, 이지은, 최수미, 정찬석 (2003). 청소년비행 위험요소·보호요소

- 척도의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2), 57-70.
- 이재영 (2016). 경찰 선도프로그램의 평가와 발전방안. **치안정책연구**, 30(3), 149-188.
- 이재정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7.9.5.) **국정감사 보도자료 13 “무서운 친구들, 2013년 이후 학교폭력사범 6만 3천여 명 적발”**. 더불어민주당 웹사이트 theminjo.kr/fileDn.do?seq=24867에서 2018년 4월 23일 인출.
- 이정민, 조윤오 (2017).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JDRAI-S 및 처우계획서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17(1), 7-40.
- 장미연, 김원중 (2016). Winnicott 이론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공격성, 자기조절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보호관찰**, 16(1), 91-129.
- 장준오 (2010.12). **제12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범 총회 및 제19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범 위원회 참가 보고서**.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학열 (2011). **청소년위험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다차원성 모형검증 - 희망 및 생활역량, 충동성, 감각추구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유희, 손외철 (2016).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기소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의 재범위험요인 분석. **보호관찰**, 16(1), 221-251.
- 정의롬 (2017).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 **교정복지연구**, 제46호, 47-70.
- 정혜원 (2017). 시설보호비행청소년의 재범태도 및 영향요인에 대한 성인지적 차이 연구: 6호 처분 수용 소년을 중심으로. **교정담론**, 11(1), 185-209.
- 조영미, 정지현 (2015). 비행 청소년 표준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험의 의미. **문화교류연구**, 4(2), 5-29.
- 조윤오 (2015).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대응방안 및 개입 프로그램 고찰. **경찰학논총**, 10(3), 335-371.

- 조춘범 (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비행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317-345.
- 천원기 (2017). 절도 비행청소년을 위한 단기집중 절도예방 프로그램 효과 연구. **소년보호연구**, 30(3), 167-191.
- 최병각 (2016). 소년사법에서 경찰의 역할과 역량. **형사정책**, 28(3), 97-124.
-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1-R22).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카와이테 토시히로 (2018). **소년법(JUVENILE LAW)**. 황순평, 김혁, 장응혁 (편.). 서울: 박영사.
- 푸른나무 청예단 (2018). 내부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 12-R15).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10-2016). **제1~7차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한윤정, 김경숙 (2016). 음악치료를 활용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분노 조절, 공격성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10(3), 207-236.
- 현문정, 한영선 (2015). 자기통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2(5), 391-420.
- 황원우 (2013).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합리적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Champion S. (2018). **Session 1 국가별 보고 영국**.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국회입법조사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사단법인두루·한국YWCA연합회·TACTEEN·십대여성인권센터 국제 세미나 자료집: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61-106.
- 内閣府 (2013). 平成25年版子ども・若者白書.
- 内閣府 (2018). 平成30年版子ども・若者白書.

- 丸山直紀 (2008). “少年警察活動規則の改正等について”, *警察学論集*, 61(3), 1-25.
- Abrams, L.S. (2006). From Corrections to Community: Youth Offenders' Perceptions of the Challenges of Transition,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44(2/3), 31-53.
- Arthur, P., & Waugh, R. (2009). Status Offenses and 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The Exception Swallowed the Rule. *Seattle Journal for Social Justice: Homeless Youth and the Law*. 7(2), 555-576.
- Bechtel K., Lowenkamp C.T., & Latessa E. (2007). Assessing the Risk of Re-Offending for Juvenile Offenders Using the Youth 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45(3/4), 85-108.
- Becker, Howard S.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 Bishop, D. M., & Decker, S. H. (2006). “Punishment and Control: Juvenile Justice Reform in the USA.” In J. Junger-Tas and S. H. Decker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Juvenile Justice* (3-35). New York: Springer.
- Bradley, L. (2009) The Bradley Report. London : COI for the Department of Health.
- Campbell, C., Eytayo, O., Ashlee, B., Jodi, P., Valerie, A., William, D., & Derrick, G. (2014). Screening Offenders: The Exploration of a Youth 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 (YLS/CMI) Brief Screener.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53(1), 19-34.
- Carr, M.B., & Vandiver, T.A. (2001).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youth offender. *Adolescence*, 36(143), 409-426.

- Catalano, R.F., & Hawkins, J.D. (1996). *The Social Developmental Model: A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In J. D. Hawkins (Ed.), *Delinquency and crime: Current theories* (pp. 149-19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cozza, J.J., Veysey, B. M., Deborah, A., Chapin, R, D., Wansley, W., & Sylvia, F. (2005). Diversion from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he Miami-Dade Juvenile Assessment Center Post-Arrest Diversion Program. *Substance Use and Misuse, 40*(7), 935-51.
- Cuellar, A. E., McReynolds, L., & Wasserman, G. (2006). "A Cure for Crime: Can Mental Health Treatment Diversion Reduce Crime Among Youth?".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5*(1), 197-214.
- Eisenberg, U. (2013). *Jugendgerichtsgesetz 16. Auflage*. München: Verlag C. H. Beck.
- Farrington, D. (1977). The effects of public labelling.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7*, 112-125.
- Hughes, D'lorah, L. (2011). *An Overview of 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and the Valid Court Order Exception*. Arkansas Law Notes 2011, 29-37.
- Huizinga, D., Schumann, K., Ehret, B., & Elliott A. (2003). *The effect of juvenile justice system processing on subsequent delinquent and criminal behavior: A cross-national study*. Washington: Final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Klein, M. W. (1986). "Labeling Theory and Delinquency Policy: An Experimental Tes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3*(1). 47-49.
- Lipsey, M.W. (2009). The Primary Factors that Characterize Effective Interventions With Juvenile Offenders: A Meta-Analytic Review.

- Victims & Offenders*, 4(4), 124-147.
- Loeb, R. C., Marie W., & Megan, S. (2015). Individual and Familial Variables for Predicting Successful Completion of a Juvenile Justice Diversion Program.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54(3), 212-237.
- Maroney, T. T., (2012). Recidivism Measurement And Sanction Effectiveness In Youth Diversion Programs. *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2476. Retrieved May 13, 2018, from <http://stars.library.ucf.edu/etd/2476>.
- Martin, L.L., & Ketter, P. M. (2010).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human service program*(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McAra, L., & McVie, S. (2007). "Youth Justice? The Impact of System Contact on Patterns of Desistance from Offending.".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4, 315-345.
- McCord, J., Cathy S. W., & Crowell, N. A. (2001). "Race, Crime, and Juvenile Justice: The Issue of Racial Disparity." In J. McCord, C.S. Widom, and N.A. Crowell (eds.). *Juvenile Justice, Juvenile Crime: Panel on Juvenile Crime: Prevention, Treatment, and Control*.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Meier, B. D., Rössner, D., & Schöch, H. (2013). *Jugendstrafrecht*. München: Verlag C. H. Beck.
- Miller, L. (2014). Juvenile crime and juvenile justice: Patterns, model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and legal practi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2), 122-137. Retrieved February 4, 2018, from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359178914000135>.
- Moore, T., McArthur, M., & Saunders, V. (2013). Young People Talk about Transitioning from Youth Detention to the Community: Making

- Good. *Australian Social Work*, 66(3), 328-343.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11). *A Cost-Benefit Analysis of Juvenile Justice Programs*. In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Juvenile Justice Guide Book for Legislators*. Denver, Colo.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t Prevention. (1995).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Ostendorf. (2011). *Jugendstrafrecht*.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15). *State Use of the Valid Court Order Excep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 Patrick, S., & Marsh, R. (2005). "Juvenile Diversion: Results of a 3-Year Experimental Study.".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6(1), 59-73.
- Petrosino, A., Turpin-Petrosino, C., & Guckenburg, S. (2010). Formal System Processing of Juveniles: Effects on Delinquency. No. 9 of Crime Prevention Research Review.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Retrieved May 13, 2018, from <http://www.ric-zai-inc.com/Publications/cops-w0692-pub.pdf>.
- Pogrebin, M. R., Poole, E. D., & Regoli, R. M. (1984). Constructing and implementing a model juvenile diversion program. *Youth and Society*, 15, 305-324.
- Roberts, A. R., & Camasso, M. J. (1991). Juvenile Offender Treatment Programs and Cost-Benefit Analysis. *Juvenile and Family Court*

- Journal*, 91, 37-47.
- Schwalbe, C. S., Gearing, Robin. E., Mackenzie, Michael., Brewer, K. B., & Ibrahim, R. W. (2012).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of Diversion Programs for Juvenile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1), 26-33.
- Seroczynski, A. D., Evans, W. N., Jobst, A. D., Horvath, L., & Carozza, G. (2016). Reading for life and adolescent re-arrest: Evaluating a unique juvenile diversion program.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35(3), 662-682.
- Smith, P., Goggin, C., & Gendreau, P. (2002). *The effects of prison sentences and intermediate sanctions on recidivism: General effects and individual differences* (Solicitor General Canada User Report No. 2002-01). Ottawa, ON: Public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 Swayze, D., & Buskovich, D. (2012). *The Minnesota Youth Intervention Program*. Minnesot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Office of Justice Programs, 1-55.
- Taylor, C. (2016). *Review of the Youth Justice System in England and Wales*. Ministry of Justice.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77105/youth-justice-review-final-report-print.pdf.
- Tracy, P., & Kempf, L. K. (1996).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criminal careers*. New York: Plenum Press.
- Umbreit, M.S., Bradshaw, W., & Coates, R.B. (1999). Victims of severe violence. Meet the Offender: Restorative Justice through dialogu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6(4), 321-344.

Wilson, D., Brennan, I., & Olaghere, A. (2018). *Police-initiated diversion for youth to prevent future delinquent behavior: a systematic review protocol*. Campbell Collaboration.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s://campbellcollaboration.org/media/k2/attachments/0287_CJCG_Wilson_Protocol.pdf.

[국내 참고자료 및 웹사이트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2018.6.4.).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141&boardSeq=74449&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40401&opType=N>에서 2018년 10월 22일 인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통고제도 검색결과**. http://help.scourt.go.kr/nm/min_19/min_19_7/index.html 에서 2018년 2월 2일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2018년 10월 14일 인출.
정신교 (2017). 소년범 사회내처우의 실효성 확보방안. **치안정책연구**, 31(2), 141-169.
통계청 홈페이지, **2017년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kosis.kr>에서 2018년 5월 8일 인출.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lllcard.kr/guide/bizVcUser.do>에서 2018년 10월 14일 인출.
e-나라지표 홈페이지. **법무부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18년 4월 22일 인출.

[해외웹사이트 자료]

長浜青少年センター・木之本青少年センター 홈페이지. <http://www.city.nagahama.lg.jp/0000001660.html>에서 2018년 8월 15일 인출.

_____ <http://www.city.nagahama.lg.jp/0000001651.html>에서 2018년 8월 15일 인출.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2017). 平成28年中における 少年の補導及び保護の概況. 1-172. https://www.npa.go.jp/safetylife/syonen/hodouhogo_gaikyou/H28.pdf에서 2018년 8월 15일 인출.

警察庁 (2017). 平成29年版警察白書. 71-128. https://www.npa.go.jp/hakusyoyo/h29/pdf/pdf/06_dai2syo.pdf에서 2018년 8월 15일 인출.

大阪府 (2017a). 少年サポートセンターだより. 育成支援室第16号. 1-2. http://www.pref.osaka.lg.jp/attach/13792/00000000/sapocen_16.pdf에서 2018년 8월 15일 인출.

_____ (2017b). 少年サポートセンターだより. 育成支援室第17号. 1-4. http://www.pref.osaka.lg.jp/attach/13792/00000000/sapocen_17.pdf에서 2018년 8월 15일 인출.

_____ (2017c). 少年サポートセンターだより. 育成支援室第18号. 1-4. http://www.pref.osaka.lg.jp/attach/13792/00000000/sapocen_18.pdf에서 2018년 8월 15일 인출.

市原市青少年指導センター (2018). H30いちよう1号. 1-4. https://www.city.ichihara.chiba.jp/bunka/320syougai/seisyounen/sidou_center.files/H30ityougou.pdf에서 2018년 8월 15일 인출.

大阪家庭裁判所 (2014.5.26). 教育的措置について: 社会との連携の在り方. http://www.courts.go.jp/osaka/vcms_lf/260520p-1.pdf#search=%27%E5%A4%A7%E9%98%AA+%E6%95%99%E8%82%B2%E7%9A%84%E6%

8E%AA%E7%BD%AE%E3%81%ABE3%81%A4%E3%81%84%E3%81%A6%
27에서 2018년 8월 15일 인출.

미국 미시건 주의 Marquette 지방법원 홈페이지.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www.co.marquette.mi.us/departments/courts/juvenile_court/docs/Brochures2016/Diversion%20Brochure.pdf.

미국 법무부 산하 사법연구원 홈페이지.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s://www.crimesolutions.gov/PracriceDetails.aspx?ID=37>.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 홈페이지.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s://www.ojjdp.gov/mpg/litreviews/Diversion_Programs.pdf.

_____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s://www.ojjdp.gov/mpg/litreviews/Status_Offenders.pdf.

네브라스카 주 사례.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s://ncc.nebraska.gov/sites/ncc.nebraska.gov/files/pdf/juvenile_justice_materials/DiversionGuidelines.pdf.

매사츄세추 주의 캠브리지 경찰서 Youth & Family Service 유닛 사례.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www.cambridgema.gov/cpd/communityresources/safetynetcollaborative>.

미네소타 주의 미네톤카 경찰서 Northern Star Juvenile Diversion Program
사례.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s://eminnetonka.com/youth/juvenile-diversion-program>.

영국 정부 홈페이지. Youth offending teams 소개. Retrieved May 25, 2018,
from <https://www.gov.uk/youth-offending-team>.

_____ Youth crime prevention programmes 소개. Retrieved
May 25, 2018, from <https://www.gov.uk/youth-crime-prevention-programmes>.

오하이오 주의 Fairfield 경찰 사례.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s://www.fairfield-city.org/476/Juvenile-Diversion-Program>.
인디애나 주 Reading for Life 단체 홈페이지.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www.readingforlife.us/>.

조지아 주의 Clayton 카운티사례.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s://www.judiciary.senate.gov/imo/media/doc/12-12-12TeskeTestimony.pdf>.

캘리포니아 SHORTSTOP 사례.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ocbarfoundation.org/program/shortstop/>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비행청소년 다이버전 및 선도 조치. <http://www.justice.gouv.fr/justice-des-moneurs-10042/>에서 2018년 10월 25일 인출.

플로리다 Juvenile Diversion Alternative Program (JDAP) 사례.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www.lwvokaloosa.org/documents/JD-JDAP_brochure.pdf.

필라델피아 학교위원회(School District) 사례.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s://stoneleighfoundation.org/wp-content/uploads/2018/02/Philadelphia-Police-School-Diversion-Program.pdf>.

Awo-zeulenroda 홈페이지. Retrieved July 23, 2018, from <https://www.awo-zeulenroda.de/einrichtungen/kinder-und-jugendhaus-future/heimerziehung/>.

Barnardo 홈페이지. Retrieved May 25, 2018, from <http://www.barnardos.org.uk/edinburgh-together.htm>.

Caritasverband Koblenz 홈페이지. Erziehungsbeistandschaft. Retrieved July 23, 2018, from <http://sartorius-net.de/CARITAS/erziehungsbeistandschaft.pdf>.

Children's Law Center. (2016). Diversion for Status Offenders: A Guidebook for South Carolina.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childlaw.sc.edu/Status%20Offense%20Task%20Force/Diversion%20Guidebook.pdf>.

Coalition for Juvenile Justice. (2015). *National standards for the care of youth charged with status offenses*.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juvjustice.org/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National%20Standards%202015%20WEB.pdf>.

Council of Europe 홈페이지. Lanzarote Convention. <https://www.coe.int/en/web/children/lanzarote-convention>에서 2018년 10월 17일 인출.

Models for Change. (2011). *Juvenile diversion guidebook*. Retrieved May 13, 2018, from <http://www.modelsforchange.net/publications/301>.

National Health Service England 홈페이지. YJLD 절차도. Retrieved August 7, 2018, from <https://www.england.nhs.uk/commissioning/wp-content/uploads/sites/12/2014/04/ld-op-mod-1314.pdf>.

_____ Youth Justice Liaison and Diversion. Retrieved August 7, 2018, from <https://www.england.nhs.uk/commissioning/health-just/liaison-and-diversion/about/>.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홈페이지 참조. Retrieved May 14, 2018, from <https://www.crimesolutions.gov/PracticeDetails.aspx?ID=37>.

Niedzwiecki, E., Irazolam, S., Churchill, C., & Field, M. (2015). *Massachusetts Juvenile Diversion Assessment Study*. ICF International. Retrieved May 13, 2018, from https://www.cfjj.org/s/MADiversion_FinalReport_2015.pdf.

Sharedhope Interational 홈페이지. <https://sharedhope.org/about-us/our-mission-and-values/>에서 2018년 10월 17일 인출.

Sacro's Youth Restorative Justice Services 홈페이지. Retrieved July 7, 2018, from <http://www.sacro.org.uk/services/youth-justice/youth-re>

storative-justice-services.

Suffolk Youth Justice Service 홈페이지. Retrieved May 25, 2018, from <https://www.suffolkyos.co.uk/>.

소년사법 서비스 다이버전 소개 리플릿. Retrieved July 7, 2018, from <https://www.suffolkyos.co.uk/diversion/what-is-diversion>

회부서 섹션 1~3, 동의서 양식. Retrieved July 7, 2018, from <https://www.suffolkyos.co.uk/diversion/making-a-referral>.

Warner, C. (2014). Juvenile Diversion Programs: High-Risk Youth and Their Effect on Offense Targeting. Retrieved June 13, 2018, from <https://pdfs.semanticscholar.org/d5e1/12a043f46f49934a7a167945d8aad0d1cf87.pdf>.

Wilson, H. A., & Hoge, R. D. (2013). The effect of youth diversion programs on recidivism: A meta-analytic review.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0(5), 497-518.

[법령 및 판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2017.8.23. 선고 2016도5423 판결). 대법원 웹사이트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5814&gubun=4&searchOption=&searchWord=2017에서2018년5월15일인출>.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일부개정, 법률 제1490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226&ancYd=20171024&ancNo=14908&efYd=20171024&nwJoYnInfo=Y&efGubun=Y&chr>

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7월 6일 인출.
 교육기본법(2017. 3. 21., 일부개정, 법률 제1460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08&ancYd=20170321&ancNo=14601&efYd=20170622&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3월 13일 인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타법개정, 법률 제14519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981&ancYd=20161227&ancNo=14519&efYd=20180628&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7월 6일 인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3.29., 일부개정, 법률 제1410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013&ancYd=20160329&ancNo=14105&efYd=20160930&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8. 9. 18., 일부개정, 법률 제1575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484&ancYd=20180918&ancNo=15754&efYd=20180918&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9월 28일 인출.
 소년법(2007.12.21., 일부개정, 법률 제872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1983&ancYd=20071221&ancNo=08722&efYd=200806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3월 13일 검색.
 소년법(2015.12.1., 일부개정, 법률 제1352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ancYd=20151201&ancNo=13524&efYd=2015120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소년업무규칙(2009.11.19., 타법개정, 경찰청예규 제41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

보센터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10202&admRulSeq=2100000041560>에서 2018년 3월 15일 인출.

소년업무규칙(2018. 5. 23., 일부개정 경찰청예규 제53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10202&admRulSeq=2100000129009>에서 2018년 7월 6일 검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275, 제안일자: 2018.3.2.).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V8C0W3N0J2B1P5Y5V3S0H6T2T4A7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364, 제안일자: 2018.3.7.).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Y8H0J3S0X7Y1C7G2H2Q1Z9K6U4F8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652&ancYd=20180313&ancNo=15452&efYd=20180914&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3월 15일 인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3.27.,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7960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814&ancYd=20170327&ancNo=27960&efYd=201703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3월 15일 인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7.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04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063&lSId=&efYd=201809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에서 2018년 9월 28일 검색.

청소년 보호법(2017. 12. 12., 일부개정, 법률 제15209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56&ancYd=20171212&ancNo=15209&efYd=20180313&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에서 2018년 3월 13일 인출.

청소년복지지원법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705, 제안일자: 2003.10.4.).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6186>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1849, 제안일자: 2018.2.8.).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T8Q0V2E0C8G1O5U0Q4Q2Y1L1E3D1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2012.2.1., 일부개정, 법률 제11290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708&ancYd=20120201&ancNo=11290&efYd=201208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2016.12.20., 일부개정, 법률 제1444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2&ancYd=20161220&ancNo=14447&efYd=2017062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2017.6.13.,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10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4218&ancYd=20170613&ancNo=28108&efYd=2017062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2017.12.12., 일부개정, 법률 제15210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57&ancYd=20171212&ancNo=15210&efYd=20180613&nwJoYnInfo=Y&efG>

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초·중등교육법(2017.3.21., 일부개정, 법률 제1460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10&ancYd=20170321&ancNo=14603&efYd=20170622&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11.28., 일부개정, 법률 제1504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081&ancYd=20171128&ancNo=15044&efYd=20171128&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호관찰학생 이증처벌에 의한 인권침해(2009.12.28.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387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심판례정보 <http://law.go.kr/LSW/deccInfoP.do?mode=3&deccSeq=39450>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 — 부 록

부록

1. 청소년 보호 및 선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청소년 의견조사 설문지

이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	--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청소년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이며,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나 학교 선생님이 보실 수 없고,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모든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3134

수행기관  에스타이아이

 02-785-9564
st9564@gmail.com

조사 일시 | 2018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면접원 성명 | 면접원 ID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행동 경험

1

다음은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1년 전에 각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A)칸에,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각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B)칸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 생활공간(Off-line)에서의 행동	A 참여 전 1년		B 참여 후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 학교 무단결석	0	1	0	1
2) 기출	0	1	0	1
3) 청소년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소주방, 호프집 등) 출입	0	1	0	1
4) 흡연	0	1	0	1
5) 음주	0	1	0	1
6) 환각물 사용	0	1	0	1
7) 도박(사람들과 직접 만난 상태에서 돈을 걸고 내기 또는 게임)	0	1	0	1
8) 다른 사람의 돈, 지갑, 또는 물건 훔치기	0	1	0	1
9) 기계에서 물건 훔치기(보리까기)	0	1	0	1
10) 남의 자동차에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차탈이)	0	1	0	1
11) 빈집에 들어가 돈이나 물건 훔치기(빈집탈이)	0	1	0	1
12)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행동기)	0	1	0	1
13) 술 취한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아리랑차기)	0	1	0	1
1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0	1	0	1
15) 집단따돌림하기(왕따시키기)	0	1	0	1
16) 헐벌어떤 이유에서건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겁을 줌	0	1	0	1
17) 다른 사람과 주먹싸움 하거나 때리기	0	1	0	1
18) 패싸움	0	1	0	1
19) 방화(일부러 불을 지름)	0	1	0	1
20) 흉기소지	0	1	0	1
21) 다른 사람의 물건(휴대폰 등)에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망기드리기	0	1	0	1
22) 공공기물에 일부러 흠집을 내거나 손상시키기	0	1	0	1
23) 음란물(성인전용)의 잡지나 케이블TV(방송) 시청	0	1	0	1
24) 성희롱(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함)	0	1	0	1
25) 성추행(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건드림)	0	1	0	1
26) 돈 거래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	0	1	0	1
27) 성매매(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	0	1	0	1
28) 강제적인 성관계(강간)	0	1	0	1



사이버 공간 등에서의 행동 경험

2

다음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1년 전에 각 행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A칸에 V표시)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각 행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B칸에 V표시) (A, B 모두 응답해주세요)

사이버(On-line) 공간에서의 행동	A 참여 전 1년		B 참여 후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 채팅/게시판 등에서 나이나 성별을 숨이거나 거짓말	0	1	0	1
2) 채팅이나 게시판 등에서 심한 욕이나 폭력적 언어 사용	0	1	0	1
3)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허락 없이 사용	0	1	0	1
4)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	0	1	0	1
5)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무료 유포	0	1	0	1
6) 불법 소프트웨어/복제물 판매	0	1	0	1
7) 인터넷 도박	0	1	0	1
8) 사이버 절도(사이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훔침)	0	1	0	1
9) 인터넷 사기(예: 중고매매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음)	0	1	0	1
10) 인터넷에서 물품 구입을 위해 타인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	0	1	0	1
11) 미성년자관람불가의 성인물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시청	0	1	0	1
12) 포르노사이트 방문	0	1	0	1
13) 성인 유료사이트 가입	0	1	0	1
14) 인터넷쇼핑몰에서 성인용품 구입	0	1	0	1
15) 성인대화방 이용	0	1	0	1
16)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	0	1	0	1
17) 채팅에서 성관계 요구	0	1	0	1
18) 음란물 제작·유포	0	1	0	1
19) 바이러스 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0	1	0	1
20) 폭탄메일(스팸메일)을 의도적으로 발송	0	1	0	1
21)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	0	1	0	1

3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칸에 V표 해주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1	2	3	4	5
2) 주인에게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깐 사용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	1	2	3	4	5
3)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가끔 할 수도 있다	1	2	3	4	5
4) 주인을 알 수 없는 약간의 돈을 주었다면 그냥 가져도 괜찮다	1	2	3	4	5



나 자신의 모습

4

다음은 여러분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장을 읽은 후 여러분의 평소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칸(번호)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굴면 나는 언젠가 복수를 한다	1	2	3	4	5
2)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1	2	3	4	5
3)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	2	3	4	5
4)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1	2	3	4	5
5) 싫어하는 일이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2	3	4	5
6)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1	2	3	4	5
7) 나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는 공부를 잘 한다	1	2	3	4	5
9) 나는 자주 우울해진다	1	2	3	4	5
10) 나는 별 이유없이 나른하고 피곤하다	1	2	3	4	5
11) 나는 친구를 잘 사귀고 친구관계를 잘 유지한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여 해낸 적이 있다	1	2	3	4	5
13) 나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14)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1	2	3	4	5
15) 나는 한 번 결심을 하면 꼭 지킨다	1	2	3	4	5
16) 나는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낸다	1	2	3	4	5
17) 나는 자주 불안해진다	1	2	3	4	5
18)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19)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	1	2	3	4	5
20) 나는 어려서부터 문제를 일으켜서 어른들에게 자주 혼나는 편이었다	1	2	3	4	5
21)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1	2	3	4	5
22)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23) 모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2	3	4	5
24)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1	2	3	4	5
25) 나의 현재 상황은 앞으로의 내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2	3	4	5
26)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감을 잃지 않는다	1	2	3	4	5
27)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참기 어렵다	1	2	3	4	5
28) 나는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게 내 자신을 조절하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다	1	2	3	4	5
30) 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행동을 한다	1	2	3	4	5

가족

5

다음은 부모님(보호자)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평소 부모님의 모습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칸(번호)에 V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내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대로 따르도록 명령한다	1	2	3	4	5
2)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린다 (예: 상처가 남거나, 멍이 들거나, 피가 나가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 등)	1	2	3	4	5
3) 부모님은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1	2	3	4	5
4)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한다	1	2	3	4	5
5) 부모님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1	2	3	4	5
6) 부모님은 나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1	2	3	4	5
7) 나는 부모님에게 왜 혼나는지 모르 채 혼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8) 부모님은 내게 잘해주려고 애쓰신다	1	2	3	4	5
9) 부모님은 다른 때는 혼내지 않던 일로 갑자기 나를 혼내곤 한다	1	2	3	4	5
10) 부모님은 공부 이야기만 한다	1	2	3	4	5
11) 내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기준은 명확하다	1	2	3	4	5
12) 부모님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	1	2	3	4	5
13) 부모님은 내가 외출했을 때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잘 아신다	1	2	3	4	5
14)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아신다	1	2	3	4	5
15)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1	2	3	4	5
16) 우리 부모님은 자주 싸운다	1	2	3	4	5
17)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귀여워한다	1	2	3	4	5
18)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는 것을 본 적이 있다	1	2	3	4	5
19) 부모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신다	1	2	3	4	5
20) 부모님은 나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스스로 의견을 내도록 격려하고 경청하신다	1	2	3	4	5
21) 부모님은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1	2	3	4	5
22) 부모님은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신다	1	2	3	4	5
23) 부모님과 나는 말만하면 싸우게 된다	1	2	3	4	5
24)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1	2	3	4	5
25) 부모님은 서로 대화가 거의 없다	1	2	3	4	5



친구, 학교, 지역과 이웃

6

다음은 친구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친구의 평소 모습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V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대체로 학교생활에 충실하다	1	2	3	4	5
2) 내 친구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	1	2	3	4	5
3) 내 친구들은 대체로 담배나 술을 멀리한다	1	2	3	4	5
4) 내 친구들은 대체로 학교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킨다	1	2	3	4	5
5) 내 친구들은 내가 만약 담배를 피우려고 한다면, 나를 말릴 것이다	1	2	3	4	5
6) 내 친구들은 내가 만약 술을 마시려고 한다면, 나를 말릴 것이다	1	2	3	4	5
7) 내가 만약 학교나 학원을 빠지고 놀러가지고 한다면, 내 친구들은 나를 말릴 것이다	1	2	3	4	5

7

여러분의 친구 중 다음의 각 문항에서 제시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해당 칸(번호)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없음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1)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	1	2	3	4	5
2) 가출한 경험이 있는 친구	1	2	3	4	5
3)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혔던 적이 있는 친구	1	2	3	4	5
4)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	1	2	3	4	5
5) 학교를 그만 둔 친구	1	2	3	4	5

8

다음은 학교환경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학교의 평소 모습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V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싫어한다	1	2	3	4	5
2) 나는 가끔 수업도중에 땀샘이름 찬다	1	2	3	4	5
3)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	1	2	3	4	5
4)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1	2	3	4	5
5) 선생님은 나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 하시는 편이다	1	2	3	4	5
6)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5
7) 우리 학교는 재벌이 심한 것으로 유명하다	1	2	3	4	5
8) 우리 학교 주변에는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1	2	3	4	5

9

다음은 학교 선생님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학교 선생님의 평소 모습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V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1	2	3	4	5
2)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계시다	1	2	3	4	5
3) 내가 발전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1	2	3	4	5
4)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	1	2	3	4	5

10

다음은 지역(동네)환경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장을 읽은 후 여러분의 이웃과 지역(동네)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칸(번호)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동네)에서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1	2	3	4	5
2) 청소년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도 어른들은 개의치 않는다	1	2	3	4	5
3) 심야시간대(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보호자 동행 없이 출입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PC방, 오락실, 노래방, 찜질방 등이 있다	1	2	3	4	5
4) 심야시간대(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보호자 동행 없이 PC방, 오락실, 노래방, 찜질방 등에 출입해도 어른들은 개의치 않는다	1	2	3	4	5
5)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6) 청소년 동아리나 자원봉사활동의 기회가 많다	1	2	3	4	5
7) 청소년이 운동이나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1	2	3	4	5
8) 청소년이 건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다	1	2	3	4	5
9)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1	2	3	4	5
10) 술에 취한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1	2	3	4	5
11) 고성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1	2	3	4	5
12)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13) 동네 어른들은 내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다	1	2	3	4	5
14) 동네 사람들이 나를 안다	1	2	3	4	5
15) 부모님 외에 나에게 잘 해주고 내가 잘 따르는 동네어른이 있다	1	2	3	4	5
16) 우리 동네는 나쁜 점 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	1	2	3	4	5
17) 오랫동안 이 곳에서 살고 싶다	1	2	3	4	5
18) 우리 동네는 청소년으로서 생활하기에 만족스럽다	1	2	3	4	5



선도 프로그램 경험 및 만족도

11

다음의 표에는 <상담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서 제시된 형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A칸에 V표시)

그렇다면, 각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나요?(B칸에 V표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B칸에 응답표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A		B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나요?			
	없음	있음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되는 편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1) 개별상담 (청소년 1인과 전문가 1인의 대면상담)	0	1	1	2	3	4
2) 집단상담 (청소년 여러 명과 전문가 1인의 대면상담)	0	1	1	2	3	4
3) 또래상담 (또래 청소년과의 대면상담)	0	1	1	2	3	4
4) 범죄예방위원(선도후견인, 보호관찰관 등)과의 정기적 만남	0	1	1	2	3	4
5) 대학생 등 성인 자원봉사자와의 멘토링	0	1	1	2	3	4

12

위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 다음의 목표를 이루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하나요?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더라도 응답해주세요)

문항	매우 비효과적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1)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다	1	2	3	4	5
2) 학업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공부도 잘 된다	1	2	3	4	5
3) 생활습관이 개선된다 (불규칙하거나 무질제했던 생활 개선)	1	2	3	4	5
4) 긍정적인 가치관과 마음을 갖는다	1	2	3	4	5
5) 가족관계가 좋아진다	1	2	3	4	5
6) 건전한 친구관계를 맺고 우정을 유지한다	1	2	3	4	5
7) 지역사회 내 건전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아진다	1	2	3	4	5

13

다음의 표에는 <행동교정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서 제시된 형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A칸에 V표시)

그렇다면, 각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나요?(B칸에 V표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B칸에 응답표시)

행동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A		B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나요?			
	없음	있음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되는 편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1) 금연 프로그램	0	1	1	2	3	4
2) 금주 프로그램	0	1	1	2	3	4
3)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사용 치료 프로그램	0	1	1	2	3	4

14

위의 <행동교정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 다음의 목표를 이루는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나요?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더라도 응답해주세요)

문항	매우 비효과적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1)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다	1	2	3	4	5
2) 학업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공부도 잘 된다	1	2	3	4	5
3) 생활습관이 개선된다(불규칙하거나 무질제했던 생활 개선)	1	2	3	4	5
4) 긍정적인 가치관과 마음을 갖는다	1	2	3	4	5
5) 가족관계가 좋아진다	1	2	3	4	5
6) 건전한 친구관계를 맺고 우정을 유지한다	1	2	3	4	5
7) 지역사회 내 건전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아진다	1	2	3	4	5

15

다음의 표에는 <사회성/사회기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서 제시된 형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A)에 V표시)
그렇다면 각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나요?(B)에 V표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B)에 응답표시).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프로그램	A		B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나요?			
	없음	있음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되는 편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1) 자기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0	1	1	2	3	4
2) 분노조절 프로그램 (심호흡하기, 화내지 않고 말하기 등)	0	1	1	2	3	4
3) 연극을 활용한 프로그램 (소시오드라마, 역할극 등)	0	1	1	2	3	4
4)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경청하기, 상대방 칭찬해주기, 나를 주어로 말하기 등)	0	1	1	2	3	4
5)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0	1	1	2	3	4

16

위의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 다음의 목표를 이루는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나요?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더라도 응답해주세요)

문항	매우 비효과적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1)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다	1	2	3	4	5
2) 학업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공부도 잘 된다	1	2	3	4	5
3) 생활습관이 개선된다(불규칙하거나 무질제했던 생활 개선)	1	2	3	4	5
4) 긍정적인 가치관과 마음을 갖는다	1	2	3	4	5
5) 가족관계가 좋아진다	1	2	3	4	5
6) 건전한 친구관계를 맺고 우정을 유지한다	1	2	3	4	5
7) 지역사회 내 건전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아진다	1	2	3	4	5

17

다음의 표에는 <교육 및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서 제시된 형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A에 V표시)

그렇다면, 각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나요?(B안에 V표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B안에 응답표시)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A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B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나요?			
	없음	있음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되는 편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1) 학업멘토링	0	1	1	2	3	4
2) 학업/학습 지원	0	1	1	2	3	4
3) 검정고시 준비 지원	0	1	1	2	3	4
4) 대입준비 지원	0	1	1	2	3	4
5) 적성검사	0	1	1	2	3	4
6) 진로탐색	0	1	1	2	3	4
7) 직업체험	0	1	1	2	3	4
8) 직업훈련 (제과제빵, 간호조무사, 미용기술 등)	0	1	1	2	3	4
9) 창업교육	0	1	1	2	3	4
10) 취업알선	0	1	1	2	3	4

18

위의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 다음의 목표를 이루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하나요?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더라도 응답해주세요)

문항	매우 비효과적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1) 심라정서적으로 안정된다	1	2	3	4	5
2) 학업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공부도 잘 된다	1	2	3	4	5
3) 생활습관이 개선된다 (불규칙하거나 무질제했던 생활 개선)	1	2	3	4	5
4) 긍정적인 가치관과 마음을 갖는다	0	1	2	3	4
5) 가족관계가 좋아진다	1	2	3	4	5
6) 건전한 친구관계를 맺고 우정을 유지한다	1	2	3	4	5
7) 지역사회 내 건전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아진다	1	2	3	4	5

19

다음의 표에는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서 제시된 형태의 선도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가족이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A에 V표시)

그렇다면, 각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나요?(B안에 V표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B안에 응답표시).

행동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A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B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나요?			
	없음	있음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되는 편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1) 가족상담	0	1	1	2	3	4
2) 가족캠프	0	1	1	2	3	4
3) 부모교육	0	1	1	2	3	4

20

위의 <가족대상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 다음의 목표를 이루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하나요?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더라도 응답해주세요)

문항	매우 비효과적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1)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다	1	2	3	4	5
2) 학업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공부도 잘 된다	1	2	3	4	5
3) 생활습관이 개선된다 (불규칙하거나 무질제했던 생활 개선)	1	2	3	4	5
4) 긍정적인 가치관과 마음을 갖는다	1	2	3	4	5
5) 가족관계가 좋아진다	1	2	3	4	5
6) 건전한 친구관계를 맺고 우정을 유지한다	1	2	3	4	5
7) 지역사회 내 건전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아진다	1	2	3	4	5

21

다음의 표에는 다양한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서 제시된 형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느냐(표시)에 V표시)
그렇다면, 각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느냐?(B안에 V표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B안에 응답표시).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	A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B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느냐?			
	없음	있음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되는 편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1) 각종 체험활동	0	1	1	2	3	4
2) 요리활동	0	1	1	2	3	4
3)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공예품 제작 등)	0	1	1	2	3	4
4) 음악활동 (악기배우기, 노래, 랩 등)	0	1	1	2	3	4
5)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0	1	1	2	3	4
6) 댄스/서보잉	0	1	1	2	3	4
7) 동아리 활동	0	1	1	2	3	4
9) 체육/운동	0	1	1	2	3	4

22

위의 <여가문화-취미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 다음의 목표를 이루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하나요?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더라도 응답해주세요)

문항	매우 비효과적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1)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다	1	2	3	4	5
2) 학업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공부도 잘 된다	1	2	3	4	5
3) 생활습관이 개선된다 (불규칙하거나 무질제했던 생활 개선)	1	2	3	4	5
4) 긍정적인 가치관과 마음을 갖는다	1	2	3	4	5
5) 가족관계가 좋아진다	1	2	3	4	5
6) 건전한 친구관계를 맺고 우정을 유지한다	1	2	3	4	5
7) 지역사회 내 건전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아진다	1	2	3	4	5

23

다음 문항은 <봉사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도를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예: 사회봉사명령 등)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A안에 V표시) 그렇다면, 각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나요?(B안에 V표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B안에 응답표시).

봉사활동	A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B 비행행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나요?			
	없음	있음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되는 편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1) 사회봉사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0	1	1	2	3	4
2) 기타 봉사활동 (사회봉사명령 없이 수행한 선도목적의 봉사)	0	1	1	2	3	4

24

위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 다음의 목표를 이루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하나요?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더라도 응답해주세요)

문항	매우 비효과적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1)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다	1	2	3	4	5
2) 학업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공부도 잘 된다	1	2	3	4	5
3) 생활습관이 개선된다 (불규칙하거나 무질제했던 생활 개선)	1	2	3	4	5
4) 긍정적인 가치관과 마음을 갖는다	1	2	3	4	5
5) 가족관계가 좋아진다	1	2	3	4	5
6) 건전한 친구관계를 맺고 우정을 유지한다	1	2	3	4	5
7) 지역사회 내 건전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아진다	1	2	3	4	5

25

여러분이 이제까지 참여한 선도 프로그램이 어느 기관에서 진행된 것인지 다음 보기에서 해당되는 기관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꿈드림센터 포함)
- ② 지역사회복지관
- ③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④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 ⑤ 대안학교
- ⑥ 청소년 수련관
- ⑦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⑧ 청소년쉼터
- ⑨ 정신보건센터
- ⑩ 국립 중앙청소년상담센터
- ⑪ 사회기관(YMCA 등)
- ⑫ 기타(_____)

26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항목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경찰의) 기소유예(범죄예방위원 상담 등)
- ② (경찰의) 즉결심판
- ③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
- ④ (경찰의) 선도프로그램(사랑의 교실 등)
- ⑤ (법원) 통고
- ⑥ 소년분류심사원입소(상담, 교육 등)
- ⑦ 청소년 꿈키움센터 입소(상담, 교육 등)
- ⑧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 ⑨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 ⑩ 보호처분 3호(사회봉사명령)
- ⑪ 보호처분 4호 이상
- ⑫ 보호자교육(보호자특별교육명령 등)

27

여러분이 현재의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처분(26번 문항의 보기 참조)을 언제 받았습니까?

20 _____ 년 _____ 월

32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다음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읍, 면, 리)

33 여러분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학교에 다니고 있다 ②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33.1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급과 학년은?
 ① 초등학교 5학년
 ② 초등학교 6학년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⑤ 중학교 3학년
 ⑥ 고등학교 1학년
 ⑦ 고등학교 2학년
 ⑧ 기타(_____)

33.2 최종적으로 다녔던 학교급과 학년은?
 ① 초등학교 5학년
 ② 초등학교 6학년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⑤ 중학교 3학년
 ⑥ 고등학교 1학년
 ⑦ 고등학교 2학년
 ⑧ 기타(_____)

34 여러분의 가족은 다음 중 어떤 형태에 해당합니까?
 ① 부모 + 자녀 ② 부(아버지) + 자녀 ③ 모(어머니) + 자녀
 ④ 조부(할아버지) + 손자녀 ⑤ 조모(할머니) + 손자녀 ⑥ 조부/조모 + 부모 + 자녀
 ⑦ 조부/조모 + 부(아버지) + 자녀 ⑧ 조부/조모 + 모(어머니) + 자녀 ⑨ 기타(_____)

35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모름 ② 중학교 졸업이하(고교 중퇴 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대학/대학교 중퇴 포함)
 ④ 전문대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대학원 중퇴 포함) ⑥ 대학원 졸업

36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모름 ② 중학교 졸업이하(고교 중퇴 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대학/대학교 중퇴 포함)
 ④ 전문대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대학원 중퇴 포함) ⑥ 대학원 졸업

37 여러분 집의 생활형편(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표해 주세요.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최고 빈곤층 매우 빈곤 빈곤 빈곤한 편 중간이나 빈곤한 편에 가까움 중간이나 부유한 편에 가까움 부유한 편 부유 매우 부유 최고 부유층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Study on the Status of Educational Guidance of At-Risk Youths and Measures to Enhance its Efficacy

This study reviews the status of guidance programs of at-risk youths that are operated by the local communities or juvenile justice system,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optimal program management that can prevent delinquency and recidivism of at-risk youths. Furthermore, this study is to serve as the foundational data for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to establish the safety net system of youths, and to guide improvements of existing early intervention programs for at-risk youths.

In addition to the literature review, survey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s. The survey was distributed to the sample group of 1,000 adolescents targeted by the educational guidance programs from June-July of 2018. 15 youths and 10 direct staffs were interviewed before and after the survey.

The survey results suggest that the experience of delinquency differs by gender and age, suggesting protective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Among the existing guidance programs, the most effective programs were found to be in areas of leisure, culture and hobby, followed by the family-oriented program, education and career planning programs. The target youths reported that programs ran by youth or community institutions were more effective than the programs run by

the justice or judicial system.

The interview with the youths informed the cause of participation, the efficacy or helpfulness of protective detention of juveniles, satisfaction and suggestions. It showed that programs based on 1:1 relationship, parental involvements, and leisure/hobby/culture were viewed positively; the demands for career, education, entrepreneurship related programs were also confirmed.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drawn from the interview with direct staffs. The target of educational guidance is focused to the youths in the early stages of juvenile delinquents, as defined by the law enforcements, and the youths who are in needs of supports, to prevent recidivism and promote reentry to the community after serving time in the detention. The demand for youth-centered programs based on 1:1 relationship, parental participation, and new experiences, in addition to effective, growth and change focused managements were identified.

The following policy promotion work were drawn from the study results: first, fortify the foundation of system by revising the following regulations and laws to implement the each related tasks: 「Youth Welfare Support Act」 to specify target population and support, 「Juvenile Department Tasks Manual」 to establish conditions for release under educational guidance, 「Youth Protection Act」 to establish conditions for the primary caregiver to fulfill obligations, 「Juvenile Law」 to manage special education in collaboration with probation, 「Act 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to establish legal grounds for collaboration with special education,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to reorganize and reinforce supports for the victims.

Secondly, organizational recommenda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partnership between law enforcements and regional governments via establishing legal grounds for conditional release under the educational guidance, reviewing accessibility of the social services in at-risk youths at each steps of juvenile justice system, and improving the communic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share information were recommended.

Lastly, to improve efficacy of the program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customized guidance programs, diversification of community-based programs by expanding social services targeting at-risk youths, reinforcement of the primary care provider's obligations to fulfil duties were recommended.

Keywords: Youth At Risk, Juvenile Delinquency, Educational Guidance, Protective Detention of a Juvenile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이창호·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백혜정·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백혜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강경균·강소영·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황여정·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 정은주·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성윤숙·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최인재·염유식
-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 18-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IX : 사업보고서 / 하형석·이종원·정은진·김성은·한지형
- 18-R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
-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 조아미·임정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수 시 과 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현·김인규
- 18-R24 청소년 통일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외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수탁과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8-R29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옥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김태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3 아동·청소년의 적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이윤주·최정원·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I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오해섭·윤철경·임하린·윤혜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서보람·윤철경·양수빈·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박상진·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 (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 (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외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के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S 2016) 결과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해외사례 집필 ◆

H.R.KIM-Lescarret (프랑스 소르본대학교 유럽문화연대연구소·연구위원)

김 혁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연구관)

박 상 원 (독일마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수료)

◆ 자문·협력 ◆

강 소 영 (건국대학교·교수)

강 정 은 (사단법인 두루변호사)

경 기 용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동반자)

김 광 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소장(변호사))

김 병 배 (법무부·사무관)

김 성 식 (대전가정법원·판사)

김 승 혜 (청소년폭력예방재단·단장)

김 준 성 (대구지검 김천지청·검사)

김 차 연 (법무법인 진솔·변호사)

김 청 주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경위)

김 학 수 (경찰청·경감)

김 혁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연구관)

김 현 아 (한국여성변호사회·변호사)

김 현 진 (한국교육개발원·박사)

박 군 학 (광진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주임)

박 원 규 (경찰대학교·교수)

봉 유 종 (안양동안경찰서·경감)

서 석 교 (서울남부꿈키움센터·팀장)

신 동 주 (의정부지방법원·판사)

◆ 자문·협력 ◆

- 염 윤 호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연구관)
- 이 종 석 (안양동안경찰서·경장)
- 이 현 숙 (탁틴내일·대표)
- 조 주 은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조 진 경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 황 동 구 (서울특별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팀원)

◆ 비행행동 경중(輕重) 평가 ◆

- ※ 익명 요청 참여자 및 직급·직위 제외(가나다순)
- 강 소 영 (건국대 경찰학과)
- 강 호 진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 권 해 수 (조선대학교)
- 길 성 호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 김 광 기 (인제대학교)
- 김 다 운 (하늘목장 청소년쉼터)
- 김 범 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 성 벽 (여성가족부)
- 김 세 민 (부산광역시 꿈드림)
- 김 세 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 아 름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한울타리)
- 김 영 진 (법무법인 우면)
- 김 지 훈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 김 진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 학 수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 김 현 아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 김 형 태 (서울기독교대학교)

◆ 비행행동 경중(輕重) 평가 ◆

- 김 해 영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김 해 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 희 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 지 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 상 열 (마포경찰서)
방 은 령 (한서대학교)
백 소 현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백 해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변 수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 동 진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성 예 진 (청소년쉼터)
성 태 봉 (인천일시청소년쉼터)
손 영 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손 지 아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손 지 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 병 수 (여성가족부)
안 세 영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 주 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오 해 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우 건 희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유 흥 식 (중앙대학교)
윤 다 슝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은 영 진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이 근 덕 (노무법인 유앤)
이 범 영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 비행행동 경중(輕重) 평가 ◆

- 이 상 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 영 운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 이 정 은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 이 태 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 효 정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임 영 식 (중앙대학교)
- 장 한 성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 정 은 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 태 권 (법무연수원)
- 조 이 랑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 진 선 미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
- 최 인 정 (영등포경찰서)
- 최 정 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 창 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 희 윤 (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 하 태 욱 (건신대학교대학원)
- 한 도 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황 선 용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 별)한
- 황 여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인 쇄 2018년 12월 24일

발 행 2018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00-1 94330

979-11-5654-199-8 (세트)



연구보고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2001 94330

ISBN 979-11-5654-200-1
ISBN 979-11-5654-199-8 (세트)